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76호
2018. 8. 2.(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22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 5
제4230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2
제42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4
제423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8
제4233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52
제4234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58
제4235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9
제4236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64
제423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0
제423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71

[입법예고]

제2018-1763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4
제2018-1773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5
제2018-1774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6
제2018-1782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7
제2018-1783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8
제2018-1787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9
제2018-1788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0
제2018-1789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1
제2018-1795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2
제2018-1796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76
제2018-1800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7

제2018-1803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8
제2018-1804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9
제2018-1810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4
제2018-1813호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85
제2018-1816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6
제2018-1818호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87
제2018-182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88
제2018-182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9
제2018-182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0

◈고 시

제2018-236호 (가칭)우이동가족캠핑장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91
제2018-237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7
제2018-238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
제2018-239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개정 고시 ·····234
제2018-240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35
제2018-241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240
제2018-242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240
제2018-243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41
제2018-244호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60

◈공 고

제2018-1768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75
제2018-1769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 공고 ·····294
제2018-1770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03
제2018-1777호 2018년도 제12차 건축물 미술작품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312
제2018-1778호 아리수 음수대 사출금형 업체 모집 공고 ·····315
제2018-177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및 등록 말소 사항 공고 ·····320
제2018-1784호 강서구 화곡동 40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329

제2018-1790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335

◈구 고 시

제2018-69호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337
제2018-85호 봉래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339
제2018-93호 도시계획시설(철도:용산민자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용산구) ·····350
제2018-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도봉구) ·····351
제2018-8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노원구) ·····363
제2018-8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노원구) ·····365
제2018-86호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서구) ·····367
제2018-148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구로구) ·····368
제2018-58호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370
제2018-184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377
제2018-121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동구) ·····378

◈구 공 고

제2018-689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광진구) ·····380
제2018-884호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공람공고(도봉구) ·····381
제2018-899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도봉구) ·····392
제2018-1152호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에 대한 공람공고(구로구) ·····393
제2018-1032호 도시관리계획(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금천구) ·····394
제2018-1065호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금천구) ·····396
제2018-1200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공사완료 공고(서초구) ·····418

◈ 사업소고시

제2018-1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22
제2018-1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22
제2018-1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23
제2018-1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23
제2018-1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24

◈ 기타

제2018-187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5
제2018-20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5
제2018-20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6
제2018-206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7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22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사. 정책・사업・보조금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단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에 속하는 실・본부・국과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기술심사담당관

나.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다.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사업소. 다만, 4급 상당 이하 직속기관・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직 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본부・국에 포함한다.

5. “행동강령총책임관”이란 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감사위원장이 된다.

6.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단위기관의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상당 공무원이 된다. 다만, 기술심사담당관은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5급 공무원이 된다.

7.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8. “이해충돌상담관”이란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시행) ① 각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등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전문성 등) 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관의 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전거래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나. 시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치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청 대상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위공무원은 매년 1회 자신의 수행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충돌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해충돌상담관이 당해 공무원의 보유재산과 수행직무와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이해충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위공무원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 및 보유재산의 범위, 심사 절차 및 방법 등 이해충돌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시장 및 부시장(행정1·2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총)책임관"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12조(가족 채용 제한) ① 시장 및 부시장은 시 또는 시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시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시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 및 부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 또는 시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시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제1항에서 제한하는 사적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인가·허가 등에 관한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의 업무에 속하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의 필요에 의해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제2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규칙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시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ㅛ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승인 요청하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28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

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3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총)책임관·시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과 행동강령(총)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3조(징계 등) ① 시장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등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 인재개발원장은 신규임용자 교육 등 교육과정에 이 규칙에 대한 소양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등)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비위유형 \ 수수행위 \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 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별지 제7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서식]

이해충돌 심사 청구서

① 신 청 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② 담당직무 내 용	(직제, 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			
③ 보유재산 내 역	(재산신고서 주요 내용)			
④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담당직무와 보유재산간의 직무관련성 자가 진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자가 진단 결과

[별지 제9호서식]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별지 제10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성별)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_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별지 제1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 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18. 1. 16. 공포, ’18.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

나. ’18. 2. 28.자로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을 반영

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조문체계 및 내용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반영함(제10조 등)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반영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제출 (제5조의2)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0조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공무원의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재직자가 소속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제14조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으로 확대 반영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제11조제3항)	공무원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 * 출연·출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 체결 관련 업무 등 부정청탁 유형 구체화	제22조제5항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 제공받는 행위 금지	제2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8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제16조)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시 신고	제28조

나.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7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8조)

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개정 사항을 반영함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으로 ‘가상통화’를 추가(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6조)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7조)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제27조)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27조 제2항)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제28조)
- 기타 서식 추가(제8조, 제10조 등)

라. 조문체계 및 내용을 정비함

- (조문체계 변경 등)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체계 및 내용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정비
- (용어 정의 정비) “소관 업무” 및 “부정 청탁”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소속기관”을 “단위기관”으로 수정하는 등 정비(제2조 등)
-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 임의화)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필요한 경우에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기관의 부담을 완화(제4조)
- (부정청탁 신고·처리 삭제)행동강령 위반 사항 신고에 대해서 규정이 있으므로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7조 삭제
-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삭제)퇴직공무원에게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는 불가한 사항으로 현행 행동강령 제16조의4 삭제
- (겸직의 제한 내용 변경)제한하고자 하는 겸직 범위 구체화 등(제19조)
- (위반행위 처리 절차 보완)신고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동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규정(제31조, 제34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30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를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서울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를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정무부시장, 1명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위원”을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으로, “않도록”을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 ‘참여단’ ”를 “ “참여단” ”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중 “모집시”를 “모집 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위촉직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후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제3조제1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42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외협력담당관·예산담당관”을 “대외협력담당관·남북협력담당관·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을 “법률지원담당관·남북협력담당관·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0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남북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남북 경제·개발지원 협력, 인도적 지원 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남북관계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6.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평화·통일 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4항제14호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제23호로 한다.

15. 교육복지민간협의회 운영

제17조의2제6항제9호 중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및 참여위원회”를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청소년의회 및 참여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2제7항제2호 중 “학교급식지원”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친환경무상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급식 만족도조사”를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친환경무상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한다.

6.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의4제7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5.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제5항제12호 중 “총괄·조정기능”을 “총괄·조정, 지진대피소 지정·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피·재해구호시설 관리 총괄 및 협의체계 구축·운영

제20조의2제1항 중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를 “역사도심재생과, 광화문광장추진단, 주거재생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공공개발센터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공공개발센터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로 한다.

제20조의2제8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제20조의2제9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화문광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화문광장 도로·교통·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광화문광장 홍보에 관한 사항
6. 광화문광장 협의회 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7. 광화문일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 중 “산지방재과.서울로운영단을 둔다”를 “산지방재과를 둔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조경과장.산지방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울로운영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조경과장·산지방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서울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5호 중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방류수 검사, 침출수 및 축산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침출수, 가축분뇨정화시설 방류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먹는 물에 관한”을 “먹는 물 및 수처리제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강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중수도, 물놀이형수경시설, 수영장, 목욕장수, 온천수 등의 수질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11. 토양환경 오염도 및 생활공간 유해물질 검사
12.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정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67조제1항 중 “건설총괄부”를 “총무부”로 하고, “건설총괄부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총괄부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건설총괄부”를 “총무부”로 하고, “기획예산과.서무과.경리과.건설정보관리과”를 “총무과.건설총괄과.홍보예산과.경리과”로 하며, “기획예산과장.서무과장”을 “총무과장·홍보예산과장”으로 하고, “건설정보관리과장”을 “건설총괄과장”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인터넷통신과”를 “인터넷통신과.클라우드센터운영과”로 하고, “기획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자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기획관리과장, 정보자원운영과장, 클라우드센터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제8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클라우드센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클라우드센터 서버 및 주변기기 운영
2. 클라우드센터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3. 클라우드센터 H/W, S/W 도입 및 유지관리
4. 클라우드포털·종합관리시스템 운영
5. 클라우드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6. 클라우드센터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관리
7. 클라우드센터 정보자원 장애진단·대응

제90조제1항 중 “간호부·약제과”를 “간호부·간호1과·간호2과·약제과”로 하고, “진료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진료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약제부 및 원무과”를 “약제부·간호1과·간호2과 및 원무과”로 하고, “진료부장·간호부장 및 약제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진료부장·간호부장 및 약제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간호부·약제과”를 “간호부·간호과·약제과”로 하고, “진료부장·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진료부장·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로 한다.

제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호부장”을 “간호부장·과장”으로 한다.

별표2 은평소방서란 중 “은평구 수색로 294(수색동)”을 “은평구 수색로 320(수색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시정 과제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 소관 업무 조정과 기관 현황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과제 추진체계 마련, 수요 증대분야 전담기능 부여 등을 위한 부서 신설
   - 남북관계의 지속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전담 ‘남북협력담당관’ 신설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총괄 ‘광화문광장추진단’ 신설
   - 클라우드센터 정보자산 증가 등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센터운영과’ 신설
   - 시립병원 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간호과’ 신설

   나. 행정환경 변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업무 신설·이관 및 구체화
   - 자치경찰제 도입 업무를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조직담당관으로 이관
   - 재난상황시 대피, 구호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 기능을 상황대응과 소관으로 명시

-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교육정책과 사무명칭 변경, 소관기능 명확화를 위한 생활보건과 사무조정 및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신설 등

다. 기관 및 업무 현황 반영을 통한 기구명칭 변경 등 현행화

- 수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18. 5.)에 따른 소재지 변경
- 행정 지원 역할에 부합하도록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기구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규칙 제423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8,167	4,405	300	7,983	5,328	151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242	4,224	294	402	5,171	151

같은 표 4급 소계란, 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32	140	16	7	65	4
서기관	93	71	6	6	9	1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환경란, 시설란, 행정또는사회복지란, 행정또는학예연구관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330	857	44	54	347	28
행정	592	413	41	22	93	23
환경	11	11				

시설	183	111			71	1
행정또는사회복지	9	9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3	5			8	
행정·공업또는시설	79	70		1	8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사서란, 전산란, 공업란, 의료기술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공업・시설・전산란, 공업또는공업연구사란, 통신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259	1,703	89	102	1,284	81
행정	1,183	768	67	40	255	53
세무	46	43	1			2
사서	17	1		7	9	
전산	80	55	3	3	17	2
공업	340	110	6	4	218	2
의료기술	34	1		3	30	
시설	524	281	1	2	223	17
방송통신	63	31	2	3	27	
시설관리	42	13			29	
행정또는시설	39	37			2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6	18			8	
행정·공업또는시설	77	72			5	
행정·공업·시설·전산	10	9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1				1	
통신운영	16	5	1	2	8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세무란, 전산란, 공업란, 간호란, 보건란, 환경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94	1,239	88	145	1,786	36
행정	1,212	639	62	57	429	25
사회복지	29	15			13	1
세무	33	33				
전산	119	72	2	8	36	1
공업	403	27	5	12	357	2
간호	132	7		3	122	
보건	17	15			2	
환경	40	8		19	13	
시설	486	194	1	4	281	6
방송통신	58	24	3	12	19	
시설관리	13	6			7	
행정·공업또는시설	37	36		1		
기계운영	87	5	1		81	

같은 표 8급 소계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방송통신란, 위생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통신운영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화공운영란, 농림운영란, 사육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738	206	48	83	1,400	1
전산	34	14		6	14	
공업	115	8	1	4	102	
녹지	16				16	
방송통신	22	3		6	13	

위생	30	5	1	5	19	

시설관리	140	3			137	
운전	118	19	3	15	81	

통신운영	12	5		2	5	
전기운영	99	2	1		96	
기계운영	227	3	2	1	221	
화공운영	4				4	
농림운영	19			2	17	
사육운영	14				14	

같은 표 8급 직렬란 중 공업란 다음에 농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	2				2	

같은 표 9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230	5	4	5	216	
행정	38	1	1	1	35	

공업	41				41	

전기운영	14				14	
기계운영	6			1	5	

같은 표 9급 직렬란 중 간호조무란 다음에 운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전	6				6	

같은 표 연구사 직렬란 중 학예연구란, 기록연구란, 수의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학예연구	86	15		2	69	
기록연구	9	4			5	

수의연구	3			2	1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경란, 소방위란, 소방장란, 소방교란, 소방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7,002	132		6,870		

소방경	417	22		395		
소방위	356	35		321		
소방장	743	36		707		
소방교	1,652	3		1,649		
소방사	3,660	8		3,65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18. 8월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행정수요 변화 반영 인력 재배치를 위한 직급 조정 등
2. 주요내용
   ○ 총 정원을 18,144명에서 18,167명으로 23명 증원하고,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직렬 및 직급조정 사항 반영
   - 상위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방공무원 증원(+23명)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8. 2.시행, 소방공무원 23명 증원)
   - 환경변화 반영, 행정수요 증대분야 대응 등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53명)
   - 퇴직 및 공로연수 현황 고려, 관리운영직군을 일반직으로 전환(31명)

◈ 서울특별시규칙 제4233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안전지출”을 “안전반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유통망 관리부서의 장은”을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제목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간정보”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로, “시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외주용역”을 “외주용역”으로, “용역업체”를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을 “외국인에 대한”으로, “우선”을 “먼저”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제4항 중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로, “마련하여”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급		분류기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위성영상〉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전자지도〉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해양공간정보〉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기타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위성영상〉 ◦ 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전자지도〉 ◦ 군사 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등급		분류기준
공개제한	사례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신설)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신설) 〈해양공간정보〉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신설)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기타공간정보〉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기준	◦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전자지도〉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신설) 〈해양공간정보〉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신설) ◦ 해도, 전자해도 등(신설) 〈지적공부〉 ◦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기타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비공개” 및 “공개제한”이 아닌 공간정보

〈별지 제4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td><td>성명/기관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소속기관(단체)</td><td colspan="2"></td><td>직책</td><td colspan="2"></td></tr>
<tr><td>요청자료</td><td colspan="6"></td></tr>
<tr><td>사용목적
및
활용계획</td><td colspan="6"></td></tr>
<tr><td>관리대책</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제 공
내 역</td><td>제공자료</td><td colspan="5"></td></tr>
<tr><td>제공방법</td><td colspan="5"></td></tr>
<tr><td>제공기간</td><td>~</td><td>반납여부</td><td></td><td>반납일</td><td></td></tr>
<tr><td>보안대책</td><td colspan="5"></td></tr>
</table>

본인은 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은 제공기관 환수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간정보 관련 신산업창출 등을 위해 공간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과의 용어 일치,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정합성 유지
   ○ 비공개 공간정보를 국외반출시 시장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변경하는 등 보안관리 의무 강화(제10조~제13조)
   ○ 공간정보 관련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공간정보 공개 확대 등
   - 항공사진 정밀도 향상 : 50cm→25cm

◈ 서울특별시규칙 제4234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8월 2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소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성화 소위원회 : 도시농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예산, 사업 등에 관한 심의·자문
2. 박람회 소위원회 : 도시농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사업에 관한 심의·자문

③ 특정한 사안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참석자의 수당지급)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시행 시기와 여건,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는 활성화 소위원회와 박람회 소위원회를 두고 도시농업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사안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나.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다.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시행 시기와 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235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환급률은 별표 2와 같다.”를 “환불은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를 반환한다.”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

(앞면)

장 사 시 설 사 용 허 가 증

사용시설	명 칭			
	구 분	조성분묘( ), 비조성분묘( ), 봉안시설 ( )		
	소 재 지			
	번 호		규 모	
사망자	성 명	한 글 : 한 문 :	생 년 월 일	
			사 망 일 자	
	주 소			
사용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 대 폰 :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허가장소				
사용허가기간		부터 까지		
사용허가조건		뒷면기재	교 부 사 유	신규( ), 재교부(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뒷면)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조성분묘·봉안분묘 및 봉안당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립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분묘는 관리소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는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자 연 장 지 사 용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한 글 : 한 문 :	생 년 월 일	
			사 망 일 자	
	주 소			
사용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 대 폰 :	사망자와의 관계	

시 설 구 분	잔디형 장지( ), 수목형 장지 ( )
사용허가장소	
사용허가기간	부터 까지
사용허가조건	뒷면기재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립자연장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립자연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2. 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한 경우 골분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허가기간은 골분을 묻은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립자연장지의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는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자 연 장 지 사 용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한 글 : 한 문 :	생 년 월 일	
			사 망 일 자	
	주 소			
사용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 대 폰 :	사망자와의 관계	

시 설 구 분	잔디형 장지( ), 수목형 장지 ( )
사용허가장소	
사용허가기간	부터 까지
사용허가조건	뒷면기재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립자연장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립자연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2. 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한 경우 골분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허가기간은 골분을 묻은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립자연장지의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는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시립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사용료 환불은 현행 별표2에 따라 신규사용료 15년 기준의 연차별 환급률 적용하고 있으나 연차별 환급률 일괄 적용 시 사용기간 구간별 환급액의 불균형 발생
   ○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사용료(관리비는 일할계산 운용 중) 환급을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시 연차별 환급률을 적용하던 것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하도록 개정(제15조)
   나. 현행 사용료 환급률이 사용기간 15년 기준으로 규정되어 5년 단위 재사용료 환불에는 적용할 수 없어 삭제하고 제15조에 따름(별표 2 삭제)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제15조의 환불사항 반영(별지 제3호, 제4호 개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236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를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6호 중 "길이가 10미터"를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을"을 "신청(이하 "조정 신청"이라 한다)을"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을 "도로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를 "경우 굴착공사시행자"로, "서류의 첨부를 생략"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따라

허가대상인지” 를 “따른 허가대상인지” 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을 “도로굴착사업계획” 으로, “구청장” 을 “관할 구청장” 으로, “검토” 를 “확인·검토”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부 확인” 을 “여부” 로 한다.

제8조 중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을 “관할 구청장은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대한”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청장” 을 각각 “관할 구청장”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 을 “관할 구청장”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도로굴착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심의·조정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를 “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르고,” 를 “연장하거나” 로,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에 따르되,” 를 “경우 별지 제4의2호서식 또는 별지 제4의3호서식에” 로,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 을 “관할 구청장”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은” 을 “관할 구청장은”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리자는 현장 조사 및” 을 “관리자가 현장을 조사한 후” 로, “통지” 를 “그 결과를 통지”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부터 제5항 본문까지 중 “구청장” 을 각각 “관할 구청장”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한 구청장” 을 각각 “행한 관할 구청장”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청장” 을 “관할 구청장” 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에 대하여” 를 “공사의” 로, “취하도록 하여” 를 “취하여”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을 “관할 구청장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다음달 15일까지” 를 “종료 후 15일 이내에” 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구청장과” 를 “관할 구청장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구청장” 을 “관할 구청장”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구청장에게도” 를 “관할 구청장에게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할 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할 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구청장”을 각각 “관할 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구청장은”을 “관할 구청장은 월마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작성하고,”로, “첨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를 “첨부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 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년도에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
2. 신청기간 :
3. 구비서류 :
4. 접 수 처 :
5. 신청요령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 · 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 · 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신청을 아니 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 도로점용(굴착 · 복구) 허가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 복구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처리기간
7일

준 공 확 인 신 청 서

○ 공 사 명 :
○ 시 행 자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구 분	구 간(위치)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 ·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감독경유	소 속		직 명		수수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뒷면)

※ 작성방법

【 폭, 연장, 면적 기재 】

① 복구된 폭, 연장, 면적 기재

② 최소굴착폭 이하는 최소굴착폭으로 기재

③ 복구면적(㎡) = 복구폭(m) × 복구연장(m)

【 설계도면 중 평면도 작성 】

① 사용도면

가. 길이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이하, 폭 3m이하의 소규모 굴착을 수반하는 일반 시설물 매설공사인 경우 : 일반 평면도

나. 가항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시설물 매설공사인 경우 :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도면전산화시스템에서의 평면도

② 규 격 : A4 , 종방향(지하매설물의 규모와 매설형태에 따라 조정 가능)

③ 축 척 : 1:1,200 이상(지하매설물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조정 가능)

④ 지리정보시스템(GIS) 또는 캐드(CAD)등 도면전산화시스템에서의 평면도 작성방법

가. 사업시행자가 도면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자체 시스템에 반영하고, 굴착공사시 노출된 자체관리 지하매설물 현황이 시스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가 도면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공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당해 공사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표시기준

가. 도면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지하매설물(관로, 박스구조물, 맨홀 등)의 규모, 평면위치 및 매설심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나. 매설된 지하매설물의 규격은 단일 관로인 경우에는 구경(mm단위)·재질·연장(m단위) 등을, 여러 관로가 병행 매설된 경우에는 '열×단' 으로 표시하고, 박스 구조물은 '련수@폭×높이' 로 표시한다.

다.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와 매설심도는 되메우기전에 반드시 실측하여 m단위로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측점으로부터 거리측정 기준점까지를 직선으로 표시하여 상단(또는 우측)에는 이격거리를, 하단(또는 좌측)에는 매설심도를 기록한다.

라.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를 측정·표시하는 기준점은 관로의 경우는 중심선을, 전력구 등 박스 구조물의 경우는 박스 외곽선을, 맨홀·소화전 등 부속시설물 등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관로의 중심선과 박스의 외곽선은 직선구간 20m씩을 측점으로 정하고, 변곡·분기되는 부분은 해당 지점마다 측점을 추가로 정하여 측정한다.

바.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 실측은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의 보차도경계선(보차도경계석이 차도와 접한 선), 건물선 또는 건물모서리, 건물담장선 또는 건물담장모서리 등 지형·지물로부터의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측정하고, 매설심도는 지표면에서부터 지하매설물 상단까지의 깊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 반영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굴착길이가 30미터,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공사를 소규모 공사에 포함시키고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및 준공확인신청서 서식 정비
   라. 문구 정비, 조항의 위치 재배치, 약칭을 통일적 적용 등 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423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례”를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오톱 유형화”를 “비오톱 유형화”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 제목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역 중심(각각의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을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제외한다)”를 “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역세권 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용어 현행화 및 중복조항 삭제
2. 주요내용
   ○ 제3조의2제3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제3조제4항 삭제
   ○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역세권 범위를 철도역 중심(각각의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에서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로 변경(제16조의2제1항)
   ○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최고고도지구에서 고도지구로 변경 (제16조의2제2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23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나. 주민공람 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마.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 포함)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도서
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제3조(안전진단 동의 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
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5조(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에 따라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조례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조합설립인가서)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1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귀속) 또는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47조제2항제14호 및 조례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①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
②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함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에 이를 명기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시행계획인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중지·폐지)인가서를 교부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 이라 한다)에게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분양신청)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후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입주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 및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4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된 자(철거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⑥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⑦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

제16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⑧ 조례 제33조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⑨ 조례 제3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는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있거나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분양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 전에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에게는 정비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별지 제33호서식)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별지 제34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는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6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임대주택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사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사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의 처분명세서와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 조례 제46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동·호의 추첨 등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시장 및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보증금의 결정·수납, 임대주택의 동·호 결정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에 관하여는 법·영·조례 및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 및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과 내규 등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임대주택 사용승인(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공사사장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을 확인·점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사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잔여주택이 있거나 입주포기·이주 등으로 공가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공사사장은 잔여주택에 대한 우선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사사장으로부터 우선배정 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 구역 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대상 세입자로부터 우선배정 신청을 받아 그 명단을 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사사장은 우선배정 신청자가 조례 제46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되,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 오래 경과한 정비구역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4. 우선배정의 순위는 제3호에 따라 공사사장이 결정하되,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경우 동일한 조건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공사사장은 우선배정을 결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잔여주택을 우선배정한 후에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그 처분방법은 시장이 정하되, 중앙행정기관에서 특별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⑥ 공사사장은 불법 전대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입주 및 퇴거관리로 공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시기조정자료의 작성) 조례 제48조제4호에 따른 시기조정자료 중 예상 이주시기 및 이주가구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① 조례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 보조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비용
2.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대상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조할 수 있다.

1.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중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비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부지 면적(조성비를 포함한다)의 환산비용
3.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 받은 국·공유지 비용

제21조(구청장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비용 보조) 시장은 조례 제52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총 용역비의 50퍼센트(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53조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 대상자
2. 우선 융자대상 정비구역
3. 융자금액
4. 상환기간 및 방법
5. 이율
6. 신청기간
7. 신청서류

제23조(융자신청대상자) 융자신청대상자는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4조(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 시장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을 선정하여 다른 정비구역보다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25조(융자신청) ① 융자신청대상자가 조례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제6호의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비사업 융자금신청서를 자금 사용계획서 및 세부집행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접수 및 적정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 방법 등)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융자신청대상자가 제출한 자

금 사용계획서 및 세부집행계획 등의 적정성 및 별표 1에서 정한 평가항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금액 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3조에 따른 융자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건축공사비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등의 철거비와 건축시설공사비 및 그 밖의 부대비(설계비, 감리비 등)로 한다.

제27조(융자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 받는 금융기관 등을 선정 시 위탁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정비사업 융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융자대상자 통보) ① 시장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융자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수탁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지막 융자계획에 관한 공고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날까지 수탁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융자금 대출 신청을 한 융자대상자는 해당 연도 내에 수탁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대상자가 수탁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은 취소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전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와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융자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 등)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융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이 취소되어 법령에 따라 새로 승인 또는 인가를 얻는 구역으로서 시장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0조(융자금 상환방법 등) ① 융자대상자는 수탁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이자 포함)을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상환하고 시장에게 융자금 상환 증빙서류를 준공인가 신청 시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22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별 융자 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별도로 정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① 융자금 운용과 수탁기관의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은 융자금 대여 시 시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비사업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융자대상자가 대출받은 융자금의 상환여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대여이자 계산 시 대여일, 상환일, 상환일 전일은 이자계산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1년은 365일로 한다.

⑤ 융자대상자가 대출받은 융자금을 상환기일 전에 수탁기관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회수한 날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정비사업 융자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추진실적의 보고)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고시문 사본
2. 조례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
3. 조례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 :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사본
4. 조례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출서류 제외)사본
   나.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별지 제18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
   다. 사업시행계획인가서(별지 제23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및 고시문 사본
   라.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별지 제22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
5. 조례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별지 제28호서식) 사본
   다.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별지 제33호서식)
   라.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별지 제34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사본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서(별지 제35호서식, 제출서류 제외) 및 고시문 사본
6. 조례 제6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사본 1부

7. 조례 제6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류 : 공사완료 고시문 사본 1부

제33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조례 제66조제3항에서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2.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기피 신청서
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조정서

제34조(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1조제3항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1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의뢰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통보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요청받은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통해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1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거사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원
2.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판사, 검사, 변호사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비밀유지)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조례 제91조제3항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하여 신고한 자의 관련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협약,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경과연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제1항제1호"를 "경과연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단서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7항제1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각각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0항제21호 및 제22호 중 "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각각 "주택정비형 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

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및 제24호 중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을 각각 “주택정비형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을 각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을 각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을 각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제26조 관련)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동의율(10점)	추진위원회 승 인	1	60% 이상	10
		2	60% 미만	8
	조 합 설 립	1	80% 이상	10
		2	80% 미만	8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비율(10점)		1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5% 이상	10
		2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5% 미만	8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등 포함) 부담률(10점)		1	20% 이상	10
		2	15% 이상	8
		3	15% 미만	6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10점)		1	충족도 50% 미만	10
		2	충족도 50~70% 미만	8
		3	충족도 70% 이상	6
사업추진단계(10점)		1	정비구역 지정 된 추진위원회	10
		2	조합설립인가 후	8
		3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6
융자지원여부(10점)		1	융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	10
		2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어 융자금을 받은 경우	8
공공지원 규정 적용여부(10점)		1	예산·회계규정	4
		2	행정업무규정	3
		3	선거관리규정	3
정성평가(30점)		융자금 지원 여부를 위한 적정성 검토 등		30

[별표 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4조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

1. 일반기준
   가. 법 제142조 및 조례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심사위원회가 신고에 따른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나.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 포상금 지급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심사위원회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금품 수수행위 또는 신고 받은 금품 수수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 등으로 이미 알게 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신분상 사법처분, 금전적 처분에 따라 금액기준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신분상 사법처분

포상금액 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2) 1억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3) 5,0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4) 3,0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5) 1,0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6) 5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비고 :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선고받은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벌금(노역장유치 포함), 몰수 등 재산형의 경우에는 “나. 금전적 처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나. 금전적 처분 (금품·향응 수수행위의 금액이 관련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경우)

포상금액 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20억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2) 1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3) 5,000만원 이하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4) 3,000만원 이하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5) 1,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6) 500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7) 100만원 이하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기재)

나. 계획의 범위

(계획 범위의 위치와 면적 기재)

다. 계획의 수립절차(과정) 및 추진현황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절차와 추진현황 기재)

2. 현황 분석

가. 주변지역 현황

(주변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의 정비구역 위치도)

나. 정비사업 구역 현황

<table>
<tr><td rowspan="2">도시관리
계획사항</td><td colspan="2" rowspan="2">용도지역</td><td colspan="2" rowspan="2">용도지구</td><td colspan="2">도시계획시설</td><td colspan="2">기 타</td></tr>
<tr><td>종 류</td><td>규 모</td><td>종 류</td><td>규 모</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토 지
현 황</td><td>구 분</td><td>계</td><td>사유지</td><td colspan="5">국·공유지(관리청별)</td><td>비 고</td></tr>
<tr><td>소 계</td><td></td><td></td><td></td><td></td><td rowspan="2"></td></tr>
<tr><td>면 적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필지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5">건축물
현 황</td><td rowspan="2">구 분</td><td rowspan="2">계</td><td colspan="2">허 가 유 무</td><td colspan="6">용도별 허가유무별</td><td rowspan="2">비 고</td></tr>
<tr><td>유허가</td><td>무허가</td><td colspan="3">주 거 용</td><td colspan="3">비 주 거 용</td></tr>
<tr><td>동 수</td><td></td><td></td><td></td><td>소 계</td><td>유허가</td><td>무허가</td><td>소 계</td><td>유허가</td><td>무허가</td><td></td></tr>
<tr><td>호 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rowspan="2">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td><td colspan="3">거 주 가 구</td><td colspan="3">거 주 인 구</td><td colspan="5">권 리 자(토지등소유자)</td></tr>
<tr><td>계</td><td>가옥주</td><td>세입자</td><td>계</td><td>가옥주</td><td>세입자</td><td>계</td><td>토지·
건축물
소유자</td><td>토 지
소유자</td><td>건축물
소유자</td><td>지 상
권 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

구 분		노후·불량 비 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계	구 조 상 불량동수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기 타
구조별	합 계					
	철근·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 (연와, 석조, 목조 등)					
존치기간별	합 계					
	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허가별	합 계					
	유 허 가 무 허 가					

<건축물 노후불량 현황도 (축척임의)>

2)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수/ha)	구역면적 (㎡)	건축물 호수				비 고
		계	단독주택(동)	공동주택(호)	기타건축물(동)	

<건축물 호수밀도 현황도 (축척임의)

3) 주택접도율 현황

접도율 (%)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	비고

〈건축물 접도유무 현황도 (축척임의)〉

4) 과소필지 현황

구 분	구역안의 대상 총토지		과소필지(90㎡미만)		과소필지 비율 (%)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일반토지					

다.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상위·관련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현황도 (축척임의))

라. 관련법규 검토

관련법규	주요내용

마. 잠재력 및 개발전망 분석

(대상지 잠재력 및 개발전망 분석 기재)

바. 종합분석

(종합분석 및 현황종합분석도 (축척임의))

3. 계획의 기본구상

가. 기본방향

(정비계획 기본구상도 (축척임의) - 교통·동선처리계획 포함)

나. 주요 계획지표(인구지표 등) 설정

(계획의 인구 및 규모, 주택공급 지표 설정 등 기재)

다. 개발 기본구상

(개발의 기본구상 및 목표 기재)

4. 부문별 정비계획

가. 계획의 수립방향

(계획의 목표 및 수립방향 기재)

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또는 기정·변경으로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도 로					
	공 원					
	녹 지					
획 지	소 계					
	획 지 1					
	획 지 2					
	획 지 3					

〈토지이용현황도 (축척임의)〉

라.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주거지역	소 계					
○○지역	소 계					
○○지역	소 계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 공원·녹지 등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계											

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필요시)

자.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에 의함 - 주택규모별 건립세대수 기재(임대주택 포함)									
심의완화 사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차.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분	지점	개선방안	시행주체	비용부담	시행시기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주차시설					
교통안전 및 기타					

주: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카.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재난방지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	

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파.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필요시)

하.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60㎡ 이하	소계										
	30㎡이하										
	30㎡초과 ~ 50㎡이하										
	50㎡초과 ~ 60㎡이하										
60㎡초과 ~ 85㎡이하											
85㎡ 초과	소계										
	85㎡초과 ~ 135㎡이하										
	135㎡초과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 고
합 계						
60㎡ 이하	소 계					
	30㎡이하					
	30㎡초과 ~50㎡이하					
	50㎡초과 ~60㎡이하					
60㎡초과 ~ 85㎡이하						
85㎡ 초과	소 계					
	85㎡초과 ~135㎡이하					
	135㎡초과					

거. 세입자 주거대책

너.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연면적)

머.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

버. 환경성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준용)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고
자연 경관	생태면적률					
	녹지 네트워크					
	지형변동					
	비오톱					
생활 환경	일조					
	바람 및 미기후					
	에너지					
	경관					
	휴식 및 여가공간					
	보행친화 공간					
추가	대기질					
	물순환 (수질)					
	폐기물					
	소음 및 진동					

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연번	수종	직경	본수	활 용 계 획	비 고

어.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저.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

처.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터. 정비계획 결정(변경)도(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
3)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기정)
4)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변경)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결정도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
7)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도

5. 소요 사업비 추정(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소요 사업비 추정

나. 재원조달계획

다. 단계별 집행계획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공 람 내 용	
공 람 기 간	공 람 장 소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총 제출 건 수	의 견 별		심 사 내 용 (건수)		
		요 지 구 분	제출건수	채 택	일부채택	불채택
총 괄						

의견서 제출자		의 견 요 지	채택 여부	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주 소	성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구의회 의견청취	의견청취일자	주 요 의 견 내 용	조 치 내 용
	의 결 내 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 조서

1. 토지조서

연번	위 치	지 목	면 적(㎡)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도시계획 시 설	소유자	용 도
			지적	편입					
계									
1									
2									

※ 단독주택 용지 : ㎡, 공동주택 용지 : ㎡

2. 건축물 조서

연번	위 치	용 도	구 조	동 수	호 수	세대수	준 공 년 도	규 모			노후 불량 여부	비고
								건축 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지상)		
계												
1												
2												

주) 호수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호수밀도 산정기준을 따름

※ 단독주택수 : 호, 공동주택수 : 개동, 세대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주 민	전 체 인 구		가 옥 주		세 입 자		인구 밀도 (인/ha)	호수밀도 (호수/ha)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산 업	구 분	제 조 업	판 매 업	서 비 스 업	기 타
	계				
	업 체 수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과 소유현황

토지	구 분	전 체 토 지						비 고
		합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 축 물	나대지	정비기반 시설부지	기 타	
	필지수							
	면적(㎡)							

건축물	구 분		동 수			호수밀도 (호수/ha)	건축면적 (㎡)	연면적 (㎡)
			전체동수	불량동수	불량비율			
	구조별	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용도별	주 거 용 업 무 용 근린생활 (기타구분)						
	경과년수별	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규모별 (㎡)	30 미만 30~60 미만 60~85 미만 85~115 미만 115~165 미만 165~297 미만 297 이상						

가. 토지의 이용 현황
(토지 현황도 (축척임의) - 지목별, 소유별, 규모별)
1) 토지 지목별 현황

구분	계	전	답	대	학교 용지	도로	구거	공원	기타	비고
면적(㎡)										
구성비(%)										
필지수(개)										
구성비(%)										

2) 토지의 소유자별 현황

구분	계	사유지	서울시	구유지	국유지 (관리청별)	비고
면적(㎡)						
구성비(%)						
필지수(개)						
구성비(%)						

3) 토지 규모별 현황

구분	계	30㎡ 미만	30~90㎡미만	90㎡이상	비고
면적(㎡)					
구성비(%)					
필지수(개)					
구성비(%)					

가. 건축물 이용현황
(건축물 현황도 (축척임의) - 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1) 건축물 용도별 현황

구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기타	비고
동수(동)							
구성비(%)							

2) 건축물 층수별 현황

구분	계	1층	2~4층	5층~9층	10층이상	비고
동수(동)						
구성비(%)						

3) 건축물 구조별 현황

구분	계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강구조	기타구조	비고
동수(동)							
구성비(%)							

4) 건축물 준공연도별 현황

구분	계	10년 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비고
동수(동)							
구성비(%)							

5) 건축물 허가 유무별 현황

구분	계	허가	특정무허가	신발생무허가	비고
동수(동)					
구성비(%)					

3.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또는 기·종점)	규 모 (면적 또는 폭원·연장)	최 초 결정일	설치시설		
						설치시기	설치근거	설치기관

〈도시·군관리계획 현황도 (축척임의)〉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교통상황도(축척임의)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 정리 작성)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

7.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8.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함)
가. 토지등소유자

구 분	토 지 등 소 유 자			
권리유형	계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총소유자수				
동의자수				
동의율(%)				

9. 기존수목의 현황

10.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1.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2.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

14. 기초조사 현황도(A4)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기초조사 자료에 대한 각 항목별 범례(칼라 구분)표시하여 작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table>
<tr><td rowspan="2">동의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화)</td></tr>
<tr><td rowspan="4">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td><td>소유권 위치
(주소)</td><td colspan="6"></td></tr>
<tr><td>소유권 현황</td><td>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td><td>㎡</td><td>등기상 대지지분
(면적)</td><td colspan="2">㎡</td></tr>
<tr><td>용 도</td><td>구 조</td><td colspan="2">층 수</td><td>준공연도</td><td>비 고</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r>
</table>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table>
<tr><td rowspan="2">동의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전화)</td></tr>
<tr><td rowspan="11">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td><td rowspan="5">토 지</td><td colspan="3">소 재 지(공유여부)</td><td>면 적(㎡)</td></tr>
<tr><td colspan="3">(계 필지)</td><td></td></tr>
<tr><td colspan="3">( )</td><td></td></tr>
<tr><td colspan="3">( )</td><td></td></tr>
<tr><td colspan="3">( )</td><td></td></tr>
<tr><td rowspan="4">건축물</td><td colspan="3">소 재 지(허가유무)</td><td>동 수</td></tr>
<tr><td colspan="3">( )</td><td></td></tr>
<tr><td colspan="3">( )</td><td></td></tr>
<tr><td colspan="3">( )</td><td></td></tr>
<tr><td rowspan="5">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td><td colspan="3">설정토지</td><td>지상권의 내용</td></tr>
<tr><td colspan="3"></td><td></td></tr>
<tr><td colspan="3"></td><td></td></tr>
<tr><td colspan="3"></td><td></td></tr>
<tr><td rowspan="2">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td><td>소유권 위치
(주소)</td><td colspan="4"></td></tr>
<tr><td>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td><td>㎡</td><td>등기상 대지지분
(면적)</td><td colspan="2">㎡</td></tr>
</table>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 ) 동 의 총 괄 표

1. 동의총괄내역(정비사업 명칭 :)

가. 토지면적

구 분	동의율 (%)	동의대상 총면적(㎡)			동 의 면 적(㎡)			토지신탁 총면적(㎡)
		계	지상권 비설정토지	지상권 설정토지	계	지상권 비설정토지	지상권 설정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기 타								

나. 토지등소유자

구 분 / 권리유형	전 체 토지등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수				건축물 소유자수
			계	사유지	국공유지	기타	
총소유자수							
동의자수							
동의율(%)							

2. 동의자 명부

연번	조합원 번 호	동 의 대 상 자		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신탁		
					지상권 미설정		지상권 설정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동의총괄표는 안전진단 요청에 위한 주민동의,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 조합설립 동의 등 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고, 총괄표 작성은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

토 지 등 소 유 자 명 부

(정비사업 명칭 :)

연번	토지등소유자				권 리 내 역								세대주 성 명	동의여부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사 업 구 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추진위원회 설립 내역	설립목적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 치			
동의사항	토지 등 소유자수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

승인안내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조 합 원 명 부

(정비사업 명칭 :)

연번	조합원 번 호	조 합 원				권 리 내 역								세대주 성 명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	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명칭	정비사업 조합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설립목적	사업의 시행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 치			
조합원수	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	구역지신청일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이내	
동의사항 (토지등 소유자수)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

※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

주 민 이 주 대 책

<table>
<tr><td rowspan="2" colspan="2">이주계획</td><td>방 법</td><td colspan="2">전체 이주대상</td><td colspan="2">임시수용시설 수용</td><td colspan="2">융자알선 이주</td><td colspan="2">기타 이주방법</td></tr>
<tr><td>세대수</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이주시기</td><td rowspan="3">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td><td colspan="10">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td></tr>
<tr><td>총 이주 가구수</td><td colspan="2">인가 후 3개월 이내 이주가구</td><td colspan="2">인가 후 6개월 이내 이주가구</td><td colspan="2">인가 후 9개월 이내 이주가구</td><td colspan="2">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td><td>기 타</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6">방법별내역</td><td rowspan="3">임시수용시설이주</td><td rowspan="2">위 치</td><td rowspan="2">부지면적</td><td colspan="2">설치 세대수</td><td rowspan="2">구 조</td><td rowspan="2">부대시설 종류 및 규모</td><td colspan="3">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td><td colspan="3">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td></tr>
<tr><td>세대당 규 모</td><td>세대수</td><td>토 지 소유자</td><td>토 지 용 도</td><td>토지 사용 방법</td><td>위 치</td><td>주택의 형 태</td><td>주 택 규모별 세대수</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융자알선이주</td><td colspan="6">융 자 규 모</td><td colspan="6">융 자 조 건</td></tr>
<tr><td colspan="6"></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기타이주방법</td><td colspan="6">유 형</td><td colspan="6">방 법</td></tr>
<tr><td colspan="6"></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세입자 임시이주 계 획</td><td colspan="10"></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

자 금 계 획(추정액)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요비용추산액	계			
	조사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공사비	소 계		
		대지조성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부대복리시설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기타 공사비		
	보상비	소 계		
		손실보상비		
		이 주 비		
		기 타		
	관 리 비			
	기 타 경 비			
자금조달계획	계			
	시행자 자금			
	국민주택자금			
	금융기관자금			
	시공자대여금			
	토지등소유자 부과금			
	기 타 자 금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연번	구 분 (철거·이전·존치 등)	소재지	건 축 물							기 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전·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	비고
			용 도	구 조	층 수	건축/준공 연도	허 가 유 무	건 축 면 적 (㎡)	건 축 연면적 (㎡)	종 류	용도	규모	성 명	주 소		

제출서류	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연번	구 분 (철거·이전·존치 등)	소재지	건 축 물							기 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전·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	비고
			용 도	구 조	층 수	건축/준공 연도	허 가 유 무	건 축 면 적 (㎡)	건 축 연면적 (㎡)	종 류	용도	규모	성 명	주 소		

제출서류	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조합원 번호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권리자			권리의 소재지	도시계획시설 저촉사항	토지소유권					건축물소유권							국공유토지점유권			지상권		소유권이외의 물권		기타의 권리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목	면적(㎡)			이용상황	유허가			무허가				관리청	1필지의 공부상 면적	점유면적	목적	내용	종류	내용	종류	내용	
							공부상 (1필지)	구역 편입	소유		용도 및 형태	1동(또는 1세대)의 연면적	소유 면적	건물 번호 (또는 판독 근거)	용도	1동의 연면적	소유 면적									

※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제출서류	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7호서식]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조서

1. 정비기반시설 및 관련 토지 내역

종 류	명 칭	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저촉 국·공유토지			무상양도(귀속) 국·공유토지			비 고
				필지수	면 적 (㎡)	감 정 평가액	필지수	면 적 (㎡)	감 정 평가액	

2. 정비기반시설 및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무상양도(귀속) 국·공유지			무상 양여	
		소재지	지 목	면적(㎡)			실 제 이 용	평가액	도면 번호	면적 (㎡)	평가액	도면 번호	면적 (㎡)	도면번호
				1필지 공부상	구 역 편 입	정비기반 시설편입								

(주) 도면번호: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
(주) 무상양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무상양여 대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작성

제출 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1.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내역

종류	명칭	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시 행 내용의 범 위	저촉 토지 등의 내역					설 치 비 용				비 용 부 담			비 고
					토 지		건축물		기 타	계	보상비	공사비	기 타	부담자	부 담 내 용	부담액	
					필지수	면 적	동수	연면적									

제출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설치비용계산서 1부.	

(뒤 쪽)

2. 정비기반시설별 저촉 토지 등의 명세

종류	시설별	토지·건축물 소재지	토지 내역							건축물 내역					총평가액	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	비고
			지목	이용상황	면적(㎡)		소유자		평가액	용도	연면적	소유자		평가액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9호서식]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1. 철거 개요
   가. 사 업 명 :
   나. 시 행 자 :
   다. 사업위치 :
   라. 철거기간 :
   마. 철거 건물현황

(단위 : 동, ㎡)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동											
연면적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에 포함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에 작성

2. 비산먼지 방지대책
   가. 공사용 임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 설치기간 :
   - 높 이 :
   - 길 이 :
   - 가설울타리 재료 :
   ※ 설치계획서 첨부 - 가설울타리 디자인 등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나. 세륜기 설치계획
   - 설치위치 :
   - 설치규격 :
   다. 살수기 설치계획
   라. 도로 청소계획
   마.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계획

3.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가. 작업시간
   나. 철거장비 및 시설설치 기준
   다. 소음·진동 측정계획

4. 석면 조사, 해체 및 제거 등 처리계획
   가. 석면함유건축물 조사결과

연번	건축물 개요				석면함유현황				비고
	위치	층수	연면적(㎡)	용도	자재명	함유량(%)	부위	면적(㎡)	

나. 해체 및 제거 등 처리계획

※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등 처리계획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7조의3까지에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과 안전보건공단에서 권고하는 석면해제·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H-70-2012) 참고)하고 석면해체 및 제거 전에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5. 빈집관리 계획

가. 빈집현황

(단위 : 동, 세대수)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동											
연면적											

나.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및 건물명	건물용도	건물규모		소유자 또는 관리자	
			층수(지/상), 동호수	연면적	성명	주 소

다. 관리계획 : 순찰, 범죄 예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 안전관리계획

6.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0호서식]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제출서류	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구조	동수/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계																	
사용	계																	

제출서류	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울특별시 2018. 8. 2.(목)

[별지 제22호서식]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1. 세입자대책 현황

(단위 : 가구수)

세 입 자 총가구수	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	대 책 별 현 황							비 고
		대 책				비 대 책(유형별)			
		계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이전비 지급	주 거 이전비 지 급	동산의 이전비	계			

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기준일 : 년 월 일)

연번	입주대상 세대주			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	가 족 구 성		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와 의 관 계	세 대 원 수	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 (특정무허가) 여부	사실거주 및 사업시행으로 이주여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 여부	최소분양주택 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에 해당여부	기타	비대상

제출서류	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3호서식]

(제1쪽)

사업시행계획(변경 · 중지 · 폐지)인가서

사 업 구 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인가번호			
사업시행자	명 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주된 사무소 소 재 지							(전화)							
시행구역	구 역 명 칭							위 치							
	시 행 면 적	㎡						건축물	(무허가 동)						
	거주가구 및 인구	거주가구			거주인구			도시계획	지역 지구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지목별	지 목						국·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동의내역	조 합 원 수				토 지 면 적				비고						
	대상조합원 수	인			대상면적	㎡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동의면적 (동의율)	㎡ (%)									
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계획	시 행 기 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사 업 비	원						
	건축시설	부지의 명 칭		대지면적	㎡	주 용 도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층수 (지상·지하)		주차장 (대, ㎡)											
	주택	공 급 구 분	주택의 형 태	동 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계													
		분 양													
		임 대													

(제2쪽)

사업시행계획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	건축물 (동)		철 거		이 전		공작물 (개소)		철 거		이 전	
	개수대상 건 축 물	동		임시수용계획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 지		필지수		면적 (㎡)	권리자수	건축물		동수		연면적 (㎡)	권리자수
	세입자 대 책	대상 세대수		임대주택 및 주거 이전비 지급세대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비대책 세 대			

일괄처리사항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사업계획승인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사방지 지정해제	( )	
	농지전용허가·협의	( )	농지전용신고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전용신고	(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	하천공사 시행허가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하천점용허가	( )	하천수의 사용허가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 )	
	지도등의 간행 심사	( )	대규모점포의 등록	( )	사용허가	( )	
	사용·수익허가	( )	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	(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 )	
	실시계획 인가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 )	소방시설 등 건축허가 등의 동의	( )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공장설립 승인·완료 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고	( )	
	대기·물·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 )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 )			

기타 인가내역	

(제3쪽)

년 월 일

( )구청장 ㊞

※ 붙임서류

※ 인가안내

1.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30일 이상 60일 이내 단,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을 경우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 가능) 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또는 기타권리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4호서식]

(제1쪽)

분 양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접수번호	※ 시행자가 기재			
	주 소	(전화)					조합원번호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						(총 인)				

권리내역											
토지	소유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공 유 여 부	이 용 상 황	취 득 일 자	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공부상	편입	소유					
		(계 필지)									
	점유국공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관 리 청	점 유 상 황	비 고 〈불하희망여부〉		
				공부상	점유인정						
		(계 필지)									
	건축물	소 재 지	연면적(㎡)	용 도	취 득 일		공 유 여 부	허 가 유 무	무 허 가 건물번호		
		(계 동)									
분양희망의견	주 택 규 모				상가용도 등 및 규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뒤 쪽)

※ 분 양 신 청 안 내

1. 사업시행자가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분양신청을 우편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서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하게 됩니다.
4. 종전권리의 인정면적과 소유권의 기준, 종전재산의 평가방법,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 기준,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 권리취득일 기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오니 분양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조례 제2조(정의)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 조례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조례 제37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조례 제38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 관련조례 내용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법령정보)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6">□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 colspan="2">(전화)</td></tr>
<tr><td rowspan="3">거
주
주
택</td><td>위 치</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가옥주 성명</td><td></td><td>조합원 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td><td></td><td>임대차 계약기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td><td>성 명</td><td>주 민
등록번호</td><td>신청인과
의 관계</td><td>거주지 주소</td><td>주민등록
전입일자</td><td>주택소유
여 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의 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제 ( )호에 적합한 세대로서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로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뒤 쪽)

※ 신 청 안 내

1.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여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46조제1항)

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 및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나.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

다.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계획한 해당구역으로 한정)

라.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가”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나”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마.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바.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조례 부칙 제5조(조례 제4167호)에 따라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 해당된 자로서 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2. 위에 해당하는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 )년
( )월 ( )일까지 시행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장소 :)

3.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주택소유여부의 전산검색 및 신청내용의 심사결과 조례 제46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세입자 주거대책(임대주택 공급, 주거이전비 보상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됩니다.

5.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후 거소의 변동, 세대구성의 변동, 주택소유여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이 세대구성요건, 주택소유여부의 변동인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6호서식]

(제1쪽)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연번	분양대상자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								비고
	성명	주소	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	소재지	토지					건축물				총평가액	소재지 (또는 부호)	대지		건축시설			총추산액	1주택 1상가 의수인 공유분 양시 지분율	
					지목	면적(㎡)			평가액	용도	연면적(㎡)	허가유무	평가액			분양면적(㎡)	추산액	용도	분양면적(전용면적)	추산액			
						계	소유	점유 또는 배분															
			／																( )				
			／																( )				
			／																( )				

2. 제출서류

가. 국·공유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나. 건축물 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에 의한 경우 각 증빙자료 사본 1부.

다. 토지·건축물 및 대지·건축시설에 관한 평가자료 1부.

라. 건축시설의 용도·규모별 분양면적 및 분양액 산출조서 1부.

마. 건축시설의 공유지분 대지면적 산출조서 1부.

바.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및 주택규모 배정 내역서 1부.

사.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및 주택규모 배정 내역서 1부.

아. 부대시설·복리시설 분양대상자의 순위별 내역서 1부.

자.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및 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 배정 내역서 1부.

서울시보 제3476호 서울특별시 2019. 8. 2.(목)

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설계연번					
분양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조합원(권리자) 번호		주 소											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	
분양신청 내 용		접수번호				신청일				희망의견										
시행구역 일반현황		구역지정 고시일						구역변경 (추가)고시일							변경지역 포함여부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분양신청기간												
분양대상여부	소유토지 (점유 포함)	소유자 성명	소재지	지목	면적(㎡) 공부상 1필지	구역편입	소유또는 점유	배분토지	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	토지이용상황	취득일자 (사유토지)	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	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	토지 건물 분리 여부	평가액 (원)	분양설계 대상여부 대상	제외			
		계																		
	소유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	소유자 성명	소재지	용도	면 적(㎡) 1동(또는1세대) 연면적	소유면적	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	사업자 등록 여부	취득일자	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	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	토지건물 분리여부	평가액 (원)	분양설계 대상여부 대상	제외					
		계																		
	분양대상결정(해당란에 "✔" 표시)	주택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대상( ) /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대상( )		해당주택의 소재지					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		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대상( )		종전토지총면적		제외면적		잔여소유면적	토지면적		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90㎡										
			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		해당토지의 소재지		1필지 분할일자			전세대원 무주택여부		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대상( ) /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대상( )		종전가액		제외가액		권리가액	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		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상가	조례 제38조제2항 대상(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		종전건축물 용도		사업자 등록내용		종전가액	주택분양시 분양액		잔여가액		상가 최소 단위추산액						
분양규모	주 택	대지위치		지분대지면적	평 형		분양면적		전용면적	분양액			평형배정근거		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상 가	대지위치		지분대지면적	용 도		분양면적		최소단위 칸수	분양액		순위	분양규모근거		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서울시보 제3476호 서울특별시 2019. 8. 2.(목)

(제4쪽)

4. 국·공유지 점유자별 점유 인정면적 내역서

연번	점 유 자				점 유 국·공 유 지								비 고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지목	관리청	면 적 (㎡)				점유 유형	
								1필지 공부상	구역 편입	점 유	점유 인정		

제출서류	1. 측량성과도 1부. 2. 기타 점유증빙자료(현황전경사진, 현황도면 등) 1부.	

5. 분양대상자별 청산금 추산내역서

연번	분 양 대상자		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			② 기준 가액 ① × 비례율 ( )	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						⑥ 분양가액			청산금 추산액		비 고
	성명	주 소	계	토 지	건축 물		③차인 계 ⑤—④	④ 부담액			⑤ 상환액			계	대 지	건 축 시 설	징 수	지 급	
								소계			소계								
																			년 월 일 현재 청산금추산액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후 조정확정됩니다.

※ 비례율 : 구역 내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가액으로 나눈 값을 말함
※ 이 서식은 정비사업 구역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일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7호서식]

(일반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소재지 (또는 부호)	지목	용도	면적(㎡)		추산가액	처분방법		비 고
				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	일반분양 (보류면적)		대 상	방 법	
대 지	계								

	규모별		소재지	동·층·호	세대수	추산가액		지분대지				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		처분방법	
	계	전용 / 공용				세대당	총가액	면 적		추산가액		세대당	총가액	대상	방법
								세대당	총면적	세대당	총가액				
주택/임대주택	총계														
		/	계												
		/	계												
		/	계												

	용도별	소재지 (또는 부호)	동·층·호	면 적		추산가액		지분대지		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		처분방법	
				전 체	일반분양 (보 류)	단 위 시 설	총가액	면 적	추 산 가 액	단 위 시 설	총가액	대 상	방 법
기타건축시설													

제출서류	1.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요비용추산액	계				
	조사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부대시설 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지장물 정 비	건축물철거비		
			이 설 비		
		기 타 공사비	임시수용시설 공 사 비		
	보상비	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			
		손 실 보상비	건 축 물		
			토 지		
			기타손실보상		
		이주비	주거대책비		
			기타 이주보상비		
	관리비	인 건 비			
		등 기 비			
		사무용품비			
		통 신 비			
		회 의 비			
		제세공과금			
		기 타			

(뒤 쪽)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요비용추산액	부대경비	감정평가수수료			
		채 권 매 입			
		외 주 용역비			
		기 타 경 비	교통영향평가		
			광 고 선 전		
	재건축부담금				
자금조달계획	계				
	시행자 자금				
	국민주택 자금				
	보조 및 융자(행정청)				
	금융기관 자금				
	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				
	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시공자 대여금				
	기 타				
수입추산액	계				
	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	조합원			
		임 대			
		일 반			
		보 류			
	부대복리시설				
	대 지 분 양				
	유상귀속 공공시설				
	기 타				
추정비례율	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		공통부담 소요비용		분양대상토지 등의 총평가액
			징수청산 총 액		지급청산총액

※ 이 서식은 사업시행구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별지(조합원 분담규모와 분담시기)에 작성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9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연번	조합원(권리자)번호	성 명	주 소	종전의 토지·건축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				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 (분양대상자)	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권리의 종 류	권리의설정 대상		권리의 내 용	권 리 자			소재지 (또는 부호)	대 지 분 양 면 적	건축시설			
					지 목	면 적	용 도	연면적		토 지	건축물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용 도	분 양 면 적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0호서식]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연번	성 명	주 소	세입자구분				거주주택·상가의 가옥주명 (조합원번호)	계약일	사업자 등록일	권리명세 및 평가액				협의체 운영결과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비고
			주거	상가	대상	비대상				소 재 지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	동산이전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1호서식]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구분	연번	권리자			권리내역								권리금액	협의매수(수용)일자	청산사유 및 법적근거	협의체 운영결과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조합원(권리자)번호	성명	주소	소재지	토지		건축물		기타						
						면적	평가액	연면적	평가액	종류	규모	평가액				
	계															
	계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토지소유권의변환	시행전	계	사유지	관리청별 국공유지				기타		
				소계						
		㎡								
		필지								
	시행후	계 ①+②+③+④	① 환지대상	② 현금청산	③ 수용	④ 협의매수	국공유지 불하			
							소계 ⑤+⑥	⑤ 시행자	⑥ 점유자	
		㎡								
		국공유지 무상양여	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				기타	시행자보유토지		
		⑦시행자	소계					②+③+④+⑤+⑦	배분면적	
토지지목의변환	지목		계							
	시행전	면적								
		필지수								
	시행후	면적								
		필지수								
토지용도의변환	시행전토지	용도	계					기타		
		면적(㎡)								
	시행후대지	용도	계	대지				정비기반시설			기타
				소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소계	도로	공원	
		면적(㎡)									

시행전 건축물	허가유무	계	유허가	무허가		
				소계	특정	신발생
		동				
	용도별	계				
		동				
	시행별	계	철거	존치	개수	기타
		동				
	국공유지 점유 건축물	계	정비기반시설점유			일반대지 점유
			소계	도로	공원	
		동				

(제2쪽)

시행후 건축시설

부지별계획

부지명칭	대지면적(㎡)	용도	주택						기타 건축시설		
			형태	분양임대구분	동수	층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동수	층수	건축연면적
계											

공급계획

공급대상	주택								기타 건축시설			
	규모별세대수(전용면적기준)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계											
계												
토지 등의 소유자												
세입자												
보류시설												
일반공급												

권리자별관리처분(단위: 인)

유형	대상	분양					청산 또는 손실보상				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
		소계	주택	상가	주택및상가		소계	청산	협의보상	수용	
계											
토지 및 건축물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권리

권리의종류	권리자수	이전	소멸	기타
계				

세입자대책

대책구분		세입자세대수
계		
대책	임대주택입주	
	주거이전비지급	
비대책		

(제3쪽)

평가액 및 추산액

토지	총평가액	㎡ 당			건축물	총평가액	동 당		
		평 균	최 대	최 소			평 균	최 대	최 소

대지	총평가액	㎡ 당			건축시설	구 분	건 축 연면적	총 평가액
		전 체 평 균	분양대지 평 균	임대부지 평 균		계		
						주 택		
						부대복리 시설		

건축시설의 단위규모별

주택

세대당 분양면적(㎡)					세대당 분양가격(원)			
주 택 면 적				지분대지면적	계	건축비	택지비	기 타
계	전 용	공 용	기 타					

부대복리시설

종 류	건 축 연면적	지 분 대 지 면 적	총 평 가 액			분양단위 규모별			
			계	건축비	대지비	최소단위 규 모 (㎡)	평 가 액		
							평 균	최 대	최 소

기타 대지 및 시설

종 류			
면적(㎡)			
평가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3호서식]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소재지(또는 부호)	지목	용도	면적(㎡)		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			임대부지 총추산가액	처분방법
				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 면적	임대부지 면적					
대지	계									

	주택규모별(㎡)				소재지(또는부호)	동층호	세대수	처분가액		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		처분방법
	계	전용	공용	기타				세대당	총가액	세대당	총가액	
주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분양대상	종류	명칭	소재지(또는 부호)	시설		대지		대지포함 총가액
					면적	총가액	면적	총가액	
부대복리시설									
	분양제외	종류		규모					

	종류	명칭	소재지(또는 부호)	시설		대지		대지포함 추산가액	분양대상 여부
				면적	추산가액	면적	추산가액		
기타시설									

	처분대상자	대지		주택		부대복리시설		기타		총추산가액
		면적	추산가액	세대수	추산가액	면적	추산가액	면적	추산가액	
총괄조서										

제출서류	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4호서식]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

연번	대 상 자			거주주택의 가옥주명 (조합원 번호)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이 주 (예 정) 일 자	가족수	거 주 건축물 용 도	임대주택 희망여부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5호서식]

(제1쪽)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업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인가번호		
사업시행자	명 칭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주된사무소 소 재 지	(전화)															
인가대상	사업의명칭				위 치												
	계획면적	㎡		거주가구 및 인구	거주가구			거주인구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정비건축물	동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시행기간													
토지소유권변환	총면적	시행전	사유토지		국공유지		그밖의 토 지										
	(㎡ 필지)	시행후	환지대상			시행자 보유						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	그 밖의 토지				
			기존 사유지	점유자 매수	존치 국공유지	청 산	수 용	협의 매수	국공유지 불하	국공유지 무상양수							
토지용도변환	용 도	택 지				정비기반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건축시설	소계				소계							
	시행전 (㎡)																
	시행후 (㎡)																
건축물 및 건축시설	시행전 건축물	허 가 건축물	동			무허가 건축물	동(신발생 동)										
	시행후 건 축 시 설	용 도	대지면적	동 수		층 수	세 대 수	건축연면적	비 고								
		주택 소계															
		주택 분양															
		주택 임대															
		상 가															
	공 급 계 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계	㎡	㎡	㎡	㎡										
		계															
		토지등 소유자															
		보류시설															
		일반분양															
		임 대															

(제2쪽)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구 분	분 양 신 청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선 정	권리신고(권리종류별)			
		소 계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소 계			
	신 청 인 수					건 (인)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	권 리 자 별	대 상	분 양				청 산	수 용	협 의 매 수	그 밖의 처 분
			소 계	주 택	상 가	그 밖의 용 도				
	계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대 상	건	이전 설정	건	해지 또는 소멸	건
세입자 대 책	대 상		임대주택 입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		주거이전비 지 급		비대책	

정비 기반 시설	신 설					용 도 폐 지				
	종 류	명 칭	규 모	설치비용	관리청	종 류	명 칭	규 모	국공유지 (㎡)	무상양여 (㎡)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 행 전			시 행 후		
	계	토 지	건 축 물	계	대 지	건 축 물

자 금 운 용	총 소요사업비		수입 추산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

※ 인가안내

1.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명기하여 인가 받아야 합니다(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

2.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별 후속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해당 시설의 처분에 관계되는 다른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공사완료 고시 전에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구청장이 투기방지를 위하여 권리변동신고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공사완료 고시 후 행하는 이전고시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대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임대주택 입주안내서

공 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입주대상자명부번호 (별지 제34호서식)						
대 상 구 역	사업명칭			시행구역면적	㎡					
시행자	명 칭									
	사무소소재지	(전화)								
인 가 일 자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	주택규모별(㎡)				소 재 지 (또는 부호)	동 수	층 수	세대수	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	비 고
	계	전 용	공 용	기 타						
					계					
					소 계					
					소 계					
주요 부대·복리 시설	종 류									
	규 모									

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인

(뒤 쪽)

※ 임대주택 공급계획 안내

1.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통지서의 내용은 통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는 권리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가족구성요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주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 동·호의 추첨 등 입주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임대주택 입주자를 관리할 기관에서 별도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6. 이 통지서는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안내한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예상 이주시기 및 이주가구

사업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추진단계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명 칭												
	대 표 자				생년월일								
	주된사무소 소 재 지	(전화)											
총 거주가구수		이주예정 가구수			사전이주 가구수								
계		소계	조합원	세입자	소계	조합원	세입자						
조합원	이주시기	이주예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전이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이주예정 가구수	구 분	20 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주비 조달방법	□ 금융기관자금 차입(토지 등 담보, 시공사 보증) □ 공공기관자금 차입 □ 시공사자금 차입 □ 신탁사 위임 □ 기타( )											
	이주비 지급계획												
	이주예상 지역(가구)	계	같은 자치구	인접 자치구	서울시내	서울시외							
세입자	이주시기	이주예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전이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이주예정 가구수	구 분	201 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주대책	대 책											
		비 대 책											
	이주예상 지역(가구)	계	같은 자치구	인접 자치구	서울시내	서울시외							

(뒤쪽)

※ 작성방법

1. 이주예정 및 사전이주 가구수는 인가 신청월 직전월까지 작성
   - 예 : ’ 13년 3월 인가신청 시 ’ 13년 2월까지 조사된 내용을 작성
   ※ 이주예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 사전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집주인이 이사하였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 후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주택을 말함

2. 이주시기는 ’ ○○년 ○○월 ○○일 – ’ ○○년 ○○월 ○○일로 작성
   - 이주가구 수는 월별로 작성하며, 이주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년’ 란을 분리하거나 아래쪽에 동일란 추가 또는 ‘기타’ 란에 해당내용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3. 이주비 조달방법은 금융기관자금 차입, 공공기관자금 차입, 시공자 자금 차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4. 이주비 지급계획은 조달한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이주대책 수립방법은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 임시거주시설 제공, 주거이전비 지급, 이사비용 지급, 주변지역 공가입주, 기타 등을 작성

6. 이주 예상지역은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이주 시 어느 지역으로 이주할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구, 인접 자치구, 서울시내는 해당 자치구 및 인접 자치구를 제외한 지역, 서울시외는 서울시 외 다른 시·도 등을 말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8호서식]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

신 청 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치				

구분	항목	면적 (㎡)	토지비 (원)	공사비 (원)	합계 (원)
설치비용	도로				
	공원				
	녹지				
	소계(①)				
제외비용	국·공유지 토지비				
	무상양도 상당비용				
	용적률 완화 환산비용				
	소계(②)				
보조 신청금액	(① - ②) x 5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수수료
	1.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 2.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1부.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9호서식]

정 비 사 업 융 자 금 신 청 서

신 청 인	조합(추진위원회)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치				
신청금액		금 원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정비사업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또는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7호에 따른 신청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0호서식]

정비사업 융자금 대여차용증서

대 여 금 액	일금 원정(₩)	
대 여 기 간		
대 여 일 자	년 월 일(융자대상자 :)	
이 자 율	대여금리 년 %	
	대출금리 년 %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및 정비사업 융자금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여금으로 차용하며 위 규칙 및 협약에서 정한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대표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1호서식]

정비사업 융자금관리카드

일련 번호	자치구	구역명 (추진위원회/조합)	대표자	융자 방식	융자기관	융자금액(원)	융자 일자	연장 일자	상환 일자	상환금액(원)		비고 (전화번호)
										원금	이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2호서식]

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사 건		
신 청 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3호서식]

조정위원회 위원기피 신청서

사 건		접수일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주 소		
기피위원	성 명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제7항에 따라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4호서식]

조 정 서

사 건 명			접수일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당사자 수락일자	신청인 : 년 월 일	피신청인 : 년 월 일	
주 문			
조정취지			

당사자 모두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5항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조정 효력	이 조정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5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행위자(업체명) (주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신고(고발) 사항	수사기관		고발일자	
	결과통지내용			
	통지일자			
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63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인터넷 사용 환경 변화로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기반의 시정 참여가 축소됨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사용 용도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홈페이지의 마일리지의 사용 용도 정비
   1) 사용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삭제
   2)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마일리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
   -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
   나. 조례(별표)로 정한 서울시 홈페이지의 마일리지 부여 기준을 삭제하고, 마일리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기획담당관(전화:02)2133-2945, FAX: 02)2133-1070, E-mail:blue1210@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73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일부개정에 따른 규칙 정비
   ○ 세무조사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종전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개정
2.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서 규정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로 인하여 증거인멸 등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5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로 인하여 증거인멸 등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2133-3423, FAX:2133-1034, E-MAIL:ping@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74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한강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된 서울함공원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규정
2. 주요내용
   가.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조항 개정
   - 당연직 위원에 도시재생본부장을 추가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물관리정책관을 물순환안전국장으로 변경
   - 분과위원회 중 역사문화 분과를 남북협력 및 역사문화 분과로 변경
   나. 서울함공원 이용료 및 이용시간 신설
   -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 이용료를 신설하여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전화 : 02-3780-0721, FAX :02-3780-0740, E-mail:primaverah@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82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프로그램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장 관람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장 관람료 규정(어른 1회당 2,000원, 청소년 1회당 1,500원, 어린이 1회당 1,000원) 삭제(안 제8조 관련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02)2133-2025, FAX:02)2133-1080, E-mail:freeldy@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83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재생시설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시설과(전화:02)2133-3831 FAX:02)2133-1043, E-mail:hojung11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87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세계유산 등재 관련 민간 지원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 인정(안 제4조제3항)
나. 서울특별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양도성도감,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양도성도감(전화:02-2133-2653, FAX:02)2133-1063, E-mail:sping9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88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면서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나. 법의 조문과 달리 현행 조례의 조문은 행정처분이 있을 시에만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추가로 신설(안 제3조제9호, 제4조 관련 별표 1)
   나.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수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2133-2339, FAX:2133-1050, E-mail:ohn102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89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본 조례상에 공공급식의 대상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으로만 정의되어 있어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확대 추세에 맞추어 기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명확하게 공공급식 개념에 추가하여 관련 조항을 명확화·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에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을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명시(안 제1조)
   나. 공공급식 정의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추가하고 공공급식의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제4조)
   다. 공공급식센터의 업무에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조달” 추가(안 제17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순화대상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친환경급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급식과(전화: 02)2133-4154, FAX:02)2133-1428, E-mail:freehwee10@seoul. 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95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준용
   - 공개된 평가서초안의 주민 의견 수렴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주민 등이 신청하면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9조)
   - 평가서의 보완요청을 두 차례로 한정하여 협의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보완 요청에 따른 협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 가능(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건 정비 및 재협의 요청 생략 가능 요건 신설(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협의절차 완료 전 사전공사 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고, 시장은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또는 요구하도록 요청(안 제20조 및 제21조)
   -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환류기능 강화(안 제20조제9항)
   - 사전공사 허용범위 마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협의절차 완료 전 사전공사 시 받은 공사중지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
   - 변경협의 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절차 간소화(안 제18조제2항)
   - 사업자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가능 등(안 제27조)
   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안 제10조)

라. 협의대상 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안 별표 1)
마. 그 밖에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과 조문을 일치시키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리라 주무관(☎ 2133-3545, FAX 2133-1019, E-mail: kimlila@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환경조정평가팀장 이원형, 담당 김리라)								
4. 근거법령명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관 련 규제수		8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 해당 규모의 개발사업 시행자 ◦이해관계자 : 시민 등								
6. 규제존속기한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유지되는 기간은 계속 존치되어야 하므로 존속기한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제9조 :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절차 마련 ◦제11조 : 평가서 등의 대행을 하고자하는 평가업자의 범위 확대 ◦제14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기간 장기화 방지 등 ◦제19조제1항, 제3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명확화 ◦제20조제7항, 제20조제9항 :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등 ◦제21조제2항 : 사전공사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마련 ◦제27조제1항 : 협의절차 간소화 대상 명확화 ◦[별표1]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등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경제성·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임

나.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고밀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경우 등 주민 등이 의견을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 의견 재수렴 실시

○ 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

- 주소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평가업자의 범위를 기존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소재 한정)을 완화하여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

○ 평가서의 협의기간 장기화 방지 등

-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횟수 제한으로 협의기간을 단축하되,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려조항 신설

○ 사전공사의 범위 및 절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전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실화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체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협의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의 활성화를 통한 신속행정 구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내용 등의 범위 명확화 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본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2002년 제정하여 우리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되어 있음

○ 금회 조례개정의 주 목적은 상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 개정·시행 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이미 개정.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사항으로 대체수단이 없으며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모호한 규정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96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사문화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와 규칙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주요 기능에 관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조례와 규칙에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함
나.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여성관련시설의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규정함
다. 보육실, 창업보육센터 등을 여성관련시설 내부규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함
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조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인용한 보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담당관 (전화:02)2133- 5028, FAX:02)2133-0729, E-mail : wonsang@seoul.go. 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00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모범납세자 전국 체납조회 규정 명문화로 선정기준 추가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므로 모범납세자의 요건에 관련 내용 추가
2.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추가(안 제2조)
   - 전국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함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길 15,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02-2133-3389, FAX : 02-2133-1034, E-mail : smj200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03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 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신설 감면조항 추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감면대상별로 감면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 신설(안 제2조)
   다. 법령상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위임규정 삭제(현행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
   라. 도시정비사업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안 제8조)
   마.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감면대상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던 것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안 제11조)
   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2133-3360, FAX:2133-1033, E-mail:jjyeong@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04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715호,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 대상기관의 모집·선정 및 선정 결과 공고(안 제6조)

나. 전문매각기관 대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안 제7조)

다. 전문매각기관 대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안 제8조)

라. 그 밖의 매각대행의 해제, 매각재산인도 및 매각대금 배분, 선정 취소, 비밀유지 등(안 제9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2133-3360, FAX:2133-1033, E-mail:jjyeong@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2. 구 분								
		신설	O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재무국 세무과 재무국장 하철승 세제과장 천명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담당 정주영(02-2133-3360)									
4. 근거법령명등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관 련 규제수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우리시 전문매각기관에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									
6. 규제존속기한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완료 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1. 개정안 제6조 - (제1항) 우리시에서 선정하는 전문매각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제4항)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에 응한 사업자에 대해 서류내용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조사 할 수 있음 2. 개정안 제7조 - 우리시에서 선정하는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2차 심사” 기준 및 방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제1항・제4항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술품등의 매각을 전문매각기관에 대행하게 할 경우 예술품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기 위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17.7.5.부터 시행 중인 국세청 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 및 전국의 통일된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징수조례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기본안)(지방세특례제도과-1612, 2018.5.11.)을 반영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국세청고시 제2017-20호, 2017.7.5. 제정・시행)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높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요건 및 제출된 서류의 사실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조사 등에 관한 것으로 규제비용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전문성 및 경험 등 자격요건과 입증서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명료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매각전문성 및 경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므로 적정함

[2] 제7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술품등의 매각을 전문매각기관에 대행하게 할 경우 예술품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치도록 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규정 및 공정성 제고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17.7.5.부터 시행 중인 국세청 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 및 전국의 통일된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징수조례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기본안)(지방세특례제도과-1612, 2018.5.11.)을 반영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국세청고시 제2017-20호, 2017.7.5. 제정·시행)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높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규제비용은 없으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타당함

○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요건 및 제출된 서류의 사실여부 검증을 위한 확

인·조사 등에 관한 것으로 규제비용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위원회의 심사항목(매각전문성 50%, 매각 업무수행능력 50%)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명료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10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시민의 건강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을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
- 부위원장을 2명으로 변경
나. 위원의 연임 제외사유 신설(안 제13조)
- 위원의 임기 중 참여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및 본인의사로 연임 고사 시 연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분과위원회 운영과 그 구성 명시

라. 기획조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2)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02-2133-7552, FAX:02-768-8834, E-mail:getcloser@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13호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여성공무원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고려하여,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여성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2133-5632, FAX : 2133-0771, E-Mail : rbfox@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16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29, FAX:02-2133-0718, E-mail:sunmi@ seoul.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울특별시공고 제2018-1818호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18. 1. 1.시행)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권한, 자격,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관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납세자보호관, 시세관련 고충 민원, 권리보호요청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자의 배치 및 자격요건, 임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제4조)
다.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제8조)
마.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제10조)
바.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실태 점검 등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사.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8, FAX:02)768-8846, E-mail: tj208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2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무 소관 조정, 전문임기제 직위 신설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무 소관부서 조정
- 유니버설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업무를 문화본부로 일원화
나. 안정적 조직관리를 위한 단체장 보좌 기관 신설
- 전문임기제 운영을 통한 정책결정 보좌 직위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2133-6724, FAX:2133-0822, E-mail: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2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구 신설을 통해 민선7기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소관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과제 집중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 남북관계의 지속 개선을 위해 사회문화.경제협력 등 시정 전반의 교류협력사업 총괄 전담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나. 기관별 소관업무 조정을 통한 현안 추진체계 개편
   - 안전총괄본부 물리적 보도환경 개선 기능을 도시교통본부 보행환경 개선과 일원화함으로써 '보행 중심도시' 서울 추진역량 강화
   - 건설업 정책, 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건설업 대금지급 관리 사무를통합하여, 안전총괄본부에 건설혁신 기능 명시적 부여
   다. 서울공예박물관 체계적 운영(준비)을 위한 소속기관 신설
   - 공예품수집.관리 등 개관 준비 및 전문적 운영을 위한 서울공예박물관(사업소)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2133-6724, FAX:2133-0822, E-mail: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2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167명에서 18,256명으로 89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과제 추진인력 증원(일반·연구직 +81명)
   - 혁신성장 거점 조성 및 구축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 분야 증원(+24)
   - 돌봄서비스 확대,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 구축 등 여성가족 분야 증원(+18)
   -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및 교류협력 기능 활성화 인력보강(+14)
   - 공예박물관 조성·운영, 협업 강화, 지진안전팀 신설 등 주요기능 보강(+25)

   나. 정책결정 및 시의회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별정직 +8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2133-6724, FAX:2133-0822, E-mail: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6호

(가칭)우이동가족캠핑장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9호(2018.2.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가칭)우이동 가족캠핑장 문화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내 휴양시설(야영장) 및 편익시설 등 자연친화적 가족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대

3. 면 적 : 11,561㎡

4.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T.02-2133-8287)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T.02-2133-2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T.02-901-6923)

(가칭)우이동가족캠핑장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가. 총괄표(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316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11,561.00	7,315.35	2	295.20	449.78	91	
기반시설	소 계	1,666.15	1,666.15	-	-	-	-	
	도 로	1,452.53	1,452.53	-	-	-	-	
	광 장	213.62	213.62	-	-	-	-	
조 경 시 설		1,559.85	1,559.85	-	-	-	5	
유 희 시 설		-	-	-	-	-	-	
휴 양 시 설		3,332.92	3,332.92	-	-	-	29	
운 동 시 설		-	-	-	-	-	-	
교 양 시 설		164.42	164.42	1	79.34	154.94	-	
편 익 시 설		573.81	573.81	1	215.86	294.84	-	
관 리 시 설		18.20	18.20	-	-	-	57	
녹지 및 기타		4,245.65	-	-	-	-	-	
시 설 률 (제한없음)		(7,315.35 / 11,561.00) × 100 = 63.28%						
건 폐 율 (20%이내)		(295.20 / 11,561.00) × 100 = 2.55%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구조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합 계				11,561.00	7,315.35		2	295.20	449.78	91	
기반시설	소 계			1,666.15	1,666.15						
	도 로			1,452.53	1,452.53						
	광 장	가		213.62	213.62						
	소광장	가-1	우이동 산96임	(73.94)	(73.94)						
	소광장	가-2	우이동 산316전, 317전	(71.81)	(71.81)						
	소광장	가-3	우이동 산99-1	(67.87)	(67.87)						
조경시설	소 계			1,559.85	1,559.85					5	
	다목적잔디광장	나	우이동 316전	807.28	807.28						
	잔디마당	다		752.57	752.57						
	잔디마당	다-1	우이동 316전	(268.09)	(268.09)						
	잔디마당	다-2	우이동 산96임	(401.55)	(401.55)						
	잔디마당	다-3	우이동 산96임	(82.93)	(82.93)						
	파고라	①	우이동 316전	(45.36)	(45.36)					2	
	앉음벽	②	우이동 산96임							2	
	레인가든	③	우이동 316전	(41.77)	(41.77)					1	
휴양시설	소 계			3,332.92	3,332.92					29	31개소
	야영장	라		3,332.92	3,332.92						
	야영장1	라-1	우이동 산991-1임, 355대	(944.28)	(944.28)						
	야영장2	라-2	우이동 316전	(354.76)	(354.76)						
	야영장3	라-3	우이동 산96임	(501.41)	(501.41)						
	야영장4	라-4	우이동 316전	(884.70)	(884.70)						
	야영장5	라-5	우이동 316전	(233.64)	(233.64)						
	야영장6	라-6	우이동 산96임	(341.10)	(341.10)						
	야영장7	라-7	우이동 산96임	(73.03)	(73.03)						
	통나무벤치	④	우이동 316전							6	
	야외테이블	⑤	전지역							23	
	일반데크	⑥-1	전지역	(432.00)	(432.00)						27개소
	글램핑데크	⑥-2	우이동 산991-1임, 355대	(201.28)	(201.28)						4개소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구조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소계			164.42	164.42		1	79.34	154.94		
	숲체험관	1	우이동 산96임	164.42	164.42	목조	1	79.34	154.94		
편익시설	소 계			573.81	573.81		1	215.86	294.84		
	방문자센터 (화장실 세척실 등)	2	우이동 317전	510.04	510.04	경량철골	1	215.86	294.84		
	주차장	마	우이동 317전	63.77	63.77						4면
	목재계단	⑦	우이동 산96임	(19.50)	(19.50)						
관리시설	소계			18.20	18.20					57	
	분리수거대	바	우이동 317전	18.20	18.20						
	목재휀스	⑧	전지역							1	
	공원명판	⑨	우이동 316전							1	
	종합안내판	⑩	우이동 316전							1	
	시설안내판	⑪	우이동 316전							1	
	CCTV	⑫	전지역							5	
	공원등	⑬	전지역							11	
	볼라드등	⑭	전지역							37	
녹지 및 기타	소 계			4,245.65							
	녹지 및 기타			4,245.65							

다.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686.5	1,452.53				
	소로	소 계			284.1	893.40				
		3	1	2.5~3.0	69.9	197.35	진입로	경계부	경계부	
		3	2	4.0	33.5	152.44	진입로	경계부	2 방문자센터	
		3	3	3.0	148.1	445.65	연결로	가-2 소광장	가-1 소광장	
		3	4	3.0	32.7	97.96	연결로	2 방문자센터	가-3 소광장	
	산책로	소 계			402.3	559.13				
		-	1	1.2	73.1	87.66	산책로	경계부	경계부	
		-	2	1.8	3.8	6.84	산책로	경계부	2 방문자센터	
		-	3	1.6~3.0	6.5	24.3	산책로	마 주차장	가-2 소광장	
		-	4	1.5	82.2	133.38	산책로	소3-3	소3-3	
		-	5	1.5	47.9	72.23	산책로	산4	소3-3	
		-	6	1.0	60.2	60.18	산책로	산5	산10	
		-	7	1.0	28.1	28.08	산책로	소3-3	산5	
		-	8	1.0	28.5	28.48	산책로	소3-3	산5	
		-	9	1.0	23.3	23.25	산책로	소3-3	산5	
		-	10	2.5~3.0	20.6	56.75	산책로	소3-3	1 숲체험관	
		-	11	1.2	15.2	18.24	산책로	산12	산10	
		-	12	1.5	13.2	19.74	산책로	가-1 소광장	1 숲체험관	

조 성 계 획 도

(가칭)우이동가족캠핑장문화공원

■ 세부시설 검정조서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총계	-	11,551.06	7,315.25	2	295.30	449.76	61	시설율 63.33%
	기반시설	-	1,696.15	1,696.15	-	-	-	-	
-	도로	-	1,452.53	1,452.53	-	-	-	-	
가	광장	-	243.62	243.62	-	-	-	-	
가-1	소광장	우이동 산68임	(73.94)	(73.94)	-	-	-	-	
가-2	소광장	우이동 316번, 317전	(71.81)	(71.81)	-	-	-	-	
가-3	소광장	우이동 산68-1	(97.87)	(97.87)	-	-	-	-	
	조경시설	-	1,555.85	1,555.85	-	-	-	5	
나	대체녹지(보상)	우이동 316전	807.38	807.38	-	-	-	-	
다	경디체험	-	762.57	762.57	-	-	-	-	
다-1	경디체험	우이동 316전	(368.08)	(368.08)	-	-	-	-	
다-2	경디체험	우이동 산68임	(401.55)	(401.55)	-	-	-	-	
다-3	경디체험	우이동 산68임	(82.93)	(82.93)	-	-	-	-	
①	계고지	우이동 316전	(46.38)	(46.38)	-	-	-	2	
②	캠실목	우이동 산68임	-	-	-	-	-	2	
③	체인가든	우이동 316전	(41.77)	(41.77)	-	-	-	1	
	광장시설	-	3,332.92	3,332.92	-	-	-	29	
라	야영장	-	3,332.92	3,332.92	-	-	-	-	
라-1	야영장1	우이동 산68-1, 316대	(944.58)	(944.58)	-	-	-	-	
라-2	야영장2	우이동 316전	(354.76)	(354.76)	-	-	-	-	
라-3	야영장3	우이동 산68임	(501.41)	(501.41)	-	-	-	-	
라-4	야영장4	우이동 316전	(884.70)	(884.70)	-	-	-	-	
라-5	야영장5	우이동 316전	(333.64)	(333.64)	-	-	-	-	
라-6	야영장6	우이동 산68임	(341.10)	(341.10)	-	-	-	-	
라-7	야영장7	우이동 산68임	(73.00)	(73.00)	-	-	-	-	
①	롤나무쉼터	우이동 316전	-	-	-	-	-	6	
②	야외데이블	전지역	-	-	-	-	-	23	
①-1	일본여크	전지역	(432.00)	(432.00)	-	-	-	-	27개소
①-2	급배관데크	우이동 산91-1번, 316대	(201.38)	(201.38)	-	-	-	-	4개소
	교량시설	-	164.42	164.42	1	79.34	164.84	-	
1	송학한	우이동 산68임	164.42	164.42	1	79.34	164.84	-	
	편익시설	-	573.81	573.81	1	215.85	284.84	-	
2	방문자센터	우이동 317전	510.04	510.04	1	215.85	284.84	-	
배	주차장	우이동 317전	63.77	63.77	-	-	-	-	4면
⑦	특제계단	우이동 산68임	(19.50)	(19.50)	-	-	-	-	
	편익시설	-	18.20	18.20	-	-	-	37	
배	분독수거대	우이동 317전	18.20	18.20	-	-	-	-	
⑧	특제휴스	전지역	-	-	-	-	-	1	
⑨	공원명판	우이동 316전	-	-	-	-	-	1	
⑩	홍활안내판	우이동 316전	-	-	-	-	-	1	
⑪	시설안내판	우이동 316전	-	-	-	-	-	1	
⑫	CCTV	전지역	-	-	-	-	-	6	
⑬	공원등	전지역	-	-	-	-	-	11	
⑭	철사르등	전지역	-	-	-	-	-	37	
	녹지 및 기타	-	4,245.55	-	-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7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호(2012. 2. 2.)로 결정(변경)된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8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8.06.2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구역 내에 위치한 이태원동 127-7번지 일대 주변현황(지상에 돌출된 지하철 환기구)을 고려하여 공동주차출입구 계획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차량출입금지구간, 공동주차출입구에 관한 사항 변경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계획 : 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기정	• 간선도로변 : 이태원로, 반포로 • 교차로변 : 이태원역 주변 가각부	-
차량출입 금지구간	변경	• 간선도로변 : 이태원로, 반포로 • 교차로변 : 이태원역 주변 가각부	이태원로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일부 변경 (운영지침도 참조)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공동주차 출입구	기정	• 양측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정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각 건축선 3m 후퇴)하되 개발시차를 고려	-
	변경	• 양측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정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각 건축선 3m 후퇴)하되 개발시차를 고려 - 이태원로변 일부구간(이태원동 127-7번지, 127-10번지) 공동주차출입구 폐쇄 - 이태원로변 일부구간(이태원동 127-7번지, 127-29번지) 공동주차출입구 신설	(운영지침도 참조)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이태원로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일부 변경	• 이태원동 127-7번지 신축 시 지상에 돌출된 지하철 환기구로 인해 공동주차 출입구로의 차량 출입이 곤란하여, • 이태원동 127-7번지 전면부 일부 변경
공동주차 출입구	이태원로변 일부구간 공동주차출입구 변경	• 이태원로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일부 변경으로 인해 이태원동 127-7번지 및 127-10번지 전면 공동주차 출입구를 폐쇄하고, • 향후 인접부지 이태원동 127-29번지 및 127-6번지 개발을 고려하여 공동주차 출입구 신설

다. 환경친화요소 : 변경없음

라. 인센티브 항목 구분 : 변경없음

3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Ⅳ.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사항)

○ 건축계획 시 보행안전 대책을 검토하여 반영

Ⅴ. 관계도면 : 첨부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80)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2199-7424)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

【 첨 부 】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운영지침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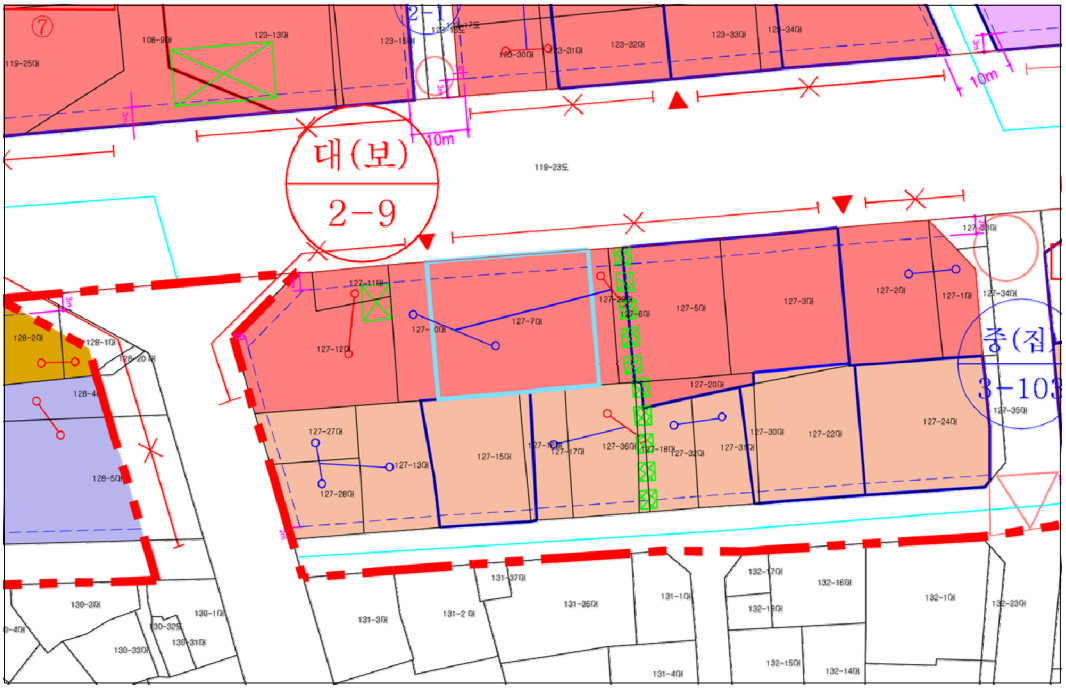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운영지침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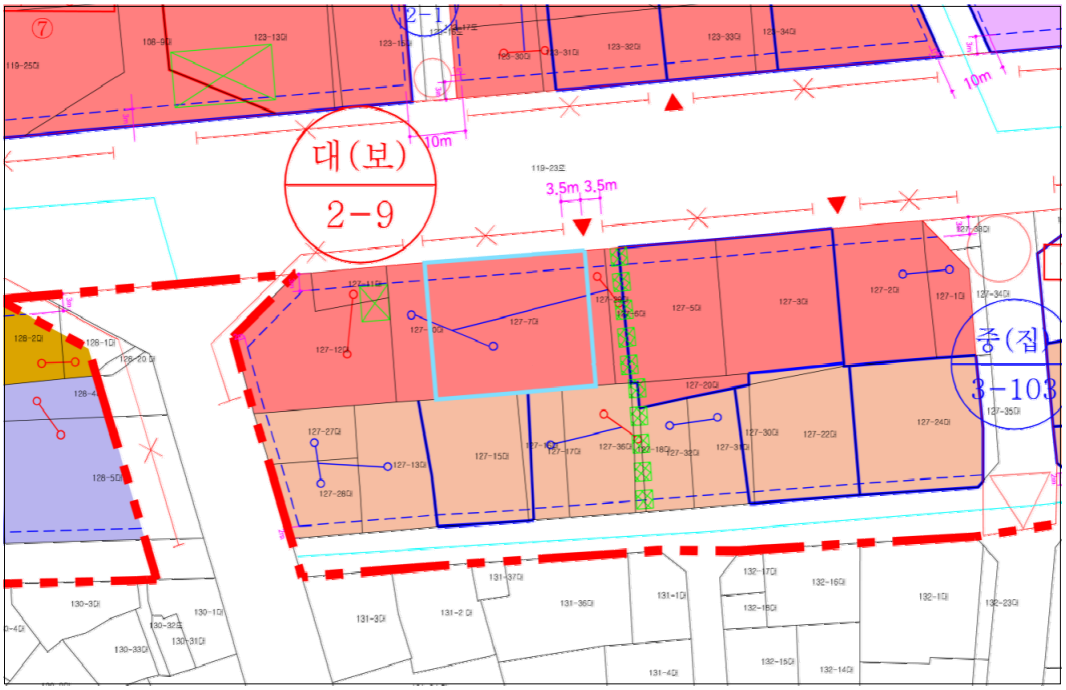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호(2009.01.0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60호(2017.10.1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 정	변경	변경후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관악구 신림동 일원	529,517.2	-	529,517.2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토지이용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29,517.2	-	529,517.2	100.0	·도로·하천 중복면적 338.1㎡
주택용지	275,091.0	증)2,516.7	277,607.7	52.4	
상업업무용지	36,651.0	-	36,651.0	6.9	

토지이용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교육문화용지		14,147.0	감)295.0	13,852.0	2.6	· 교육복합센터
종교용지		1,599.0	-	1,599.0	0.3	· 존치교회 2개소
기반시설용지	소계	202,367.3	감)2,221.7	200,145.6	37.8	· 공원면적 549㎡제외
	도로	98,377.3	감)70.5	98,306.8	18.6	· 도로 선형 변경, 일부 확폭, 신설 · 공원면적 549㎡포함
	보행자전용도로	1,134.0	-	1,134.0	0.2	
	공원	47,854.5	감)2,149.2	45,705.3	8.6	
	녹지	1,925.6	감)2.0	1,923.6	0.3	
	하천	22,710.9	-	22,710.9	4.3	· 도림천 제2지류, 도로338.1㎡포함
	공공청사	2,510.0	-	2,510.0	0.5	· 소방파출소+관악산지구대 1개소 · 삼성동사무소+어린이집 1개소
	학교	13,543.0	-	13,543.0	2.5	· 신우초교 1개소(학교점유지부지)
	공공공지	10,968.0	-	10,968.0	2.1	· 향후 청소년관련시설 검토
	복지시설	2,584.0	-	2,584.0	0.5	· 사회복지시설 2개소
	주차장	1,309.0	-	1,309.0	0.2	

※ 변경사유 : 신림1구역 구역제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

○ 19,657인/6,683호(기정) → 19,434인/6,599호(변경)

구 분		주 택 수(호)			인 구 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683	감)84	6,599	19,657	감)223	19,434	-
촉진구역	소 계	5,036	감)84	4,952	13,666	감)223	13,443	※세대(호)당 인구수 :2.7인/세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40㎡ 이하	354	-	354	961	-	961	
	40㎡~50㎡	348	-	348	945	-	945	
	50㎡~60㎡	1,593	-	1,593	4,496	-	4,496	
	60㎡~85㎡	2,091	감)16	2,075	5,530	감)42	5,488	
	85㎡ 초과	650	감)68	582	1,734	감)181	1,553	
존치관리구역		1,647	-	1,647	5,991	-	5,991	

※ 변경사유 : 신림1구역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세대수 변경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5	15	49,780.1	47,628.9	
공원	소계	10	10	47,854.0	45,705.3	
	도시자연공원	1	1	2,429.0	4,319.8	
	문화공원	1	1	4,329.0	4,329.0	
	수변공원	4	4	33,454.5	29,414.5	
	소공원	3	3	5,414.0	5,414.0	
	어린이공원	1	1	2,228.0	2,228.0	
녹지	소계	5	5	1,925.6	1,923.6	
	경관녹지	5	5	1,925.6	1,923.6	

※ 변경사유 : 신림1촉진구역 일부 구역 제척에 따라 공원·녹지면적 축소 및 제척 지역 중 기존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환원

마. 교통계획 : 변경

◯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7 교통계획)에 명시

바. 경관계획 : 변경

◯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8 경관계획)에 명시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구역번호	생활권유형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2	C	삼성동	808	23.4	190%	20층 이하	60%	1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변경	2	C	삼성동	808	22.5	190%	20층 이하	60%	1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3	C	삼성동	324-25	9.6	190%	20층 이하	60%	1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1	C	삼성동	316-55	3.5	180%	15층 이하	60%	1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신림3재정비 촉진구역

※ 변경사유 : 신림1구역 일부 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 축소

아.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위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재정비촉진지구	-	529,517.2	-	529,517.2		
촉진구역(4개구역)		407,379.2	감)8,955.5	398,423.7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808 일대	233,729.00	감)8,955.5	224,773.50	주택재개발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24-25일대	95,795.20	-	95,795.20	주택재개발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16-55일대	35,140.00	-	35,140.00	주택재개발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06 일대	42,715.00	-	42,715.00	주거환경 관리사업	
존치지역	-	122,138.00	증)8,955.5	131,093.5	-	
신림1존치관리구역	신림동 1513일대	38,350.00	-	38,350.00	-	미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림2존치관리구역	신림동 393-19일대	-	증)3,884.8	3,884.8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인근
신림3존치관리구역	신림동 395-43일대	-	증)5,070.7	5,070.7	-	신림로변
존치건축물	신림동 1726	4,548.00	-	4,548.00	-	우정아파트 2단지('04.6)
	신림동 1721	5,324.00	-	5,324.00	-	우정아파트 1단지('04.6)
	신림동 1698	2,986.00	-	2,986.00	-	태흥아파트('95.3)
	신림동 1699, 1733	9,871.00	-	9,871.00	-	동마아파트('95.12) /벽산아파트('05.9)
	신림동 1724, 1729	6,180.00	-	6,180.00	-	서초아파트('03.9)/ 청화아파트('04.11)
존치시설	신림동 403-11 외	1,547.00	-	1,547.00	-	종교시설(관악중앙교회), 도로, 녹지
	신림동 300-6	950.00	-	950.00	-	종교시설 (삼성산천주교교회)
	신림동 289-3 외	38,839.00	-	38,839.00	-	도로(신림로, 호암로)
	신림동 315 외	13,543.00	-	13,543.00	-	학교(신우초교)

※ 변경사유 : 신림1구역 일부 구역 제척에 따라 신림1촉진구역 면적 축소 및 존치관리구역 신설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 계획 : 변경

1)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233,729.0	감)8,955.5	224,773.5	100.0	-
주거지역	소계	222,015.0	감)8,955.5	213,059.5	94.8	
	제1종일반주거지역	55,783.0	감)159.1	55,623.9	24.7	
	제2종일반주거지역	138,370.0	감)8,796.4	129,573.6	57.7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09.0	-	20,009.0	8.9	
	준주거지역	7,853.0	-	7,853.0	3.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714.0	-	11,714.0	5.2	

※ 변경사유 : 신림1구역 일부 구역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2)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3)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4) 신림4재정비촉진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 변경없음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구역명	구분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평균층수/최고층수	비고
			기준	상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30%이하	60%이하	4층/4층	1종
						20층/33층	2종
	변경	변경없음				4층/4층	1종
						19층/27층	2종
	기정	교육 · 문화 및 상업 · 업무	190%	230%이하	50%이하	12층/18층	3종
		상업 · 업무	300%	347%이하	60%이하	12층/12층	준주거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52%이하	60%이하	20층/28층	2종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0%	236%이하	60%이하	15층/17층	2종(7층)

※ 변경사유 : 신림1구역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높이계획 변경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③	유상매입 시설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순부담률
기정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233,729.0	73,468.0	19,707	17,458	6,659	29,644	12.7%
변경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224,773.5	68,574.5	19,707	17,431	6,659	24,777.5	11.0%
기정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95,795.2	40,445.3	9,713	11,380	2,619	17,606.3	18.37%
기정	신림3재정비 촉진구역	35,140.0	12,847.0	4,228.0	3,225.0	-	5,394.0	15.4%

※ 변경사유 : 신림1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변경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하.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변경없음

거.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너.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더.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1)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 적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233,729	감)8,955.5	224,773.5	

나) 정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233,729.0	감)8,955.5	224,773.5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1,325.0	감)4,893.5	56,431.5	25.1	-
	도 로	33,748.0	감)851.5	32,896.5	14.6	-
	공 원	16,178.0	감)4,040.0	12,138.0	5.4	-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정비기반 시설 등	녹 지	787.0	감)2.0	785.0	0.3	-
	하 천	10,612.0	-	10,612.0	4.7	
택 지 (획 지)	소 계	172,404.0	감)4,062.0	168,342.0	74.9	-
	1-1	28,756.0	감)3,767.0	24,989.0	11.1	공동주택
	1-2	17,335.0	-	17,335.0	7.7	공동주택
	1-3	19,267.0	-	19,267.0	8.6	공동주택
	1-4	18,752.0	-	18,752.0	8.3	공동주택
	1-5	34,376.0	-	34,376.0	15.3	공동주택
	1-6	16,102.0	-	16,102.0	7.2	공동주택
	1-7	14,147.0	감)295.0	13,852.0	6.2	교육문화
	1-8	3,011.0	-	3,011.0	1.3	상업업무
	1-9	3,582.0	-	3,582.0	1.6	상업업무
	1-10	4,933.0	-	4,933.0	2.2	상업업무
	1-11	10,968.0	-	10,968.0	4.9	공공공지
	1-12	1,175.0	-	1,175.0	0.5	공공청사

※ 변경사유 : 일부 구역 제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 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04	20~24	보조 간선도로	5,500 (588)	신림동	시흥동계	건고198호 ('71.4.17)	·지구내 4m확폭 (완화차로 설치) ·(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1	440	20	보조 간선도로	377	신림동 1530	신림동 산134-2	서고시2018-121 ('08.4.10)	·동서간도로
기정	중로	2	372	15~27	보조 간선도로	2,590 (313)	신림1교	서울대앞 광장	서고시96-116호 ('96.5.6)	
변경	중로	2	372	15~27	보조 간선도로	2,590 (313)	신림1교	서울대앞 광장		·일부구간 도로폭 축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459	15	집산도로	488	신림동 395-56	신림동 363-10	서고시2018-121 ('08.4.10)	
변경	중로	2	459	15	집산도로	488	신림동 395-56	신림동 363-10		· 일부구간 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453	12	집산도로	388 (315)	신림동 365-20	신림동 1704-10	서고시2018-121 ('08.4.10)	· (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중로	3	454	12	집산도로	536	신림동 1527	신림동 1726-1	서고시2018-121 ('08.4.10)	
기정	중로	3	455	12	집산도로	183	신림동 299-25	신림동 841-3	서고시2018-121 ('08.4.10)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36	신림동 1527	신림동 산156-2	서고시2018-121 ('08.4.10)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109	신림동 1527	신림동 808-494		· 연장 27m 축소
기정	소로	3	27	6	집산도로	359 (0)	신림동 841-3	신림동 326-1	서고시207호 ('73.12.24)	· ( )는 구역내 연장
기정	소로	3	64	6	국지도로	38	신림동 404-13	신림동 827-5	서고시207호 ('73.12.24)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179	신림동 1721-7	신림동 832	서고시2018-121 ('08.4.10)	· 보행자전용도로

※ 변경사유 : 중로 2-372호선 : 촉진구역에서 제척된 지역의 존치 건축물로 인해 일부구간 도로 확폭 불가
중로 2-459호선 : 일부 구역이 촉진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도로선형 변경
소로 2-1호선 : 중로 2-459호선 노선 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 공원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해오름공원	문화공원	신림동 382-5일대	4,329	-	4,329		
변경	①	큰소리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808-494일대	6,936	감)4,040	2,896		
기정	②	청향원	수변공원	신림동 343-6일대	5,582 (4,913)	-	5,582 (4,913)		열공급설비 중복결정, ( )는 구역내 면적

※ 변경사유 : 촉진구역에서 제척된 지역의 공원 규모 축소

□ 녹지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②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 830일대	77	감)2	75		
기정	③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 345-6일대	710	-	710		

※ 변경사유 : 촉진구역에서 제척된 지역의 녹지 규모 축소

□ 공공공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신림동 378-42일대	10,968	-	10,968		향후 청소년관련시설 검토

□ 공공청사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①	공공청사	-	신림동 394-3일대	1,175	-	1,175	60% 이하	200% 이하	-		소방파출소, 관악산지구대 ·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이 형태 변경

※ 변경사유 : 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 공공청사 형태 변경

□ 하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천 (도림천)	지방 2급 하천	신림동 303, 187-1,703	영등포구 문래동 안양천 합류점	-	14.55 (0.69)	65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림천 지류구간 추가결정 B: 15~18m L: 350m · ( )는 구역내 연장

□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열공급설비	신림동 343-6일대	4,913	-	4,913		청향원(5,582㎡) 일부 중복결정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233,729.0	-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1,729	-	-	1,729	-	-
변경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224,773.5	-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1,695	-	-	1,695	-	-

□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신림1 재정비 촉진 구역	233,729	1-1	28,756	관악구 신림동 396-9번지 일대	52,048.78	공동주택	26.6	95.8	4/4
								12.5	285.2	33/33
			1-2	17,335	관악구 신림동 364-45번지 일대	35,022.55	공동주택	15.5	52.6	4/4
								24.1	261.2	13/13
			1-3	19,267	관악구 신림동 362-7번지 일대	28,799.21	공동주택	19.5	71.2	4/4
								24.7	261.3	15/15
			1-4	18,752	관악구 신림동 354-6번지 일대	50,806.58	공동주택	21.0	270.94	19/20
			1-5	34,376	관악구 신림동 359-66번지 일대	93,174.91	공동주택	16.8	271.05	22/27
			1-6	16,102	관악구 신림동 296-47번지 일대	45,916.00	공동주택	16.4	284.81	25/26
			1-7	14,147	관악구 신림동 390-5번지 일대	35,360.00	교육·문화	40.1	249.95	-/10
			1-8	3,011	관악구 신림동 1513-8번지 일대	10,445.00	상업·업무	42.7	346.89	-/12
			1-9	3,582	관악구 신림동 1526-8번지 일대	12,425.00	상업·업무	46.9	346.87	-/11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신림1 재정비 촉진 구역	233,729	1-10	4,933	관악구 신림동 291-7번지 일대	12,330.00	상업·업무	38.3	249.95	-/18
			1-11	10,968	관악구 신림동 377-4번지 일대	향후 청소년관련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1-12	1,175	관악구 신림동 394-3번지 일대	1,225.00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
변경	신림1 재정비 촉진 구역	224,773.5	1-1	24,989	관악구 신림동 396-9번지 일대	40,985.10	공동주택	26.6 12.5	95.8 281.73	4/4 20/21
			1-2	17,335	관악구 신림동 364-45번지 일대	변경없음				
			1-3	19,267	관악구 신림동 362-7번지 일대	변경없음				
			1-4	18,752	관악구 신림동 354-6번지 일대	변경없음				
			1-5	34,376	관악구 신림동 359-66번지 일대	변경없음				
			1-6	16,102	관악구 신림동 296-47번지 일대	변경없음				
			1-7	13,852	관악구 신림동 390-5번지 일대	34,623.1	교육·문화	40.1	249.95	-/10
			1-8	3,011	관악구 신림동 1513-8번지 일대	변경없음				
			1-9	3,582	관악구 신림동 1526-8번지 일대	변경없음				
			1-10	4,933	관악구 신림동 291-7번지 일대	변경없음				
			1-11	10,968	관악구 신림동 377-4번지 일대	변경없음				
			1-12	1,175	관악구 신림동 394-3번지 일대	변경없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 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1%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30% 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 기정 2,970세대 → 변경 2,886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림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1-1, 1-7획지 규모, 건축물 밀도 및 세대수 변경

□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2008년	주택재개발조합	-	-	-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내	130,821	-	29,456.65	• 202세대 (7.0%)	• 40㎡이하	
				• 202세대 (7.0%)	• 40~50㎡이하	
				• 101세대 (3.5%)	• 50~60㎡이하	
				• 전체 : 505세대 (17.5%)	-	

주)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2)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3)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4) 신림4재정비촉진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 변경없음

러.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관악구 신림동 일원	529,517.20	-	529,517.20	서고2006-357호 (2006.10.19)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529,517.20	-	529,517.20	100.0
주거지역	소 계		482,296.90	-	482,296.90	91.1
	일반주거지역	제1종	107,815.00	증)1,825.7	109,640.7	20.7
		2종(7층)	54,291.00	-	54,291.00	10.3
		2종(12층)	244,411.90	감)1,825.7	242,586.2	45.8
		3종일반	20,009.00	-	20,009.00	3.8
	준주거		55,770.00	-	55,770.00	10.5
자연녹지			47,220.30	-	47,220.30	8.9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① 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04	20~24	보조 간선도로	5,500 (1,147)	신림동	시흥동계	건고 198호 ('71.4.17)	· 호암길 · ( )는 지구내 연장
기정	중로	1	440	20	보조 간선도로	337	신림동 1530	신림동 산134-2	서고시2008-121 ('08.4.10)	· 동서간도로
기정	중로	2	372	15~27	보조 간선도로	2,590 (432)	신림1교	서울대 앞 광장	서고시96-116호 ('96.5.6)	· 도림천 우안 · ( )는 구역내 연장
변경	중로	2	372	15~27	보조 간선도로	2,590 (432)	신림1교	서울대 앞 광장	서고시96-116호 ('96.5.6)	· 일부구간 도로폭 축소
기정	중로	2	373	15~23	보조 간선도로	2,590	신림1교	서울대 앞 광장	서고시96-116호 ('96.5.6)	· 도림천 좌안
기정	중로	2	459	15	집산도로	488	신림동 395-56	신림동 363-10	서고시2008-121 ('08.4.10)	· 도로선형 R=13m · 도로모퉁이 10m · 회전반경 R=8m
변경	중로	2	459	15	집산도로	488	신림동 395-56	신림동 363-10	서고시2008-121 ('08.4.10)	· 일부구간 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453	12	집산도로	388	신림동 365-20	신림동 1704-10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중로	3	454	12	집산도로	536	신림동 1527	신림동 1726-1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중로	3	455	12	집산도로	183	신림동 299-25	신림동 841-3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중로	3	456	12	집산도로	112	신림동 1704-15	신림동 1704-14	서고시2008-121 ('08.4.10)	· 하천 일부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457	13	국지도로	85	신림동 36-8	신림동 315-10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36	신림동 1527	신림동 산156-2	서고시2008-121 ('08.4.10)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109	신림동 1527	신림동 808-494		· 연장 27m 축소
기정	소로	2	29	8~12	국지도로	104	신림동 320-29	신림동 320-48	서고시 207호 ('73.12.24)	· 하천 일부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37	신림동 산69-17	신림동 산69-2		· 신우초교 진입로
기정	소로	3	27	6	집산도로	359 (0)	신림동 841-3	신림동 326-1	서고시 207호 ('73.12.24)	· ( )는 지구내 연장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46	신림동 300-9	신림동 300-9	서고시 207호 ('73.12.24)	
기정	소로	3	64	6	국지도로	38	신림동 404-13	신림동 827-5	서고시 207호 ('73.12.24)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65	신림동 306-63	신림동 310-14	관악구고시 제92-7호('92.4.15)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179	신림동 1721-7	신림동 832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5	신림동 844-1	신림동 844-1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314	신림동 315-10	신림동 144	서고시2008-121 ('08.4.10)	· 보차혼용도로 및 도로 연장

②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

① 공원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봉천동 1586-17일대	12,406.84 (2,429.0)	증)12,366,274.04 (증1,890.8)	12,378,680.88 (4,319.8)	건고시369호 ('80.11.15)	( )는 지구내 면적
기정	①	해오름공원	문화공원	신림동 382-5일대	4,329	-	4,329		
변경	①	큰소리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808-494일대	6,936	감)4,040.0	2,896		
기정	②	청향원	수변공원	신림동 343-6일대	5,610	-	5,610		열공급설비 중복결정
기정	③	은하수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04-1일대	1,522.1	-	1,522.1		
기정	④	삼성산생태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19일대	19,386.4	-	19,386.4		저류시설 중복결정
기정	①	새싹공원	소공원	신림동 808-633일대	195	-	195		
기정	②	신우공원	어린이공원	신림동 316-3일대	2,228	-	2,228		
기정	③	율곡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138일대	1,236	-	1,236		
기정	④	약수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95일대	3,983	-	3,983		

② 녹지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녹지	-	신림동1694-14	35	-	35	서공고93-235호 ('93.12.30)	신림3 재개발사업
변경	②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 830일대	77	감)2	75		
기정	③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 345-6일대	710	-	710		
기정	④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1699일대	317	-	317		
기정	⑤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 309-4일대	786.6	-	786.6		

③ 공공공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유통·공급설비 : 변경없음

① 열공급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①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①	공공 청사	-	신림동 394-3일대	1,175	-	1,175	60% 이하	200% 이하	-		소방파출소, 관악산지구대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이 형태 변경
기정	②	공공 청사	-	신림동 301-8일대	1,335	-	1,335	60% 이하	200% 이하	-		신림6,10동사무소 (통합), 어린이집 복합화

② 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③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① 하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② 유수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관계도서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2) 및 관악구도시계획과(☎ 02)879-6381)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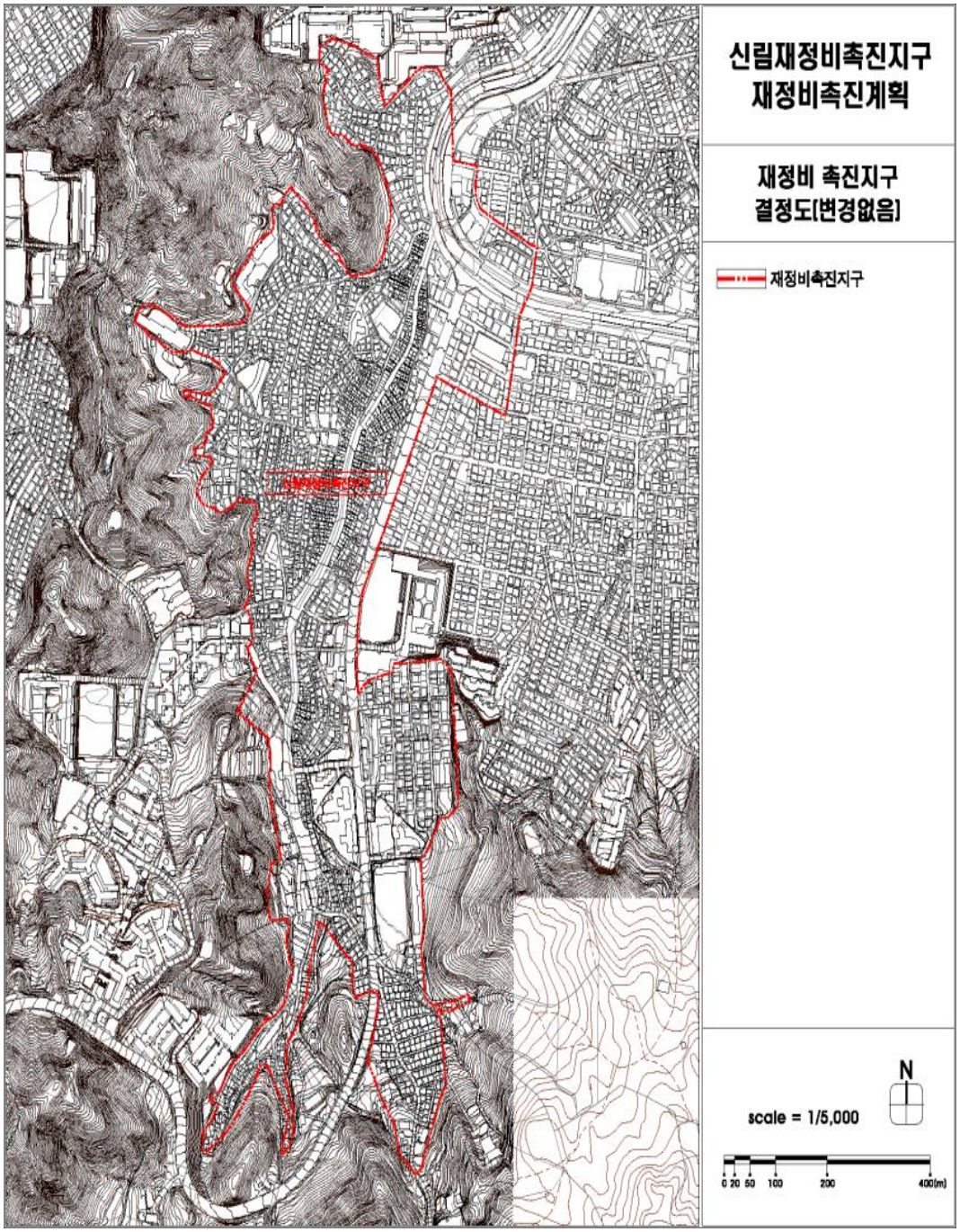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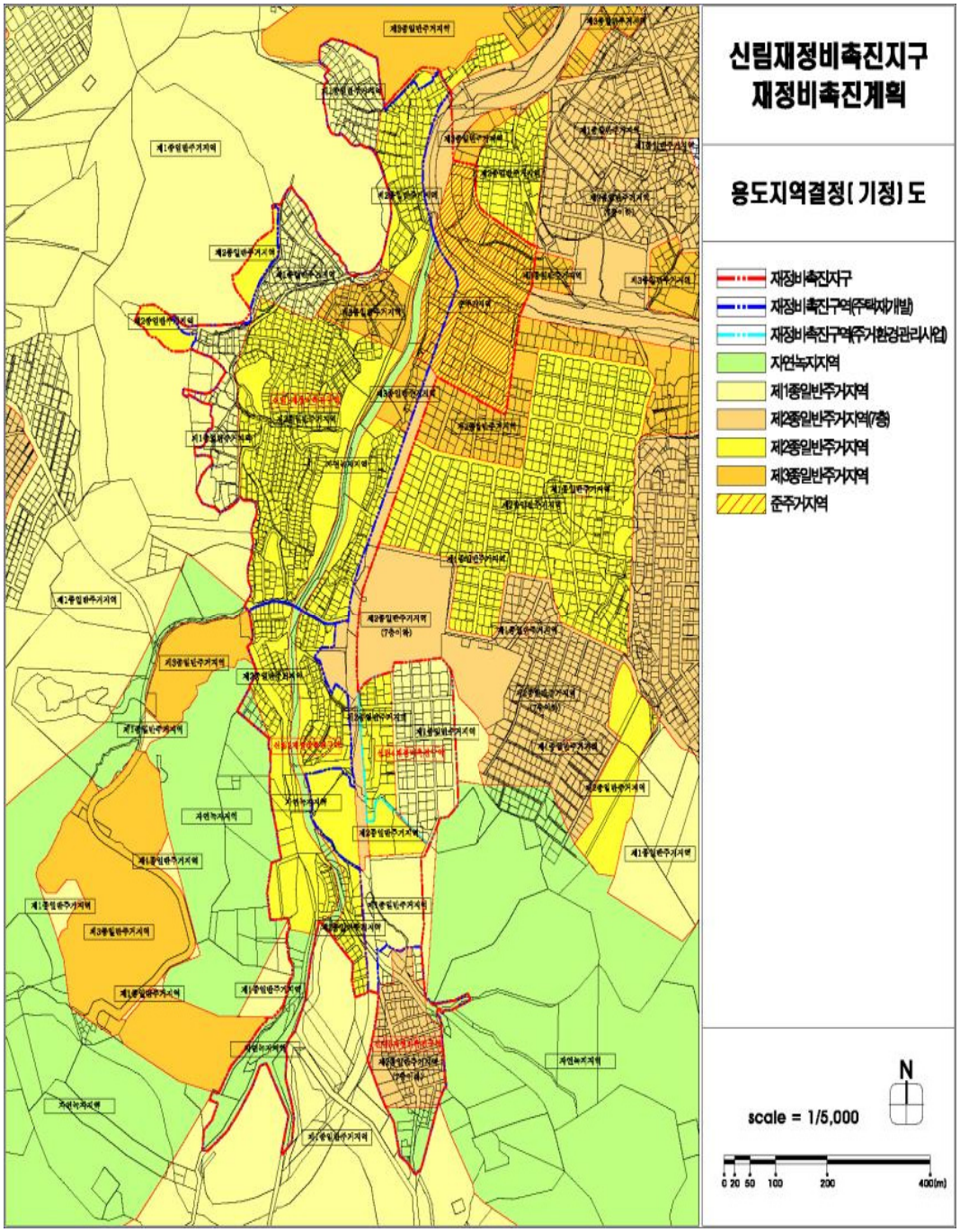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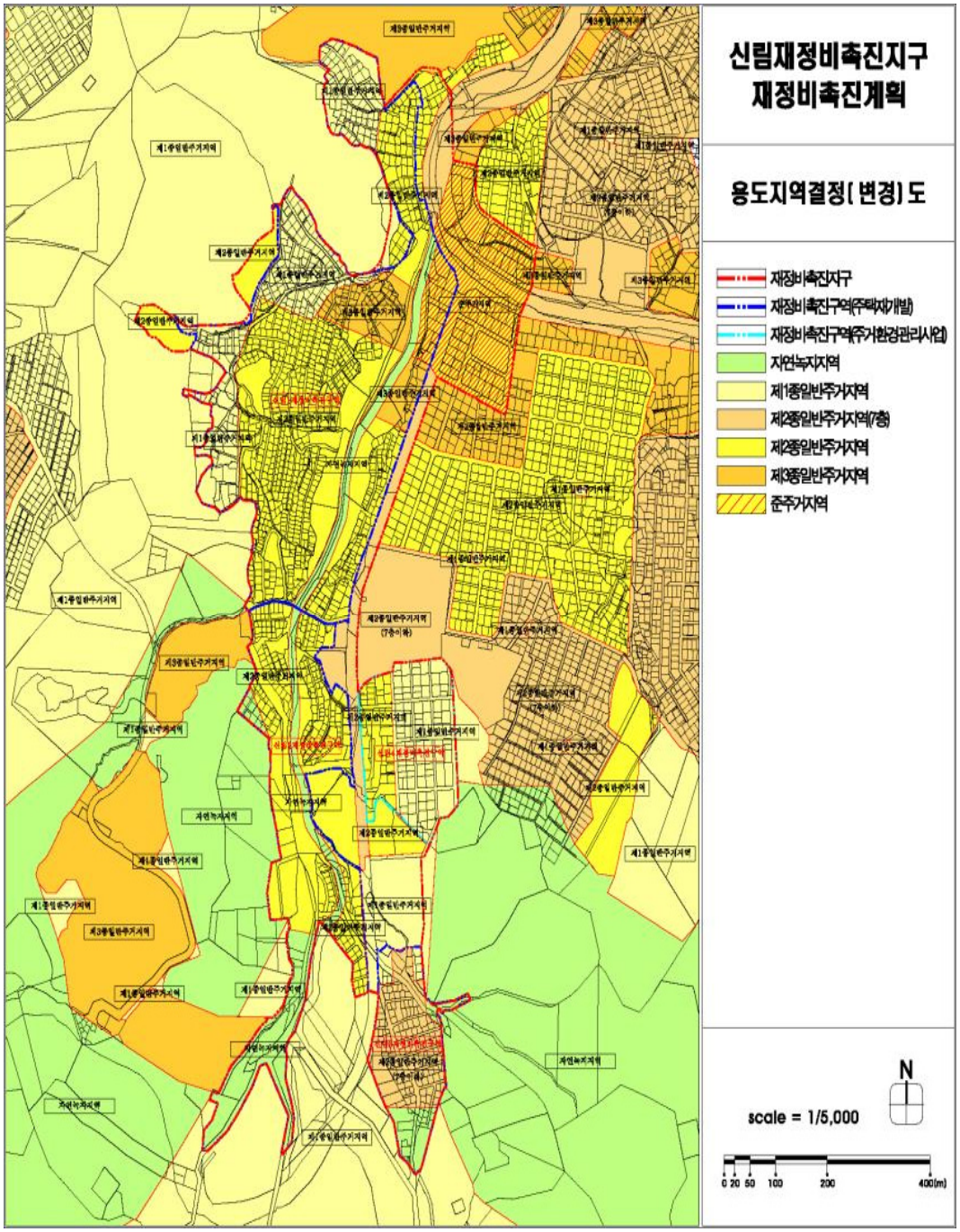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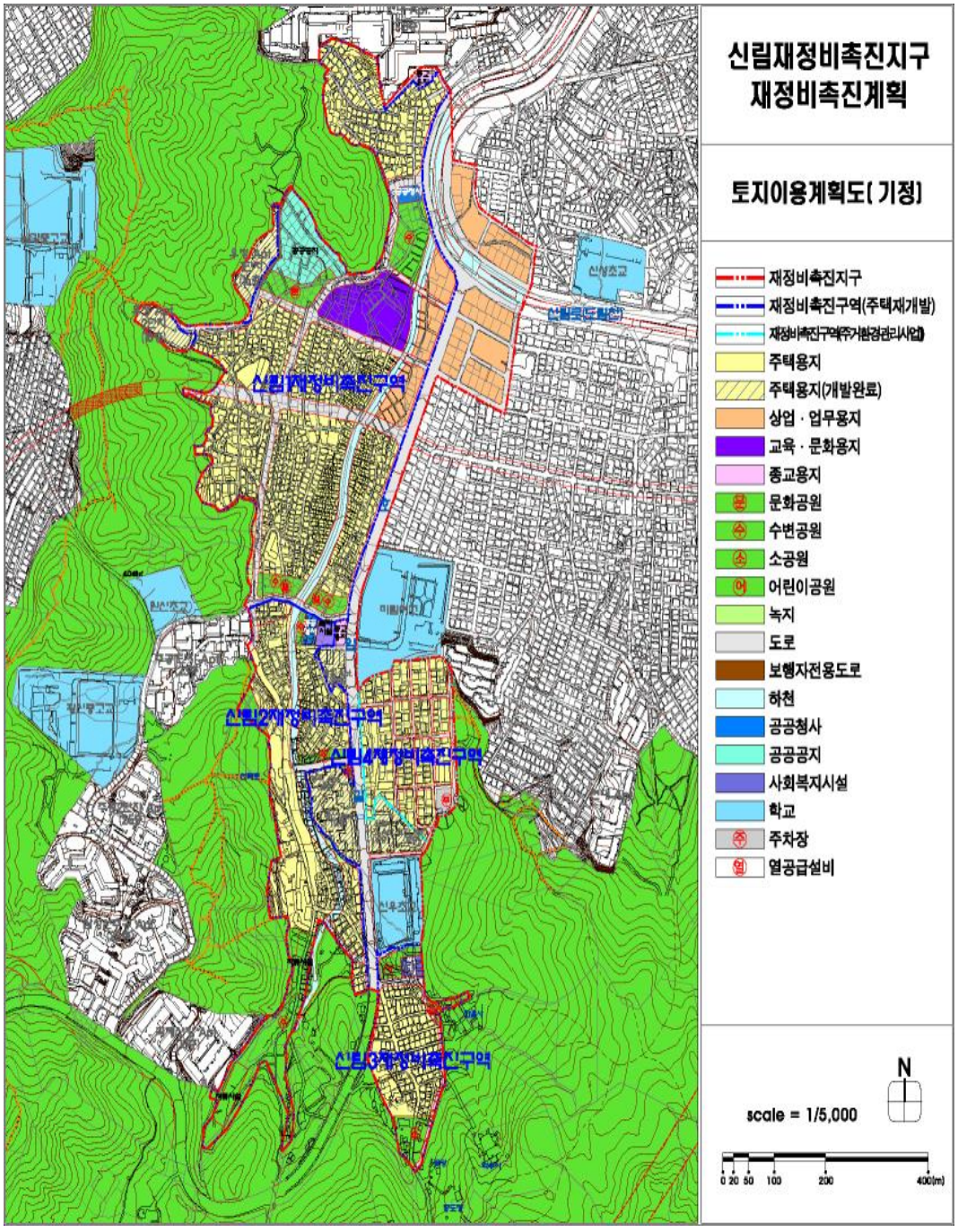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토지이용계획도(기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용지
주택용지(개발완료)
상업 · 업무용지
교육 · 문화용지
종교용지
문 문화공원
수 수변공원
소 소공원
어 어린이공원
녹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공공청사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학교
주 주차장
열 열공급설비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N
scale = 1/5,000
0 20 50 100 200 400(m)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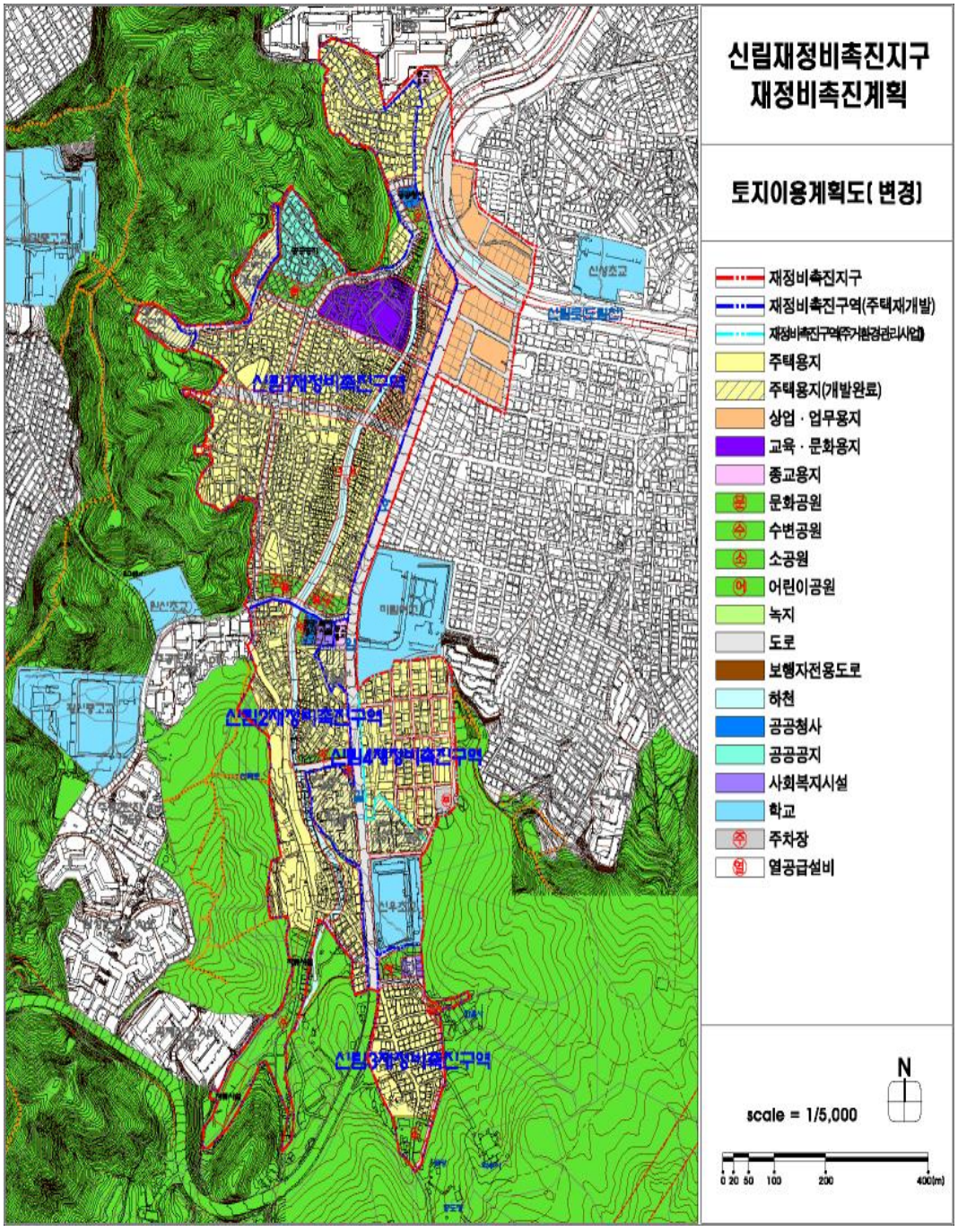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용지
주택용지(개발완료)
상업 · 업무용지
교육 · 문화용지
종교용지
문 문화공원
수 수변공원
소 소공원
어 어린이공원
녹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공공청사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학교
주 주차장
열 열공급설비
N
scale = 1/5,000
0 20 50 100 200 400(m)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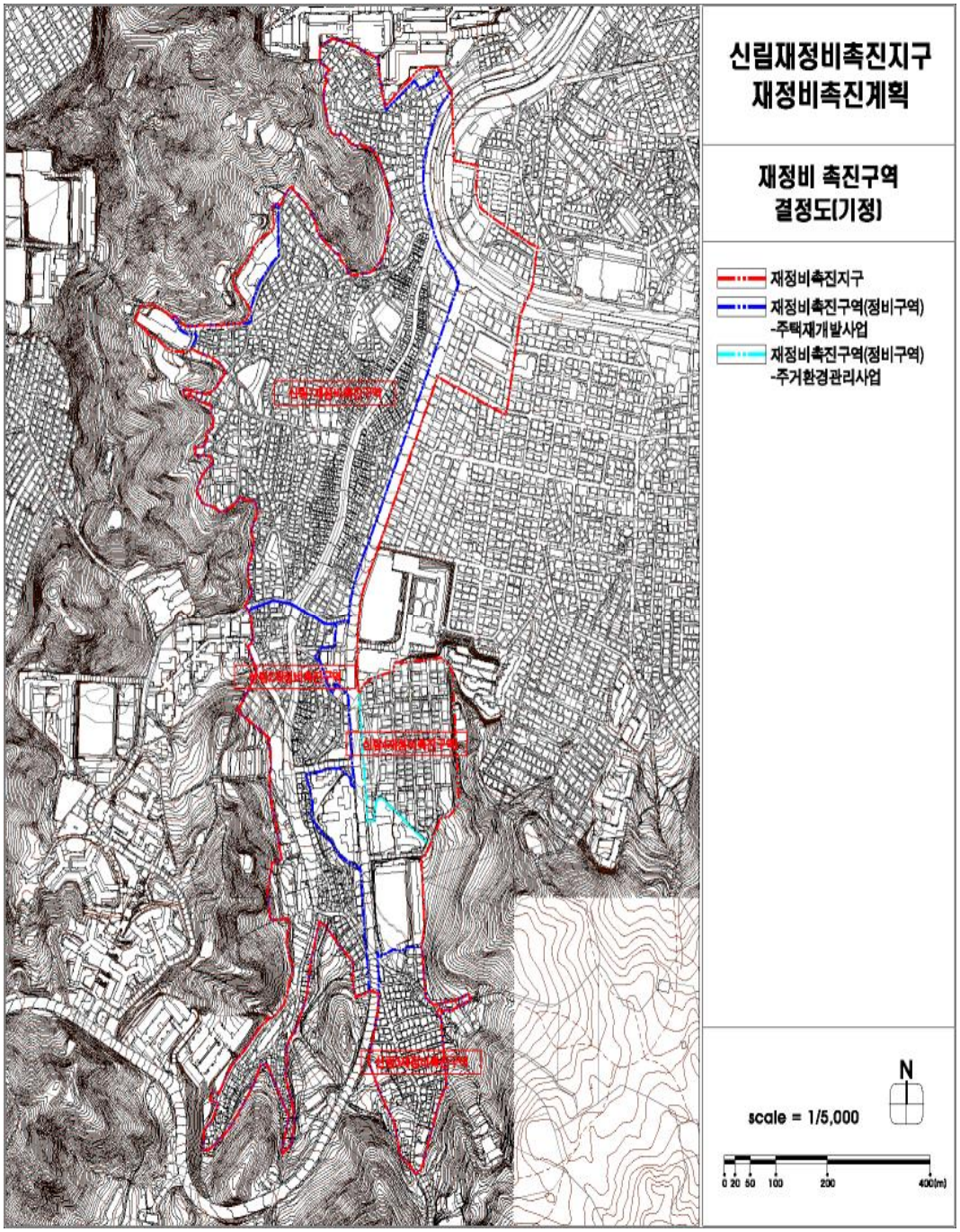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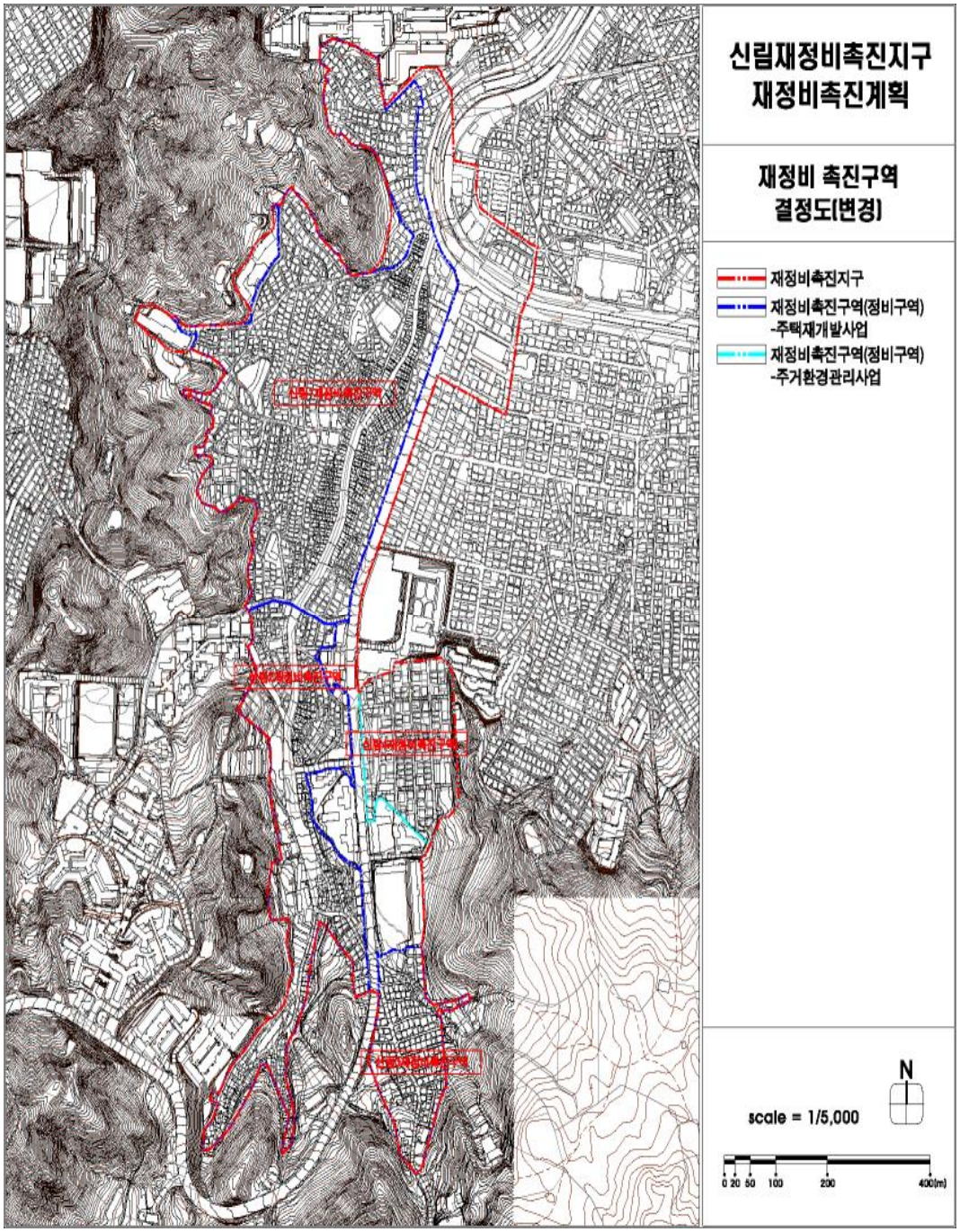

[존치지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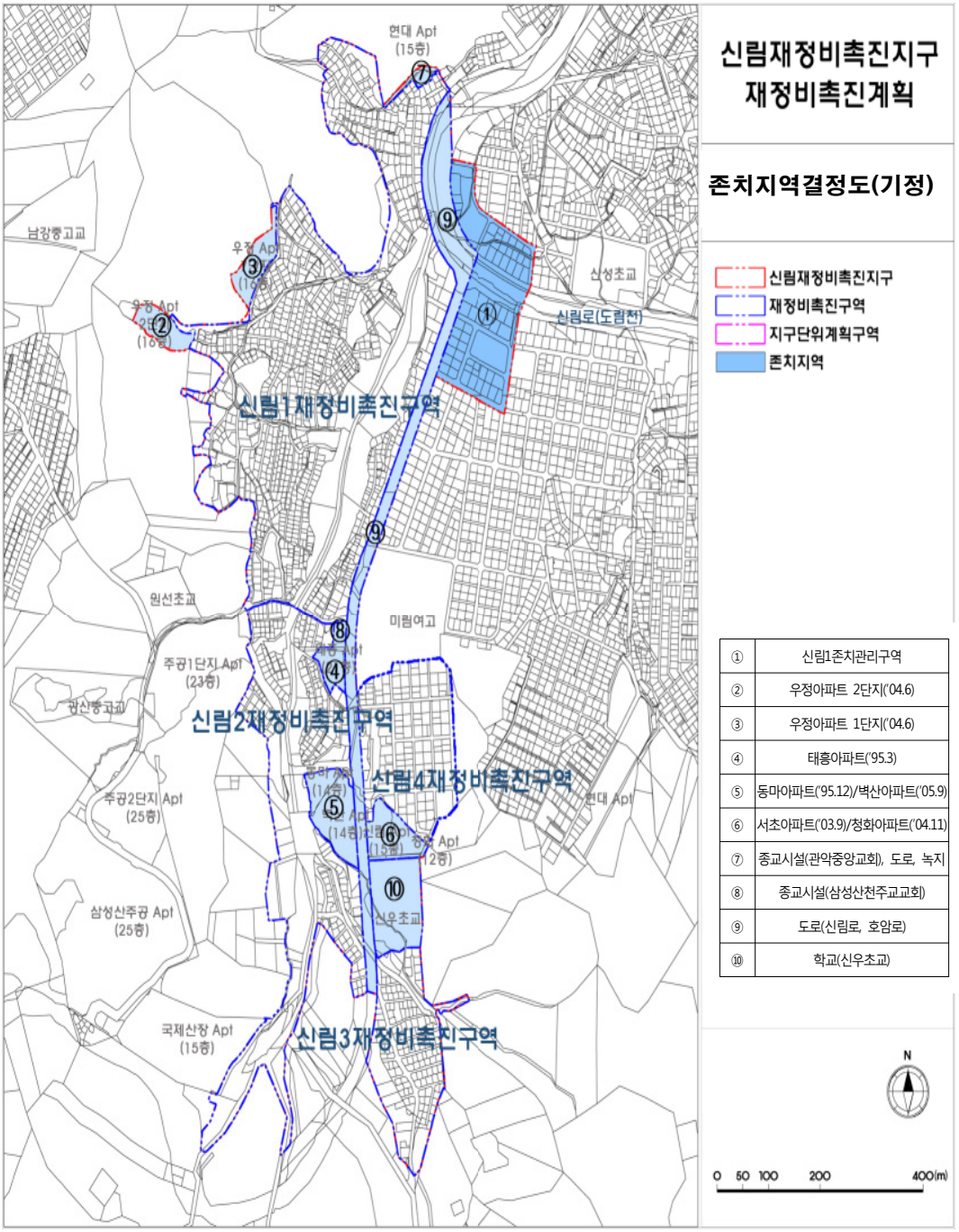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지역결정도(기정)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존치지역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림로(도림천)
현대 Apt (15층)
남강중고교
우정 Apt (16층)
삼성초교
원선초교
미림여고
주공1단지 Apt (23층)
원신중고교
주공2단지 Apt (25층)
삼성산주공 Apt (25층)
국제산장 Apt (15층)
신우초교
① 신림1존치관리구역
② 우정아파트 2단지('04.6)
③ 우정아파트 1단지('04.6)
④ 태흥아파트('95.3)
⑤ 동마아파트('95.12)/벽산아파트('05.9)
⑥ 서초아파트('03.9)/청화아파트('04.11)
⑦ 종교시설(관악중앙교회), 도로, 녹지
⑧ 종교시설(삼성산천주교교회)
⑨ 도로(신림로, 호암로)
⑩ 학교(신우초교)
N
0 50 100 200 400(m)

[존치지역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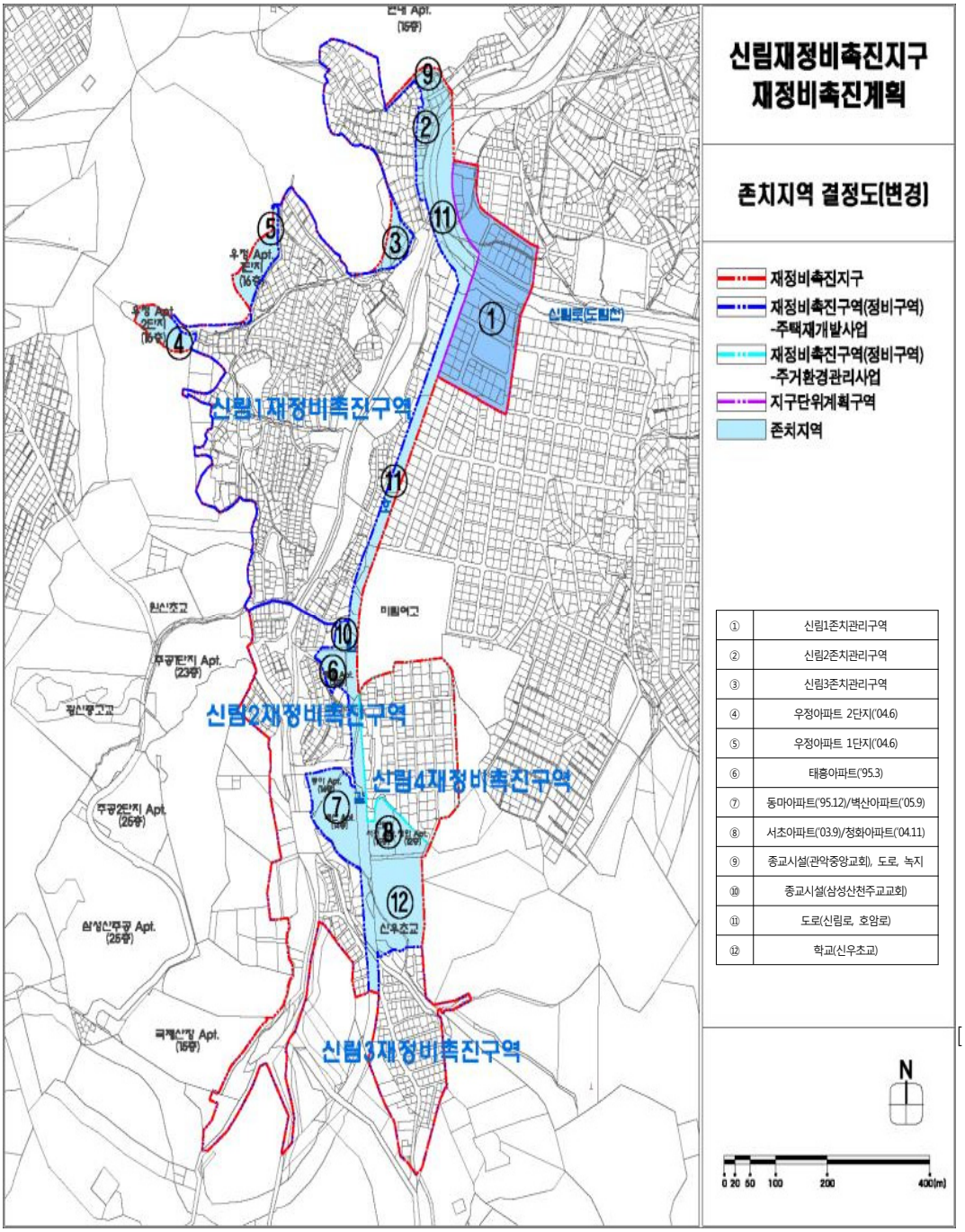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지역 결정도[변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존치지역
① 신림1존치관리구역
② 신림2존치관리구역
③ 신림3존치관리구역
④ 우정아파트 2단지('04.6)
⑤ 우정아파트 1단지('04.6)
⑥ 태흥아파트('95.3)
⑦ 동마아파트('95.12)/벽산아파트('05.9)
⑧ 서초아파트('03.9)/청화아파트('04.11)
⑨ 종교시설(관악중앙교회), 도로, 녹지
⑩ 종교시설(삼성산천주교교회)
⑪ 도로(신림로, 호암로)
⑫ 학교(신우초교)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신림로(도림천)
N
0 20 50 100 200 400(m)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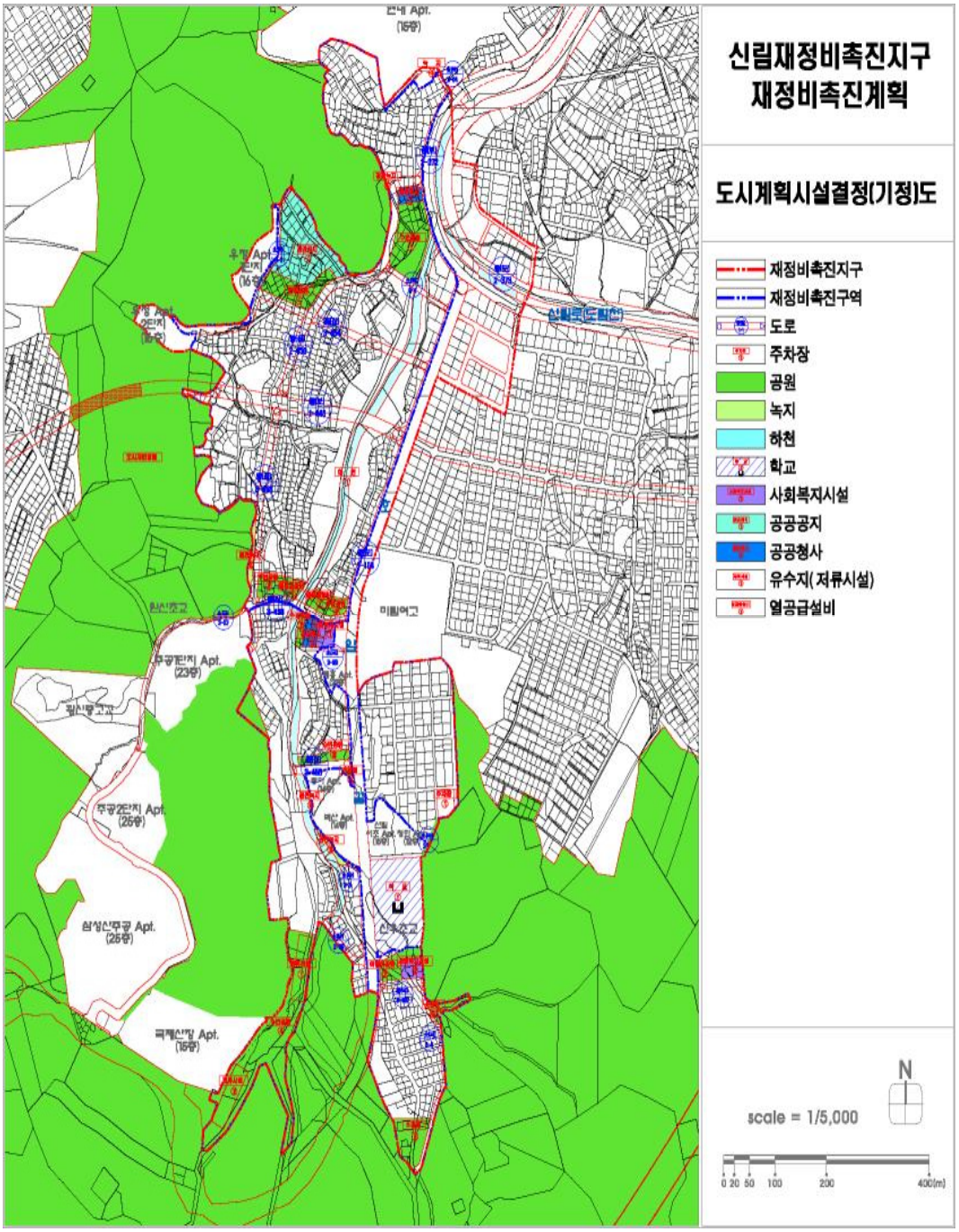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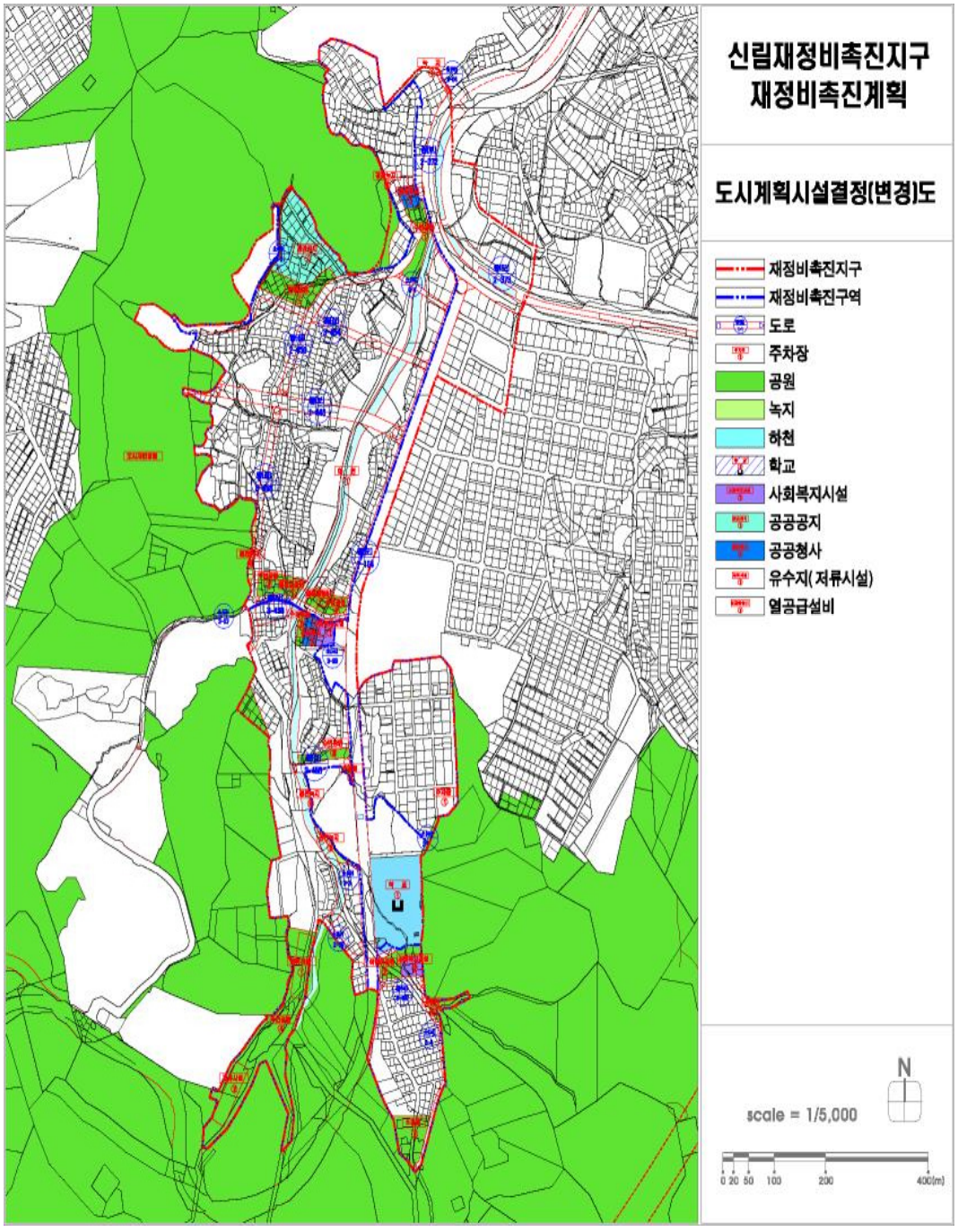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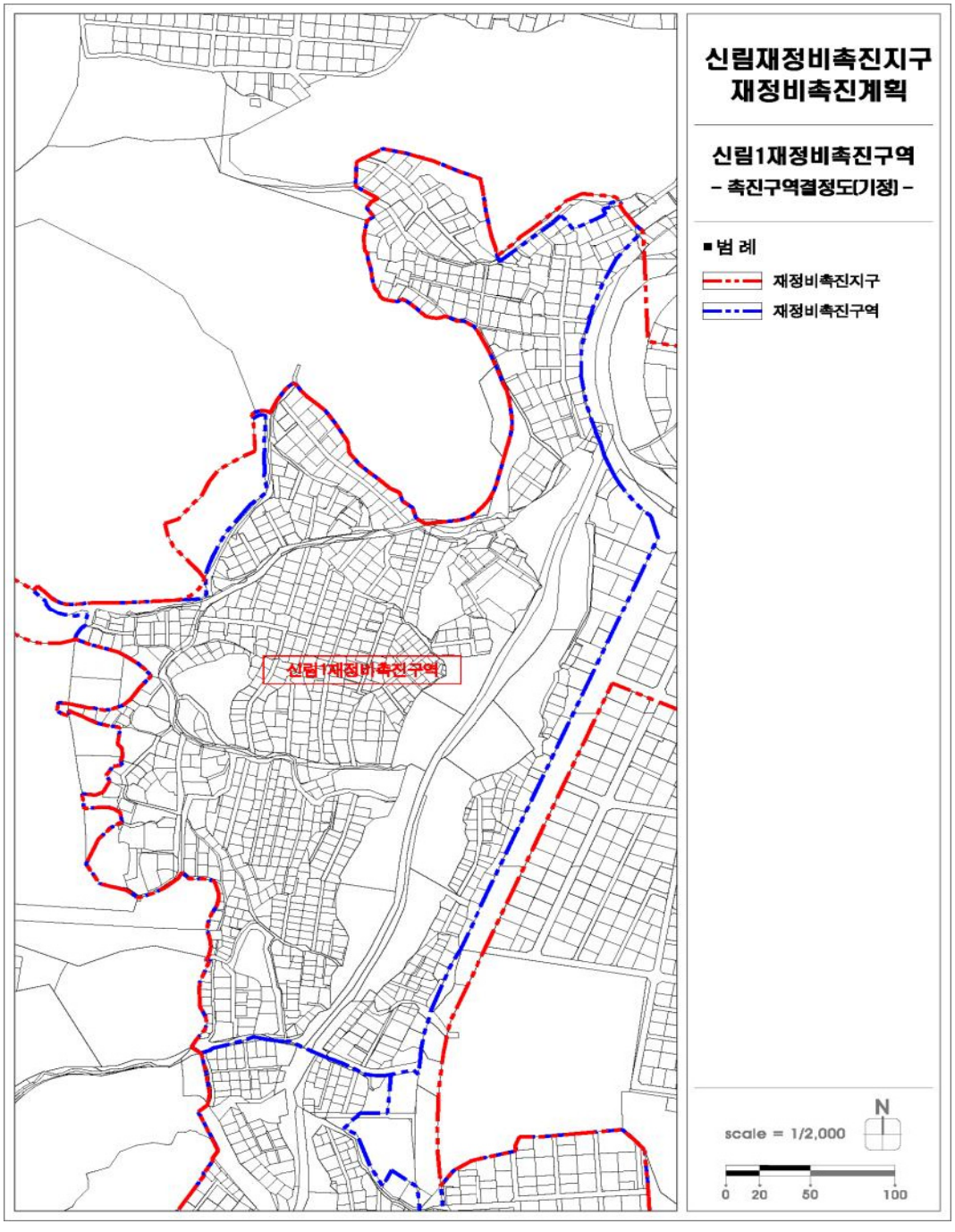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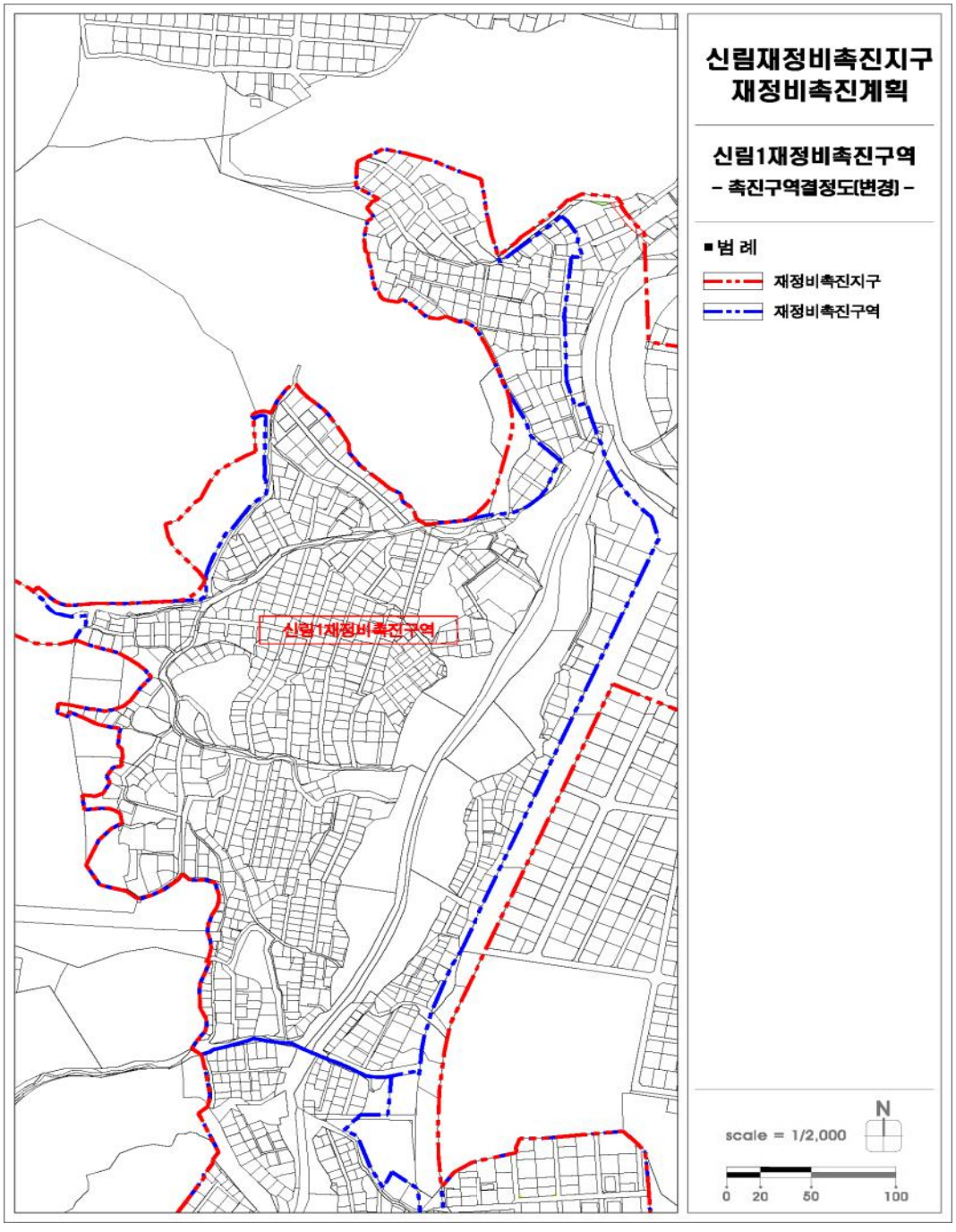

[신림1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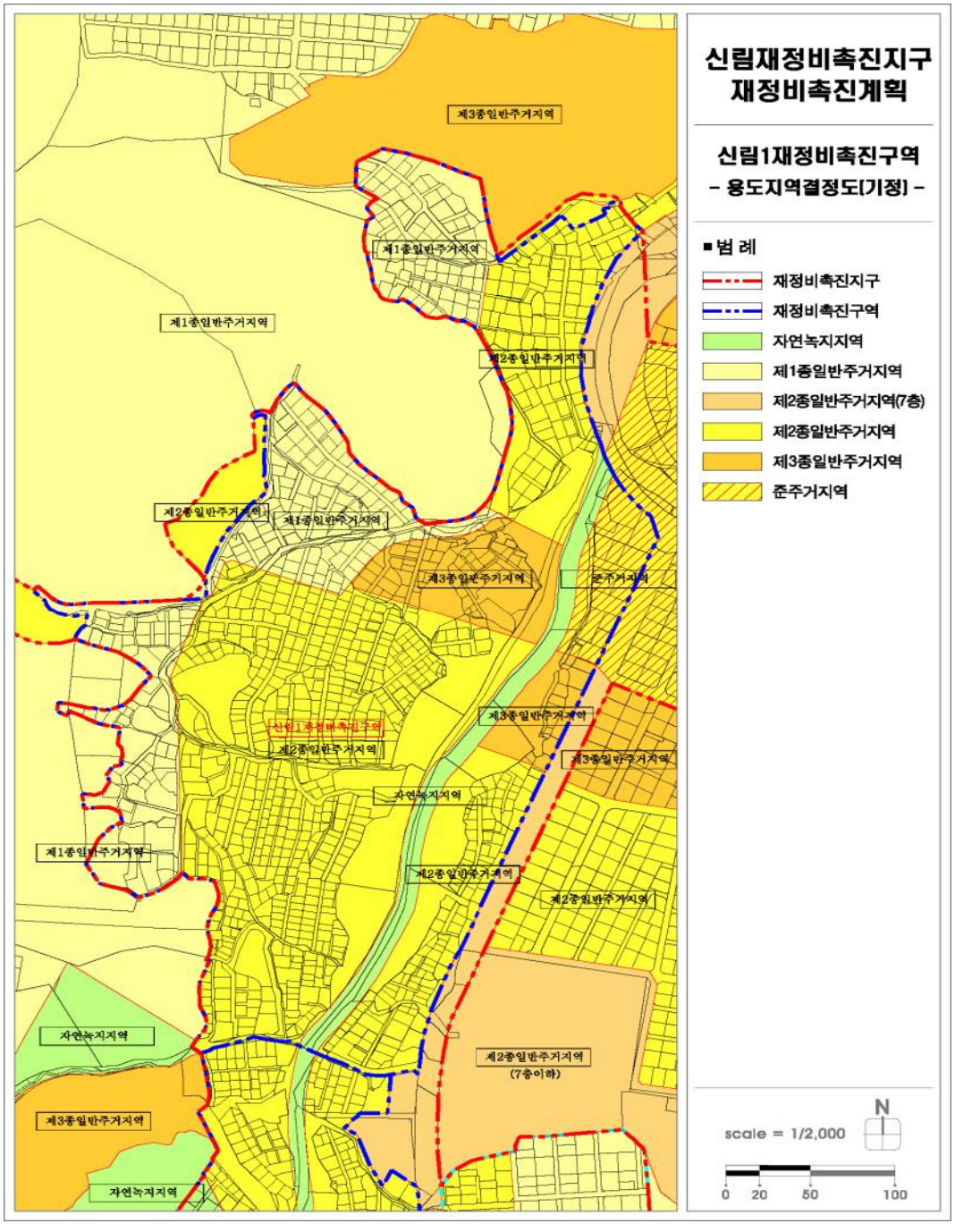

[신림1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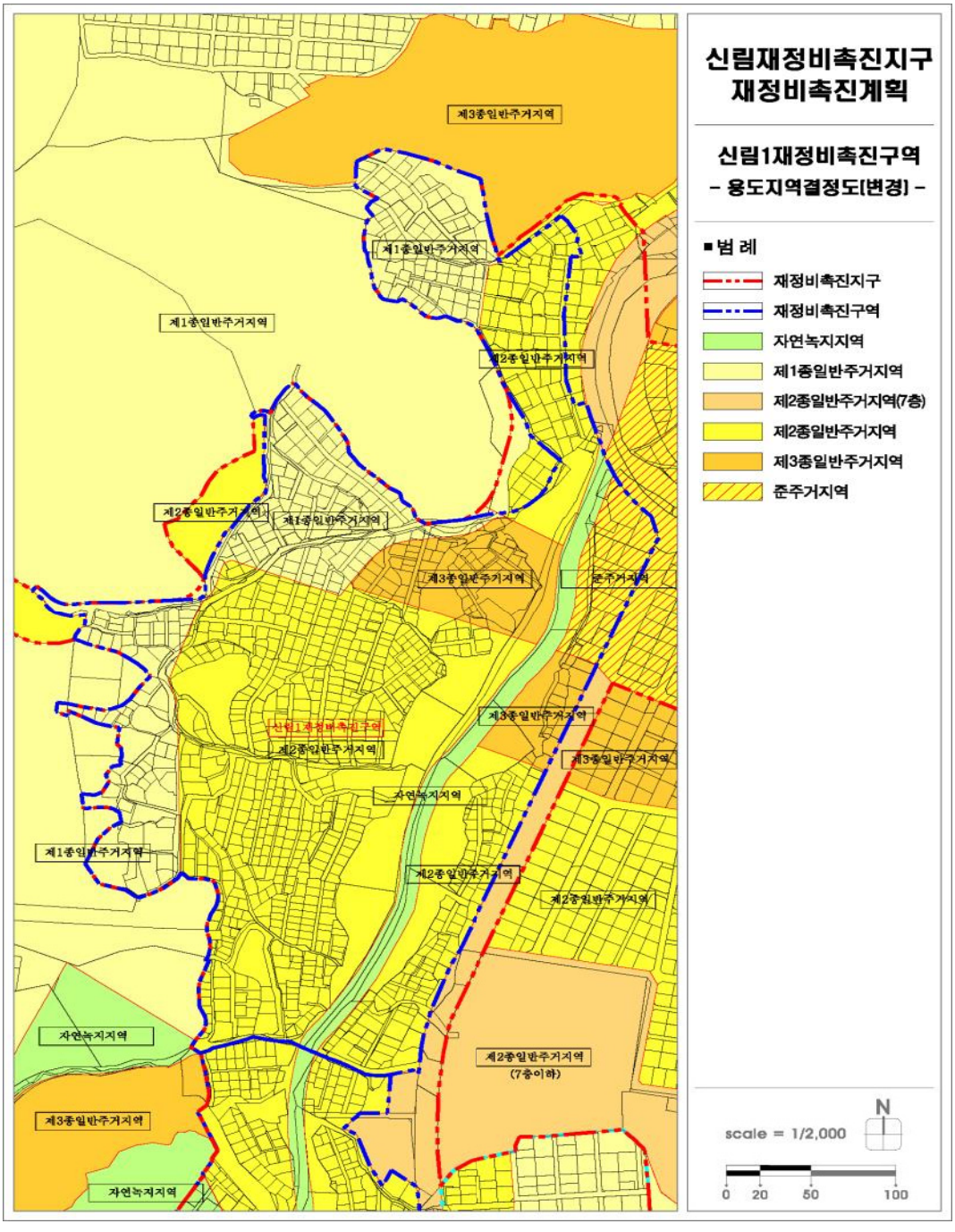

[신림1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신림1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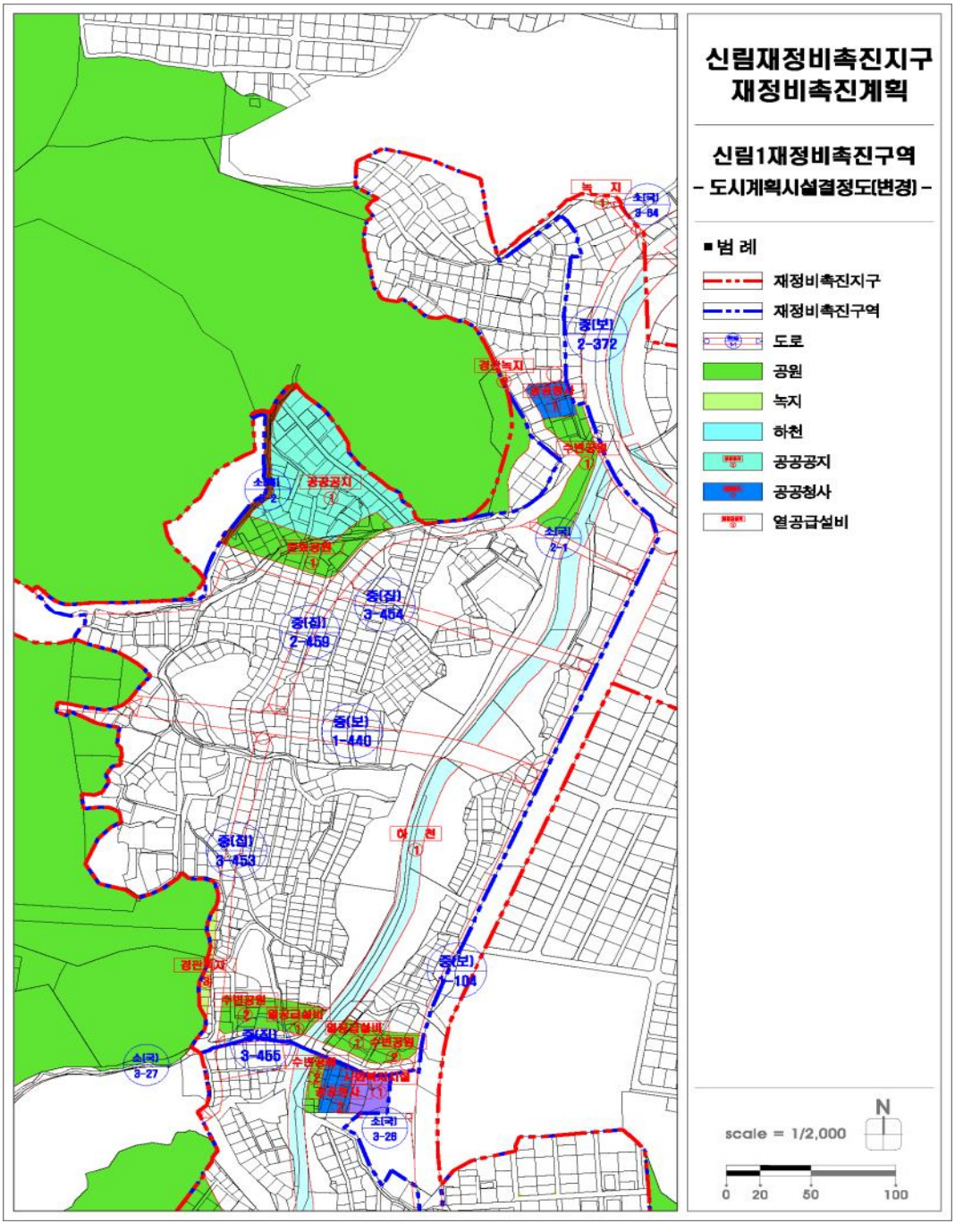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9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 관내 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그 명칭을 제·개정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원(역사·수변·체육·근린공원)명칭 제정 내역

연 번	구 분	위 치	규모(㎡)	제정 공원명칭	비고(기존명칭)
1	역사공원	강남구 수서동 532답 일원	20,504	수서	세곡2 역사공원1
2	수변공원	강남구 세곡동 604, 618	10,661	물맞이	강남 수변공원1
3	수변공원	강남구 세곡동 637	3,713	물굽이	강남 수변공원2
4	근린공원	강남구 세곡동 525-1	10,310	세곡해오름	세곡1 근린공원1
5	근린공원	강남구 수서동 525답 일원	13,954	궁마을	세곡2 근린공원1
6	근린공원	강남구 수서동 569답 일원	12,026	참나무	세곡2 근린공원2
7	근린공원	강남구 세곡동 603	18,856	세천	강남 근린공원1
8	근린공원	강남구 자곡동 625	10,137	세명	강남 근린공원2
9	근린공원	강남구 자곡동 615	38,003	숲자락	강남 근린공원3
10	근린공원	강남구 자곡동 608, 608-1	26,337	못골위	강남 근린공원4
11	근린공원	강남구 자곡동607	21,560	못골아래	강남 근린공원5
12	근린공원	강남구 자곡동 647	19,739	안개	강남 근린공원6
13	근린공원	강남구 자곡동 627, 세곡동 540	12,093	해찬솔	강남 근린공원7
14	체육공원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대	20,923	서초종합	원지동체육공원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8) 및 강남구 공원녹지과(☎ 02-3423-6244), 서초구 공원녹지과(☎ 02-2155-6896)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0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2호(2015.2.26)로 결정(변경)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8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8.7.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시흥동 992-20 외2필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예정지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기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기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기재생략)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 기정

도면표시 번 호	불허용도	비고
A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면적비율이 용적률의 70% 미만인 주거복합건축물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일반상업지역 •간선(폭25m이상) 도로변 •시흥대로 63길변 (구 발소길변)
B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할 경우 제외하며,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대한전선부지/ 기아자동차부지
C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기타 지역

도면표시 번 호	불허용도	비고
D	•단독주택 •공동주택 (군부대부지 중 상업·업무복합용지(D1(가구단위), (D2-2))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군부대부지의 주거면적 비율 중 완화되는 비율(50%→60%,△10%)은 실무부서협의를 통하여 근로자, 젊은이 등을 위한 기숙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등으로 계획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군부대부지 - 시흥대로변 - 금천구청역부근
E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필승아파트 부지
F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용도	•군부대부지 (공동주택 용지)
G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베르빌아파트 북측 민간필지
H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롯데알미늄부지 주변 개별필지
I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홈플러스부지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적용,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 단독주택은 주거복합이 아닌 경우를 말함

- 변경

도면표시 번 호	불허용도	비고
A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면적비율이 용적률의 70% 미만인 주거복합건축물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일반상업지역 •간선(폭25m이상) 도로변 •시흥대로 63길변 (구 발소길변)
A-1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면적비율이 용적률의 70% 미만인 주거복합건축물제외 단, 공공임대주택은 80%미만인 경우 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시흥동 992-19 ,992-20,992-46 번지

도면표시 번 호	불허용도	비고
B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할 경우 제외하며, 산업부지 개발 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대한전선부지/ 기아자동차부지
C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기타 지역
D	•단독주택 •공동주택 (군부대부지 중 상업·업무복합용지(D1(가구단위), (D2-2))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군부대부지의 주거면적 비율 중 완화되는 비율(50%→60%,△10%)은 실무부서협의를 통하여 근로자, 젊은이 등을 위한 기숙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등으로 계획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군부대부지 - 시흥대로변 - 금천구청역부근
E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필승아파트 부지
F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용도	•군부대부지 (공동주택 용지)
G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베르빌아파트 북측 민간필지
H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 제외)	•롯데알미늄부지 주변 개별필지
I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홈플러스부지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적용,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 단독주택은 주거복합이 아닌 경우를 말함

※ A-1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부분 전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A 기준을 적용함.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기재생략)

3)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기재생략)

4)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가)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없음 (기재생략)

나) 용적률 결정조서: 변경없음 (기재생략)

다)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

■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 기정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일반주거지역,준공업지역 → 상업지역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하 적용	

- 변경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일반주거지역,준공업지역 → 상업지역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 (시흥동 992-19, 992-20, 992-46번지 제외)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하 적용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기준 (시흥동 992-19, 992-20, 992-46번지)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하 적용 - 단,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80% 미만 적용	

5)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기재생략)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 변경없음 (기재생략)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기재생략)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기재생략)

마.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기재생략)

바.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생략)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2133-8385) 및 금천구 도시계획과 (☎ 2627-2062)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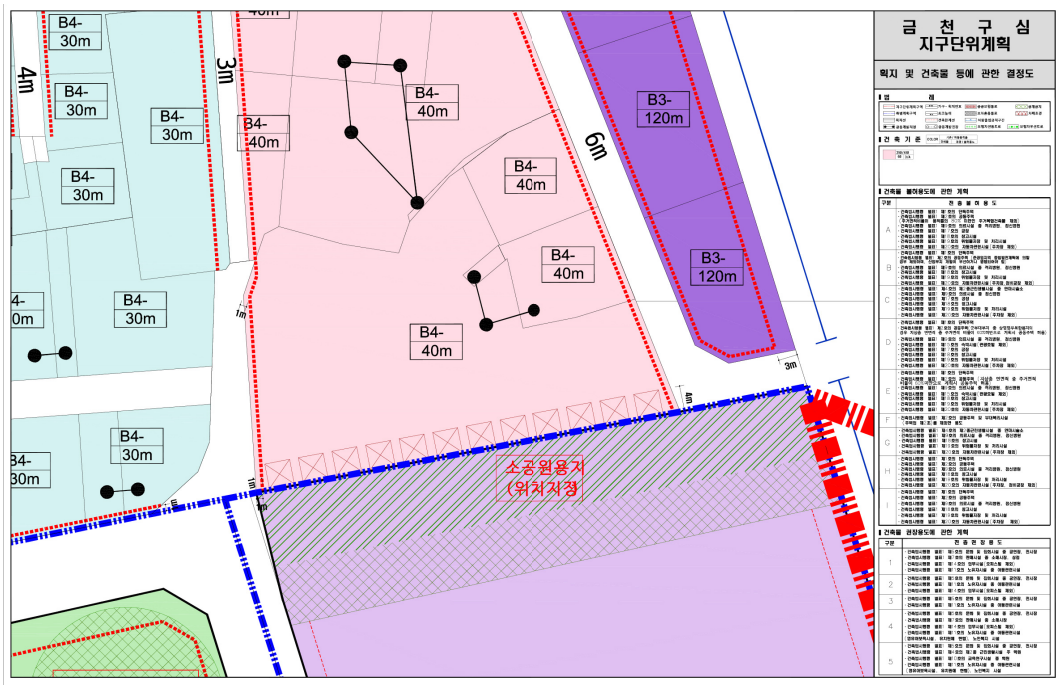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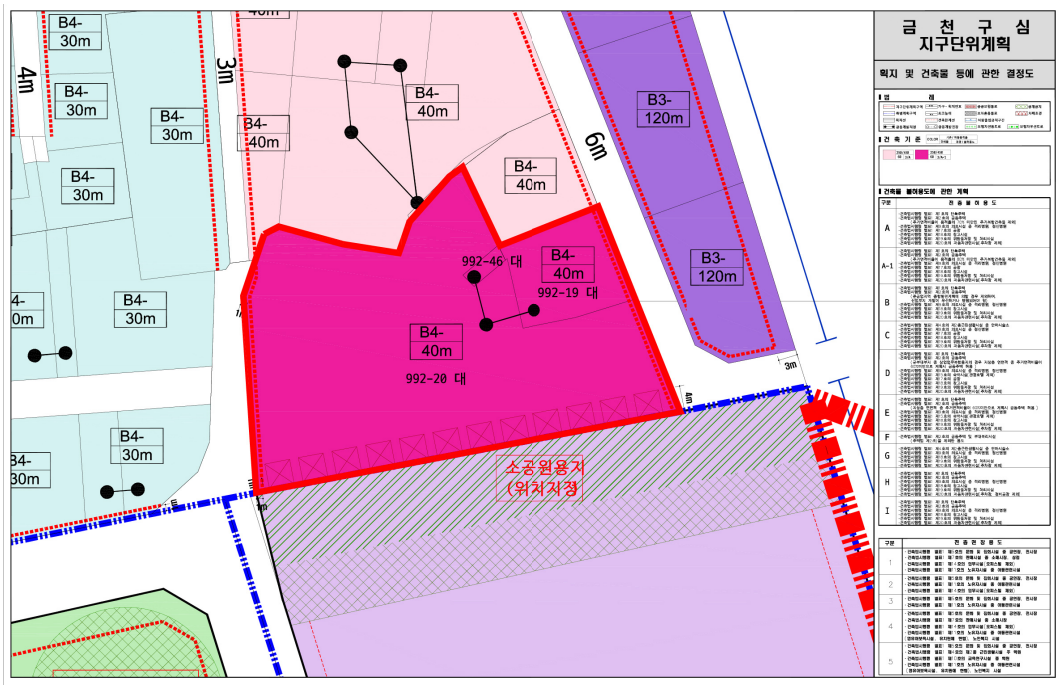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1호

거여 · 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1호(2012.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5호(2017.2.23.)로 결정·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내역

구 분	구역의 명칭 (정비사업방식)	위 치	면 적(㎡)	시행자	해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기한)
기정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60,653	조합	2018.7.23.
변경 (연장)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60,653	조합	2020.7.23.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시 주거사업과(02-2133-7222), 송파구 주거재생과(02-2147-289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2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제6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102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제6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5퍼센트로 한다.

2.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퍼센트보다 높은 경우에는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한다.

3.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48호)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8조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8호) 규정을 따른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3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9호(2014.7.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23호(2017.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1호(2018.4.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규정에 따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985,564	증) 708.5	986,272.5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보광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유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 기준년도 : 2007년
- ○ 목표연도 : 2022년 → 2024년(변경)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85,564	증) 708.5	986,272.5	100.0	
주택용지	소계	663,476	증) 1,293.9	664,769.9	67.4	
	주상복합	192,972	증) 1,266.3	194,238.3	19.7	
	공동주택	470,504	증) 27.6	470,531.6	47.7	존치아파트 포함
기 타	소계	20,418	감) 0.9	20,417.1	2.1	
	종교시설용지	14,912	감) 0.9	14,911.1	1.5	
	기 타 용 지	5,506	-	5,506.0	0.6	변전소 이전부지
공공용지	소계	301,670	감) 584.5	301,085.5	30.5	
	도로	145,042	감) 583.7	144,458.3	14.6	
	주차장	1,649	-	1,649.0	0.2	
	공원	29,462	증) 2.6	29,464.6	3.0	
	녹지	28,069	-	28,069.0	2.9	
	공공공지	16,079	-	16,079.0	1.6	미래 공공시설용지 포함
	교육시설	76,371	감) 7.6	76,363.4	7.7	
	공공문화시설	4,998	증) 4.2	5,002.2	0.5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2) 인구·주택수용계획 : 34,196인 / 12,766세대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776	감) 10	12,766	34,223	감) 27	34,196	-
재정비 촉진구역	소 계	12,076	감) 10	12,066	32,607	감) 27	32,580	
	40㎡ 이하	800	-	800	2,160	-	2,160	
	40㎡~60㎡	4,679	감) 3	4,676	12,634	감) 8	12,626	
	60㎡~85㎡	3,984	감) 5	3,979	10,757	감) 13	10,744	
	85㎡ 초과	2,613	감) 2	2,611	7,056	감) 6	7,050	
존치관리구역	-	700	-	700	1,616	-	1,616	기존세대 수용

※ 3-2-1BL 긴 판상형 주동의 단조로운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주동의 호수조합 변경 등 건축배치계획 변경(2017.10.24 건축위원회 심의)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	81,369	감) 3.4	81,365.6	
교육시설	소 계	3	76,371	감) 7.6	76,363.4	
	초등학교	2	22,806	감) 7.6	22,798.4	보광초 이전, 1개소 신설
	중·고등학교	1	53,565	-	53,565	오산중고교
공공·체육 문화시설	소 계	4	4,998	증) 4.2	5,002.2	
	공공청사	2	2,647	감) 1.0	2,646.0	주민센터 2개소
	소방파출소	1	800	-	800	
	사회복지시설	1	1,551	증) 5.2	1,556.2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	57,531	증) 2.6	57,533.6	
공원시설	소 계	10	29,462	증) 2.6	29,464.6	
	문화공원	3	10,188	감) 2.1	10,185.9	제3호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3	9,498	증) 4.2	9,502.2	
	소공원	4	9,776	증) 0.5	9,776.5	
녹지시설	소 계	5	28,069	-	28,069	
	연결녹지	2	17,234	-	17,234	
	완충녹지	1	5,796	-	5,796	
	경관녹지	2	5,039	-	5,039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5) 교통계획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 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기정	촉진2	뉴타운	보광동	265	16.2	170%	-	60%	2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촉진3	뉴타운	한남동	686	38.6	190%	-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촉진4	뉴타운	보광동	360	16.2	170%	-	60%	2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촉진5	뉴타운	동빙고동	60	18.7	170%	-	60%	2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85,564	증) 708.5	986,272.5	-	
재정비 촉진구역	소 계(4개 구역)		896,819	증) 708.5	897,527.5	-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보광동 265번지 일대	162,321	-	162,321	주택재개발사업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5,687	증) 708.5	386,395.5	주택재개발사업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2,030	-	162,030	주택재개발사업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6,781	-	186,781	주택재개발사업	
존치관리 구역	소 계(3개 구역)		88,745	-	88,745	-	
	한남1 존치관리구역	보광동 151번지 일대	56,788	-	56,788		
	한남2 존치관리구역	한남동 807번지 일대	28,996	-	28,996		
	한남3 존치관리구역	한남동 550번지 일대	2,961	-	2,961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385,687	증) 708.5	386,395.5	100.0
	일반주거지역	소 계	315,308	증) 720.0	316,028.0	81.8
		제1종일반주거지역	152,480	증) 512.6	152,992.6	39.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1,330	증) 311.9	101,641.9	26.3
		제3종일반주거지역	61,498	감) 104.5	61,393.5	15.9
	준주거지역		70,379	감) 11.5	70,367.5	18.2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라)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0)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 : 변경없음

○ 고도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고도지구	최고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일대	28m이하	4,560 (4,560)	서고 제252호 (02.6.27)	지표면(건축법령 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2	고도지구	최고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일대	23m이하	28,320 (28,320)	서고 제252호 (02.6.27)	지표면(건축법령 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면적을 의미함

○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조망가로	반포로변	41,520	1,730	양측12	서고 제164호 (82.4.22)	
기정	2	미관지구	중심지	이태원동34 ~한남동736	22,260	1,800	15	서고 제164호 (82.4.22)	
기정	3	미관지구	역사문화	강변북로변	13,440	1,120	양측12	서고 제194호 (84.4.17)	
기정	4	미관지구	역사문화	독서당길변	1,200	100	양측12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분	구 역 명	주 된 용 도	건폐율 (%)	기준용적률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최대용적률 (%)	높이계획		비 고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촉진 구역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78	214	214	8 / 15	48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90	240	240	- / 22	73	기정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90	232.5	232.5	- / 22	73	변경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70	210	210	10 / 29	95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70	223	223	10 / 50	170	

※ 한남3구역 건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 가중평균선에서의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부분 지반층에서의 층수 기준 최고높이임
(단, 구역 전체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발90m 이하 적용)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 변경없음

구 분	획 지 명	최 고 높 이	비 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3-7-2	73m	
	4-31-1	95m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	계획기반시설(㎡)				시설제공 면적(㎡) (건축물 등) -②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①+②-③ -④-⑤)	순부담률 (%)
			합□ 계 -①	도 로	공원 및 녹지	기타		계획기반시설내 -③	기존기반시설내 -④	유상매입시설 -⑤		
합□□ 계	기정	896,819	251,817	143,357	57,531	50,929	5,512	58,962	53,321	17,440	127,606	14.2
	변경	897,527.5	251,232.5	142,773.3	57,533.6	50,925.6	5,512	60,544.2	60,664.3	17,440	118,096.0	13.2
촉진 구역	한남2재정비 촉진구역	162,321	55,215	38,727	2,292	14,196	-	15,457	11,364	12,043	16,351	10.1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385,687	93,161	52,433	27,261	13,467	5,512	20,363	18,233	-	60,077	15.6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변경	386,395.5	92,576.5	51,849.3	27,263.6	13,463.6	5,512	21,945.2	25,576.3	-	50,567.0	13.1
	한남4재정비 촉진구역	162,030	49,032	34,565	6,027	8,440	-	14,496	11,832	2,221	20,483	12.6
	한남5재정비 촉진구역	186,781	54,409	17,632	21,951	14,826	-	8,646	11,892	3,176	30,695	16.4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일부 국·공유지를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 부담주체별 비용분담계획

▮ 기정

구 분	비 용 분 담				비 고
	시	구	교육청	민간	
도로	-	-	-	○	(한남3촉진구역 및 한남4존치구역 현황도로 정비포함)
주차장	-	○	-	○	건축공사비 구비부담 (한남3촉진구역 지하주차장 설치비 민간부담)
공원·녹지	-	-	-	○	
공공공지	-	-	-	○	
공공청사	-	○	-	○	건축공사비 구비부담 (한남3촉진구역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사회복지시설	-	○	-	○	건축공사비 구비부담 (한남3촉진구역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학교	○	-	○	○	교육청, 서울시 부담 (한남3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 보광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비용분담은 사업시행자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

▮ 변경

구 분	비 용 분 담				비 고
	시	구	교육청	민간	
도로	-	-	-	○	(소로3-8호선 및 소로3-9호선 현황도로 정비포함)
주차장	-	○	-	○	건축공사비 구비부담 (한남3촉진구역 지하주차장 설치비 민간부담)
공원·녹지	-	-	-	○	-
공공공지	-	-	-	○	-
공공청사	-	○	-	○	건축공사비 구비부담 (한남3촉진구역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사회복지시설	-	○	-	○	건축공사비 구비부담 (한남3촉진구역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학교	○	-	○	○	교육청, 서울시 부담 (한남3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 보광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비용분담은 사업시행자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구 분	구 역 명	계획 세대수	일반 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비 고
				소 계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	전용면적 50~60㎡	
합 계		12,076	10,133	1,943	800	798	345	기정
		12,066	10,124	1,942	800	797	345	변경
촉진 구역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1,926	1,598	328	136	135	57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5,826	4,949	877	356	357	164	기정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5,816	4,940	876	356	356	164	변경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1,965	1,630	335	138	138	59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2,359	1,956	403	170	168	65	-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재정비촉진구역별 단계적 사업추진

구 분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대 상	비 고
1단계	기정	2009년	2018년	2021년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변경	2009년	2021년	2024년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단계		2010년	2019년	2022년	한남2, 한남4,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촉진구역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등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2. 대규모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구청장은 전 단계 사업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다음단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3. 시장이 권역별 주택수급 등을 판단하여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7) 방재계획 : 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8) 정보화계획 : 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9) 에너지순환계획 : 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20)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5,687	증) 708.5	386,395.5	-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85,687	증) 708.5	386,395.5	100.0
주거용지		292,526	증) 1,293.0	293,819.0	76.0
기반시설	소 계	93,161	감) 584.5	92,576.5	24.0
	공공청사	1,411	감) 1.0	1,410.0	0.4
	사회복지시설	1,293	증) 5.2	1,298.2	0.3
	학 교	10,763	감) 7.6	10,755.4	2.8
	공 원	27,261	증) 2.6	27,263.6	7.1
	도 로	52,433	감) 583.7	51,849.3	13.4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15~30	보조 간선	1,298 (392)	이태원동 128-20대 일대	보광동 129-1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128호 (77.4.28)	
기정	중로	2	14	15	집산 도로	500 (247)	한남동 543-8대 일대	보광동 80-2도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590호 (78.11.8)	
기정	중로	2	15	15	집산 도로	532 (532)	한남동 642-17대 일대	한남동 568-237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1	18	집산 도로	161 (161)	보광동 259-4도 일대	보광동 264-88구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중로	2	22	15	집산 도로	472 (472)	보광동 21-1대 일대	보광동 248-9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59 (159)	보광동 265-1021대 일대	한남동 732-152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536 (536)	보광동 3-86대 일대	보광동 265-234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306 (306)	한남동 568-177대 일대	보광동 3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42 (742)	한남동 647-39구 일대	한남동 732-191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84 (84)	보광동 265-916대 일대	보광동 265-694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09 (109)	한남동 732-226대 일대	한남동 732-19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520 (520)	한남동 763-18도 일대	한남동 620-171종 일대	보행자 우선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02 (102)	한남동 568-514도 일대	보광동 1-15구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신설	소로	3	7	6	국지 도로	18 (18)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보행자 전용도로	-	-	착오 누락
신설	소로	3	8	6	국지 도로	170 (108)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일반 도로	-	-	착오 누락
신설	소로	3	9	4	국지 도로	116 (30)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일반 도로	-	-	착오 누락

※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공원	문화공원	한남동732-126일대	4,045	감) 0.9	4,044.1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주차장② 중복결정
변경	4	공원	문화공원	한남동620-171일대	6,135	감) 1.2	6,133.8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변경	1	공원	어린이공원	보광동8-3일대	1,612	증) 3.9	1,615.9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변경	3	공원	어린이공원	보광동35-13일대	5,973	증) 0.3	5,973.3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변경	2	공원	소공원	한남동766-2일대	4,645	감) 1.2	4,643.8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변경	3	공원	소공원	한남동568-105일대	2,575	증) 1.4	2,576.4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변경	4	공원	소공원	한남동561-1일대	2,276	증) 0.3	2,276.3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 공공청사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공공청사	주민센터	보광동265-124 일대	1,411	감) 1.0	1,410.0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보광동 주민센터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 학교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학교	초등학교	한남동665-9일대	10,763	감) 7.6	10,755.4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신설초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 주차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노외주차장	한남동732-126일대	4,045	감) 0.9	4,044.1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문화공원③ 지하에 중복결정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사회복지시설	보광동265-999일대	1,293	증) 5.2	1,298.2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종합사회복지관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위치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385,687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2,207	-	-	2,207	-	-
변경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386,395.5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2,444	-	-	2,444	-	-

○ 건축시설계획(기정)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평균 층수	최고 층수	최고 높이	
한남3 재정비 촉진 구역	385,687	3-1-1	3,719	용산구 한남동 732-19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2	3,231	용산구 한남동 732-3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3	4,999	용산구 한남동 686-15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4	8,891	용산구 한남동 653-33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2-1	56,468	용산구 한남동 765-8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78.5이하	-	12층	39m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평균 층수	최고 층수	최고 높이	
한남3 재정비 촉진 구역	385,687	3-2-2	52,215	용산구 보광동 265-168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4.8이하	-	5층	18m	
		3-3	16,294	용산구 한남동 647-46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21.8이하	-	15층	48m	
		3-4-1	18,160	용산구 한남동 609-8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50이하	-	15층	48m	
		3-4-2	17,384	용산구 한남동 557-39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50이하	-	15층	48m	
		3-5	9,785	용산구 보광동 15-18번지일대	공동주택	50이하	250이하	-	15층	48m	
		3-6	24,278	용산구 보광동 3-285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200이하	-	12층	39m	
		3-7-1	15,947	용산구 보광동 251-5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91.7이하	-	20층	67m	
		3-7-2	54,432	용산구 보광동 11-1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91.7이하	-	22층	73m	
		3-8	1,526	용산구 보광동 265-443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9	836	용산구 한남동 653-70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3-10	2,599	용산구 한남동 568-91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3-11	1,762	용산구 보광동 265-35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공공 청사	1,411	용산구 보광동 265-124대일대	공공업무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사회복지시설	1,293	용산구 보광동 265-999대일대	복지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학교	10,763	용산구 한남동 665-9번지일대	교육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 ) : 부분임대

구분 (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율 (%)
40㎡미만	356	-	356	6.1
40~50㎡미만	357	-	357	6.1
50~60㎡미만	2,307	2,143	164	39.6
60~85㎡미만	1,856	1,856	-	31.9
85㎡이상	950	950	-	16.3
합 계	5,826(192)	4,949(192)	877	100.0

건축배치, 높이 및 형태 지침도 참조	건축배치, 높이 및 형태 지침도 참조

○ 건축시설계획(변경)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평균 층수	최고 층수	최고 높이	
한남3 재정비 촉진 구역	386,395.5	3-1-1	3,704.5	용산구 한남동 732-19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2	3,231.4	용산구 한남동 732-3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3	5,001.0	용산구 한남동 686-15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4	8,889.4	용산구 한남동 653-33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2-1	56,465.8	용산구 한남동 765-8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78.5이하	-	12층	39m	
		3-2-2	52,217.3	용산구 보광동 265-168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4.8이하	-	5층	18m	
		3-3	16,298.4	용산구 한남동 647-46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21.8이하	-	15층	48m	
		3-4-1	18,205.5	용산구 한남동 609-8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50이하	-	15층	48m	
		3-4-2	17,373.2	용산구 한남동 557-39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50이하	-	15층	48m	
		3-5	9,787.9	용산구 보광동 15-18번지일대	공동주택	50이하	250이하	-	15층	48m	
		3-6	24,288.5	용산구 보광동 3-285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200이하	-	12층	39m	
		3-7-1	15,958.0	용산구 보광동 251-5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91.7이하	-	20층	67m	
		3-7-2	54,409.5	용산구 보광동 11-1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91.7이하	-	22층	73m	
		3-8	1,527.7	용산구 보광동 265-443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9	837.4	용산구 한남동 653-70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3-10	2,598.5	용산구 한남동 568-91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3-11	1,758.5	용산구 보광동 265-35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공공 청사	1,410.0	용산구 보광동 265-124대일대	공공업무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사회복지시설	1,298.2	용산구 보광동 265-999대일대	복지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학교	10,755.4	용산구 한남동 665-9번지일대	교육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table>
<tr><td colspan="2" rowspan="2">구역구분</td><td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d><td rowspan="2">위 치</td><td rowspan="2">주된
용도</td><td rowspan="2">건폐율
(%)</td><td rowspan="2">용적률
(%)</td><td colspan="2">층수</td><td>높이</td><td rowspan="2">비고</td></tr>
<tr><td>명칭</td><td>면적(㎡)</td><td>명칭</td><td>면적
(㎡)</td><td>평균
층수</td><td>최고
층수</td><td>최고
높이</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1">○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 ) : 부분임대
<table><tr><td>구분
(전용면적)</td><td>총세대수</td><td>분양세대</td><td>임대세대</td><td>비율
(%)</td></tr><tr><td>40㎡미만</td><td>356</td><td>-</td><td>356</td><td>6.1</td></tr><tr><td>40~50㎡미만</td><td>356</td><td>-</td><td>356</td><td>6.1</td></tr><tr><td>50~60㎡미만</td><td>2,305</td><td>2,141</td><td>164</td><td>39.6</td></tr><tr><td>60~85㎡미만</td><td>1,851</td><td>1,851</td><td>-</td><td>31.9</td></tr><tr><td>85㎡이상</td><td>948</td><td>948</td><td>-</td><td>16.3</td></tr><tr><td>합 계</td><td>5,816(192)</td><td>4,940(192)</td><td>876</td><td>100.0</td></tr></table></td><td></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1">건축배치, 높이 및 형태 지침도 참조</td><td></td></tr>
</table>

주1)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2) 건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 가중평균선에서의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부분 지반층에서의 층수 기준 최고높이임

주3)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과 도시경관 향상, 지역의 정체성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검토

※ 단, 구역 전체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발90m 이하 적용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변경				
주택 재개발사업	1단계 (2009~2021년)	1단계 (2009~2024년)	주택재개발조합	-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공급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52,790	52,916.21	356세대(6.1%)	356세대(6.1%)	40㎡이하	
			357세대(6.1%)	356세대(6.1%)	40㎡~50㎡	
			164세대(2.8%)	164세대(2.8%)	50㎡~60㎡	
			전체 877세대(15.0%)	전체 876세대(15.0%)	-	

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2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바. 관계 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0) 및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02)2199-745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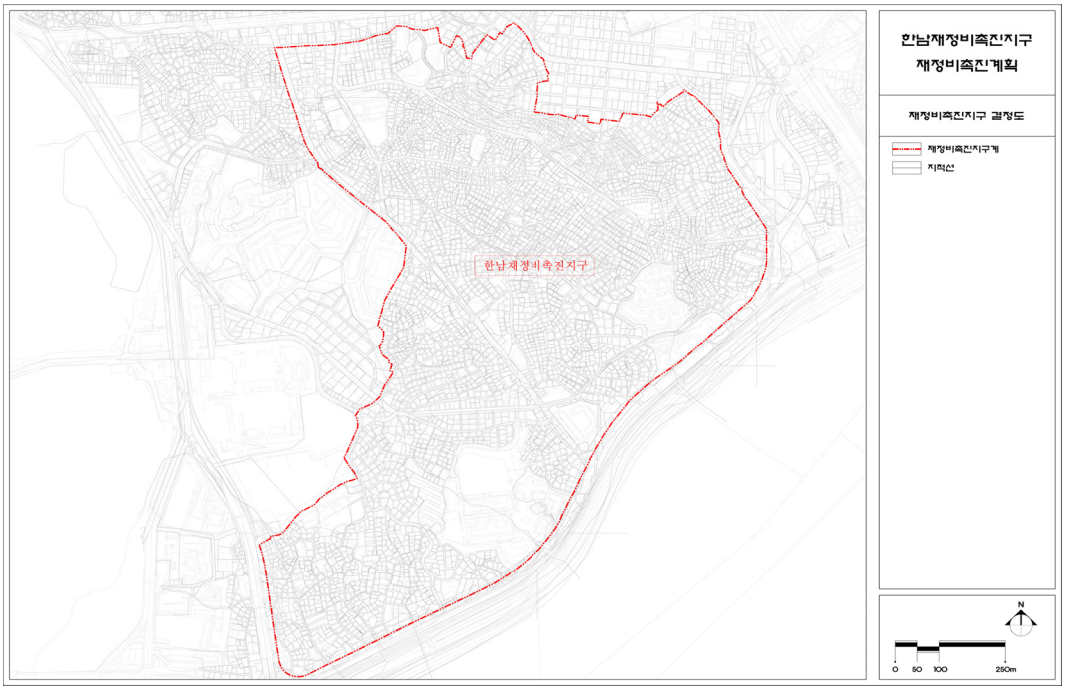

○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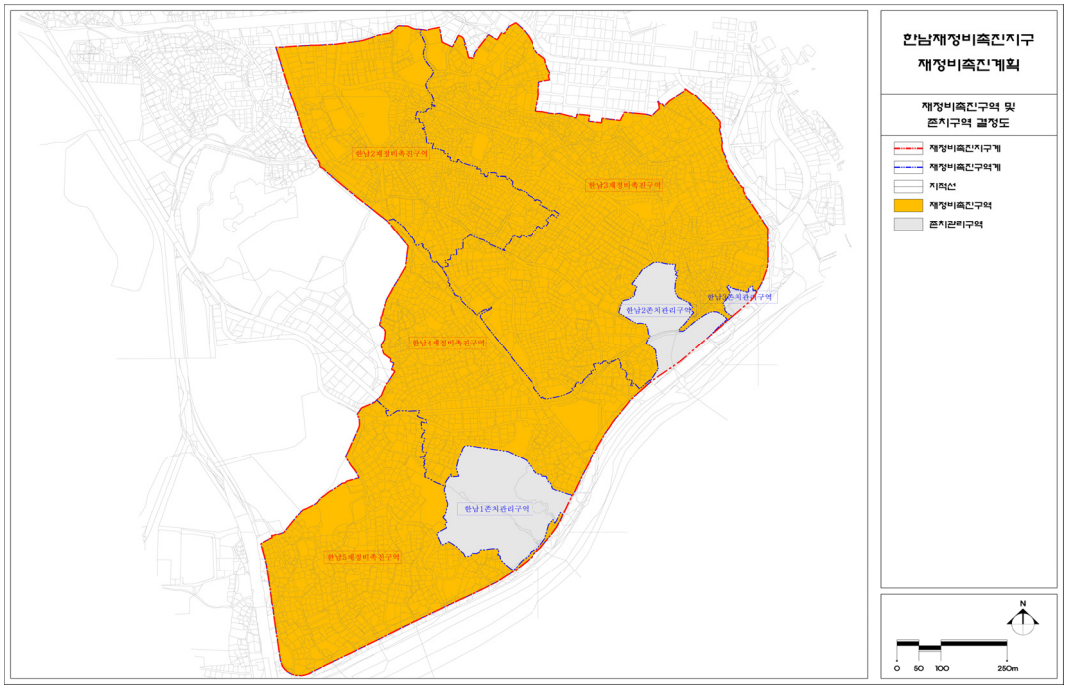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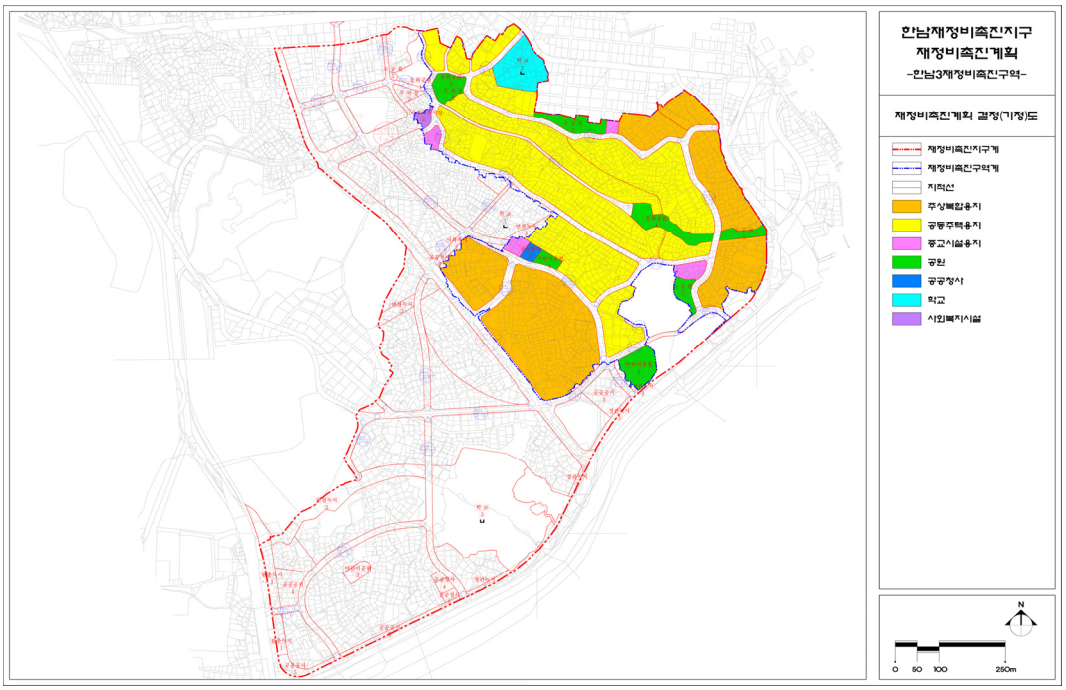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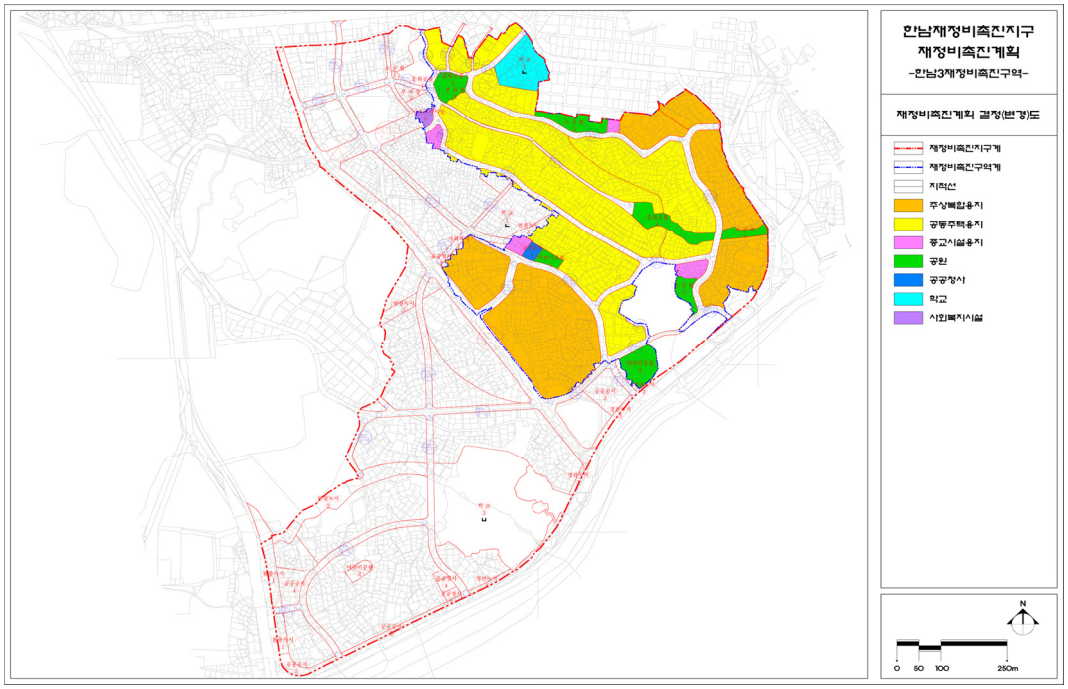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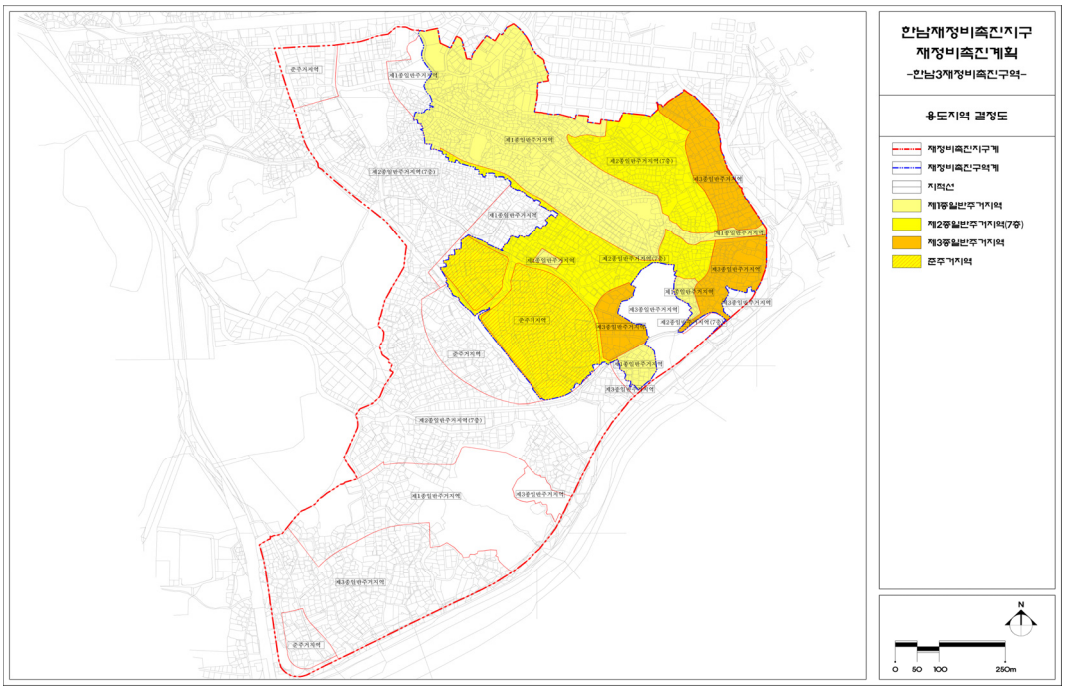

○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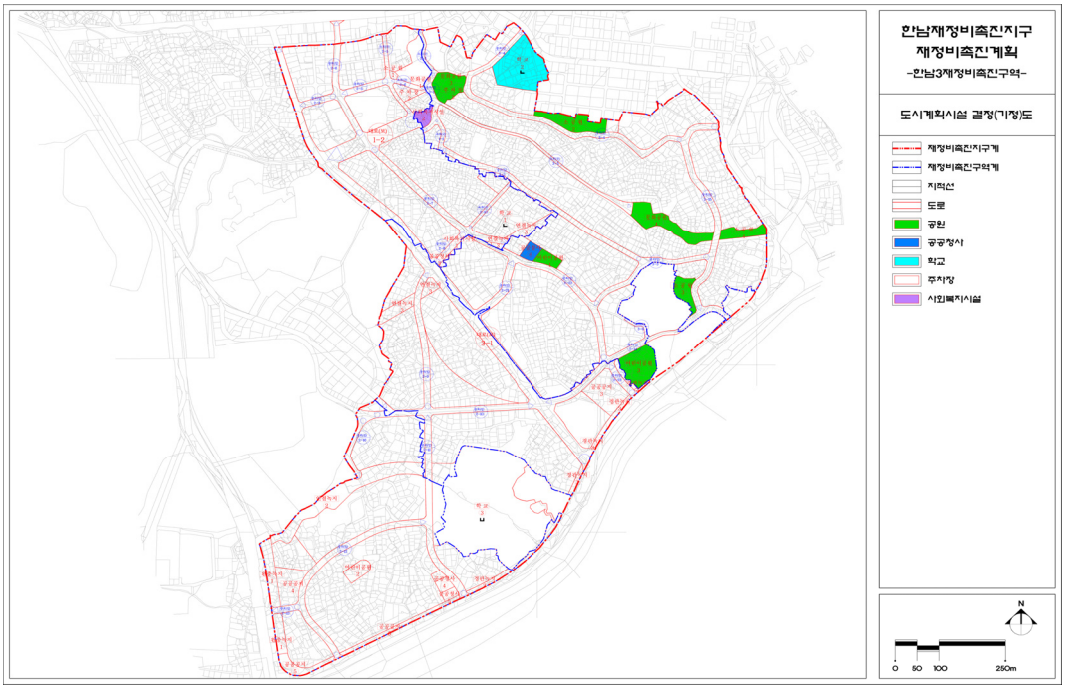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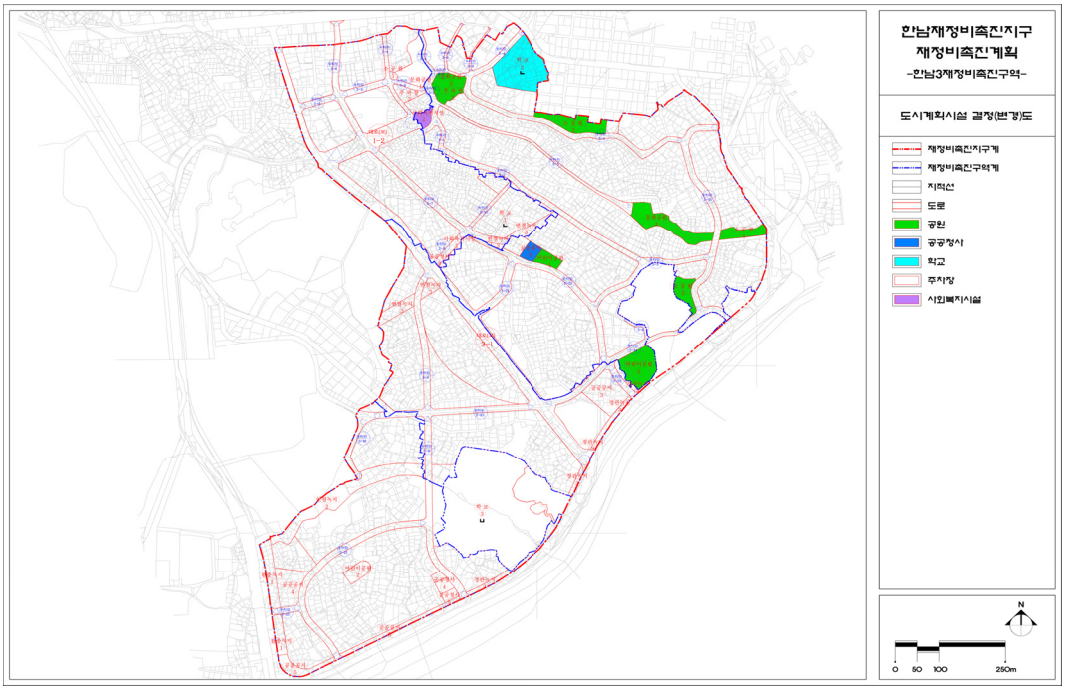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4호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 8. 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97호(2016. 4. 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일자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내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녹지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 140번지 일대

3. 면 적 : 713,416㎡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5) 및 강동구 푸른도시과(☎ 3425-644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일자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지구별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계	713,416	56,294	18	3,729.9	4,310.7	285	713,416	58,051	18	4,004.9	4,884.7	283	
소 계	142,487	32,661	14	3,416.9	3,997.7	250	142,487	38,057	15	3,695.9	4,575.7	255	
생태공원지구	53,291	9,157	5	827.9	1,408.7	76	53,291	9,157	5	827.9	1,408.7	76	
배수지지구	19,056	7,274	2	197	197	85	19,056	7,274	2	197	197	85	
화훼원지구	3,887	1,228	3	410	410	9	3,887	1,228	3	410	410	9	
약수터지구	15,253	1,655				4	–	–					폐지
방아다리지구	51,000	13,347	4	1,982	1,982	76	66,253	20,398	5	2,261	2,560	85	
시설지구 외	570,929	23,633	4	313	313	35	570,929	19,994	3	309	309	28	

공원시설구역률	(142,487 ÷ 713,416) × 100% = 19.97%	(142,487 ÷ 713,416) × 100% = 19.97%	법정 20%이하
시 설 률	(56,294 ÷ 713,416) × 100% = 7.89%	(58,051 ÷ 713,416) × 100% = 8.14%	법정 20%이하
건 폐 율	(3,729.9 ÷ 713,416) × 100% = 0.52%	(4,004.9÷ 713,416) × 100% = 0.56%	법정 4%이하

도시계획시설(일자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지구별조서

가. 총괄표(위치: 강동구 둔촌동 산 140번지 일대)

○ 방아다리지구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m2)	연면적(m2)				동수(동)	바닥면적(m2)	연면적(m2)		
계	51,000	13,347	4	1,982	1,982	76	66,253	20,398	5	2,261	2,560	85	
소 계	5,205	5,205					7,647	7,647					
도 로	4,570	4,570					7,012	7,012					
광 장	635	635					635	635					
조경시설	979	979				1	3,656	3,656				1	
휴양시설	45	45				15	145	145				23	
운동시설	3,822	3,822	2	1,685	1,685	3	3,822	3,822	2	1,685	1,685	3	
교양시설	364	364	1	163	163		2,016	2,016	1	438	737		
편익시설	2,932	2,932	1	134	134	57	3,112	3,112	2	138	138		
관리시설												58	
녹지 및 기타	37,653						45,855						

공원시설구역 내 시 설 률	(13,347 ÷ 51,000) × 100% = 26.17%	(20,398 ÷ 66,253) × 100% = 30.79%	법정 40%이하
건 폐 율	(1,982 ÷ 51,000) × 100% = 3.89%	(2,261 ÷ 66,253) × 100% = 3.41%	법정 8%이하

나. 시설조서

○ 방아다리지구

구분	시설명	변경전 부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m2)	변경전 시설면적(m2)	변경전 구조	변경전 규모	변경전 건축물(m2)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m2)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m2)	변경후 시설면적(m2)	변경후 구조	변경후 규모	변경후 건축물(m2)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m2)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합 계				51,000	13,347		4동	1,982	1,982	76			66,253	20,398		5동	2,261	2,560	85	증15,253㎡
기반시설	소 계			5,205	5,205								7,647	7,647						증 2,442㎡
	도 로			4,570	4,570								7,012	7,012						증 2,442㎡
	광 장	가	3개소	635	635						가	3개소	635	635						
		가-1	둔촌동 산124	(18)	(18)						가-1	둔촌동 산124	(18)	(18)						
		가-2	둔촌동 산125	(379)	(379)						가-2	둔촌동 산125	(379)	(379)						
		가-3	둔촌동 573	(238)	(238)						가-3	둔촌동 573	(238)	(238)						
조경시설	소 계			979	979					1			3,656	3,656					1	증2,677㎡
	계 류	나	둔촌동 산119	979	979						나	둔촌동 산119	979	979						
	못										다	둔촌동 산119	1,318	1,318						증1,318㎡
											다-1	둔촌동 산119	(648)	(648)						(증648㎡)
											다-2	둔촌동 565	(670)	(670)						(증670㎡)
	관상용식수대										라	둔촌동 산119	1,359	1,359						증1,359㎡
	파 고 라	①	1개소			목재				1	①	1개소			목재				1	
휴양시설	소 계			45	45					15			145	145					23	증100㎡
	쉼 터	다	둔촌동 산125	45	45						마	3개소	145	145						증100㎡
											마-1		(45)	(45)						
											마-2		(23)	(23)						
											마-3		(77)	(77)						
	등의자	②	12개소							12	②	18개소							18	증6기
	평의자	③	3개소							3	③	3개소							3	
	야외탁자										④	2개소							2	증2기
운동시설	소 계			3,822	3,822		2동	1,685	1,685	3			3,822	3,822		2동	1,685	1,685	3	
	실외배드민턴장	라	둔촌동 산125	705							바	둔촌동 산125	705							
	실내배드민턴장	(1)	둔촌동 산125	1,175			1동	1,175	1,175		(1)	둔촌동 산125	1,175			1동	1,175	1,175		
	실내체육관	(2)	둔촌동 산141	510			1동	510	510		(2)	둔촌동 산141	510			1동	510	510		
	농 구 장	마	둔촌동 산125	342							사	둔촌동 산125	342							
	X-GAME장	바	둔촌동 산125	1,090							아	둔촌동 산125	1,090							
	역기올리기	④	2개소							2	⑤	2개소							2	
	윗몸일으키기	⑤	1개소							1	⑥	1개소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m2)	건축물(m2) 연면적(m2)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m2)	건축물(m2) 연면적(m2)	공작물(기)	
	소계			364	364		1동	163	163				2,016	2,016		2동	438	727		증1,652㎡
교양시설	야외무대	사	둔촌동 산125	201	201						자	둔촌동 산125	201	201						
	온실	(3)	둔촌동 562	163	163		1동	163	163											폐지 감 163㎡
	문화회관										(3)	둔촌동 산119	1,815	1,815		1동	438	737		증1,815㎡
	소 계			2,932	2,932		1동	134	134				3,112	3,112		2동	138	138		증17㎡
편익시설	주 차 장	아	3개소	2,798	2,798						차	3개소	2,961	2,961						
		아-1	둔촌동 산125	(656)	(656)						차-1	둔촌동 산125	(656)	(656)						
		아-2	둔촌동 6-13	(752)	(752)						차-2	둔촌동 6-13	(752)	(752)						
		아-3	둔촌동 562	(1,390)	(1,390)						차-3	둔촌동 562	(1,553)	(1,553)						증163㎡
	화 장 실	(4)	둔촌동 산125	134	134		1동	134	134		(4)	2개소	151	151		2동	138	138		증17㎡
											(4)-1	둔촌동 산125	(134)	(134)		1동	(134)	(134)		
											(4)-2	둔촌동 산119	(17)	(17)		1동	(4)	(4)		증17㎡
	소 계									57									58	
관리시설	안 내 판	⑥	4개소							4	⑦	5개소							5	증1기
	조 명 등	⑦	46개소							46	⑧	46개소							46	
	쓰레기분리수거함	⑧	7개소							7	⑨	7개소							7	
녹지 및 기타			37,653									45,855								증8,202㎡

다. 도로조서

○ 방아다리 지구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657.0)	(4,570)				
변경					2,403	7,012				
당초	소로	3	1	3.0	137.0	411	진입로	둔촌동 6-14	둔촌동 산14-1	
당초	산책로	3	1	2.0	242.0	484	산책로	둔촌동 산11-3	둔촌동 산13-1	
당초			2	3.0	(20.0)	(60.0)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25	
변경				3.0	86.0	258.0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당초			3	3.0	290.0	87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4	3.0	114.0	342	산책로	둔촌동 산124	둔촌동 산125	
			5	2.5	16.0	4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6	3.0	106.0	318	산책로	둔촌동 산124	둔촌동 산125	
			7	3.0	29.0	87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8	3.0	230.0	69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9	3.0	22.0	66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571	
			10	3.0	236.0	708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11	2.0	7.0	14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12	2.0	76.0	152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13	2.0	24.0	48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14	3.0	75.0	252	산책로	둔촌동 6-13	둔촌동 6-12	
			15	1.2	15.0	18	산책로	둔촌동 6-5	둔촌동 6-5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3	16	2.5	10.0	25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17	1.5	8.0	12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신설			18	3.0	377.0	1,131	산책로	둔촌동 565	둔촌동 565	
			19	36.5	74.0	259	산책로	둔촌동 565	둔촌동 565	
			20	3.0	81.0	243	산책로	둔촌동 565	둔촌동 565	
			21	2.0	121.0	242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22	2.0	48.0	96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23	2.0	45.0	90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24	2.0	43.0	86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25	2.5	28.0	70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도시계획시설(일자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지구별조서

가. 총괄표(위치: 강동구 둔촌동 산140번지 일대)

○ 시설지구 외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계		570,929	23,633	4	313	313	35	570,929	19,994	3	309	309	28	
기반시설	소 계	16,461	16,461					15,497	15,378					
	도 로	13,350	13,350					12,386	12,267					
	광 장	3,111	3,111					3,111	3,111					
조경시설		3,243	3,243				4	1,460	1,460				2	
교양시설		670	670					–	–					
휴양시설		2,540	2,540				20	2,382	2,382				16	
편익시설		420	420	3	14	14		475	475	2	10	10		
관리시설		299	299	1	299	299	11	299	299	1	299	299	10	
녹지 및 기타		547,296						550,935						

공원시설구역 내 시 설 률	(23,633 ÷ 570,929) × 100% = 4.14%	(19,994 ÷ 570,929) × 100% = 3.50	법정 20%이하
건 폐 율	(313 ÷ 570,929) × 100% = 0.055%	(309 ÷ 570,929) × 100% = 0.05%	법정 4%이하

나. 시설조서

○ 시설지구 외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m2)	건축물(m2) 연면적(m2)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m2)	건축물(m2) 연면적(m2)	공작물(기)	
합 계				570,929	23,633		4동	313	313	35			570,929	19,994		3동	309	309	28	감3,536㎡
기반시설	소 계			16,461	16,461								15,497	15,378						감1,083㎡
	도 로			13,350	13,350								12,267	12,267						감1,083㎡
	광 장	가	5개소	3,111	3,111						가	5개소	3,111	3,111						
		가-1	둔촌동 산12	(312)	(312)						가-1	둔촌동 산12	(312)	(312)						
		가-2	둔촌동 산11-6	(710)	(710)						가-2	둔촌동 산11-6	(710)	(710)						
		가-3	둔촌동 산14-3	(528)	(528)						가-3	둔촌동 산14-3	(528)	(528)						
		가-4	둔촌동 562	(663)	(663)						가-4	둔촌동 562	(663)	(663)						
		가-5	둔촌동 562	(898)	(898)						가-5	둔촌동 562	(898)	(898)						
조경시설	소 계			3,243	3,243					4			1,460	1,460					2	감1,783㎡
	야생초화원	나	4개소	1,236	1,236						나	4개소	1,236	1,236						
		나-1	길동 산9	(212)	(212)						나-1	길동 산9	(212)	(212)						
		나-2	길동 산8	(351)	(351)						나-2	길동 산8	(351)	(351)						
		나-3	길동 산7-2	(363)	(363)						나-3	길동 산7-2	(363)	(363)						
		나-4	길동 1	(310)	(310)						나-4	길동 1	(310)	(310)						
	계류										다	2개소	224	224						증224㎡
											다-1	둔촌동 산125	(71)	(71)						
											다-2	둔촌동 산125	(153)	(153)						
	연 못	다	둔촌동 565	648	648															폐지 감648㎡
	관상용식수대	라	둔촌동 산125	1,359	1,359															폐지 감1,359㎡
	초 정	①	1개소							1										폐지
	파 고 라	②	3개소							3	①	2개소							2	공작물 감1기
교양시설	소 계			670	670								-	-						감670㎡
	못(영농체험장)	마	둔촌동 565	670	670															폐지 감67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기)	
								바닥면적(m2)	연면적(m2)								바닥면적(m2)	연면적(m2)		
휴양시설	소 계			2,540	2,540						20		2,382	2,382					16	감 158㎡
	쉼 터	바	4개소	172	172						라	1개소	14	14						감 158㎡
		바-1	둔촌동 565	(23)	(23)															
		바-2	둔촌동 565	(77)	(77)															
		바-3	둔촌동 565	(58)	(58)															
		바-4	둔촌동 산11-6	(14)	(14)						라-1	둔촌동 산11-6	(14)	(14)						
	캠 핑 장	사	둔촌동 562	2,368	2,368						마	둔촌동 562	2,368	2,368						
	평의자		③	12개소						12	②	16개소							16	공작물 증4기
	등의자		④	6개소						6										폐지
	야외탁자		⑤	2개소						2										폐지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m2)	건축물(m2) 연면적(m2)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m2)	건축물(m2) 연면적(m2)	공작물(기)	
편익시설	소 계			420	420		3동	14	14				475	475		2동	10	10		증 55㎡
	화 장 실	(1)	3개소	69	69		3동	14	14		(1)	2개소	52	52		2동	10	10		감 17㎡
		(1)-1	둔촌동 산86	(22)	(22)		1동	(6)	(6)		(1)-1	둔촌동 산86	(22)	(22)		1동	(6)	(6)		
		(1)-2	둔촌동 산119	(17)	(17)		1동	(4)	(4)											폐지
		(1)-3	둔촌동 산125	(30)	(30)		1동	(4)	(4)		(1)-2	둔촌동 산125	(30)	(30)		1동	(4)	(4)		
	약 수 터	⑥	2개소	132	132						③	3개소	204	204						
		⑥-1	둔촌동 산153	(72)	(72)						③-1	둔촌동 산153	(72)	(72)						
		⑥-2	둔촌동 산11-6	(60)	(60)						③-2	둔촌동 산11-6	(60)	(60)						
											③-2	둔촌동 산125	(72)	(72)						증 72㎡
	음 수 대	⑦	둔촌동 562	219	219						④	둔촌동 562	219	219						
관리시설	소 계			299	299		1동	299	299	11			299	299		1동	299	299	10	
	관 리 소 외	아	둔촌동 562	299	299		1동	299	299		바	둔촌동 562	299	299		1동	299	299		
	안 내 판	⑧	10개소							10	⑤	9개소							9	공작물 감1기
	약수터저수조	⑨	1개소							1	⑥	1개소							1	
녹지 및 기타					547,296								550,935							증 3,639㎡

다. 도로조서

○ 시설지구 외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5,085.0	12,267				
	소 로	계			508.0	2,576				
		3 류	1	6.0	272.0	1,632	진입로	둔촌동 산152	둔촌동 산143	
			2	4.0	236.0	944	진입로	둔촌동 산18-1	둔촌동 산18-30	
당 초	산책로	계			4,577.0	9,691				
			1	2.0	300.0	600	산책로	길동 산5-2	길동 산7-3	
			2	1.5	42.0	63	산책로	길동 산5-2	길동 산5-2	
			3	1.5	44.0	66	산책로	길동 산6	길동 산7-2	
			4	1.5	38.0	57	산책로	길동 산8	길동 산8	
			5	1.5	30.0	45	산책로	길동 산8	길동 산8	
			6	1.5	30.0	45	산책로	길동 산9	길동 산7-3	
			7	1.5	266.0	399	산책로	둔촌동 557	둔촌동 산83	
			8	2.0	315.0	630	등산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562	
당초			9	2.0	56.0	112	산책로	둔촌동 산143	둔촌동 산143	
변경			9	3.0	210.0	514	산책로	둔촌동 산143	둔촌동 산133	
당초			10	2.0	21.0	42	등산로	둔촌동 산153	둔촌동 산143	
당초			11	2.0	131.0	262	산책로	둔촌동 산153	둔촌동 산153	
변경			11	2.0	287.0	574	산책로	둔촌동 산153	둔촌동 산125	
당초			12	2.0	261.0	522	산책로	둔촌동 6-12	둔촌동 산11-6	
			13	2.0	117.0	234	등산로	둔촌동 산11-6	둔촌동 산11-6	
			14	2.0	85.0	170	등산로	둔촌동 산11-6	둔촌동 산11-6	
			15	2.0	242.0	484	등산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4-3	
			16	4.0	66.0	264	등산로	둔촌동 산83	둔촌동 558-7	
			17	2.0	54.0	108	등산로	둔촌동 산100	둔촌동 산100	
			18	3.0	54.0	162	산책로	둔촌동 산94	둔촌동 산94	
당초			19	2.0	193.5	387	등산로	둔촌동 산152	둔촌동 산143	
변경			19	2.0	270.5	541	등산로	둔촌동 산152	둔촌동 산152	
당초			20	2.0	9.0	18	등산로	둔촌동 산12	둔촌동 산12	
			21	2.0	48.0	96	등산로	둔촌동 산18-18	둔촌동 산18-18	
			22	2.0	339.0	678	등산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8-1	
			23	2.0	82.0	164	등산로	둔촌동 산18-30	둔촌동 산18-30	

구 분	등 급	류 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 초	산책로		24	3.0	19.0	57	산책로	둔촌동 562	둔촌동 562	
			25	5.0	19.0	95	산책로	둔촌동 562	둔촌동 562	
			26	3.0	29.0	87	산책로	둔촌동 562	둔촌동 562	
			27	3.0	295.0	885	산책로	둔촌동 562	둔촌동 562	
			28	2.0	47.0	94	산책로	둔촌동 562	둔촌동 562	
			29	2.0	54.0	108	산책로	둔촌동 562	둔촌동 562	
			30	2.0	47.0	94	산책로	둔촌동 562	둔촌동 562	
			31	2.0	39.0	78	산책로	둔촌동 562	둔촌동 562	
			32	6.0	51.0	306	산책로	둔촌동 562	둔촌동 562	
당초			33	2.5	212.0	530	산책로	둔촌동 562	둔촌동 산119	
변경				2.5	184.0	460	산책로	둔촌동 562	둔촌동 산119	
당초			34	3.0	377.0	1131	산책로	길동 산49	길동 산49	
폐지				–	–	–	–	–	–	
당초			35	3.5	74.0	259	산책로	길동 산49	둔천동 565	
폐지				–	–	–	–	–	–	
당초			36	3.0	81.0	243	산책로	둔촌동 565	둔촌동 565	
폐지				–	–	–	–	–	–	
당초			37	2.0	121.0	242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폐지				–	–	–	–	–	–	
당초			38	2.0	48.0	96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폐지				–	–	–	–	–	–	
당초			39	2.0	45.0	90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폐지				–	–	–	–	–	–	
당초			40	2.0	43.0	86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폐지				–	–	–	–	–	–	
당초			41	3.0	66.0	198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폐지				–	–	–	–	–	–	
당초			42	3.0	54.0	162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13	
폐지				–	–	–	–	–	–	
당초			43	1.5	14.0	21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변경				1.5	28.0	42	산책로	둔촌동 산113	둔촌동 산125	
당초			44	1.5	26.0	39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변경				1.5	26.0	39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당초			45	2.0	83.0	166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변경			34	2.0	83.0	166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당초			46	2.0	49.5	99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변경			35	2.0	49.5	99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신설			36	3.0	234.0	527	산책로	둔촌동 산133	둔촌동 산125	
			37	2.0	52.0	78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전체조성계획(변경전)

일자산도시자연공원

○ 시설지구율 : 19.97% (법정 20%)
○ 시 설 율 : 7.89% (법정 20%)
○ 건 폐 율 : 0.52% (법정 4%)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계		713,416	56,294
공원시설지구	소 계	142,487	32,661
	생태공원지구	53,291	9,157
	배수지지구	19,056	7,274
	화훼원지구	3,887	1,228
	약수터지구	15,253	1,655
	방아다리지구	51,000	13,347
시설지구 외		570,929	23,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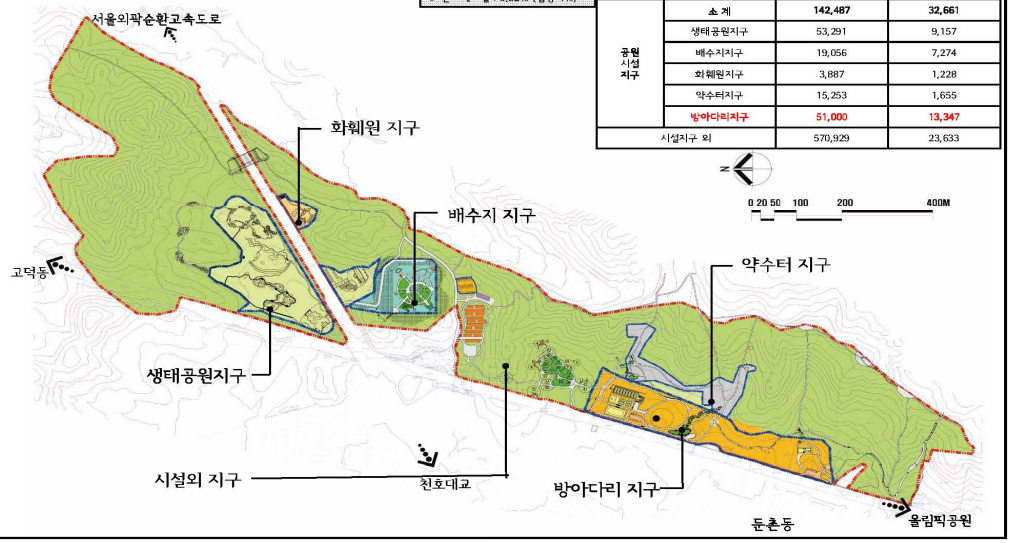

전체조성계획(변경후)

일자산도시자연공원

○ 시설지구율 : 19.97% (법정 20%)
○ 시 설 율 : 8.14% (법정 20%)
○ 건 폐 율 : 0.56% (법정 4%)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계		713,416	58,051
공원시설지구	소 계	142,487	38,057
	생태공원지구	53,291	9,157
	배수지지구	19,056	7,274
	화훼원지구	3,887	1,228
	약수터지구		
	방아다리지구	66,253	20,398
시설지구 외		570,929	19,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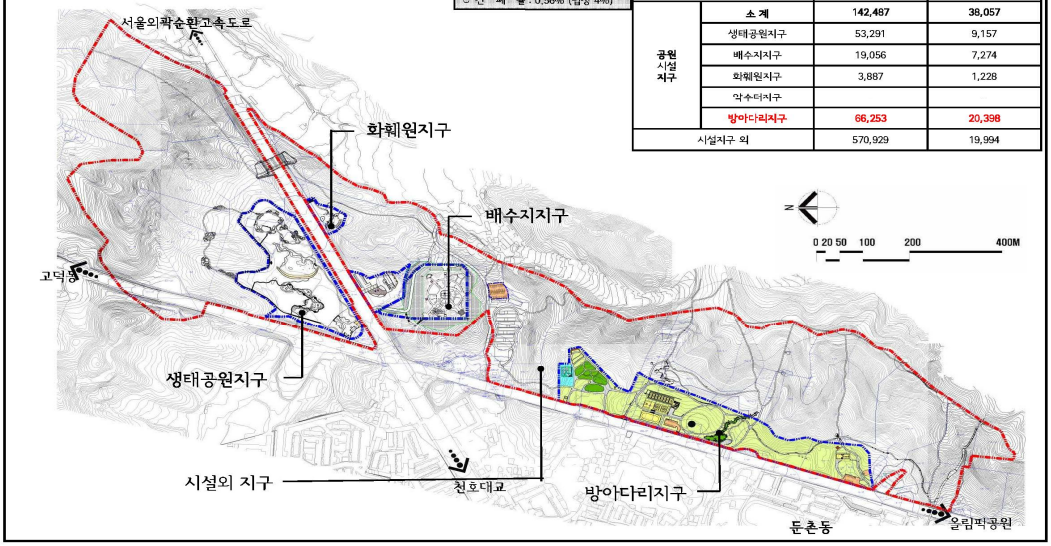

조성계획(변경전)

방아다리지구

일자산도시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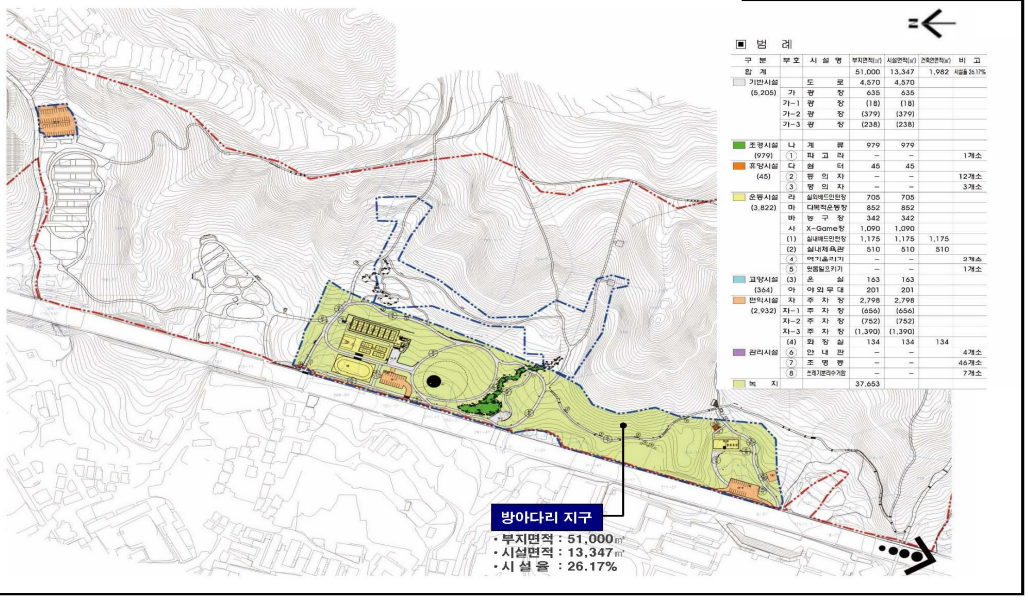

조성계획(변경후)

방아다리지구

일자산도시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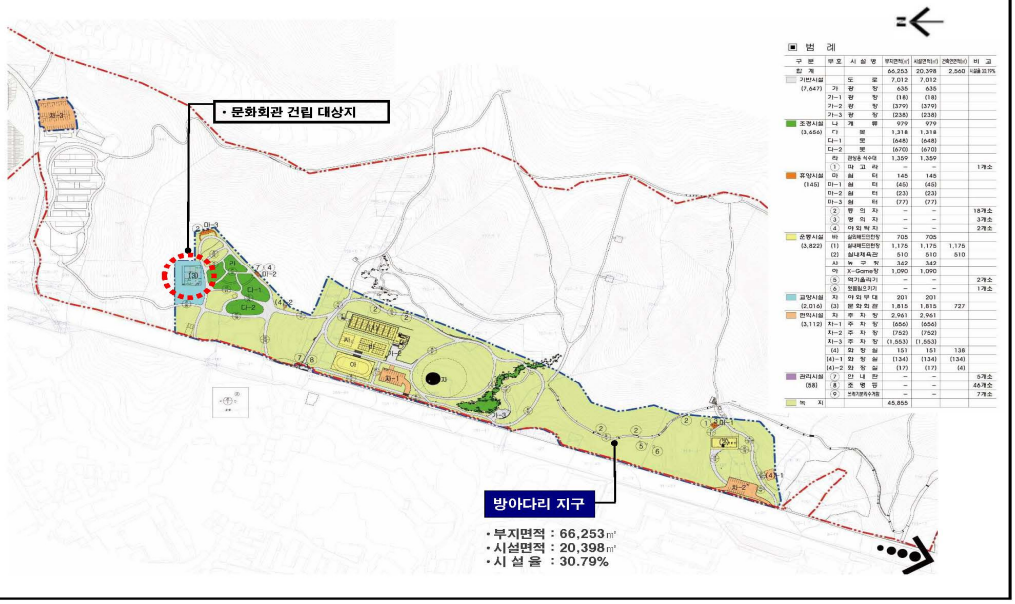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68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유)신안엔알이 등 863명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18. 7. 27 ~ '18. 8. 10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8. 8.11. ~ 2018. 8. 22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50%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5, 팩스번호 : 02-2133-4904
   ※ 인터넷(http://cartax.seoul.go.kr)통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공시송달(사전통지서)명단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 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	08저9076	(유)신안엔알이	2018-06-26	전라남도 목포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	08저9076	(유)신안엔알이	2018-06-26	전라남도 목포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3	52소6443	(주)글로벌씨티	2018-06-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4	90로9734	(주)금양인터내셔날	2018-06-29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5	90로9734	(주)금양인터내셔날	2018-06-27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	15하0336	국민코리아스틸	2018-06-09	대구광역시	중화동 메디렌	전용차로위반	50,000
7	03주6744	(주)넥스트지티브이	2018-06-2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8	42거8957	(주)다온정보	2018-06-0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9	15주6692	(주)대명미트	2018-06-23	경기도 시흥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0	15주6692	(주)대명미트	2018-06-23	경기도 시흥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1	25너0542	(주)덱스엔터테인먼	2018-06-23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2	25너0542	(주)덱스엔터테인먼	2018-06-2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3	25너0542	(주)덱스엔터테인먼	2018-06-2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4	25너0542	(주)덱스엔터테인먼	2018-06-29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5	38하7653	(주)동아에스티	2018-05-28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	전용차로위반	50,000
16	59하1652	(주)라뷰	2018-06-04	대구광역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7	59하1652	(주)라뷰	2018-06-04	대구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18	60마6666	(주)력키코리아	2018-06-24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	06조1115	(주)리앤메이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0	35로0619	(주)리테일코리아	2018-06-26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1	40우9197	(주)신일	2018-06-21	대구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2	91더3663	(주)씨디에이	2018-06-25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3	41하8768	(주)씨엔씨	2018-06-22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24	69마4023	(주)아이엠에스커뮤	2018-06-28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25	34루2645	(주)에스지테크놀러	2018-06-29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6	07모3501	(주)에이치와이국제	2018-06-0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7	88머3623	(주)영은시	2018-06-30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8	84주8256	(주)올댓미디어	2018-06-29	경기도 광주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29	03하3054	(주)우송렌트카	2018-06-27	경기도 안양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0	82우8076	(주)울프미디어	2018-06-24	경기도 고양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31	11수0304	(주)원진	2018-06-21	부산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32	11수0304	(주)원진	2018-06-21	부산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33	11수0304	(주)원진	2018-06-21	부산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34	59너5046	(주)이니스오름	2018-06-29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5	05무4830	(주)제이디스포츠	2018-06-2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36	36구5350	(주)지알피	2018-06-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37	63호6314	(주)청담코디센	2018-05-29	서울특별시	중화동 메디렌	전용차로위반	50,000
38	17저2559	(주)큰솔애드컴	2018-06-2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9	53보1726	(주)파미르산업	2018-06-25	경기도 안산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40	93조4360	(주)한샘	2018-06-2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1	경기76사4198	(주)한우리관광여행사	2018-06-22	경기도 김포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60,000
42	55라8651	농업회사법인주식회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3	38하5477	동아에스티(주)	2018-06-04	경기도 남양주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44	10호2111	리라렌터카주식회사	2018-06-24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5	10호2111	리라렌터카주식회사	2018-06-24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6	81거3828	만강민물장어직매장	2018-06-24	경기도 김포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47	41우6820	비에프홀딩스(주)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8	33허2063	삼영렌트카(주)	2018-06-21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9	69가6411	세아라인주식회사	2018-06-22	서울특별시	삼성교~삼성역	전용차로위반	50,000
50	서울34사2228	신화기업운수주식회	2018-06-22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51	04가9761	에이프로테크주식회	2018-05-31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2	16다0519	유에이앤코리아(주)	2018-06-2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3	39호5973	유한회사한국교육컨	2018-06-1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4	09호3276	제이엔씨	2018-05-2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5	96버7594	주식회사노가다	2018-06-21	경기도 용인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6	83노2636	주식회사덕정	2018-06-22	경기도 김포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7	92고5934	주식회사바론테크	2018-06-29	경기도 고양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8	62하4273	주식회사발란타인코	2018-05-28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9	68호9076	주식회사브이아이솔	2018-06-0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0	41노1326	주식회사비텍아이앤	2018-06-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61	39러8004	주식회사스타엔씨	2018-06-24	경기도 수원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2	39러8004	주식회사스타엔씨	2018-06-28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3	39러8004	주식회사스타엔씨	2018-06-22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4	39러8004	주식회사스타엔씨	2018-06-28	경기도 수원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5	39러8004	주식회사스타엔씨	2018-06-24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6	15고0159	주식회사엘케이상사	2018-06-07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7	56라5896	주식회사우담건축사	2018-06-21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8	56라5896	주식회사우담건축사	2018-06-2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9	20하5790	주식회사위메인렌터	2018-06-24	경기도 성남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70	53다8159	주식회사준인터내셔	2018-06-29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1	87머6989	청명이엔지주식회사	2018-06-2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2	36버2746	케이비캐피탈주식회	2018-06-28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3	37호6761	케이원솔루션(주)	2018-06-0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74	26하8365	케임브리지수학학원	2018-06-07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5	25허4421	프롬텍	2018-06-04	대전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6	서울56나1111	횡해전설-주	2018-06-27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77	30도4018	A**	2018-06-2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78	32버5636	C**	2018-06-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79	69라9539	C**	2018-06-24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0	15구6122	C**	2018-06-24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1	08두6197	D**	2018-06-29	인천광역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82	08하1684	E**	2018-06-02	부산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83	02머1370	F**	2018-06-2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84	61모3074	H**	2018-06-2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85	61모3074	H**	2018-06-22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86	51우8953	H**	2018-06-22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87	51우8953	H**	2018-06-29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88	21어1094	I**	2018-06-28	경기도 이천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89	07거3788	J**	2018-06-25	경기도 포천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90	07거3788	J**	2018-06-27	경기도 포천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91	35노9271	J**	2018-06-21	충청남도 아산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92	95소0665	J**	2018-06-22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93	52두7062	J**	2018-06-27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94	48나3908	J**	2018-06-29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95	32루7044	J**	2018-06-26	충청남도 천안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96	52노4608	J**	2018-06-25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97	01조3052	K**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98	67구7437	K**	2018-06-22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99	10버2427	K**	2018-06-28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100	52로6330	L**	2018-06-29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101	42오7044	L**	2018-06-27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102	17너5022	L**	2018-06-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03	17너5022	L**	2018-06-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04	58두0123	L**	2018-06-27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05	97노7223	L**	2018-06-26	경기도 안산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106	21마7838	M**	2018-06-22	전라북도 군산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107	51호8531	P**	2018-06-0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08	37두4402	P**	2018-06-24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9	23오6298	P**	2018-06-29	경기도 시흥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110	48저1115	Q**	2018-06-27	경기도 수원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111	67하6661	T**	2018-06-10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12	42머7237	T**	2018-06-25	전라남도 영암군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13	42머7237	T**	2018-06-25	전라남도 영암군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14	49주7029	T**	2018-06-23	광주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15	52소2152	V**	2018-06-24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116	29루8392	Y**	2018-06-28	충청남도 당진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17	16소0868	Z**	2018-06-28	대구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118	16소0868	Z**	2018-06-28	대구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119	68러3913	Z**	2018-06-24	경상북도 고령군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20	서울32사7443	갈**	2018-06-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샛강	전용차로위반	50,000
121	61고2156	강**	2018-06-22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22	39노6334	강**	2018-06-26	충청남도 천안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23	22도2880	강**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24	69우1480	강**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25	26저9010	강**	2018-06-27	인천광역시	상계동 성지사	전용차로위반	50,000
126	45조3864	강**	2018-06-25	서울특별시	육사삼거리~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27	58어9604	강**	2018-06-24	경기도 성남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128	80마3512	강**	2018-06-23	충청남도 천안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29	47부1090	강**	2018-06-23	서울특별시	여의도공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30	53마0185	강**	2018-06-23	서울특별시	여의도공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31	66조4485	강**	2018-06-21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32	47무6243	강**	2018-06-22	경기도 구리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33	34버5604	강**	2018-06-25	서울특별시	대치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4	46호6000	강**	2018-05-29	충청남도 아산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5	25버1091	강**	2018-06-29	경상북도 구미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36	10거0272	고**	2018-06-26	전라북도 익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37	68수9262	고**	2018-06-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138	02누0476	고**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39	21모3986	고**	2018-06-22	경기도 수원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40	04오0824	고**	2018-06-25	경기도 고양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41	83마6320	고**	2018-06-21	경기도 파주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42	42주2330	고**	2018-06-21	경기도 안산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43	20로2652	곽**	2018-06-25	경기도 평택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44	27가7404	구**	2018-06-25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145	58우7075	권**	2018-06-21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46	56보3921	권**	2018-06-27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47	08버1760	권**	2018-06-2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48	52하4312	권**	2018-05-26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49	06누3251	권**	2018-06-22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50	49도0853	권**	2018-06-2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51	06오8738	권**	2018-06-2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52	02로5758	권**	2018-06-30	전라남도 순천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153	65오3721	권**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54	36너7173	권**	2018-06-26	전라남도 목포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55	60부9858	권**	2018-06-23	경기도 화성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56	89나0122	기**	2018-06-29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57	63러8432	길**	2018-06-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158	05머1494	길**	2018-06-22	전라남도 여수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59	서울42가7651	김**	2018-06-2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60	63어5563	김**	2018-06-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61	서울89자7992	김**	2018-06-21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N	전용차로위반	50,000
162	11마9273	김**	2018-06-30	인천광역시	잠실동 잠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63	62구5408	김**	2018-06-22	제주특별자치도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64	17마1544	김**	2018-06-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165	서울31사4428	김**	2018-06-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166	61조4367	김**	2018-06-2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67	60라0802	김**	2018-06-22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68	38다7913	김**	2018-06-30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69	38다7913	김**	2018-06-30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170	38다7913	김**	2018-06-23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71	38다7913	김**	2018-06-23	경기도 성남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72	38다7913	김**	2018-06-23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73	38다7913	김**	2018-06-30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74	38다7913	김**	2018-06-30	경기도 성남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75	서울32바8562	김**	2018-06-18	서울특별시	잠실주공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76	91노6401	김**	2018-06-30	경기도 이천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77	69거9288	김**	2018-06-22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78	13버9780	김**	2018-06-22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179	31누0114	김**	2018-06-22	부산광역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180	11저9107	김**	2018-06-21	강원도 속초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81	50우3639	김**	2018-06-2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82	서울31바2148	김**	2018-06-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샛강	전용차로위반	50,000
183	53도7222	김**	2018-06-21	경기도 안양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84	28라0931	김**	2018-06-28	경기도 수원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185	20루3586	김**	2018-06-27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86	80저8516	김**	2018-06-2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7	54서1518	김**	2018-06-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88	04부9350	김**	2018-06-27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89	67우7633	김**	2018-06-30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190	56우0515	김**	2018-06-25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91	24가1952	김**	2018-06-22	경기도 평택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192	23나3506	김**	2018-06-30	서울특별시	여의도공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93	16가4464	김**	2018-06-24	충청남도 아산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194	46노7433	김**	2018-06-29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195	08오6411	김**	2018-06-25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96	23부0785	김**	2018-06-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197	04저3307	김**	2018-06-27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98	38조6157	김**	2018-06-28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199	30루0450	김**	2018-06-2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00	59마1281	김**	2018-06-22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01	56다9741	김**	2018-0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02	93러0150	김**	2018-06-25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203	13수1686	김**	2018-06-29	경기도 파주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04	67하3626	김**	2018-06-01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205	37모7886	김**	2018-06-28	경기도 남양주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206	11수9237	김**	2018-06-2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07	52루2154	김**	2018-06-24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8	61마8368	김**	2018-06-29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09	24오5692	김**	2018-06-22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210	42서2851	김**	2018-06-21	충청남도 서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11	46하5772	김**	2018-06-19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12	20고7713	김**	2018-06-25	경기도 안산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13	서울85자5592	김**	2018-06-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14	서울81사7269	김**	2018-06-22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60,000
215	12라0303	김**	2018-06-23	서울특별시	여의도공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16	17누2547	김**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17	63고0113	김**	2018-06-2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18	69루6260	김**	2018-06-25	충청북도 청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19	16고4803	김**	2018-06-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샛강	전용차로위반	50,000
220	84누4700	김**	2018-06-21	경기도 부천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21	서울31바3254	김**	2018-06-29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222	40거9024	김**	2018-06-21	경기도 광명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23	01마8417	김**	2018-06-26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224	60고8172	김**	2018-06-27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25	96조7892	김**	2018-06-2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26	06로4170	김**	2018-06-28	경기도 안산시	무악동 독립문	전용차로위반	50,000
227	32우0340	김**	2018-06-22	광주광역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228	42수2723	김**	2018-06-29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29	66나5958	김**	2018-06-28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30	15누1335	김**	2018-06-22	경기도 수원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31	33보1552	김**	2018-06-22	경기도 오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32	16머3504	김**	2018-06-24	경기도 부천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233	서울85자5146	김**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34	55모6679	김**	2018-06-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35	63가2181	김**	2018-06-25	인천광역시	대치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6	90조8899	김**	2018-06-21	경기도 포천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237	서울14다6807	김**	2018-06-25	경기도 의정부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60,000
238	60저3031	김**	2018-06-2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39	12도0428	김**	2018-06-25	경상북도 칠곡군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240	63마6070	김**	2018-06-25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41	46구0131	김**	2018-06-22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42	서울31자1660	김**	2018-06-26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243	16가1370	김**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44	68거6794	김**	2018-06-21	전라북도 전주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45	05우8941	김**	2018-06-23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246	47부6443	김**	2018-06-25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47	16노7095	김**	2018-06-2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48	02저8897	김**	2018-06-24	경기도 고양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49	02저8897	김**	2018-06-24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50	27소0556	김**	2018-06-21	경기도 의정부시	중화동 메디렌	전용차로위반	50,000
251	94조0750	김**	2018-06-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252	31고8106	김**	2018-06-22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3	36라7025	김**	2018-06-23	경기도 파주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254	27오9910	김**	2018-06-21	경기도 시흥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255	32구1696	김**	2018-06-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샛강	전용차로위반	50,000
256	서울31아6924	김**	2018-06-22	경기도 의정부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57	46노9256	김**	2018-06-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58	67무0370	김**	2018-06-22	경상북도 예천군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59	23너5585	김**	2018-06-24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260	36조0828	김**	2018-06-2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61	41보6634	김**	2018-06-25	대전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62	31소0687	김**	2018-06-2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63	39누3006	김**	2018-06-22	경기도 평택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64	54무7405	김**	2018-06-26	경기도 광주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65	18도6947	김**	2018-06-23	충청남도 아산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66	59모1430	김**	2018-06-22	인천광역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267	32주7607	김**	2018-06-21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268	53가4381	김**	2018-06-3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69	29조1218	김**	2018-06-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270	47누0524	김**	2018-06-20	서울특별시	우면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71	19두0124	김**	2018-06-27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72	62무7162	김**	2018-06-26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273	서울31아8175	김**	2018-06-2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74	67부1114	김**	2018-06-2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75	28라0853	김**	2018-06-28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	전용차로위반	50,000
276	22모7293	김**	2018-06-26	경기도 의정부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77	18더6003	김**	2018-06-2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78	24보9382	김**	2018-06-30	서울특별시	천호대교남단(	전용차로위반	50,000
279	17다4048	김**	2018-06-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280	42너9667	김**	2018-06-26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281	16서4137	김**	2018-06-2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82	61가5712	김**	2018-06-26	경상남도 창원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83	33고0839	김**	2018-06-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284	68나6179	김**	2018-0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85	10루0734	김**	2018-06-24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6	58누1092	김**	2018-06-21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87	25주0932	김**	2018-06-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288	66구0314	김**	2018-06-28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289	32라2176	김**	2018-06-21	세종특별자치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90	24러5866	김**	2018-06-22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91	19보2130	김**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92	01조3475	김**	2018-06-21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93	85버2036	김**	2018-06-18	서울특별시	상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4	25주3453	김**	2018-06-26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295	87다6082	김**	2018-06-22	경기도 의왕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96	37노3763	김**	2018-06-23	서울특별시	여의도공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97	32주9836	김**	2018-06-27	경기도 평택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298	서울86자6974	김**	2018-06-2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99	49러8543	김**	2018-06-27	경기도 의왕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300	서울31바7878	김**	2018-06-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301	서울31바2155	김**	2018-06-23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302	48소2652	김**	2018-06-28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303	28호6311	김**	2018-06-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304	64오0534	김**	2018-06-22	대전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05	24더4647	김**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06	94마6370	김**	2018-06-28	인천광역시	상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7	20주9579	김**	2018-06-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08	12거2877	김**	2018-06-25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09	서울31아7582	김**	2018-06-30	경기도 고양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310	47누4371	김**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11	32마1757	김**	2018-06-23	서울특별시	상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2	63노1507	김**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13	07고0856	김**	2018-06-26	강원도 철원군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14	40호8716	김**	2018-05-28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	전용차로위반	50,000
315	62소9582	김**	2018-06-26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16	69서1673	김**	2018-06-27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317	07도0629	김**	2018-06-21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318	67거0385	김**	2018-06-16	경기도 안산시	양재IC~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319	64노5783	김**	2018-06-25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320	서울35바2348	김**	2018-06-29	경기도 의정부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321	54다0177	김**	2018-06-2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22	66보2949	김**	2018-06-23	서울특별시	여의도공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23	58무9320	김**	2018-06-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324	83무7799	김**	2018-06-26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25	69누3348	김**	2018-06-23	서울특별시	여의도공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26	58가1286	김**	2018-06-28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27	25버0957	나**	2018-06-27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328	28누6406	나**	2018-06-2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29	41러5764	나**	2018-06-22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	전용차로위반	50,000
330	41모0406	나**	2018-06-23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331	55서0371	나**	2018-06-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32	23저7651	남**	2018-06-22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333	서울87자4508	남**	2018-06-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334	36로3776	남**	2018-06-21	경기도 부천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35	33더7745	남**	2018-06-27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336	62버8549	노**	2018-0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37	39거1100	노**	2018-06-21	대구광역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338	61무2005	노**	2018-06-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39	36가5770	노**	2018-06-26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40	11구4110	노**	2018-06-28	충청남도 논산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341	42주2038	노**	2018-06-22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42	34부6803	노**	2018-06-26	제주특별자치도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43	46마3394	도**	2018-0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44	66로2754	류**	2018-06-22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45	59서0961	류**	2018-06-05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346	29호5626	마**	2018-06-19	경기도 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47	52버3537	마**	2018-06-25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348	65무1092	명**	2018-06-22	경기도 수원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349	38수7003	문**	2018-06-27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50	02거3354	문**	2018-06-25	서울특별시	상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1	24저9701	문**	2018-06-22	경기도 안양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352	13누5230	문**	2018-06-21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53	39러7913	민**	2018-06-22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54	68호7322	민**	2018-05-3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355	17러6336	민**	2018-06-22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56	33수9701	박**	2018-06-27	경상북도 영주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57	49무1345	박**	2018-06-28	경기도 광주시	종합운동장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58	24너6634	박**	2018-06-22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59	68머1722	박**	2018-06-21	경상남도 김해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360	62러5831	박**	2018-06-29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361	18주8619	박**	2018-06-29	울산광역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362	31도3252	박**	2018-06-2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63	06루5194	박**	2018-06-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	전용차로위반	50,000
364	24서5018	박**	2018-06-21	경기도 안성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65	41주4892	박**	2018-06-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66	25우0130	박**	2018-06-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67	67마2329	박**	2018-06-25	경기도 부천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368	18모1781	박**	2018-06-2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69	20다6100	박**	2018-06-05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370	39조4526	박**	2018-06-26	인천광역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371	81도5249	박**	2018-06-25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72	30노1523	박**	2018-06-24	경기도 용인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373	61하7317	박**	2018-06-02	경기도 안양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374	60우0707	박**	2018-06-22	제주특별자치도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375	60우0707	박**	2018-06-27	제주특별자치도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376	41우7609	박**	2018-06-28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	전용차로위반	50,000
377	09구4166	박**	2018-06-29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78	서울32자5449	박**	2018-06-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379	16우2057	박**	2018-06-2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380	16우2057	박**	2018-06-25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381	16우2057	박**	2018-06-29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382	68소3386	박**	2018-06-25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83	53가7857	박**	2018-06-28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384	경기81자7882	박**	2018-06-22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85	60두2624	박**	2018-06-25	강원도 원주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86	10무8493	박**	2018-06-2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87	66머0440	박**	2018-06-2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388	83가8520	박**	2018-06-28	세종특별자치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389	16수4669	박**	2018-06-25	충청남도 천안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390	31머9469	박**	2018-06-25	경기도 오산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91	24보2257	박**	2018-06-25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92	50고1126	박**	2018-06-25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93	63수2685	박**	2018-06-22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394	45부7641	박**	2018-0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95	25나9124	박**	2018-06-26	서울특별시	NH투자증권 본	전용차로위반	50,000
396	25모1419	박**	2018-06-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97	03노2095	박**	2018-06-2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98	50모2850	박**	2018-06-26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99	42무8372	박**	2018-06-29	경상북도 포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00	80두0798	박**	2018-06-2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401	45라5941	박**	2018-06-28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402	21러0225	박**	2018-06-27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403	34서9503	박**	2018-06-22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04	25주6532	박**	2018-06-2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405	15머7901	박**	2018-06-2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06	07두3249	박**	2018-06-21	세종특별자치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07	38저0280	방**	2018-06-26	경기도 광주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08	88머7972	방**	2018-06-25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09	88머7972	방**	2018-06-2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10	33노0405	배**	2018-06-29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11	30구6486	배**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12	41노7134	배**	2018-06-21	전라북도 전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13	90다1304	배**	2018-06-28	경기도 군포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14	85주3867	배**	2018-06-27	경기도 부천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415	38노7161	배**	2018-06-27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16	13러5065	배**	2018-06-2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417	23모9262	백**	2018-06-27	경기도 수원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418	05모8746	백**	2018-06-22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19	46라6189	백**	2018-06-29	경기도 광주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420	28우2844	백**	2018-06-27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421	56저5277	변**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22	19서0397	변**	2018-06-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423	68서3723	복**	2018-06-22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한국	전용차로위반	50,000
424	81고4224	서**	2018-06-29	경기도 의정부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425	46오4782	서**	2018-06-25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26	38보0487	서**	2018-06-21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27	52호4489	서**	2018-06-1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28	34거8591	서**	2018-06-2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429	31가4544	서**	2018-06-28	대구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30	서울31자2768	설**	2018-06-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431	55부3149	성**	2018-06-21	경기도 광주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432	52서9718	소**	2018-06-27	경기도 오산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33	57오3649	손**	2018-06-2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	전용차로위반	50,000
434	07무3886	손**	2018-06-25	충청북도 충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35	서울81사8125	손**	2018-06-2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36	04두4607	손**	2018-06-20	인천광역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7	서울84사3578	손**	2018-06-25	부산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38	19로8003	송**	2018-06-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39	64더4983	송**	2018-06-22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	전용차로위반	50,000
440	48소3430	송**	2018-06-22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441	34무9394	신**	2018-06-22	경기도 남양주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442	87루5887	신**	2018-06-2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443	64오7872	신**	2018-06-22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444	40다6758	신**	2018-06-29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445	02도8780	신**	2018-06-26	서울특별시	영등포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46	09너0117	신**	2018-06-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47	36호7437	신**	2018-06-10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48	61누2144	신**	2018-06-25	충청남도 아산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49	37너6901	신**	2018-06-22	경기도 광명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50	49노9212	신**	2018-0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51	59로2423	신**	2018-06-2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452	09버2482	신**	2018-06-25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	전용차로위반	50,000
453	23조6895	신**	2018-06-21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54	59소8680	신**	2018-06-30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455	15라8612	신**	2018-06-28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56	40구8155	신**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57	38소6000	신**	2018-06-2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58	38소6000	신**	2018-06-29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59	87머7885	신**	2018-06-23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60	09주7834	신**	2018-06-26	충청북도 청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61	42머9723	심**	2018-06-22	경기도 포천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462	64고0658	심**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63	21부1924	심**	2018-06-23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464	04소8509	안**	2018-06-21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65	07우2518	안**	2018-06-22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66	58우2173	안**	2018-06-25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67	36라1290	안**	2018-06-28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468	52나1600	안**	2018-06-22	경기도 남양주시	수정아파트앞고	전용차로위반	50,000
469	93로7339	안**	2018-06-23	전라북도 정읍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70	91모9094	안**	2018-06-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송	전용차로위반	50,000
471	91모9094	안**	2018-06-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송	전용차로위반	50,000
472	91모9094	안**	2018-06-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송	전용차로위반	50,000
473	91모9094	안**	2018-06-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송	전용차로위반	50,000
474	38부0461	안**	2018-06-22	울산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75	78구1773	안**	2018-06-29	경기도 안산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60,000
476	56보3594	안**	2018-06-22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77	81고3720	양**	2018-06-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	전용차로위반	50,000
478	63모8591	양**	2018-06-26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79	54어8046	양**	2018-06-26	경기도 화성시	우면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0	60허3427	양**	2018-06-15	서울특별시	마천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1	15무8027	양**	2018-06-27	경기도 용인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482	69도5390	양**	2018-06-2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83	40마5132	양**	2018-06-28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84	45수9938	양**	2018-06-24	경기도 오산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485	92조1245	어**	2018-06-26	경기도 의정부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86	67루3112	엄**	2018-06-29	서울특별시	국립현충원~흑	전용차로위반	50,000
487	19소4600	여**	2018-06-28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88	서울34마7233	여**	2018-06-2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89	57마8061	염**	2018-06-21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490	20하8377	염**	2018-05-31	경기도 광주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491	09나0254	염**	2018-06-27	충청남도 천안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92	65보4977	오**	2018-06-26	경기도 안산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493	10수9287	오**	2018-06-25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94	경기84바7990	오**	2018-06-27	제주특별자치도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95	27다6546	오**	2018-06-21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496	62루0772	오**	2018-06-2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497	26거1008	오**	2018-06-2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498	65서1497	오**	2018-06-23	서울특별시	정동사거리~서	전용차로위반	50,000
499	53소6728	오**	2018-06-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500	39보9755	오**	2018-06-29	경상북도 안동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01	22수2287	오**	2018-06-26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02	26로6190	오**	2018-06-30	충청남도 천안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503	46더9315	오**	2018-06-2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504	38모6623	옥**	2018-06-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505	38모6623	옥**	2018-06-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506	62마4832	옥**	2018-06-21	경상남도 사천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507	31보8615	왕**	2018-06-25	서울특별시	상계동 성지사	전용차로위반	50,000
508	48조2583	왕**	2018-06-22	경기도 고양시	갈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9	09조6139	우**	2018-06-28	경기도 부천시	영등포구 한국	전용차로위반	50,000
510	05저3773	원**	2018-06-25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511	97저3824	원**	2018-06-28	서울특별시	상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12	08머5383	원**	2018-06-21	경기도 안성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13	14허4145	원**	2018-06-1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14	55호2480	원**	2018-06-04	경기도 포천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15	35나6554	유**	2018-06-22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16	07주1987	유**	2018-06-28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517	16로3590	유**	2018-06-2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18	02루4574	유**	2018-06-25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519	02루4574	유**	2018-06-2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20	15버6604	유**	2018-06-28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521	서울31자2597	유**	2018-06-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22	35로8368	유**	2018-06-22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523	05러4531	유**	2018-06-29	경상북도 포항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524	30고7754	유**	2018-06-26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25	12조5930	유**	2018-06-27	대구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26	24호5309	유**	2018-06-04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27	19수9369	유**	2018-06-27	광주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28	12너3508	유**	2018-06-28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29	68우4543	유**	2018-06-24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530	23나0351	유**	2018-06-21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31	37저6350	유**	2018-06-26	경기도 안성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32	28가4115	유**	2018-06-25	서울특별시	대치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3	84너7934	유**	2018-06-21	부산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34	35머3138	유**	2018-06-29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35	35머3138	유**	2018-06-28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36	45다5672	유**	2018-0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37	03부9235	윤**	2018-06-2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38	53주3851	윤**	2018-06-2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39	13거9214	윤**	2018-06-29	경기도 파주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40	48구8846	윤**	2018-06-25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541	32하7115	윤**	2018-06-0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42	15누6860	윤**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43	55고3755	윤**	2018-06-27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44	32거5864	윤**	2018-06-27	경기도 광명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545	60버8130	윤**	2018-06-26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46	25누3808	윤**	2018-06-27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47	50거6817	윤**	2018-06-26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548	60더9824	윤**	2018-06-25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49	11나7382	윤**	2018-06-28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550	56라2376	윤**	2018-06-2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51	45도1403	윤**	2018-06-24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552	03오2834	윤**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53	17가6624	윤**	2018-06-29	강원도 원주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54	17가6624	윤**	2018-06-29	강원도 원주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555	38너0808	윤**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56	26오8072	윤**	2018-06-23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557	38조6751	은**	2018-06-26	인천광역시	남대문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58	37루2191	이**	2018-06-22	서울특별시	여의도	전용차로위반	50,000
559	27주0630	이**	2018-06-21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560	67조3233	이**	2018-06-2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61	59구5237	이**	2018-06-29	제주특별자치도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62	59구5237	이**	2018-06-29	제주특별자치도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63	55로8852	이**	2018-06-21	경기도 평택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64	33보0238	이**	2018-06-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565	33보0238	이**	2018-06-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566	51너9796	이**	2018-06-2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567	27라3739	이**	2018-06-30	전라북도 진안군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68	서울31아2529	이**	2018-06-28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	전용차로위반	50,000
569	26두4951	이**	2018-06-22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70	21모8588	이**	2018-06-28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571	서울32바5847	이**	2018-06-27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572	82두0714	이**	2018-06-29	경기도 광명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73	97구0130	이**	2018-06-2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74	97구0130	이**	2018-06-2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75	97구0130	이**	2018-06-2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76	55라3394	이**	2018-06-22	인천광역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577	56러4269	이**	2018-06-21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78	15모8328	이**	2018-06-2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79	30도7769	이**	2018-06-24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80	20무0259	이**	2018-06-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581	22루6985	이**	2018-06-22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82	04루5549	이**	2018-06-28	서울특별시	거리공원입구사	전용차로위반	50,000
583	68수7080	이**	2018-06-21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84	01오0958	이**	2018-06-24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85	12버1800	이**	2018-06-26	서울특별시	서울여대(구리	전용차로위반	50,000
586	14허3927	이**	2018-05-08	인천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587	15나5172	이**	2018-06-26	인천광역시	당산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88	서울84자3358	이**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89	서울31사8030	이**	2018-06-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샛강	전용차로위반	50,000
590	35두3293	이**	2018-06-21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91	80노2392	이**	2018-06-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592	08주1603	이**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93	86다6100	이**	2018-0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94	경기30바4787	이**	2018-06-26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95	60소7018	이**	2018-06-25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96	09호4789	이**	2018-06-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597	65우4151	이**	2018-06-22	충청남도 천안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98	95어1345	이**	2018-06-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599	65가6055	이**	2018-05-30	경기도 성남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600	41조1487	이**	2018-06-22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	전용차로위반	50,000
601	49버2736	이**	2018-06-29	강원도 동해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602	56머1348	이**	2018-06-25	경기도 수원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603	13서0137	이**	2018-06-22	충청남도 천안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04	20소8719	이**	2018-06-21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605	43버1795	이**	2018-06-22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06	58머8846	이**	2018-06-27	충청남도 논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07	서울32바4580	이**	2018-06-21	경기도 광주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608	61소7768	이**	2018-06-2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09	08더3779	이**	2018-06-25	광주광역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610	12두3049	이**	2018-06-21	강원도 평창군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611	12모5557	이**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612	66소3823	이**	2018-06-20	전라북도 장수군	양화대교북단~	전용차로위반	50,000
613	07나8787	이**	2018-06-29	충청남도 천안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614	서울32아1051	이**	2018-06-26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615	01구6595	이**	2018-06-22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616	36루7203	이**	2018-06-24	경기도 고양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617	54주0346	이**	2018-06-23	대전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18	68부9323	이**	2018-06-28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19	52두7883	이**	2018-06-28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620	43고8925	이**	2018-06-22	대전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21	62모9337	이**	2018-06-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622	27조0508	이**	2018-06-21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623	69나9293	이**	2018-06-28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24	61머9181	이**	2018-06-2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25	60우6386	이**	2018-06-22	경기도 구리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626	35어9909	이**	2018-06-27	경기도 고양시	진관동 구파발	전용차로위반	50,000
627	59호4114	이**	2018-06-04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628	15마2806	이**	2018-06-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29	40가5124	이**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30	64보3540	이**	2018-06-23	서울특별시	상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31	13모6322	이**	2018-06-30	대전광역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32	13모6322	이**	2018-06-30	대전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633	33하0171	이**	2018-05-31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634	40하9950	이**	2018-06-14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635	42로9022	이**	2018-06-2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	전용차로위반	50,000
636	22우2568	이**	2018-06-2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637	15너0612	이**	2018-06-28	충청남도 천안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38	68조5808	이**	2018-06-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39	38러8715	이**	2018-06-28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40	66조7651	이**	2018-06-29	경기도 광명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641	04조2133	이**	2018-06-24	경기도 평택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642	58오6595	이**	2018-06-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43	61누7633	이**	2018-06-29	충청북도 청주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44	35서5949	이**	2018-0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45	86더4833	이**	2018-06-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646	03우7065	이**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47	66저7228	이**	2018-06-27	경기도 시흥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48	31누8467	이**	2018-06-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649	81러9501	이**	2018-06-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50	64가4377	이**	2018-06-21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51	20조9025	이**	2018-06-2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52	47다2836	이**	2018-06-01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53	57오7730	이**	2018-06-27	대전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54	33보2733	이**	2018-06-28	경기도 안산시	우면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55	33보2823	이**	2018-06-28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656	33우8340	이**	2018-06-22	전라남도 순천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57	11구7387	이**	2018-06-30	경기도 수원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658	79누4501	이**	2018-06-24	인천광역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60,000
659	96너8489	이**	2018-06-24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660	인천85아1991	이**	2018-06-29	인천광역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661	19보2993	이**	2018-0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62	58라1374	이**	2018-06-23	경기도 시흥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663	65보1499	이**	2018-06-22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64	30도2795	이**	2018-06-28	경상북도 포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65	63구9099	이**	2018-06-25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66	48나5811	이**	2018-06-27	경기도 의정부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667	63두2633	이**	2018-06-21	전라북도 전주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68	66두4104	인**	2018-06-28	대전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69	34보2856	임**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70	07어2548	임**	2018-06-22	충청남도 공주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671	54주2941	임**	2018-06-25	충청남도 아산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72	32우7675	임**	2018-06-25	강원도 강릉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673	57호3233	임**	2018-06-01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674	16서4123	임**	2018-06-28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675	80보7318	임**	2018-06-2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76	04서4793	임**	2018-06-22	경기도 안양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77	23부7018	임**	2018-06-28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678	66서4351	임**	2018-06-28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79	26노8061	임**	2018-06-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680	66나3717	임**	2018-06-26	경기도 안양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81	56서5115	임**	2018-06-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682	59루5529	임**	2018-06-25	전라북도 완주군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83	50하7517	장**	2018-06-0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84	40무9184	장**	2018-06-22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85	경기91바1490	장**	2018-06-21	경기도 광명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686	46구0189	장**	2018-06-08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687	38두8389	장**	2018-06-25	서울특별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688	59저8773	장**	2018-06-29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689	21소7212	장**	2018-06-23	경기도 화성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90	13조0866	장**	2018-06-26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91	90소7742	장**	2018-06-20	서울특별시	영등포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92	37우7110	장**	2018-06-21	경기도 과천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93	68서3127	장**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94	43오9069	장**	2018-06-25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	전용차로위반	50,000
695	38보2058	장**	2018-06-26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696	21조8740	장**	2018-06-21	전라남도 목포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697	54머9289	전**	2018-06-24	경기도 안산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98	서울54고8329	전**	2018-06-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99	24다0189	전**	2018-06-26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00	04호2622	전**	2018-05-28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701	35로6247	전**	2018-06-21	서울특별시	미아동 이마트	전용차로위반	50,000
702	42거7811	전**	2018-06-28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703	27저4678	전**	2018-06-18	경기도 수원시	서초IC~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04	64소3349	전**	2018-06-29	경기도 광주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705	47보2436	전**	2018-06-27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706	20로8924	전**	2018-06-21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07	59서9000	전**	2018-06-22	경기도 하남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708	11소0255	정**	2018-06-26	경상남도 창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09	27보5811	정**	2018-06-2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10	50다0334	정**	2018-06-27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711	91서0987	정**	2018-06-27	경기도 부천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12	03저1638	정**	2018-06-27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713	02거6049	정**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14	01보0107	정**	2018-06-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15	32우3081	정**	2018-06-29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16	인천83바4605	정**	2018-06-21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17	55부0860	정**	2018-06-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18	11오6914	정**	2018-06-23	경기도 안산시	여의도공원	전용차로위반	50,000
719	68부8390	정**	2018-06-2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20	61머0891	정**	2018-06-22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21	35러4915	정**	2018-06-28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22	23구4103	정**	2018-06-2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23	04조0785	정**	2018-06-22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24	50더9211	정**	2018-06-21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25	51모8599	정**	2018-06-22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26	57호8969	정**	2018-06-04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727	32도5918	정**	2018-06-29	경기도 고양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728	37오2296	정**	2018-06-21	제주특별자치도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29	55러9040	정**	2018-06-22	전라북도 김제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30	85버1203	정**	2018-06-25	경기도 시흥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31	서울32바1991	정**	2018-06-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732	경기89사4918	정**	2018-06-22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33	34부1600	정**	2018-06-2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34	90부7936	정**	2018-06-27	경기도 안양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35	20더0300	정**	2018-0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36	87수5390	정**	2018-06-2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37	03라7625	정**	2018-06-27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38	서울48구6733	정**	2018-06-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39	42무7454	정**	2018-06-21	서울특별시	미아동 이마트	전용차로위반	50,000
740	14버0112	정**	2018-06-21	경기도 이천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741	54저7530	정**	2018-06-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742	52하4336	조**	2018-06-14	경상북도 영양군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43	25주1834	조**	2018-06-22	경기도 안양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744	43가3738	조**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745	57버2848	조**	2018-06-21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46	16머8106	조**	2018-06-23	인천광역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47	52고0247	조**	2018-06-21	경기도 의정부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48	12두8829	조**	2018-06-30	대전광역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749	23우4384	조**	2018-06-22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50	35거0550	조**	2018-06-26	인천광역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751	31두5601	조**	2018-06-26	충청북도 충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52	68나1228	조**	2018-06-27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53	08우0782	조**	2018-06-24	충청북도 충주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54	06나1351	조**	2018-0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55	42두3359	조**	2018-06-26	전라남도 보성군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56	65모1550	조**	2018-06-22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757	경기32바5102	조**	2018-06-27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58	63도9869	조**	2018-06-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59	46러9312	주**	2018-06-28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760	08허5334	주**	2018-06-12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61	08주2909	주**	2018-06-2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762	81주8711	주**	2018-06-23	경기도 양주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63	20루5483	주**	2018-06-20	서울특별시	양화대교북단	전용차로위반	50,000
764	96노2632	주**	2018-06-26	부산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765	49두7579	주**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66	53라3627	지**	2018-06-22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767	30오9986	지**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68	50러8240	지**	2018-06-26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769	83우7122	지**	2018-06-21	경기도 양평군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70	06수7690	진**	2018-06-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71	07마8445	진**	2018-06-22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772	90가3259	진**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73	07무9760	진**	2018-06-2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774	40더8313	차**	2018-06-22	서울특별시	서울여대(구리	전용차로위반	50,000
775	82서4204	차**	2018-06-23	경기도 의정부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76	16서4136	채**	2018-06-2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77	경기93자2276	천**	2018-06-26	경기도 김포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78	59버3421	최**	2018-06-22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79	03버4127	최**	2018-06-26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780	01러5097	최**	2018-06-20	서울특별시	상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1	69라9931	최**	2018-06-30	인천광역시	상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2	46더0306	최**	2018-06-29	경기도 화성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783	19라8099	최**	2018-06-22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84	51버9756	최**	2018-06-21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	전용차로위반	50,000
785	58머6664	최**	2018-06-28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86	05더4171	최**	2018-06-2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87	94저1580	최**	2018-06-28	경기도 수원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88	52고5861	최**	2018-06-27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89	65호6527	최**	2018-05-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90	04노8285	최**	2018-06-26	경기도 과천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91	05마2425	최**	2018-06-28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792	25다5769	최**	2018-06-2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93	26수1418	최**	2018-06-22	경기도 고양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794	66주0297	최**	2018-06-21	경기도 수원시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95	66주0297	최**	2018-06-21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796	13조1248	최**	2018-06-23	경기도 의왕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797	38수0440	최**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98	62가1263	최**	2018-06-0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799	29호4358	최**	2018-05-09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800	57라2262	최**	2018-06-25	서울특별시	서울여대(구리	전용차로위반	50,000
801	66마3836	최**	2018-06-2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802	12너6716	최**	2018-06-29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803	07조9435	최**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804	96다4921	최**	2018-06-24	인천광역시	서초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805	12어0989	최**	2018-06-27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806	65서9183	최**	2018-06-20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공작	전용차로위반	50,000
807	47부5030	최**	2018-06-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808	18수5548	최**	2018-06-25	충청남도 서산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809	64다5518	추**	2018-06-30	인천광역시	상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10	48로3140	하**	2018-06-30	부산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811	36마0157	하**	2018-06-26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812	60도1962	한**	2018-06-29	충청남도 천안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813	84부2097	한**	2018-06-27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814	09저2639	한**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815	18서6561	한**	2018-06-22	경기도 김포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816	47거9039	한**	2018-06-21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817	33누3376	한**	2018-06-23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818	07고7556	한**	2018-06-25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819	40더5543	한**	2018-06-29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820	63부5488	한**	2018-06-25	대구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821	16가2547	한**	2018-06-24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22	01오1755	한**	2018-06-08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823	54너0447	한**	2018-06-26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824	65고2792	한**	2018-06-28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825	24노7219	한**	2018-06-28	경기도 의정부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826	43마3203	한**	2018-06-22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827	26다0267	한**	2018-06-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828	서울85자8216	허**	2018-06-22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	전용차로위반	50,000
829	22거3654	허**	2018-06-21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830	91버3226	허**	2018-06-30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831	03거8361	허**	2018-06-23	경기도 부천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832	49버6752	허**	2018-06-2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833	50누1884	허**	2018-06-29	대전광역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834	42러9811	허**	2018-06-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	전용차로위반	50,000
835	04누7232	허**	2018-06-2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836	26마2718	허**	2018-06-22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837	04가4004	허**	2018-06-22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838	85서6777	현**	2018-06-28	인천광역시	상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39	55마5435	현**	2018-06-2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840	23버5890	현**	2018-06-21	경기도 광주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841	29부4727	홍**	2018-06-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842	87너0497	홍**	2018-06-2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43	54무1253	홍**	2018-06-24	인천광역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844	31다9250	홍**	2018-06-28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	전용차로위반	50,000
845	21고7453	홍**	2018-06-25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846	62머7560	홍**	2018-06-24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847	서울31자1960	홍**	2018-06-26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848	15오4202	홍**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849	57부7453	홍**	2018-06-25	강원도 양양군	양재동 양재IC	전용차로위반	50,000
850	87수7362	홍**	2018-06-28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851	31소1618	홍**	2018-06-25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852	43소7799	황**	2018-06-24	경기도 안산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853	21거8261	황**	2018-06-25	경기도 평택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854	43도4624	황**	2018-06-2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855	66조0152	황**	2018-06-21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856	62루4847	황**	2018-06-2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857	07나6708	황**	2018-06-26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858	80로0905	황**	2018-06-28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859	67더1788	황**	2018-06-28	경기도 남양주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860	17소5859	황**	2018-06-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861	30다7879	황**	2018-06-23	경기도 안양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862	60소7035	황**	2018-06-24	경기도 수원시	서초동 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863	55거8108	황**	2018-06-26	경기도 안양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69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가. 납부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차과태료 공시송달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	남산3호	2017-08-03	19:04:45	58호6215	(주)영화사유레카	10,3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2	남산1호	2017-11-09	15:25:53	58호9698	황정웅	10,300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7나길
3	남산1호	2017-11-15	20:25:33	58하2313	한우희	10,300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32
4	남산1호	2017-11-16	11:52:20	55호2814	콤포트디자인	10,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6길
5	남산1호	2017-11-16	14:29:32	59하2887	주식회사 37포인트	10,300	서울시 종로구 지하문로2길
6	남산1호	2017-11-16	17:49:24	61하7393	장회순	10,300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7	남산1호	2017-11-16	20:22:49	09호5762	한국드림관광(주)	10,30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8길
8	남산1호	2017-11-20	17:45:12	56호4920	김서윤	10,300	인천 남동구 백범로
9	남산3호	2017-11-20	18:27:27	46호5959	(주)이리로	10,30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	남산3호	2017-11-22	10:23:48	11부0768	보스(BO'S)	10,3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2길
11	남산1호	2017-11-22	10:42:10	27허4900	주식회사 애드가인	10,30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71길
12	남산3호	2017-11-22	15:16:29	01호7558	엄철민	10,300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7길
13	남산1호	2017-11-23	11:42:18	46호5040	(주)조은미션센터	10,300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49번길
14	남산1호	2017-11-24	11:49:13	38허6982	최기양	10,3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31길45
15	남산1호	2017-11-24	14:48:11	28호5258	(주)정진엔터테인먼트	10,3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25길
16	남산1호	2017-11-24	16:04:30	45하5003	(주)콜드브루코리아	10,300	경기 구리시 아치울길3번길
17	남산3호	2017-11-27	19:43:55	66하7960	조현웅	10,300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18	남산1호	2017-11-27	20:44:18	01하2279	김증진	10,300	경기도 성남 분당구
19	남산3호	2017-11-28	10:41:44	15호6566	SUNPACK(썬팩)	10,3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0	남산1호	2017-11-28	20:08:24	04하0383	유승완	10,3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6나길
21	남산3호	2017-11-29	12:22:52	11부0768	보스(BO'S)	10,3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2길
22	남산1호	2017-11-29	15:48:56	40하1473	전민혁	10,30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길
23	남산3호	2017-11-29	19:29:50	15호0505	남곡에너지개발(주)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4	남산3호	2017-12-18	7:01:48	17도1623	김옥순	10,3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로
25	남산3호	2017-12-18	10:10:17	서울57다3689	김선영,김영애	5,150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26	남산3호	2017-12-18	10:48:15	35모3122	김성국	10,300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
27	남산1호	2017-12-18	11:44:41	69수4583	고만규	10,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8	남산3호	2017-12-18	11:49:41	23부7888	안재은	5,15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29	남산1호	2017-12-18	12:21:55	66마0814	신영철	10,30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30	남산1호	2017-12-18	14:55:51	55어2869	김효진	10,3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31	남산3호	2017-12-18	17:01:54	14너3415	윤경훈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	남산1호	2017-12-18	18:00:38	63다0557	이재권	10,3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1길
33	남산1호	2017-12-18	19:28:04	12노9490	정민영	5,15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34	남산3호	2017-12-18	19:37:44	17도1623	김옥순	10,3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로
35	남산3호	2017-12-18	20:10:35	17도1623	김옥순	10,3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로
36	남산1호	2017-12-19	12:49:39	31어5663	김성훈	10,3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37	남산3호	2017-12-19	13:10:36	65도5301	주식회사 블록체인팩토리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8길
38	남산1호	2017-12-19	14:59:25	60저2351	안홍희	10,3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39	남산3호	2017-12-19	17:07:38	35나5599	김봉현	10,300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470번길
40	남산1호	2017-12-19	17:57:52	03소1063	임연수	10,3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41	남산1호	2017-12-19	20:49:30	38고7597	정승훈	10,3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2	남산3호	2017-12-20	7:03:29	05머7589	전룡철	10,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7길
43	남산1호	2017-12-20	7:12:12	59도1936	MUHIRE BRUNO HERM	10,3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44	남산1호	2017-12-20	7:58:18	54오4863	김금자	10,300	강원도 춘천시 우두로
45	남산1호	2017-12-20	11:15:06	52두7075	김영호	10,300	경기도 포천시 왕방로
46	남산1호	2017-12-20	17:21:21	02루2063	네트워크고리 (대표자 : 김정찬)	10,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7	남산1호	2017-12-20	17:52:45	33로2663	고경록	10,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48	남산3호	2017-12-20	20:47:43	08더6401	김진희	10,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가길
49	남산3호	2017-12-21	8:52:59	43허4448	(주)아산운수	10,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50	남산3호	2017-12-21	9:45:35	21무7074	강은지	10,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51	남산3호	2017-12-21	10:24:23	27모0793	김태성	10,300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52	남산1호	2017-12-21	13:41:30	64소0536	지복이	10,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47번길
53	남산3호	2017-12-21	16:48:31	41더6174	손화성	10,3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2가길
54	남산1호	2017-12-21	18:06:47	39어0884	김태호	10,3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55	남산3호	2017-12-21	18:29:43	14저2323	이정은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3길
56	남산3호	2017-12-21	18:54:33	30루7015	신영진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2길
57	남산3호	2017-12-21	18:57:18	43허4448	(주)아산운수	10,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58	남산3호	2017-12-21	19:07:13	19두2909	안태원	10,3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59	남산1호	2017-12-22	7:05:27	43거8478	임재성	5,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60	남산1호	2017-12-22	7:18:01	61무7337	박영민	5,15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6나길
61	남산1호	2017-12-22	9:58:29	50소8115	이계숙	5,15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62	남산3호	2017-12-22	11:47:41	64소0536	지복이	10,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47번길
63	남산1호	2017-12-22	12:21:24	19마3393	조정현	10,3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길
64	남산1호	2017-12-22	16:27:58	19주9978	고희춘	5,15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65	남산3호	2017-12-22	17:29:49	03조0219	홍상현	10,3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6길
66	남산1호	2017-12-22	17:42:37	46오8166	전영준	10,3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7	남산1호	2017-12-22	18:22:11	03우2186	임재철	10,300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68	남산1호	2017-12-22	18:53:49	02두9503	임종수	10,3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69	남산1호	2017-12-26	8:04:31	46조2559	장새별	10,300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70	남산3호	2017-12-26	12:25:05	경기33누6585	예수행복교회 (정송락)	10,3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1	남산1호	2017-12-26	17:00:41	59오8815	황민수	10,300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72	남산3호	2017-12-26	18:52:29	05보3268	조정래	5,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길
73	남산3호	2017-12-26	18:59:43	68오0267	이경철	10,300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
74	남산3호	2017-12-26	20:42:33	26나5395	주식회사 에스디엠폴리	5,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75	남산1호	2017-12-27	8:54:07	18모5632	최정희	10,3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76	남산1호	2017-12-27	9:40:35	18노4075	이진재	10,3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1길
77	남산1호	2017-12-27	15:39:39	40마3045	안명규	10,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8	남산3호	2017-12-27	18:13:47	63주1338	은진수	10,300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1길
79	남산1호	2017-12-27	20:28:20	01너0726	오동훈	5,150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 163길
80	남산1호	2017-12-27	20:42:43	18수9600	김영훈	10,300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8나길
81	남산1호	2017-12-28	9:12:58	11너6093	최주환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0길
82	남산1호	2017-12-28	9:30:04	55거9108	(주)세담하우징	10,3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83	남산1호	2017-12-28	9:52:45	10어0946	황세규	10,300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84	남산1호	2017-12-28	10:14:38	23마7260	이경민	5,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6길
85	남산3호	2017-12-28	10:30:32	54구0688	박주현	10,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91나길
86	남산1호	2017-12-28	11:03:08	57어3236	서태선	5,15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87	남산1호	2017-12-28	13:01:03	15거6191	박진희	10,3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2길
88	남산1호	2017-12-28	14:05:57	69버6132	이남옥	10,300	경상북도 구미시 검성로
89	남산1호	2017-12-28	15:28:56	23다2525	(주)수법률경매	10,300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90	남산3호	2017-12-28	15:45:13	50부2594	주식회사 서우글로벌	10,3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1	남산1호	2017-12-28	16:57:59	40마3045	안명규	10,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92	남산3호	2017-12-28	17:06:02	26오6168	김일용	10,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93	남산1호	2017-12-28	19:20:07	36보1366	그린엘이디(주)	10,3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94	남산1호	2017-12-28	20:25:08	49더8740	방호	10,300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95	남산1호	2017-12-29	7:06:17	33버0495	조민주	10,300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8길
96	남산1호	2017-12-29	20:33:35	47수5665	이어진	5,15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7	남산1호	2018-01-02	8:24:00	64조6390	박정호	10,300	경기도 평택시 목천로25번길
98	남산1호	2018-01-02	12:07:33	66보2220	한만석	10,300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6길
99	남산1호	2018-01-02	15:26:29	36노9782	고도희	10,300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00	남산1호	2018-01-02	18:53:24	53두9930	홍숙희	10,3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01	남산1호	2018-01-02	19:36:39	50루0498	이창호	10,3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02	남산3호	2018-01-02	20:44:26	42구0736	SHEN KUO PING	10,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03	남산1호	2018-01-03	8:55:10	12누4241	길숙이	10,3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04	남산1호	2018-01-03	9:43:10	13더0319	이재형	10,3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105	남산1호	2018-01-03	10:29:19	39부9856	(주)앤짱	5,15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06	남산3호	2018-01-03	11:02:08	01너1115	신광필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07	남산3호	2018-01-03	11:16:26	55너5899	(주)유아세이프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08	남산1호	2018-01-03	11:28:11	38거1357	이승연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6길
109	남산1호	2018-01-03	14:34:50	30라7022	이동희	10,3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8나길
110	남산1호	2018-01-03	18:43:58	65마3212	(주)선봉	10,300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111	남산3호	2018-01-03	19:22:19	59오1259	임재영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12	남산3호	2018-01-03	19:46:32	11부2167	이정하	10,3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13	남산1호	2018-01-03	20:40:30	61조7496	한세욱	10,3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14	남산1호	2018-01-04	8:19:42	18저0576	오승근	10,300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115	남산3호	2018-01-04	14:43:43	50소8115	이계숙	5,15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116	남산1호	2018-01-04	16:14:37	서울55너1941	박성은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7	남산1호	2018-01-04	17:22:18	09호7114	SK네트웍스(주)	10,3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118	남산3호	2018-01-04	17:36:32	68러6749	서승희	10,3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9	남산1호	2018-01-04	18:13:52	11모1502	김옥자	10,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길
120	남산1호	2018-01-04	20:09:45	24너6966	신이자	10,30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1	남산1호	2018-01-04	20:47:27	10오0984	정국자	10,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4길
122	남산1호	2018-01-05	7:54:53	26다6413	박준형	10,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자길
123	남산1호	2018-01-05	8:13:33	11부2181	김종훈	10,300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124	남산3호	2018-01-05	11:11:43	11도4736	(주) 한국화신국제여행사	10,300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125	남산1호	2018-01-05	12:24:59	50수0658	김가람	10,300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126	남산1호	2018-01-05	12:42:30	55우2573	HOLBEKOV JAKHONGIR	10,300	충청북도 충주시 행정10길
127	남산1호	2018-01-05	12:54:46	04거6214	김현묵	10,3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11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28	남산1호	2018-01-05	15:09:39	53보0164	김미경	10,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1길
129	남산3호	2018-01-05	16:05:29	02우5097	이정연	10,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6길
130	남산3호	2018-01-05	16:51:30	02우5097	이정연	10,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6길
131	남산1호	2018-01-05	18:15:25	19서9394	윤여득	10,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32	남산1호	2018-01-05	18:22:54	33로9096	강종태	10,30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133	남산3호	2018-01-05	18:45:29	02가8625	김은경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134	남산3호	2018-01-05	19:34:50	29저2594	정오용	10,3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35	남산3호	2018-01-05	20:09:46	26모2075	김준철	10,3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136	남산3호	2018-01-05	20:18:59	45서0687	원오이엔지주식회사	10,3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37	남산1호	2018-01-05	20:44:29	39루8999	정선희	10,3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138	남산1호	2018-01-05	20:55:30	35가2202	(주)신성엔지니어링	10,300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길
139	남산1호	2018-01-08	10:01:33	27다081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재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40	남산3호	2018-01-08	14:26:43	35누6715	이광현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3길
141	남산1호	2018-01-08	15:24:19	09수1953	김명수	10,300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142	남산1호	2018-01-08	17:28:47	50수4903	손지웅	10,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4길
143	남산3호	2018-01-08	18:09:29	20구2962	주식회사 보아스솔루션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44	남산1호	2018-01-08	19:53:29	62조1401	김대윤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5	남산1호	2018-01-08	20:00:54	23버2105	나형수	10,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146	남산1호	2018-01-08	20:16:12	09호7114	SK네트웍스(주)	10,3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147	남산3호	2018-01-08	20:43:23	41가5521	AN YONGQUAN	10,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24가길
148	남산1호	2018-01-08	20:44:05	45루0366	정철용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149	남산1호	2018-01-09	7:42:43	01조3152	정현수	10,300	경기도 파주시 금정23길
150	남산1호	2018-01-09	7:43:02	11마7044	(주)센스락	10,3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51	남산1호	2018-01-09	8:01:28	31라2042	이재덕	10,300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58번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52	남산1호	2018-01-09	12:59:29	38무5896	삼원산업(주)	10,300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353번길
153	남산3호	2018-01-09	16:13:06	29러8821	곽미수	10,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21길
154	남산3호	2018-01-09	16:22:52	48러0657	최민형	10,3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55	남산1호	2018-01-09	19:17:44	14다3582	김민욱	10,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56	남산3호	2018-01-10	8:09:55	30오2540	모가산업(주)	10,3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157	남산3호	2018-01-10	8:24:06	31고6306	오학철	10,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58	남산1호	2018-01-10	11:39:57	20루2216	민상기	10,3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0길
159	남산1호	2018-01-10	16:30:08	55노9918	윤지서	10,300	경기도 이천시 중부대로 1195번길
160	남산3호	2018-01-10	16:34:30	28머7950	YIN LONGZHE	10,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33길
161	남산3호	2018-01-10	19:08:09	31두2346	강수정	10,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31길
162	남산1호	2018-01-10	20:02:08	37버5684	홍승복	5,15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63	남산1호	2018-01-10	20:08:18	60노0779	(주)파인팔래스	10,30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4	남산1호	2018-01-10	20:26:58	24너6966	신이자	10,30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65	남산3호	2018-01-10	20:46:22	23다2018	주식회사 스윽	10,3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66	남산1호	2018-01-11	7:18:48	12구4909	(주)디앤에이치타워	10,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67	남산1호	2018-01-11	8:04:27	20주1303	최종문	10,3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168	남산3호	2018-01-11	9:12:43	36라5810	이봉철	10,3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47가길
169	남산1호	2018-01-11	9:52:59	33다4541	오의식	5,15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 16길
170	남산3호	2018-01-11	12:48:42	경기40머9579	곽영은	10,300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171	남산1호	2018-01-11	12:51:54	20마7104	김양호(더케이모터스) 상품용	10,300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72	남산1호	2018-01-11	15:30:10	56머5171	정정화	5,1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412번길
173	남산1호	2018-01-11	15:43:08	57로8582	김여진	10,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174	남산1호	2018-01-11	16:26:26	43라0333	양효정	10,3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75	남산1호	2018-01-11	17:22:16	03노5254	김세진	10,3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15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76	남산3호	2018-01-11	17:45:49	62마5961	박성근	10,3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177	남산3호	2018-01-11	19:08:58	35우5202	최지영	10,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8길
178	남산3호	2018-01-11	19:19:52	23라6078	백현	10,3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117번길
179	남산1호	2018-01-11	20:58:04	42조4957	신용화	10,300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15길
180	남산1호	2018-01-12	8:21:53	09호7114	SK네트웍스(주)	10,3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181	남산1호	2018-01-12	10:03:50	39부9856	(주)앤짱	5,15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82	남산1호	2018-01-12	10:42:37	52누0673	최윤모	10,3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183	남산1호	2018-01-12	12:13:51	42고3963	박태우	5,150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12길
184	남산1호	2018-01-12	12:27:20	29머6156	이우석	10,3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85	남산1호	2018-01-12	13:29:45	22소0583	이경희	10,3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186	남산3호	2018-01-12	14:08:07	02우5097	이정연	10,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6길
187	남산3호	2018-01-12	14:52:40	서울31러2683	원용수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188	남산1호	2018-01-12	15:02:13	53보0164	김미경	10,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1길
189	남산3호	2018-01-12	17:24:45	10너7918	조성금	10,300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190	남산1호	2018-01-12	17:32:08	02도0500	오성은	10,3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0길
191	남산1호	2018-01-12	17:50:15	32우8112	김광민	10,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4가길
192	남산1호	2018-01-12	18:41:37	02우5097	이정연	10,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6길
193	남산1호	2018-01-15	8:45:07	32누0165	조준회	10,3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94	남산1호	2018-01-15	13:54:01	21보8531	정주현	10,300	경기도 평택시 남산로
195	남산1호	2018-01-15	16:03:07	69서5389	김금옥	10,3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96	남산1호	2018-01-15	19:24:20	68저8959	석재봉	10,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97	남산3호	2018-01-15	20:32:47	53구6863	김규대	10,3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98	남산1호	2018-01-15	20:49:28	09다0550	박한선	5,150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70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의견제출 안내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나. 3인 탑승차량, 장애인 차량, 공무(보도용)차량, 저공해/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차량 등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면제 혹은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의견 제출 방법
   - 인터넷 : www.sisul.or.kr 접속 후 교통사업 → 기타교통업무 → 혼잡통행료 징수 → 혼잡통행료 의견제출 클릭.작성
   - 팩스 : 02-756-1398 ※ 성명, 차량번호, 일자, 사유, 탑승자 연락처 등 필요
   -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사전통지 공시송달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	남산3호	2018-05-16	7:03:37	68저7579	신명화	8,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	남산1호	2018-05-16	10:34:19	36나7587	박귀임	8,000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137번길
3	남산3호	2018-05-16	11:04:45	65라2379	WANG CHUNHONG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4	남산1호	2018-05-16	11:27:05	45수9164	임학규	8,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50길
5	남산3호	2018-05-16	13:11:28	56두3130	이재욱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길
6	남산3호	2018-05-16	13:15:21	02라0583	전영준	8,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다길
7	남산3호	2018-05-16	13:27:28	36다7686	김호섭	8,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8	남산1호	2018-05-16	14:51:56	28어8097	이말지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	남산1호	2018-05-16	15:13:58	38너7050	송천호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10	남산3호	2018-05-16	16:49:32	74오2051	양귀복	8,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1	남산3호	2018-05-16	17:07:42	30라6317	황지혜	4,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1다길
12	남산1호	2018-05-16	17:32:59	54라8292	WEN ZHONGNAN	8,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3	남산1호	2018-05-16	19:13:50	38오0475	하재만	8,000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14	남산1호	2018-05-16	19:49:59	67두2467	송준흠	8,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	남산3호	2018-05-16	20:33:22	62소1613	김재윤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9길
16	남산1호	2018-05-16	20:34:27	37다7814	소태복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나길
17	남산3호	2018-05-16	13:30:28	30가7589	이종석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6길
18	남산3호	2018-05-17	8:47:27	67버2672	정석현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9	남산1호	2018-05-17	9:02:13	31버1150	김인식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	남산3호	2018-05-17	9:23:15	47마7012	(주)신일광학	4,00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4길
21	남산3호	2018-05-17	12:02:55	08모4164	신지수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22	남산1호	2018-05-17	12:55:39	26구3457	LI ZHENGZI	8,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0길
23	남산3호	2018-05-17	13:05:33	52주0626	손호형	8,0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24	남산3호	2018-05-17	15:23:56	19거5412	강우선	8,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5	남산1호	2018-05-17	18:38:45	56루0480	김희정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26	남산1호	2018-05-17	18:56:39	38어9880	이인원	8,0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27	남산3호	2018-05-17	19:02:34	35도9809	이정환	8,00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28	남산1호	2018-05-17	19:08:42	43소1687	안상우	4,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29	남산3호	2018-05-17	19:09:08	04우8852	김선일	8,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30	남산1호	2018-05-17	19:20:45	49버9845	(주)아스트라 퍼시픽	8,000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88번길
31	남산1호	2018-05-17	20:31:13	32누0666	이미화	8,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 역동로34길
32	남산3호	2018-05-17	7:04:45	63구7300	한경준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33	남산3호	2018-05-18	7:16:35	26무0369	유현숙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8길
34	남산3호	2018-05-18	7:31:35	17어8400	이승석	8,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5	남산1호	2018-05-18	8:26:53	43허5221	(주)아산운수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36	남산3호	2018-05-18	9:26:48	31서6028	송희경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5길
37	남산3호	2018-05-18	11:01:17	06다1786	(주) 새누리투어	8,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	남산3호	2018-05-18	11:13:32	28더6277	최인자	8,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02번길
39	남산3호	2018-05-18	12:24:59	67두5760	설희만	8,000	경기도 의왕시 사그내3길
40	남산3호	2018-05-18	12:54:52	07루7425	남궁용호	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41	남산1호	2018-05-18	13:11:27	17무1983	최태형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42	남산1호	2018-05-18	14:49:35	31우8677	조성우	8,000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43	남산1호	2018-05-18	15:32:23	01가9364	김진양	4,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44	남산1호	2018-05-18	15:46:50	50고2230	전진수	8,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0길
45	남산3호	2018-05-18	15:53:31	31소0137	박영호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6길
46	남산1호	2018-05-18	16:05:43	19더0584	김성구	4,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47	남산3호	2018-05-18	16:46:40	21노9578	ZHANG HONGGUO	8,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48	남산1호	2018-05-18	16:52:42	11루2026	진준호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49	남산3호	2018-05-18	17:25:28	48보5621	조명석	8,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50	남산3호	2018-05-18	19:01:37	37나9119	양성우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51	남산1호	2018-05-18	19:03:59	18더5084	황태문	8,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52	남산1호	2018-05-21	7:27:35	36주7669	이준원	8,00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53	남산1호	2018-05-21	8:44:10	57가0117	최석균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54	남산3호	2018-05-21	12:24:40	62구1666	이지훈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55	남산3호	2018-05-21	13:09:18	18로0358	이찬영	4,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519번길
56	남산1호	2018-05-21	14:03:54	09나6164	장재민	8,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57	남산1호	2018-05-21	14:12:47	46무2310	윤태연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9가길
58	남산1호	2018-05-21	14:17:39	16러7978	유승희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59	남산1호	2018-05-21	14:21:54	60수3303	조세빈	8,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60	남산1호	2018-05-21	15:47:08	43나6086	김충교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61	남산1호	2018-05-21	16:04:46	43나6086	김충교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62	남산1호	2018-05-21	16:06:22	65조0981	노태현	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63	남산3호	2018-05-21	17:11:49	10도0457	김원희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64	남산3호	2018-05-21	17:12:02	14버0255	김기완	8,00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5	남산1호	2018-05-21	17:25:24	37도4746	홍진기	4,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66	남산1호	2018-05-21	18:39:35	10우5554	이미경	8,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67	남산3호	2018-05-21	19:01:49	06머0726	황정혜	8,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68	남산1호	2018-05-21	19:13:26	15루8965	박만수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69	남산1호	2018-05-21	19:29:01	21모3300	이수경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70	남산1호	2018-05-21	19:39:10	21무5486	남계현	8,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30길
71	남산1호	2018-05-23	8:58:53	65노9776	서종숙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72	남산1호	2018-05-23	9:24:32	05더1559	구본중	8,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73	남산1호	2018-05-23	10:53:12	34보5822	홍성필	8,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74	남산1호	2018-05-23	11:50:41	16저1270	안영길	8,000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75	남산3호	2018-05-23	13:23:32	30다6426	강원준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76	남산3호	2018-05-23	14:03:02	02저8900	배지석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6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77	남산3호	2018-05-23	15:01:38	06나4116	CUI MINRUI	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0라길
78	남산1호	2018-05-23	17:54:39	27조0512	강은주	8,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79	남산3호	2018-05-23	18:42:46	24노4742	정일영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80	남산1호	2018-05-23	19:13:40	49로7217	김성환	8,0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1	남산3호	2018-05-23	19:19:08	01고0106	김미란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82	남산1호	2018-05-23	19:46:27	58무9983	신희자	8,000	강원도 인제군 남면
83	남산1호	2018-05-23	20:15:14	25도3999	박창완	8,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24길
84	남산1호	2018-05-23	20:18:47	23노7885	최호상	4,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나길
85	남산3호	2018-05-23	20:39:18	26모2421	최홍준	8,000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86	남산1호	2018-05-23	20:46:38	56소8333	HAN GUONAN	8,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길
87	남산1호	2018-05-24	7:32:46	09버3512	이용덕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88	남산3호	2018-05-24	7:41:18	15저1653	이민섭	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89	남산3호	2018-05-24	8:28:15	63보9174	권현우	4,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11가길
90	남산1호	2018-05-24	9:10:47	50거6099	허남익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370번길
91	남산3호	2018-05-24	11:31:49	63부1600	길상준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2길
92	남산1호	2018-05-24	12:57:55	29주7857	김태현	8,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93	남산3호	2018-05-24	14:02:18	38거0575	황철규	4,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94	남산1호	2018-05-24	14:38:18	35고0682	송재열	8,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95	남산3호	2018-05-24	15:01:10	67어3752	주혜경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96	남산1호	2018-05-24	15:11:45	04어9127	김선혜	4,000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53번길
97	남산1호	2018-05-24	15:19:44	10로3722	주식회사 라이프맥스코리아 (LIFEMAX KOREA CO., Ltd)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8	남산1호	2018-05-24	16:07:26	15더3094	신승환	8,00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99	남산1호	2018-05-24	18:08:16	46누3005	성낙행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길
100	남산1호	2018-05-24	18:34:53	63다0226	신지현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01	남산1호	2018-05-24	19:18:46	68두4316	전성호	4,000	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19번길
102	남산3호	2018-05-24	19:24:30	33구7060	(주)유크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03	남산3호	2018-05-24	20:18:26	06러7738	김성희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104	남산1호	2018-05-24	20:26:58	55부3496	안상렬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
105	남산1호	2018-05-24	20:27:52	41누6185	HE WEN	8,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106	남산1호	2018-05-24	20:40:27	61무1191	김완수	8,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20길
107	남산1호	2018-05-24	20:40:27	31버7814	이상용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8길
108	남산1호	2018-05-25	7:07:11	04고0578	박윤수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6길
109	남산3호	2018-05-25	7:43:17	29보9976	유회백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110	남산1호	2018-05-25	8:29:20	59러2358	정유진	8,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111	남산1호	2018-05-25	9:00:33	25저9223	구준회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12	남산1호	2018-05-25	9:47:05	49누4869	김석봉	8,000	경기도 평택시 송일로17번길
113	남산3호	2018-05-25	10:24:36	61고3930	문경아	8,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114	남산3호	2018-05-25	11:05:08	52더8345	주식회사 굿드라이브유니온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2길
115	남산3호	2018-05-25	12:18:01	48더1866	김계영	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
116	남산3호	2018-05-25	12:20:40	27모9805	배한신	8,00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117	남산1호	2018-05-25	12:25:15	34가7643	채혜진	4,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18	남산3호	2018-05-25	15:19:29	16고6878	김동혁	4,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119	남산1호	2018-05-25	15:53:55	40라3905	백승종	8,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20	남산1호	2018-05-25	16:58:01	51주3131	윤치호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121	남산1호	2018-05-25	18:11:30	28너9971	김원영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22	남산3호	2018-05-25	18:47:47	01소1651	(주)캠핑브라더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23	남산1호	2018-05-25	19:06:39	20러9241	민영석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4	남산1호	2018-05-25	19:29:41	69오7101	MING JINGRU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사길
125	남산3호	2018-05-25	19:36:39	33두8154	박주은	8,000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26	남산3호	2018-05-28	7:04:11	55조6775	박병준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27	남산3호	2018-05-28	9:21:52	29두0289	이재호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28	남산1호	2018-05-28	11:50:45	11어8125	안진우	8,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129	남산3호	2018-05-28	11:55:13	65마1454	박창수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30	남산1호	2018-05-28	11:59:13	65마1454	박창수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31	남산1호	2018-05-28	12:27:05	36다7098	신상우	8,000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32	남산1호	2018-05-28	15:21:22	11두7143	최교순	8,000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133	남산3호	2018-05-28	16:06:25	14우4195	(주)드림팜	8,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309번길
134	남산3호	2018-05-28	17:44:16	03부1548	황의재	8,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135	남산3호	2018-05-28	18:47:50	54버0639	송미영	4,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36	남산1호	2018-05-28	19:06:36	32마7575	류한석	8,000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137	남산1호	2018-05-28	20:14:59	57보0122	김막동	8,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38	남산3호	2018-05-29	8:32:32	48부2606	김향일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8길
139	남산1호	2018-05-29	8:45:59	32오9742	김영우	8,000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140	남산1호	2018-05-29	9:14:39	01나7414	박영훈	4,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41	남산1호	2018-05-29	9:56:02	17마0688	JU QUAN	8,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34번길
142	남산1호	2018-05-29	11:26:33	07어3469	이만옥	8,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1길
143	남산3호	2018-05-29	11:48:45	27도1545	이은조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44	남산3호	2018-05-29	11:56:16	24거3868	임명현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45	남산1호	2018-05-29	13:04:27	62다0114	이수지	4,00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146	남산1호	2018-05-29	13:29:41	59주0463	인터문글로벌프린팅(주)	8,000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147	남산3호	2018-05-29	13:38:48	69수8303	안수지	4,000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71번길
148	남산3호	2018-05-29	14:33:08	11모1029	신정환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49	남산1호	2018-05-29	15:24:19	62마1111	이병득	8,000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150	남산1호	2018-05-29	15:46:01	37버3053	특허법인 신우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51	남산1호	2018-05-29	16:52:15	63가0404	주식회사 샤인글로벌	8,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200길
152	남산1호	2018-05-29	16:58:08	57도5947	김기창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7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53	남산3호	2018-05-29	17:12:11	11모1029	신정환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54	남산1호	2018-05-29	19:27:38	23모5075	백은주	8,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80길
155	남산3호	2018-05-29	19:43:07	17누8582	JIN YINGWAN	8,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1길
156	남산1호	2018-05-29	19:48:09	22오7100	김명호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11길
157	남산1호	2018-05-29	20:15:26	19소8905	한민정	8,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1길
158	남산3호	2018-05-29	20:28:34	16러4419	김윤성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59	남산3호	2018-05-29	20:40:47	17나1510	유은정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길
160	남산1호	2018-05-30	7:49:18	45구8336	주식회사 존에프앤비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61	남산3호	2018-05-30	8:11:38	06거9160	화진전자 주식회사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62	남산1호	2018-05-30	8:46:15	08저3065	정현열	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1길
163	남산3호	2018-05-30	11:00:07	40구7316	김영순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164	남산1호	2018-05-30	11:09:06	65수2484	김규담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8길
165	남산3호	2018-05-30	11:23:06	58루1777	(주)반트디자인연구소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166	남산3호	2018-05-30	11:31:21	65마8147	김기영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0길
167	남산3호	2018-05-30	13:05:26	05도5672	VACHON JOEL SYLVAIN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168	남산1호	2018-05-30	13:10:00	21거6279	이수익	8,000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
169	남산3호	2018-05-30	13:50:39	47다0539	허숭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170	남산3호	2018-05-30	13:56:19	64너8225	서상현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71	남산3호	2018-05-30	14:00:21	11저1877	최환기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24길
172	남산1호	2018-05-30	14:43:18	23루1552	이미선	8,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158번길
173	남산1호	2018-05-30	17:28:38	42구3251	김선진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74	남산1호	2018-05-30	19:17:31	21무5493	홍병식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39길
175	남산1호	2018-05-30	19:50:33	13무9030	양임선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12길
176	남산1호	2018-05-31	8:11:30	66보4658	이상래	8,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77	남산1호	2018-05-31	8:54:25	45오5588	권경화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1길
178	남산1호	2018-05-31	10:45:51	07거5767	정상복	8,000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9번길
179	남산3호	2018-05-31	11:02:16	38마0319	LI XIANGGUO	8,000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94번길
180	남산1호	2018-05-31	12:34:26	16노0422	최근준	8,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181	남산1호	2018-05-31	14:24:52	66라2347	최창훈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34 번안길
182	남산3호	2018-05-31	14:33:10	49주6381	두민선	8,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35나길
183	남산3호	2018-05-31	15:43:44	37무1916	차순영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84	남산3호	2018-05-31	15:56:03	19오6455	강태산	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90번길
185	남산1호	2018-05-31	17:06:53	13누3766	조원희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1길
186	남산3호	2018-05-31	17:27:22	11조9104	문소리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길
187	남산1호	2018-05-31	20:48:41	53거8509	안용덕	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88	남산3호	2017-10-23	20:45:01	01호5922	주식회사 선우알앤비	8,000	서울 강남구 논현로38길
189	남산1호	2018-04-02	16:55:53	33호4816	현정훈	8,0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3길
190	남산1호	2018-04-04	9:11:45	21하8376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8,000	서울 중구 퇴계로
191	남산3호	2018-04-05	11:02:34	29호9430	이지연	8,000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92	남산3호	2018-04-12	8:03:47	21하8378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8,000	서울 중구 퇴계로
193	남산3호	2018-04-16	20:18:05	34호6222	성기봉	8,000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4번길
194	남산1호	2018-04-17	18:39:40	11조5054	김바우	8,000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195	남산1호	2018-04-18	19:46:42	39호8086	박제인	4,00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196	남산1호	2018-04-19	11:04:59	67하9899	서베이사람마음 (박정선)	8,000	부산 해운대구 우동
197	남산1호	2018-04-19	14:15:05	25서2812	윤숙경	8,000	서울 서초구 언남16길
198	남산3호	2018-04-20	11:28:25	36가7398	삼성에스알에이자산 운용(주)	8,00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9	남산3호	2018-04-20	16:34:17	64호9245	(주)주안인터내셔날	8,0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200	남산3호	2018-04-23	14:57:02	52하3975	주식회사 파파오가닉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201	남산3호	2018-04-24	14:50:03	29호6799	전수옥	8,0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46번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02	남산3호	2018-04-24	18:00:54	47어3036	배진우	8,000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203	남산3호	2018-04-25	15:53:12	64호9245	(주)주안인터내셔날	8,0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204	남산1호	2018-04-25	9:11:53	18호6420	SHEN HAOGUO	8,000	서울 종로구 난계로
205	남산1호	2018-04-25	10:26:01	54호2075	장현철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06	남산3호	2018-04-26	19:09:28	68하4417	PIAOYUNHE	8,000	서울 중구 퇴계로
207	남산1호	2018-04-26	12:25:29	07호4325	최영률	8,000	대전 서구 계룡로
208	남산3호	2018-04-26	13:11:46	68하4417	PIAOYUNHE	8,000	서울 중구 퇴계로
209	남산1호	2018-04-26	19:39:57	52하7218	에이치제이 인더스트리(정재형)	8,000	서울 마포구 양화로
210	남산1호	2018-04-30	16:29:41	50하7279	조민수	8,000	경기 평택시 포승읍
211	남산1호	2018-04-30	19:49:39	69호9716	주식회사 옐로유통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212	남산1호	2018-05-01	13:24:01	14허6458	이주현	8,000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13	남산3호	2018-05-01	18:34:18	52하4482	이경윤	8,000	경기 수원시 영통구
214	남산1호	2018-05-04	13:16:35	01하3068	이동은	8,000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4다길
215	남산3호	2018-05-08	15:20:06	20하5923	채수걸	8,000	경기 안산시 단원구
216	남산1호	2018-05-09	16:58:17	22하6806	본다빈치 주식회사	8,000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7	남산1호	2018-05-14	16:06:15	20하8164	심재협	8,000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218	남산1호	2018-05-14	20:10:39	14허8515	정석준	8,000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2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77호

2018년도 제12차 건축물 미술작품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심의일시 : 2018. 7. 19.(목) 14:00 ~ 18:0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22건 36작품 (조각 21, 부조 1, 회화 11, 미디어2, 설치1)

라. 심의결과 : 승인 16작품, 부결 20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8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	강서구 테크노타워2	조각	춤사위 - 환희		○	운동감이 느껴지지만 표현방식이 매우 장식적이고 진부하여 공공조각으로서 신선함 부족
2-1	서초구 방배아트자이	회화	East Side Story18-M01, East Side Story18-K02		○	표현이 진부하고 건축공간과 맥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
2-2		미디어	빛이 드는 공간 Ⅰ, 빛이 드는 공간 Ⅱ	○		
3-1	강남구 푸르지오시티 3차 신축공사	조각	편린+2017		○	과도한 형상이 공공조각으로서 장소와 어울리지 않음
3-2		조각	wings		○	승리의 여신 니케상이 친근하기는 하나 각면 패러디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음
4-1	서초구 호반서초신사옥	조각	소리나무	○		(권장) 조명의 과도한 변화로 산만하지 않도록 조치, 조명에 대한 관리 요망
4-2		회화	The End of the West	○		
5	종로구 경희궁 롯데캐슬	회화	시간을 담아 흐르는 선 (Time Line)	○		
6	동작구 롯데캐슬 에듀포레	조각	Birds Soar		○	표현의 신선함이 부족하고 작품의 주제와 건축물이 어울리지 않음
7-1	강서구 마곡지구 C10-1,2업무근린생활시설	조각	장생도		○	기존보다 나아졌으나 작품이 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동시대적미감과 형상의 신선함 부족
7-2		조각	아스팔트에서 선인장을 만나다		○	조각형식의 독창성 및 작품성 부족, 건축공간과 부조화
8-1	강서구 보타닉파크타워 Ⅲ	회화	영혼의 정원		○	설치위치가 작품 감상에 부적절, 형상이 평이하고 지속적 유지관리가 어려움
8-2		회화	Allegory Landscape	○		(권장) 명판 위치 통일

2018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8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8-3		회화	명경지수		○	설치위치 부적절, 신선한 미의식 부족
8-4		회화	길 The Road(찾지 않는 길 Unsearched Road)		○	설치위치 부적절, 내용이 진부하고 신선함이 없음
8-5		회화	사랑의 고백		○	설치위치 부적절, 표현이 식상하고 특별하지 않음
8-6		회화	야생화		○	설치위치 부적절, 작품의 주제가 식상함
8-7		회화	조약돌		○	설치위치 부적절, 표현이 상투적이고 주제가 신선하지 않음
9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 제2부속병원	미디어	Cosmographic	○		
10	강서구 마곡그랑트윈타워 B동	조각	Top of the Top		○	독창성이 결여되어있고 야외조각으로 부적합
11	강서구 이너맥스마곡	회화	서로 마주보다 Gazing at each other		○	주제와 표현기법이 진부하고 평이함
12	강남구 래미안 블레스티지	조각	무제	○		
13-1	동작구 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	조각	Allegretto	○		
13-2		조각	Fantasy in mass		○	형식이 평이하며 형태적인 면에서 미적 감흥이 부족함
14-1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조각	Butterfly rider	○		(권장) 작품 주변 회양목을 빽빽하게 군식 설치
14-2		조각	누구나 마음속에 정원이 있다.	○		(권장)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넣도록 권장
14-3		조각	겹	○		
14-4		조각	삼남매의 꿈		○	금천구 아이들을 소재로 사회문제를 다뤘다는 설명이 불충분하고 이에 대한 주제의 1차적 해석이 장기적 미의식을 제공하기에 미흡함
15	강남구 대치동 889-41업무시설	조각	적의(積意)013-57 바벨의 무한성	○		

2018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8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6	은평구 백련산파크자이	조각	Darkmatter 1902	○		
17	강서구 마곡동 업무용지 C6-1업무시설	조각	여기, 겸재의 산천	○		
18	마포구 마포한강 I-PARK아파트	조각	자연을 담다	○		(조건) 1piece로 제작할 것
19	영등포구 광복회관	부조	함성과 환희의 열정		○	1차 심의 때보다 내용이 개선되었으나 화면의 구도와 구상성 구현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 미래세대에 대한 설득력 있고 글로벌한 조형언어가 필요하므로 공모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됨
20	서초구 삼호가든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각	물의 여행		○	형식이 평이함
21	서초구 센트럴시티	설치	Alone & Together		○	장소와 어울리지 않음, 손상가능성이 있고 시각적으로 산만함
22	중구 센트럴빌딩	조각	Time Space(時空)	○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78호

아리수 음수대 사출금형 업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사출금형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사항

○ 목 적 : 사출금형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아리수 음수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함

○ 업무개요 :

- 일반 사출금형 2종 (사무실용 A형, 사무실용 B형) 사출 생산
- 특수 사출금형 1종 (복도용 B형) 사출 생산
- 아리수 음수대 금형 3종 관리 및 보고
- 아리수 음수대 금형 사출물 납품 및 보고

◯ 선정업체 수 : 1개 업체
◯ 선정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9.12.31.일까지
◯ 생산수량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아리수 음수대	사무실용 A형	대	100
2	아리수 음수대	사무실용 B형	대	100
3	아리수 음수대	복도용 B형	대	100

※ 서울시 예산 여건 등으로 수량이 증감될 수 있음.

◯ 생산개시일 : 2018년 9월(예정)
◯ 납품기한 :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품장소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정하는 업체 및 장소
◯ 사출비용 : 사출물의 단가 및 지급방법은 추후 협약에 의함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 자가 공장을 소유한 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직접 사출을 하는 업체여야 함.
◯ 프레스 금형 및 BMC금형을 이용하여 사출물 공급이 가능한 업체
◯ 1300톤 이상의 사출성형기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 업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사출전문업체여야 함.

3. 평가 및 선정방법
사출 전문업체 선정 심사 기준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서류심사)
◯ 선정방법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1순위 대상자 결정
- 동점자는 추첨에 의한 결정

※ 합격자에 대하여 현장 확인 실시
(생산업체 적격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부 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4.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 기간 : 2018.8.9.(목)~8.10.(금) 09:00~18:00
   - 제출 방법 : 방문접수(상수도사업본부 4층 급수설비과)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1부
   ◯ 제조설비명세서(제조설비 현장설치사진 포함)

6. 지정결과 통보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 사출 전문업체 지정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추가나 수정을 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강무진(02-3146-1472)로 문의바람

붙임 1. 사출업체 선정 심사 기준표
     2. 금형 사출 관리업체 참가 신청서

붙임1.

<사출업체 선정 심사 기준표>

구분	평가 항목				배점 (100)	확인 방법
	세부 항목		평가 기준			
1차 서류 평가 (100)	지역 업체	서울·경기도 지역업체 여부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있음	20	20	사업자 등록증
			본사만 해당지역에 있음	18		
			공장만 해당지역에 있음	16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없음	14		
	생산 능력	공장 (자가,임대) 여부	등록된 공장이 자가일 경우	20	20	공장 등록증
			등록된 공장이 임대일 경우	15		
			등록된 공장이 없는 경우	0		
		업력	업력이 5년 이상일 경우	20	20	사업자 등록증
			업력이 4년 이상일 경우	19		
			업력이 3년 이상일 경우	18		
			업력이 2년 이상일 경우	17		
			업력이 1년 이상일 경우	16		
			업력이 1년 미만일 경우	15		
		사출설비	1300톤 이상	10	40	제조 설비 명세서
			건조기	10		
			온수기	10		
			호이스트	10		
2차 현장 확인	생산 업체 적격 여부	생산업체 적격여부 확인항목	실제 공장 운영 여부	–	적부 판단	미증명시 부적격처리
			상시근로자(생산직) 근무 여부	–		
			사출설비 보유 여부	–		

붙임2.

금형 사출 관리업체 참가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단체명)	
	대 표 자(성 명)	
	소 재 지(주 소)	
	전 화 번 호	

위와 같이 아리수 음수대 금형 사출을 관리하고자 참가를 신청 합니다.

2018. 8 . .

위 신 청 인

법인명(단체명) :

대표자(성 명) : (인)

서 울 특 별 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귀 하

붙임 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1부
- 제조설비명세서(제조설비 현장설치사진 포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7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및 등록 말소 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사항 -

대상 기간 : 2018.04.01. ~ 2018.06.30.
대상 단체 : 26개 단체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246	한국인권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신혜숙	2018-06-29	○ 장애인 인권개선 교육, 장애인인권보호 및 권익향상 캠페인진행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멘토링 재능기부 진행 ○ 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 추구 ○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보급 체계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 인권보호 동료상담을 통한 자립생활 적응 향상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245	(사)환경보호국민운동 본부 관악구지역 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5-38 (봉천동, 행복타워)	이도경	2018-06-20	○ 지역의 푸른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정책사업 ○ 환경 피해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연대사업 등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244	함께아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9 (종로6가, 삼신빌딩)	양현봉	2018-06-11	○ 외국인 노동자 치과무료진료 ○ 구강건강지원 및 구강관리교육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243	나야장애인 권교육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동숭동)	강희석	2018-05-31	가. 장애인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진행 나.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진행 다. 장애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라. 인권관련 전문 서적의 출판 사업 마. 장애인 관련 업무종사자 및 학교, 부모 등 인권교육 사. 그밖에 본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242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3-22 (신당동, 백석빌딩)	안명현	2018-05-25	1.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표현예술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원 2. 위기 가정 및 가정폭력 관련 청소년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표현예술 심리상담 및 지원 3. 장애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표현예술 심리상담 및 지원활동 4. 표현예술심리상담 전문 인력 육성과 활동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241	기후변화실천연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가락동, 제일오피스텔)	원영재	2018-05-18	○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저감운동을 위한 저탄소생활시민실천운동 ○ 생활주변의 환경 오염 저감을 위한 자발적 참여와 환경지킴이 운동 ○ 생활 속 환경오염예방과 저변 확대를 위한 환경아카데미 운영 ○ 자원의 재이용율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환경설계사 양성 및 실천운동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한.중 공동협력 사업 및 공익사업 ○ 본 단체의 운영목적에 관한 기타 주요사업 등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240	도봉환경교실 자연해설단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6길 33 (방학동)	김희련	2018-05-18	○ 환경교육활동: 아동, 여성, 성인,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환경교육 산림문화와 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포함 ○ 지역사회활동: 지역환경교육을 위한 조직사업과 환경교육 대중화를 위한 활동 ○ 대외협력활동: 타 단체 및 지역내 유관단체와의 대외협력활동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240	도봉환경교실 자연해설단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6길 33 (방학동)	김희련	2018-05-18	○ 환경모니터링활동: 지역 생물종 데이터를 위한 지원, 모니터링 활동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239	해병대전우회 성동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서울숲 관리사무소)	이종기	2018-05-18	○ 재해재난지역 인명구조활동 ○ 재난지역 실종자 수색 및 복구 활동 ○ 한강 수중 정화활동 ○ 시민안전 및 인명구조 교육 실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238	모든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4길 19 (명륜2가, 동숭비즈니스센터)	박병은	2018-05-14	○ 학술연구(학술대회. 세미나, 모니터링 등) 사업 ○ 교육(인권교육, 워크숍 등) 사업 ○ 출판(전자 출판 포함 등) 사업 ○ 국내 및 국제 교류 사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237	누구나 꽃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3길 9 (성수동2가, 아이템플)	이진주	2018-05-09	다문화가정에 꽃배달 후원활동, 사회복지단체 기부금모금 지원활동 등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236	(사)관악푸르게만들기 환경지킴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3길 19 (신림동)	김동규	2018-05-03	○ 관악산의 환경생태계의 조성과 보전을 위한 환경단체 협력 및 사업 ○ 자연환경보존 의식함양을 위한 캠페인 및 봉사활동 ○ 환경오염 감시활동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235	장애인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당산동1가, 에이블허브)	이범재	2018-05-02	○ 장애관련 법·제도·정책 연구 및 개발사업 ○ 국내외 학술교류 사업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 인재양성 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 기타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사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234	(사)자연의벗연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36 (합정동)	이시재	2018-05-02	○ 국제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시행 ○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연구 ○ 환경교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233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교남동)	박덕신	2018-04-30	남북 민간교류사업, 민간교류행사 등 서울지역 평화통일과 관련된 제반 사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 담당관
2232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45 (영등포동8가, 영등포삼환아파트)	이규식	2018-04-27	○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및 홍보와 이념교육 ○ 동료상담 ○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 정보제공 ○ 자립생활기술훈련 ○ 주거지원(자립생활주택운영)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사업 ○ 그밖에 본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 정책과
2231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2길 11 (신정동, 청구아파트)	최양희	2018-04-25	○ 여성권익신장사업 ○ 소비자생활협동사업 및 소비자권익사업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담 및 여성인권증진사업 ○ 여성의 고용평등과 경제세력화사업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2230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서초동)	여한구	2018-04-20	1.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2. 아동·청소년 인성강화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3.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 서비스 4. 아동·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서비스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229	평화통일연구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조헌정	2018-04-16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 담당관
2228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황백남	2018-04-16	○ 자립생활센터의 이념보급 및 인재육성 사업 ○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권익옹호 사업 ○ 장애인 당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동료상담가 교육 및 파견 사업 ○ 활동보조인 교육 및 파견사업 ○ 자립생활 센터 간 연계 및 정보교류사업 ○ 정보제공과 의뢰 ○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 정책과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227	내외동포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2 (신문로1가, 신문로빌딩)	정연국	2018-04-16	○ 귀향동포 안심귀국 및 안정정착 지원 ○ 청년 해외취업 및 국외이주 지원 ○ 한류문화 진흥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내외동포 지도자「한민족정보망」 운영	기획조정실 국제교류 담당관
2226	비영리 민간단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41길 36 (연남동,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장제모	2018-04-10	○ 주민운영회 구성과 운영 컨설팅 서비스 ○ 주민운영회 구성원의 역량강화 서비스 ○ 공모사업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행 컨설팅서비스 ○ 주민공동체의 생산을 위한 물자 공급 및 판매 대행 서비스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 담당관
2225	사단법인 문화재형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1길 36 (계동)	장남경	2018-04-10	○ 한국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사업 ○ 문화?예술 관련 기획?전시?건축?공연?박람회 등에 관한 사업 ○ 한국 전통 민속, 문화 체험 및 교육, 보호사업 ○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사업 ○ 문화재, 문화유산 활용 상품의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224	우리가 그린(green) 은평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홍순동	2018-04-06	○ 환경보전에 대한 조사·연구 ○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환경 보전 관련 업무 ○ 환경관련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 연구와 개선 건의 등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223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경운동, 경운동 운현 SKY 빌딩)	최병진	2018-04-06	○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 및 추모사업 ○ 올바른 민주의식 함양과 5·18 정신계승을 위한 청소년 역사교육사업 ○ 국내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음해하는 반민주세력에 공동대처하는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222	한국농구발전연구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93 (홍제동)	천수길	2018-04-02	○ 다문화, 장애인, 시설아동 등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스포츠단 구성 및 운영 ○ 국내외 스포츠 대회 개최 ○ 학술 연구소 및 교육시설 설립 및 편찬에 관련된 행위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후원금, 출자금) 및 자활사업과 교육, 연구, 공모 등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221	청소년희망플랫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 (종로2가, YMCA)	박옥식	2018-04-02	○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 청소년 인권신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 문화활동 ○ 청소년 관련 도서 출판 및 정보 교류사업 ○ 남 · 북 청소년 및 다문화청소년, 소외청소년 지원사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

대상 기간 : 2018.04.01. ~ 2018.06.30.

대상 단체: 26개 단체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1382	희망제작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성산동)	정지강	2018-06-20	소재지 변경(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3층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997	장애인문화예술극회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2길 61 (신정동)	김동수	2018-06-12	대표자, 소재지 변경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665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8길 5 (당산동,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2018-06-12	서울시의사회장 변경에 따라 대표자 변경을 이사회에서 의결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571	한국시각장애인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79(신길동)	심준구	2018-06-05	대표자변경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2008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나길 46 (마포동, 덕성빌딩)	김정욱	2018-06-01	소재지를 강남구 역삼로18길 5, B101호에서 마포구 마포대로4나길 46, 2층 (마포동) 으로 이전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433	프리메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76-5 , 103호(창천동, 건물)	류혜민	2018-05-30	총회에서 대표자 변경 결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156	사단법인 국가문화발전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26 (신정동, 서강GS아파트)	김순옥	2018-05-28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변경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241	기후변화실천연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가락동, 제일오피스텔)	원영재	2018-05-18	대표자 주소 정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575	소나무상담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72길 10 (면목동)	송민서	2018-05-16	소재지 변경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236	이레오케스트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8길 108 (망우동)	최영분	2018-05-09	비영리단체 대표자 변경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088	문화예술NGO예술과시민사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오상길	2018-05-09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 등록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060	뉴시니어라이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23 (서초동, 금석빌딩)	구순자	2018-05-03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1764	한국NVC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3가길 33 (창천동)	씽어 캐서린	2018-05-02	소재지 변경 등록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930	생태공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36 (합정동)	김명철	2018-04-26	주소지 변경신고사항 입력 및 자료 현행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907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0길 9-4 (당산동1가)	최미진	2018-04-25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304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36길 10 (중화동, 청원다미소아파트)	이정열	2018-04-25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757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10 (신당동)	김성은	2018-04-25	소재지변경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035	풀울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5길 13 (도화동)	정연욱	2018-04-24	주소 변경에 따른 변경 등록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85	사단법인 최재형기념고려인지원사업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여의도동, 백상빌딩)	김창송	2018-04-23	주무관청 변경 요청에 따라 이관 완료 (이관부처 :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030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7길 10 (봉천동)	유동현	2018-04-20	대표자 변경 : 신석철 → 유동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220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7길 14 (구로동, 씨큐어넷빌딩)	이동수	2018-04-19	주된사업변경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968	오가니제이션 요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102호(영등포동7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한영미	2018-04-18	소재지 이동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323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최회균	2018-04-18	대표자 변경 및 단체자료 현행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	여성환경연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영등포동7가, 여성미래센터)	남미정	2018-04-18	대표자 변경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015	변화의 첫걸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5길 13 (도화동)	이승용	2018-04-09	소재지 변경(전: 서대문구 홍제동 28-26, 104호 → 후: 마포구 삼개로5길 13, 101호)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2078	사단법인 대한민국 충효범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 (견지동, 우정에쉐르)	신석경	2018-04-06	소재지변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 담당관
2057	생명문화학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마포동, 한신빌딩)	유수현	2018-04-05	대표자 변경(하상훈 →유수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2113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6나길 35 (봉익동, 금강빌딩)	김승모	2018-04-03	대표자 변경 신청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1658	서울특별시 곰두리 봉사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12 (신설동)	유성수	2018-04-03	대표자 소재지 변경	복지본부 장애인복지 정책과
32	(사)한국 여성건축가 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 1동 13 층 1314 호(역삼동, 역삼현대벤쳐텔)	장현숙	2018-04-02	대표자 임기만료로 대표자 변경(박영순 → 장현숙)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1665	더 브릿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 (을지로6가, 구민회관)	황진솔	2018-04-02	소재지 변경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 -

대상 기간: 2018.04.01. ~ 2018.06.30.

대상 단체: 2개 단체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관부서	말소일	말소사유
2172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관악을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6길 27(신림동, 신림중앙시장)	김태일	2017-10-1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8-06-07	신청에 의한 말소
1041	(재) 송석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54-14(도봉동)	박형호	2009-06-0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8-04-12	신청에 의한 말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84호

강서구 화곡동 40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2018. 8. 3. ~ 2018. 8. 16.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02-2133-4945)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서구 화곡동 40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	증) 573.5	573.5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73.5	-	573.5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73.5	감) 573.5	-	-	-
	준주거지역	-	증) 573.5	573.5	100.0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미관지구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강서로	일반미관지구	내발산동 645-1 ~ 화곡동 907-5	78,960 (381)	3,290 (33)	양측 12	서울시고시 제164호 (1982.4.22.)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 고도지구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강서구, 양천구 일부지역	수평표면 (해발 57.86m 미만)	29,129,000 (573.5)	서울시고시 제120호 (1977.4.22)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 시설보호지구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과해, 외발산, 고척, 신월, 공항, 마곡, 화곡, 내발산, 가양, 신정, 우장산	57,931,000 (573.5)	서울시고시 제120호 (1977.4.22.)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573.5	• 단독개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계획	지정용도 (1)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 단, 지상1층은 비주거용도 설치	• 역세권 청년주택
	불허용도 (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장례식장	–
	권장용도 (2)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및 서점	–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

■ 결정 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 지정 · 불허 · 권장용도 신설	• 청년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고자 강서구 화곡동 401-1 필지에 한하여 지정 · 불허 · 권장용도를 신설함

나.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기본용적률 : 40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 용적률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높이	40m 이하	• 「공항시설법」에 의한 최고높이(해발 70.43m) 이하

■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용적률	기본용적률/상한용적률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에 부합하는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적용
높이	40m 이하	• 「공항시설법」에 의한 최고높이(해발 70.43m) 이하 적용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 부지 면적의 10% 이상[주1]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10.16%(58.32㎡)	기본 용적률 4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비주거비율		• 15% 미만 (지상1층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주2] = 92.31% : 7.69%		
주택 건설 기준	공공임대 : 민간임대	• 10 : 90 (비율 10% 이상 공공임대)	• 공공임대주택 : 9세대 (11.49%) – 14.21㎡(2세대), 14.35㎡(5세대), 15.73㎡(1세대), 21.94㎡(1세대) • 민간임대주택 : 48세대 (88.51%) – 14.21㎡(2세대), 14.35㎡(16세대), 16.50㎡(2세대), 17.15㎡(2세대), 21.94㎡(5세대), 24.00㎡(1세대), 28.49㎡(2세대), 29.93㎡(2세대), 30.07㎡(8세대), 31.11㎡(1세대), 32.16㎡(5세대), 32.60㎡(1세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 미대상(100세대 미만)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지상2층에 청년층를 위한 스터디룸 110.10㎡ 조성 계획		

주1)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시 부지면적의 10.0% 이상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8.03.07.) 준용

주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에 따라 비주거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함

다. 공공기여 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공공기여계획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00% 이하	용도지역(변경) 부지면적의 10% 이상[주1] (57.35㎡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10.16% (58.32㎡)	• 화곡동 401-1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강서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	-
	• 강서로29길변 : 대지경계로부터 1m 후퇴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강서로변	-

Ⅳ.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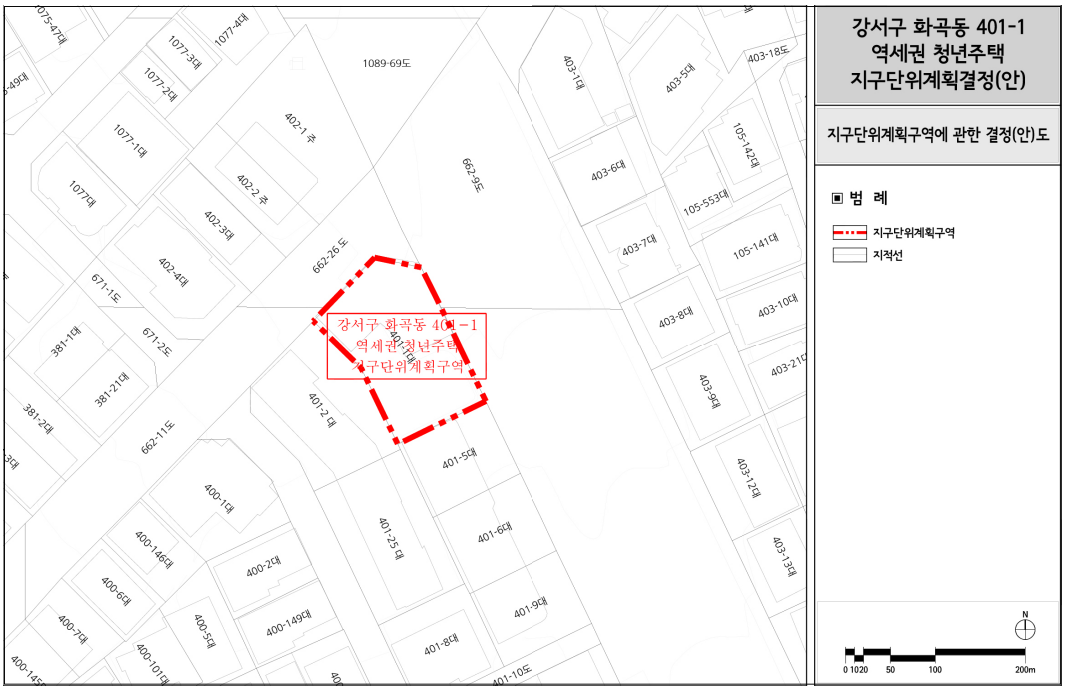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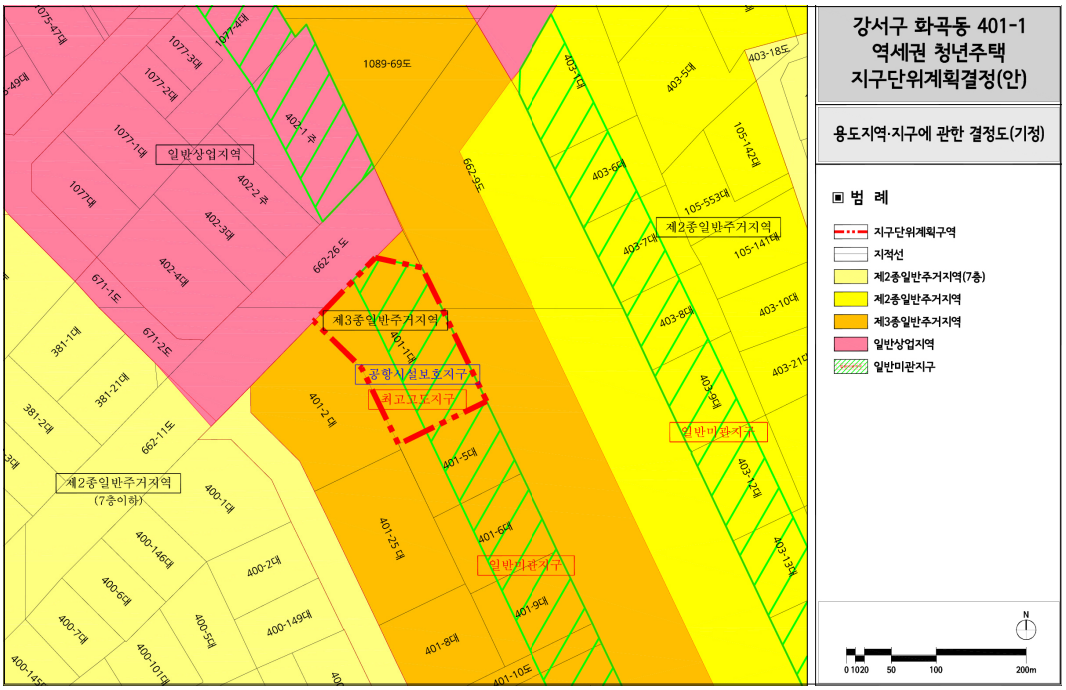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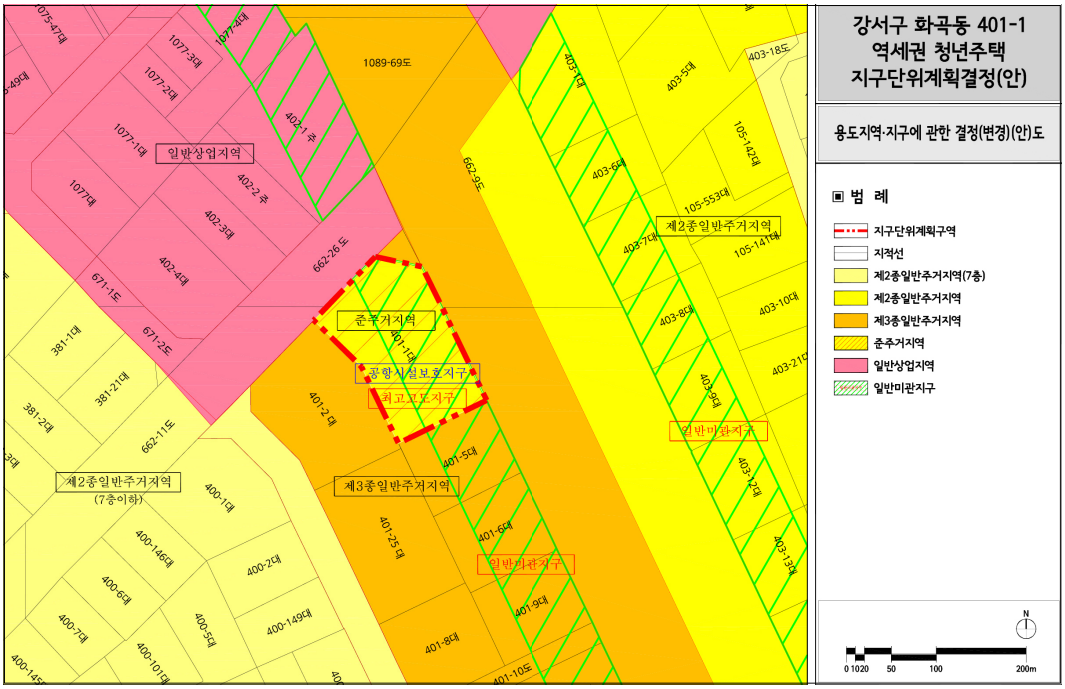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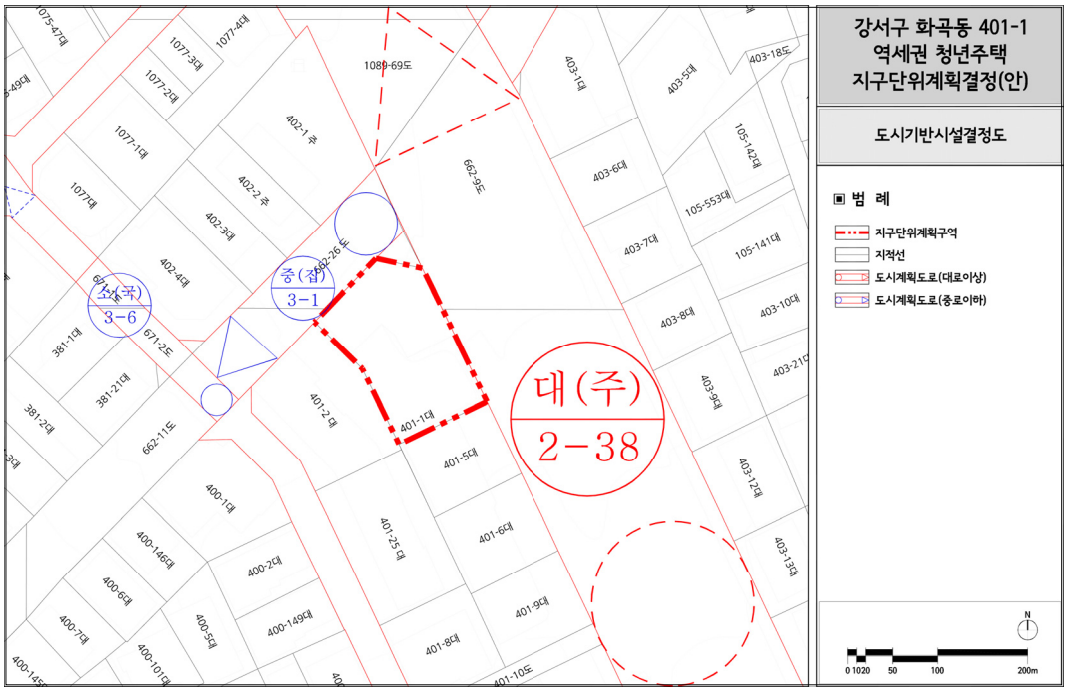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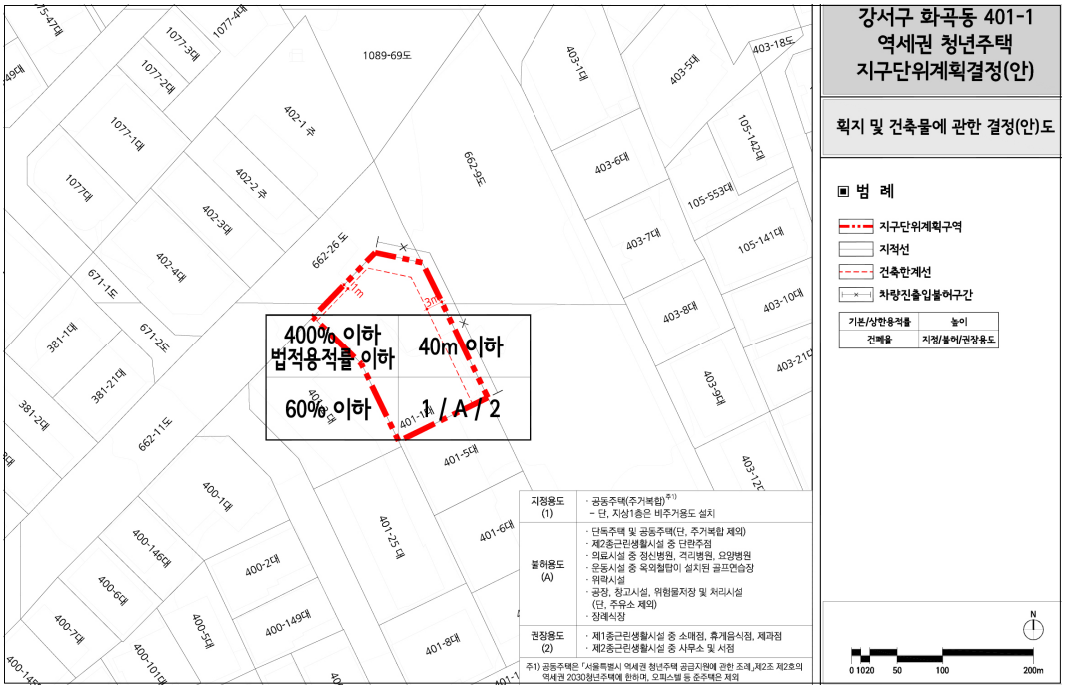

V.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90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업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대상

연번	상 호	허가번호	소 재 지	대표자
1	㈜녹색앤푸드	2강10048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외발산동)	신*칠

2. 처분의 내용 : 중도매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3개월 연속 무실적(2018년 2,3,5월)
※ 2018년 4월은 업무정지 기간으로 실적산정 기간에서 제외

4. 처분근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5. 처 분 일 : 2018. 7. 30.

6. 이의제기 안내
- 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음.

7.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
-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내 배정받은 점포 반납, 보증금 환급 등의 절차를 거쳐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리됨.
(허가취소 절차관련 문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2640-6056)

8. 기타 문의처 :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2133-5384)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8-69호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5호(2010. 2.25.)로 결정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봉익동 11-3번지에 대하여 2018년 제4차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 7.12.)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종 로 구 청 장

1. 변경 결정 사유
   ○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봉익동 11-3번지상에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건축지정선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일부 건축지정선을 완화하여 한옥이 신축되어야 한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지정선 1m 이내의 경미한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배치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적용구역	계획내용	적용구역	계획내용	
건축 지정선	순라길변	•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 지정선 지정	순라길변	•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 지정선 지정 (단, 봉익동 11-3번지는 지붕선형을 기준으로 건축지정선 조정)	

2. 관계도면 : 붙임참조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건축과(☎ 2148-281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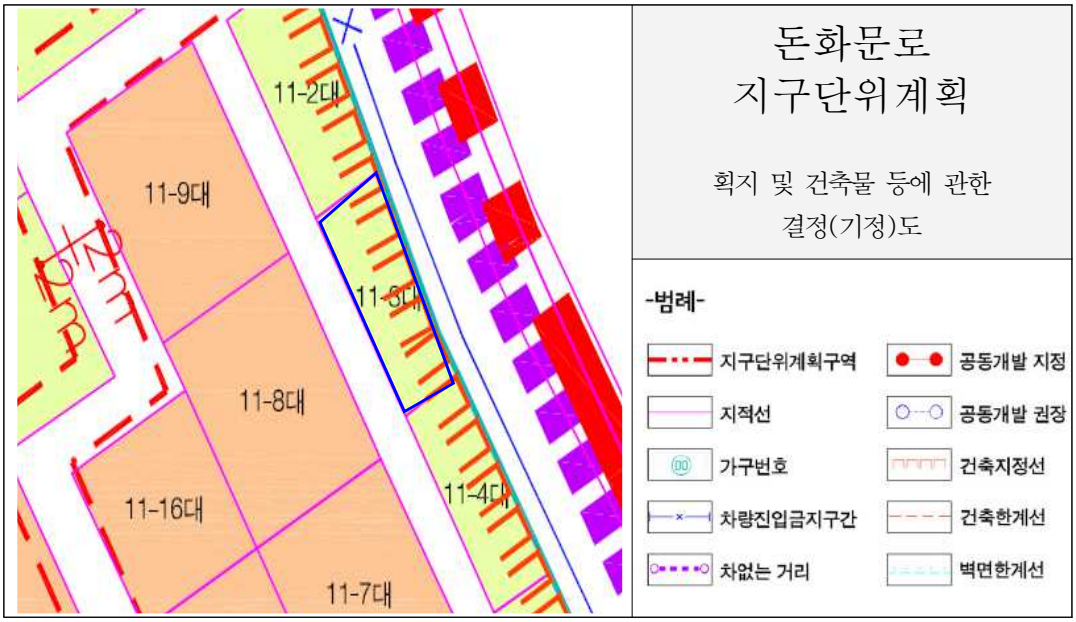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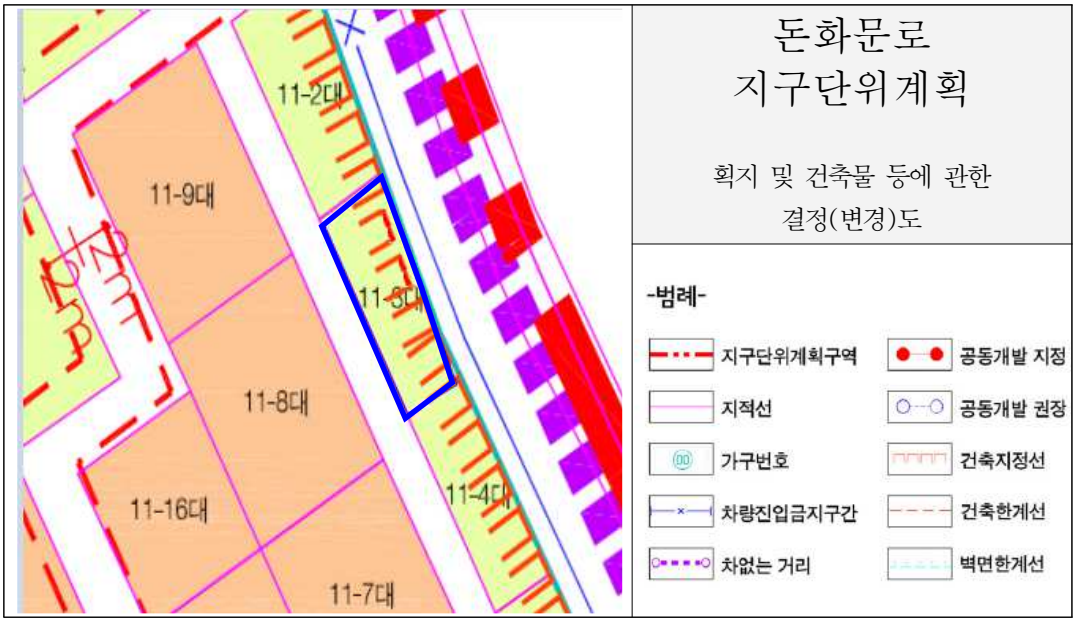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구고시 제2018-85호

봉래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11호(2017.8.24.)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봉래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중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봉래동1가 48-3 일원	30,743.3	감) 1.5	30,741.8	

나. 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면적 감소 : 감 1.5㎡ ▪ 명칭 변경 :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지적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 감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구역 명칭 변경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0,743.3	감) 1.5	30,741.8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639.0	증) 4.2	6,643.2	21.6	
	도 로	6,142.0	증) 4.2	6,146.2	20.0	
	공공공지	497.0	-	497.0	1.6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시행지구	소 계	12,872.6	감) 5.7	12,866.9	41.9	
	제1지구	2,826.3	감) 5.7	2,820.6	9.2	
	제2지구	3,378.9	-	3,378.9	11.0	
	제3지구	4,115.9	-	4,115.9	13.4	
	제4지구	676.9	-	676.9	2.2	
	제5지구	939.5	-	939.5	3.1	
	제6지구	935.1	-	935.1	3.0	
존치지구	소 계	11,231.7	-	11,231.7	36.5	
	존치1지구	372.1	-	372.1	1.2	
	존치2지구	2,854.2	-	2,854.2	9.3	
	존치3지구	1,002.6	-	1,002.6	3.3	
	존치4지구	436.3	-	436.3	1.4	
	존치5지구	2,138.9	-	2,138.9	7.0	
	존치6지구	366.6	-	366.6	1.2	
	존치7지구	3,079.4	-	3,079.4	10.0	
	존치8지구	819.6	-	819.6	2.7	
	존치9지구	162.0	-	162.0	0.5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임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0,743.3	감) 1.5	30,741.8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0,743.3	감) 1.5	30,741.8	100.0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임

2) 용도지구 (변경없음)

가) 미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칠패로변	27,360 (5,056)	400 (180)	12	1982.4.22. (서고제164호)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통일로변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세종대로변	173,930 (6,195)	1,850 (229)	25		

※ ( )는 구역 내의 면적 및 연장임

나) 방화지구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	봉래동 48-3 일원	101,000 (30,743.3)	-	-	1973.8.1. (건고제317호)	집단

※ ( )는 구역 내의 면적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0~53 (53)	주간선 도로	1,500 (300)	세종로광장	서울역앞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722)	세종대로
기정	광로	3	11	40~43 (43)	주간선 도로	1,150 (210)	서울역광장	서대문광장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722)	통일로
기정	대로	2	4	30~45 (33)	주간선 도로	1,340 (200)	남대문광장	중림동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722)	칠패로
기정	중로	2	-	14~15	집산 도로	232	봉래동1가 4-2	봉래동1가 79	일반 도로	-	2017.8.24. (서고제311호)	세종대로5길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103	봉래동1가 6-23	봉래동1가 126-2	일반 도로	-	2017.8.24. (서고제311호)	세종대로1길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85 (41)	봉래동1가 53-3	봉래동1가 88-1	일반 도로	-	2017.8.24. (서고제311호)	(1,2지구 동측)

※ ( )는 구역 내의 폭원 및 연장임

2)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봉래동1가 111-3 일원	497.0	-	497.0	1999.4.14. (서중고제19호)	

3) 철도(정거장)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폭 (m)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1호선서울역)	서울역광장 (봉래동2가 122-27일대)	11.4~ 32.4	288.2	8,932.7	71.3.26. (건고158호)	• 중복결정 - 도로: 8,475.0㎡ - 광장: 8,191.5㎡ • 입체결정 - 3지구내: 880.2㎡

4) 철도(정거장) 입체적 결정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내용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	남대문로5가 63-11번지 일대	면적 (㎡)	지상부	359.4	-	359.4	2017.8.24. (서고 제311호)	
					지하부	520.8	-	520.8		
				길이(m)		42.6	-	42.6		
				폭(m)		9.3~17.6	-	9.3~17.6		
				높이(m)		18.5~44.9	-	18.5~44.9		

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 계획 (변경)

1)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분	사업 지구	시행지구 면적(㎡)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 용지 (㎡)	대지내 폐지 국공유지 (㎡)	기반시설 부담면적 (㎡)	순부담률(%)			비고
								기반시설 (토지) 부담률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률	합계	
계		14,518.0	12,866.9	1,651.1	-	-	1,651.1	11.3	1.8	13.2	평균 순부담률 11.3%
기정	제1지구	3,395.5	2,826.3	569.2	-	-	569.2	16.8	-	16.8	
변경		3,394.0	2,820.6	573.4	-	-	573.4	16.9	-	16.9	
기정	제2지구	3,907.5	3,378.9	528.6	-	-	528.6	13.5	-	13.5	
기정	제3지구	4,592.5	4,115.9	476.6	-	-	476.6	10.4	0.9	11.3	
기정	제4지구	742.8	676.9	65.9	-	-	65.9	8.9	2.4	11.3	
기정	제5지구	939.5	939.5	0.0	-	-	0.0	0.0	11.3	11.3	
기정	제6지구	941.7	935.1	6.6	-	-	6.6	0.7	10.6	11.3	

※ 순부담률 = 순부담 면적 ÷ (시행지구 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면적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4,5,6지구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시 순부담률 11.3%이상 되도록 추가 기부채납(건축물 등)을 계획하되, 공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조정토록 함

마.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봉래 구역	12,872.6	제1지구	2,826.3	봉래동1가 57-2 일원	업무	60이하 (저층부 70이하)	1,009이하	90 이하	
			제2지구	3,378.9	봉래동1가 82 일원	업무	60이하	600/800/-	90 이하	
			제3지구	4,115.9	봉래동1가 132-4 일원	업무	60이하 (저층부 65%이하)	949이하	90 이하	
			제4지구	676.9	봉래동1가 126-1 일원	업무	60이하	600/800/-	90 이하	
			제5지구	939.5	남대문로5가 6-15 일원	업무	60이하	600/800/-	90 이하	
			제6지구	935.1	남대문로5가 6-8 일원	업무	60이하	600/800/-	90 이하	
변경	봉래 구역	12,866.9	제1지구	2,820.6	봉래동1가 57-2 일원	업무	60이하 (저층부 70이하)	1,011이하	90 이하	
			제2지구	3,378.9	봉래동1가 82 일원	업무	60이하	600/800/-	90 이하	
			제3지구	4,115.9	봉래동1가 132-4 일원	업무	60이하 (저층부 65%이하)	949이하	90 이하	
			제4지구	676.9	봉래동1가 126-1 일원	업무	60이하	600/800/-	90 이하	
			제5지구	939.5	남대문로5가 6-15 일원	업무	60이하	600/800/-	90 이하	
			제6지구	935.1	남대문로5가 6-8 일원	업무	60이하	600/800/-	90 이하	

※ 제1지구 외 타 지구의 건축시설계획은 변경 없음

3. 봉래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봉래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봉래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구 봉래동1가 57-2 일원	3,395.5	감) 1.5	3,394.0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임

※ 당초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변경

4. 봉래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395.5	감) 1.5	3,394.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569.2	증) 4.2	573.4	16.9	
	도 로	569.2	증) 4.2	573.4	16.9	
획지 (대지)	소 계	2,826.3	감) 5.7	2,820.6	83.1	
	획지1	2,826.3	감) 5.7	2,820.6	83.1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임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395.5	감) 1.5	3,394.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395.5	감) 1.5	3,394.0	100.0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임

2) 용도지구 (변경없음)

가) 미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칠패로변	27,360 (1,206)	400 (90)	12	1982.4.22. (서고제164호)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통일로변					

※ ( )는 구역 내의 면적 및 연장임

나) 방화지구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	봉래동 48-3 일원	101,000 (3,394.0)	-	-	1973.8.1. (건고제317호)	집단

※ ( )는 구역 내의 면적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1	40~43 (43)	주간선 도로	1,150 (56)	서울역광장	서대문광장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722)	통일로
기정	대로	2	4	30~45 (33)	주간선 도로	1,340 (38)	남대문광장	중림동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722)	칠패로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85 (41)	봉래동1가 53-3	봉래동1가 88-1	일반 도로	-	2017.8.24. (서고제311호)	(1,2지구 동측)

※ ( )는 구역 내의 폭원 및 연장임

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 계획 (변경)

1)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분	구역명	시행지구 면적(㎡)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 국공유지 (㎡)	기반시설 부담면적 (㎡)	순부담률 (%)	비고
기정	봉래구역 제1지구	3,395.5	2,826.3	569.2	-	-	569.2	16.8	
변경		3,394.0	2,820.6	573.4	-	-	573.4	16.9	

※ 순부담률 = 순부담 면적 ÷ (시행지구 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면적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2)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 계획 (변경)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569.2	증) 4.2	573.4	
봉래구역 제1지구	봉래동1가	45-1	도로	14.4	증) 1.3	15.7	
		52	도로	72.1	-	72.1	
		52-1	도로	0.4	감) 0.1	0.3	
		53-2	도로	13.0	-	13.0	
		53-3	도로	36.1	증) 0.1	36.2	
		58-4	도로	159.4	증) 0.4	159.8	
		65-5	도로	32.2	감) 0.3	31.9	
		72-1	도로	6.0	감) 0.1	5.9	
봉래구역 제1지구	순화동	199-4	도로	4.1	증) 1.4	5.5	
		204-5	도로	14.4	증) 0.3	14.7	
		205-2	도로	29.2	증) 0.2	29.4	
		206-2	도로	1.4	-	1.4	
		206-3	도로	0.4	-	0.4	
		207-23	도로	17.3	-	17.3	
		207-24	도로	17.9	감) 0.1	17.8	
		207-25	도로	15.0	-	15.0	
		207-26	도로	56.0	증) 0.4	56.4	
		207-27	도로	2.0	-	2.0	
		207-31	도로	1.0	-	1.0	
		208-2	도로	46.2	감) 0.1	46.1	
		208-4	도로	26.6	-	26.6	
		208-7	도로	4.1	증) 0.8	4.9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임

마.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명칭	구역구분 면적(㎡)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명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면적(㎡)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기정	봉래구역 제1지구	3,395.5	획지1	2,826.3	봉래동1가 57-2 일원	업무시설	60이하 (저층부 70이하)	1,009이하	90 이하	
변경		3,394.0		2,820.6				1,011이하		

제1지구 심의완화 사항

기정

■ 용적률 : 1,009.0%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200%

목 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 1등급)	정량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240kWh/㎡ · 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		
도시경제활성화	벤처기업집적시설(942.1㎡이상) 설치	정률부여	50%
보행가로활성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정량부여	5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최우수 등급시		

③ 상한용적률 : 1,009.0%

구 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1.3×α)	800×(1+1.3×(569.2/2,826.3)	1,009.44%
계		-	1,009.0%

변경

■ 용적률 : 1,011.0%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200%

목 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 1등급)	정량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240kWh/㎡ · 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		
도시경제활성화	벤처기업집적시설(940.13㎡이상) 설치	정률부여	50%
보행가로활성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정량부여	5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최우수 등급시		

③ 상한용적률 : 1,011.0%

구 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1.3×α)	800×(1+1.3×(573.4/2,820.6)	1,011.4%
계		-	1,011.0%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지정용도(1,2층)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축한계선
- 통일로변 : 5m
- 칠패로, 신설도로변 : 3m

■ 고층부벽면한계선(6층이상, 20m이상)
- 통일로변 : 8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중 도면 표시 구간

■ 시행구역내 포함된 가로변 지장물(변압기 등)은 획지 또는 건축물 내로 이전설치

5.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관계도면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관계서류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구 도심재생과(☎3396-5774)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tl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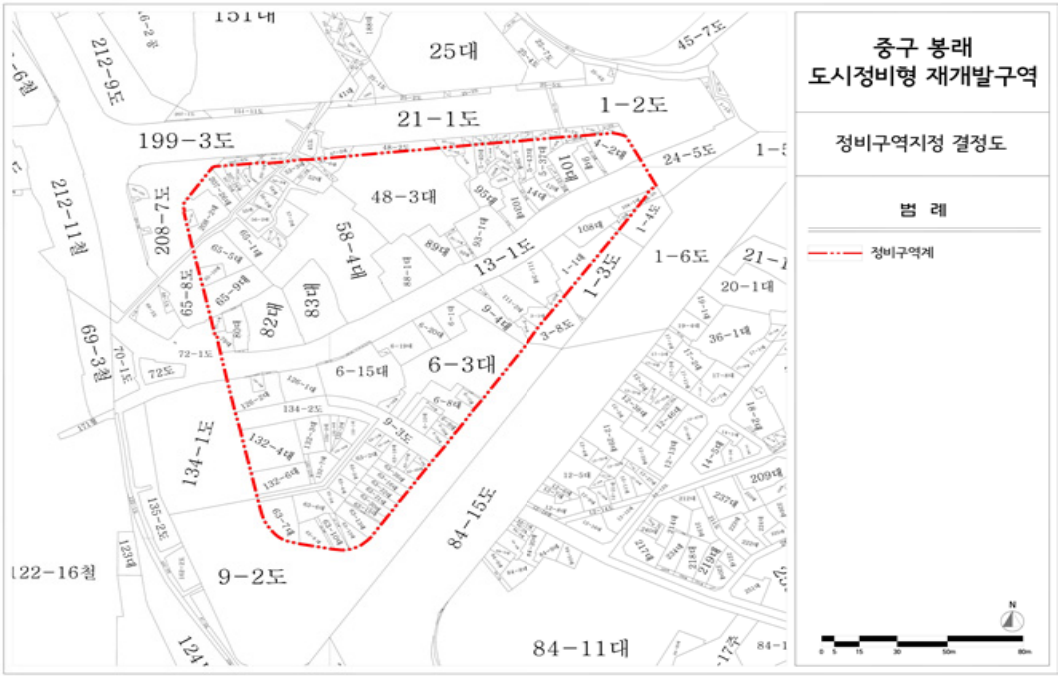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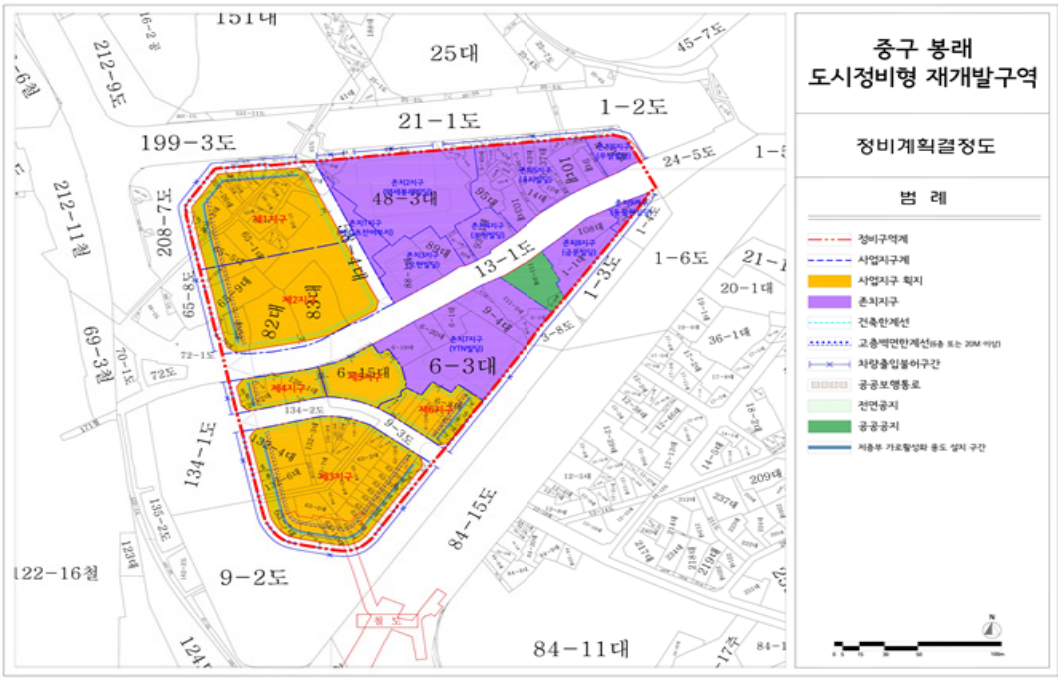

◈ 용산구고시 제2018-93호

도시계획시설(철도:용산민자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2000-362호(2001.1.6.)로 실시계획인가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번지 외 3필지 상 용산민자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번지 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 칭 : 용산민자역사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다.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철도) 면적 : 126,930.74㎡
◯ 대지면적 : 118,138.5㎡(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면적 적용)

명 칭	구분	시설규모(㎡)	비고
용산 민자역사 사업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건축면적	58,394.69	-
	연면적	335,737.12	
	높이	B3F~10F/63.1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성 명
- 기정 : (주)현대아아파크몰 대표이사 양창훈
- 변경 : 에이치디씨아아파크몰(주) 대표이사 양창훈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번지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착수예정일 : 착공신고일
◯ 준공예정일
- 기정 : 착공신고일로부터 21개월
- 변경 : 착공신고일로부터 33개월
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시설면적	대지면적		
1	한강로 3가	40-961	철도용지	33.0	33.0	-	한국 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소제동)
2	한강로 3가	40-999	철도용지	116,403.0	116,403.0	116,403.0	국 (국토교통부)	-
3	한강로 3가	40-1010	철도용지	1,735.5	1,735.5	1,735.5	한국 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소제동)
4	한강로 3가	40-1026	철도용지	8,759.2	8,759.2	-	국 (국토교통부)	-
계				126,930.7	126,930.7	118,138.5	-	

사.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설치비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아.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서

◯ 해당사항 없음

자. 자원조달계획

◯ 본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사업시행자가 자체조달

차.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도봉구고시 제2018-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89호(2009.12.10.)로 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43호(2009.12.31.) 도시관리계획(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18-599호(2018.5.3.)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지정을 위해 열람공고 한 「도봉동 352-18~344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로과(☎ 2091-4053~5)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2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도봉동 352-18~344간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도봉동 352-18~344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및 내용
  ○ 도로개설 : 폭 6~8m, 길이 299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720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9.12.31까지
바. 지장물건의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사 업 명 : 도봉동 352-18~34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도봉동 352-42	전	40	40	이점북	서울 도봉동 352-18					
2	도봉동 341-26	답	127	42	김종진	서울 도봉동 347	67/225				
					김경복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2 주공아파트 1105동 804호	56/225				
					이의준	서울 도봉구 도봉동 341-6	32/225				
					김종섭	서울 종로구 효제동 141-1	70/225				
3	도봉동 352-35	전	42	42	고려 기프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가길 8(도봉동)					
4	도봉동 352-37	대	1	1	강임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0-21					
5	도봉동 353-5	도	922	100	국	국토교통부					
6	도봉동 342-1	임	818	64	신현구	서울 도봉구 도봉동 342-1	3608/5830				
					이은순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456	40.495/265				
					이은옥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8-7	5.785/265				
					신은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63(도봉동)	34.72/265				
					장정애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7길 14-2(행당동)	440/5830				
합 계				289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도봉동 353-5	도	922	586	국	국토교통부					
8	도봉동 350-3	도	8	8	신현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63(도봉동)					
9	도봉동 352	전	1,689	107	김영범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95 청구아파트 101-504호					
10	도봉동 349-1	대	261	10	이순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73(도봉동)					
11	도봉동 349-18	도	8	1	이정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81(도봉동)					
12	도봉동 351	대	876	40	조창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51	387/1971				
					이시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103-4 목촌신도브래뉴1차아파트 104-1104	258/1971				
					이민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84 운하수아파트 102-1501	258/1971				
					이경규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35-34 401	258/1971				
					이계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80(도봉동)	1080/11388				
					김윤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51	720/11388				
					김기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03-10 세운빌라 비01	720/11388				
					김기평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51	720/11388				
					박정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6-17 201	720/11388				
					문선호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6	720/11388				
합 계				75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도봉동 349-26	도	67	2	이준규	서울 도봉구 도봉동 349	34/67				
					이만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81(도봉동)	16/67				
					이문규	천안시 쌍용동 1361 계룡푸른마을아파트 104-303	17/67				
14	도봉동 349-25	대	363	102	이준규	서울 도봉구 도봉동 349					
15	도봉동 383-5	대	65	65	장혜숙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13,105동1005호 (창동,주공아파트)					
16	도봉동 383	대	2,326	6	홍영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6번길 9-6, 나동 202호(공릉동,부영연립)	495.87/2345				
					김준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35길 47,101동 401호(청담동,한신오페라하우스)	1683.84/2345				
					최효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35길 47,101동 401호(청담동,한신오페라하우스)	165.29/2345				
17	도봉동 347	대	314	21	이지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241-59(남가좌동)					
18	도봉동 384-2	전	450	51	국	기획재정부					
19	도봉동 352-8	도	278	1	국	국토교통부					
합 계				248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도봉동 350-1	대	557	12	신현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63(도봉동)					
21	도봉동 350-2	대	139	14	김오영	350-2					
22	도봉동 349-2	도	7	1	이순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73(도봉동)					
23	도봉동 349	대	385	16	이정우	349					
24	도봉동 349-19	도	16	4	이정우	349					
25	도봉동 349-28	대	163	29	이만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81(도봉동)					
26	도봉동 348	임	955	28	구본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412					
27	도봉동 384-4	전	93	82	이창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 306동204호(잠원동,신반포8차아파트)	1/2				
					이경민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47, 405호	1/2				
28	도봉동 345-2	전	466	83	이창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 306동204호(잠원동,신반포8차아파트)	1/2				
					이경민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47, 405호	1/2				
29	도봉동 345-3	답	43	14	김평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704 한진타운아파트103-902	1/2				
					김태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8-1 보라매삼성아파트 103-404	1/2				
합 계				28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0	도봉동	384-3	대	443	37	서순덕	서울 도봉구 도봉동 349	12/114				
						이태복	서울 도봉구 번동 504-3	1/114				
						이태근	서울 도봉구 창동 504-3	1/114				
						김영록	서울 도봉구 미아동 358-1	1/114				
						김미숙	서울 도봉구 미아동 358-1	1/114				
						김현식	서울 도봉구 미아동 358-1	1/114				
						정숙진	의정부시 호원동 106-73	6/114				
						정숙자	의정부시 호원동 226-59	6/114				
						정인숙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그린타운 512-803	24/114				
						박종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길 28-12, 201호(묵동,선경하이츠빌라)	72/1083				
						이진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65,5동 606호(중계동,경남아파트)	84/1083				
						이효진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3, 106동 201호(쌍촌동,상무푸르지오아파트)	1/114				
						지요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13동 302호(둔촌동,둔촌주공아파트)	18/114				
						주식회사 기용	광주광역시 광산동 기룡길 65(하산동)	18/114				
						김을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30길 30, 102동 1401호(미아동,경남아너스빌)	72/1083				
합 계					37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1	344	임	630	200	김윤실	서울 도봉구 창동825 북한산아이파크507-1901					
32	353-20	도	39	10	국	국토교통부					
33	353-23	구	877	12	공	서울특별시 도봉구					
34	343-3	대	321	1	박용재	서울시 도봉구 349					
35	353-5	도	922	185	국	국토교통부					
36	342-5	전	1,326	19	이강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번길 99-5(도봉동)					
37	341-40	도	819	8	공	서울특별시					
38	344-1	도	15	13	공	서울특별시					
합 계				448							

물 건 조 서

사 업 명 : 도봉동 352-18~34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도봉동 352-18	담장	벽돌	17.0	m	이점복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52-18				
		대문	철제	1.0	개소						
2	도봉동 352-35	담장	옹벽	17.0	m	고려기프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가길 8(도봉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도봉동 342-1	건물	시멘트 콘크리트	8	㎡	신현구	서울 도봉구 도봉동 342-1				
		창고	스레트	2	㎡	이은순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456				
						이은옥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8-7				
		휀스	H=1.8	5	m	신은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63(도봉동)				
						장정애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7길 14-2(행당동)				
4	도봉동 350-1	대문		1	개소	신현구	서울 도봉구 도봉동 342-1				
		휀스	H=1.8	10.5	㎡						
		창고	스레트	6.6	㎡						
5	도봉동 349	차고	스레트	3	㎡	이정우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49				
		가건물	스레트	1	㎡						
		건물	시멘트벽돌조	2	㎡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도봉동 351	창고	스레트	5	㎡	조창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51				
						이시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103-4 목촌신도브래뉴1차아파트 104-1104				
		담장	벽돌 H=1.5	2.3	m	이민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84 운하수아파트 102-1501				
						이경규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35-34 401				
		화장실	스레트	4	㎡	이계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80(도봉동)				
						김윤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51				
						김기평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51				
		창고	스레트	6.6	㎡	박정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6-17 201				
						문선호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6				
						김기필	경기도고양시덕양구성사동703-10 세운빌라 비01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도봉동 349-25	휀스	H=1.0	17	m	이준규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49				
		창고	스레트	6	㎡						
		담장	벽돌 H=1.5	28.5	m						
8	도봉동 349-28	창고	스레트	6	㎡	이만규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81(도봉동)				
		휀스	H=1.8	54	m						
9	도봉동 348	가옥	시멘트콘크리트	15	㎡	구본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412				
		담장	H=2.0	1.5	m						
		가옥	시멘트콘크리트	16	㎡						
		조경수	수목	8	주						
		화단		10	㎡						
		화단		22	㎡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	도봉동 347	휀스	철제	6	m	이지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241-59(남가좌동)				
11	도봉동 343-3	건물	시멘트콘크리트	28	㎡	박용재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49				
		건물	시멘트 벽돌조	6	㎡						
		창고	판넬	2	㎡						
		창고	시멘트콘크리트	1	㎡						
		건물	시멘트콘크리트	3	㎡						
12	도봉동 345-2	휀스	H=1.0	30	m	이창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 306동204호(잠원동,신반포8차아파트)				
						이경민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47, 405호				
13	도봉동 344	휀스	H=1.8	41	m	김윤실	서울 도봉구 창동825 북한산아이파크507-1901				

◈ 노원구고시 제2018-8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81호(2016.8.11.)로 공원조성(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18-589호(2018. 7. 12.)로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된 노원구 중계동 산129-28번지 불암산도시자연공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서류는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2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29-28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조성
다. 사업규모 : 2,179㎡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고시방법 : 시보게재
사.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 2116-3943)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 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최초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8. 3. 15.

기 정											변 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내용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와내용
1	중계동 산129-21	임야	임야	9,643	2,179	박기하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6나길 9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지상권	1	중계동 산129-21	임야	임야	7,464	-	박기하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6나길 9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지상권
								김용선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2길 77, 1동 1202호(창동, 중흥s-class)	근저당권									김용선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2길 77, 1동 1202호(창동, 중흥s-class)	근저당권
								조준곤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2길 31, 103동 1801호(송파동,래미안송파파인탑)	근저당권	2	중계동 산129-28	임야	임야	2,179	2,179	박기하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6나길 9	조준곤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2길 31, 103동 1801호(송파동,래미안송파파인탑)	근저당권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산129-21	이동식화장실		1식		김주은	중계동 산129-21				
2	노원구 중계동 산129-21	간이천막		1식		김주은	중계동 산129-21				
3	노원구 중계동 산129-21	적치물		1식		김주은	중계동 산129-21				
4	노원구 중계동 산129-21	대문	2.5*2.5	1식		김주은	중계동 산129-21				
5	노원구 중계동 산129-21	대문	2.5*5	1식		김주은	중계동 산129-21				

◈ 노원구고시 제2018-86호

도시관리계획(광운대 주변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7호(2010.4.22)로 결정된 노원구 월계동 401-7일대 도시관리계획(광운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노 원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노원구 월계동 401-7일대 광운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대지의 분할에 대하여 변경(경미한변경)하는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대지의 분할)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의 분할

기 정		변 경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월계동 401-7	122	월계동 401-7	118	월계동 401-7호에서 4㎡을 분할하여 월계동 402-12호 필지에 합병
월계동 402-12	200	월계동 402-12	204	

※ 첨부된 지형도면[지구단위계획결정도(기정.변경)]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2116-386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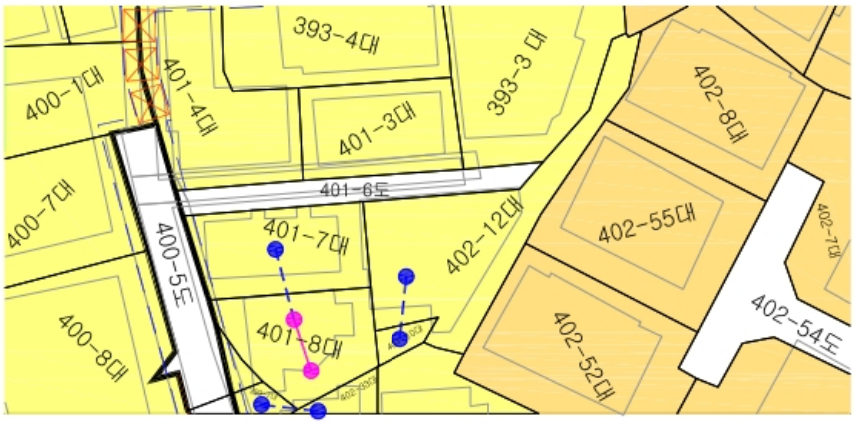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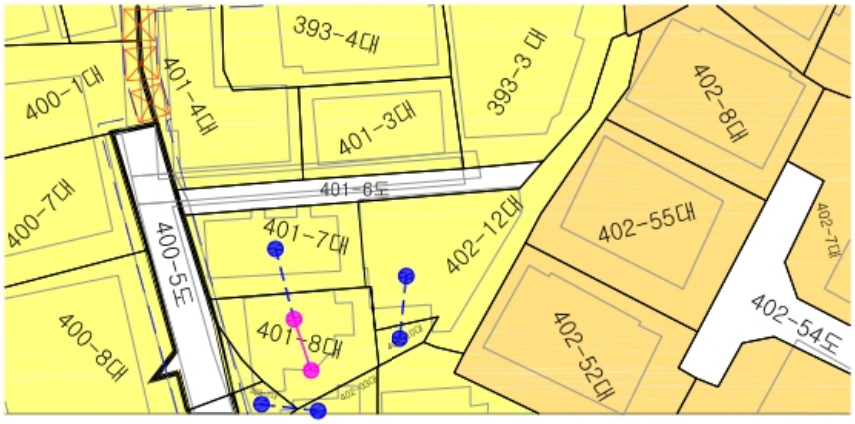

◈ 강서구고시 제2018-86호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64호(2018.6.14)로 결정(변경)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강 서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공항로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곡동 1135-12외1필지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도 축척변경으로 지적선이 변경되어, 도시계획선과 지적선을 일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⑤	공공 공지	화곡동 1135-12 외1필지	258	-	258	서고시 제360호 ('09.9.17)	○ 면적 변경없이 시설위치 조정 ○ 지적도상 변경 지번 반영

※ 지번변경 내용 : 화곡동 1093-11 → 화곡동 1135-12, 1166-1(2018.7.12.)

3.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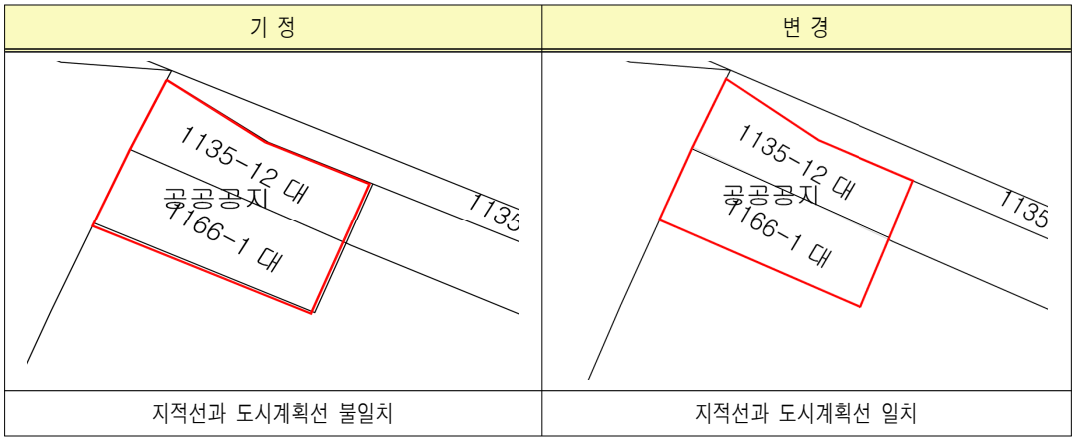

4. 기타 사항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 2600-684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8-148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4호(2009.4.30)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3(2012.11.29)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구로구고시 제2009-69호(2009.7.23)로 실시계획인가 및 구로구고시 제2012-3호(2012.01.1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어
2. 구로구 공고 제2018-1118호(2018.7.16)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구로구 디지털문화관 건립 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명칭 : 구로구 디지털문화관 건립 공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고척동 63-16번지 외 5필지
다. 사업규모
  · 시설 면적 : 1,801㎡(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435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문화관광과(☎ 860-3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구로구 디지털문화관 건립 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고척동 63-16	잡종지	1,035	잡종지	서울시					
2	고척동 63-21	도로	372	잡종지	서울시					
3	고척동 66-24	잡종지	69	잡종지	서울시					
4	고척동 277-67	하천	206	하천	국토해양부					
5	고척동 63-15	잡종지	11	잡종지	서울시					
6	고척동 63-24	대지	108	잡종지	서울시					
	합 계		1,801							

◈ 동작구고시 제2018-58호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8호(2012.9.13)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6호(2013.7.11.),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15-8호(2015.1.29.)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동작구고시 제2018-37호(2018.5.17.)로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된 동작구 사당동 41-17번지 일대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동 작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동작구 사당동 41-17번지 일대	29,996.5	증)111.1	30,107.6	-

※ 지적측량 결과 반영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9,996.5	증)111.1	30,107.6	100.0	측량결과 반영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9,996.5	증)111.1	30,107.6	100.0	

※ 지적측량 결과 반영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9,996.5	증) 111.1	30,107.6	100.0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정비기반시설	소 계		4,924.7	증) 122.7	5,047.4	16.8	-
	도 로		3,317.9	증) 122.7	3,440.6	11.4	-
	공 원		1,606.8	-	1,606.8	5.4	-
	소공원1		1,137.0	-	1,137.0	3.8	-
	소공원2		469.8	-	469.8	1.6	-
획 지	소 계		25,071.8	감) 11.6	25,060.2	83.2	-
	획지1	공동주택	15,751.2	감) 6.0	15,745.2	52.3	-
	획지2	공동주택	7,012.6	감) 22.1	6,990.5	23.2	-
	획지3	종교시설 (성당)	1,736.0	-	1,736.0	5.8	-
	획지4	어린이집	572.0	증) 16.5	588.5	2.0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7 ~12	국지 도로	216	사당동 42-4	사당동 67-8	일반 도로		`2013.7.11 (서고제226호)	
기정	중로	3	2	7 ~25	국지 도로	213	동작동 산4-2	사당동 43-2	일반 도로		`2013.7.11 (서고제226호)	
변경	중로	3	2	7 ~25	국지 도로	213	동작동 산4-2	사당동 43-2	일반 도로		`2013.7.11 (서고제226호)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2	중로3-2	• 면적 증가 (2,688.5㎡→2,811.2㎡)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1	사당동 41번지 일대	1,137.0	-	1,137.0	-	-
기정	②	공원	소공원2	동작동 58-107번지일대	469.8	-	469.8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9,996.5	사당동 41-17번지 일대	111	2	-	109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정상한	
기정	사당3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29,996.5	획지1	15,751.2	사당동 41-17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 설	30이하	220.38	224.00	45m 이하/ 15층 이하/ 13층 이하
			획지2	7,012.6	동작동 58-107 번지 일대					
변경		30,107.6	획지1	15,745.2	사당동 41-17 번지 일대		30이하	220.51	223.88	
			획지2	6,990.5	동작동 58-107 번지 일대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획지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건축물의
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정비
계획</th><th>예정
법정상한</th></tr>
<tr><td>기정</td><td row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0">•주택공급계획
<table><tr><th>구분</th><th>세대수 (소형주택)</th><th>비율(%)</th><th>비고</th></tr><tr><td>계</td><td>514 (7)</td><td>100.00</td><td></td></tr><tr><td>60㎡ 이하</td><td>193 (7)</td><td>37.55</td><td></td></tr><tr><td>60~85㎡이하</td><td>306</td><td>59.53</td><td></td></tr><tr><td>85㎡ 초과</td><td>15</td><td>2.92</td><td></td></tr></table>•85㎡ 이하 규모 세대수 비율 : 97.1% , 85㎡ 이하 규모 연면적 비율 95.8%</td></tr>
<tr><td>변경</td><td colspan="10">•주택공급계획
<table><tr><th>구분</th><th>세대수 (소형주택)</th><th>비율(%)</th><th>비고</th></tr><tr><td>계</td><td>514 (7)</td><td>100.00</td><td></td></tr><tr><td>60㎡ 이하</td><td>193 (7)</td><td>37.55</td><td></td></tr><tr><td>60~85㎡이하</td><td>306</td><td>59.53</td><td></td></tr><tr><td>85㎡ 초과</td><td>15</td><td>2.92</td><td></td></tr></table>•85㎡ 이하 규모 세대수 비율 : 97.1% , 85㎡ 이하 규모 연면적 비율 96.3%</td></tr>
<tr><td>기정</td><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신설(폭원 5m)
- 위치 : 세림아파트부지 경계부</td></tr>
<tr><td>기정</td><td>심의완화사항</td><td colspan="10">•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에 의한 건축물 층수완화
- 7층 이하 → 평균 13층 이하</td></tr>
</table>

다)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산정내용					
기정	토지이용 계 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계 획 정비기반 시 설	계획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정비기반시설 (도로 내 법면)
		29,996.5㎡	25,071.8㎡	4,924.7㎡	270.1㎡	949.4㎡	621.6㎡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6">산정내용</th></tr>
<tr><td rowspan="4">기정</td><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6">• 순부담율 : 12.35%(3,705.2㎡) 〉 순부담 의무부담율 10%(2,997㎡)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대지 내 용도 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4,924.7㎡ - 270.1㎡ - 949.4㎡ = 3,705.2㎡
※ 주) 층수완화 면적 : 29,996.5㎡</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6">• 정비계획용적률 : 220.38% 이하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 × α)
= 190% × (1+1.3 × 0.1230) = 220.38%
※ 계획(기준)용적률 = 190%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및 무상양여 국·공유지 -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내 법면1))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 3,083.6㎡ / 25,071.8㎡ = 0.1230</td></tr>
<tr><td>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6">• 법적상한용적률 : 224.00%</td></tr>
<tr><td rowspan="4">변경</td><td rowspan="2">토지이용
계 획</td><td>계
(구역면적)</td><td>획지</td><td>계 획
정비기반
시 설</td><td>계획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td><td>대지(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d>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정비기반시설
(도로 내 법면)</td></tr>
<tr><td>30,107.6㎡</td><td>25,060.2㎡</td><td>5,047.4㎡</td><td>288.1㎡</td><td>1,042.5㎡</td><td>621.6㎡</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6">• 순부담율 : 12.35%(3,716.8㎡) 〉 순부담 의무부담율 10%(3,010.8㎡)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대지 내 용도 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5,047.4㎡ - 288.1㎡ - 1,042.5㎡ = 3,716.8㎡
※ 주) 층수완화 면적 : 30,107.6㎡</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6">• 정비계획용적률 : 220.51% 이하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 × α)
= 190% × (1+1.3 × 0.1235) = 220.51%
※ 계획(기준)용적률 = 190%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및 무상양여 국·공유지 -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내 법면))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 3,095.2㎡ / 25,060.2㎡ = 0.1235</td></tr>
<tr><td>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6">• 법적상한용적률 : 223.88%</td></tr>
</table>

주) 층수완화 면적은 주민제안 시 전체면적으로 제출됨.

1)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되는 정비기반시설 : 공공성을 고려하여 순부담에 포함하되,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주민제안 된 사항임

5)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획지2	7,012.6	1동	438.89	7세대	41.82㎡ : 4세대 51.99㎡ : 3세대	
변경	획지2	7,012.6	1동	438.50	7세대	41.82㎡ : 4세대 51.99㎡ : 3세대	

■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적 용 산 식		비 고
기정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224.00%	
		정비계획 용적률	220.38%	
	증가된 용적률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50% = 1.8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 순사업부지 면적 = 1.810% × 22,763.80㎡ = 412.0248㎡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438.89㎡ • 세대수 : 7세대 - 전용 41.98㎡ (공급 57.35㎡) : 4세대 - 전용 51.99㎡ (공급 69.76㎡) : 3세대		기준 이상 확보
변경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223.88%	-
		정비계획 용적률	220.51%	-
	증가된 용적률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50% = 1.68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 순사업부지 면적 = 1.685% × 22,735.70㎡ = 383.10㎡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438.50㎡ • 세대수 : 7세대 - 전용 41.97㎡ (공급 57.35㎡) : 4세대 - 전용 51.97㎡ (공급 69.69㎡) : 3세대		기준 이상 확보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정	주택재건축 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당3 재건축정비사업조합	165세대 증가	기존:349세대 계획:514세대

2. 지형도면 : 붙임 첨부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전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주택과(☎ 820-994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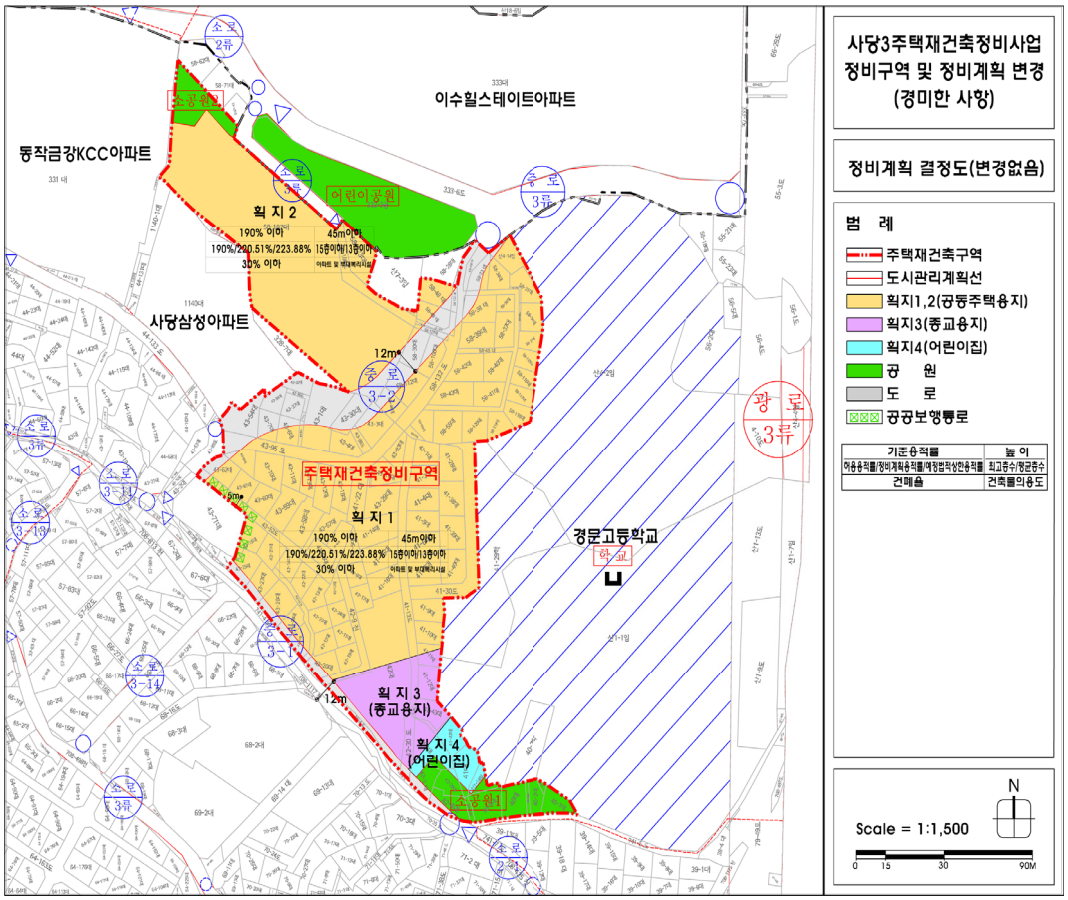

◈ 서초구고시 제2018-184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호(2011.7.7.)로 결정 고시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사항)

구 분		지 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GC-15	공동개발	서초동 1675-7,-8	628.4	1675-7,-8 공동개발 지정	1675-7 단독개발 1675-8 단독개발	-

3. 관계도면 : 붙임 도면(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참고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1)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초동 1675-7, -8

기 정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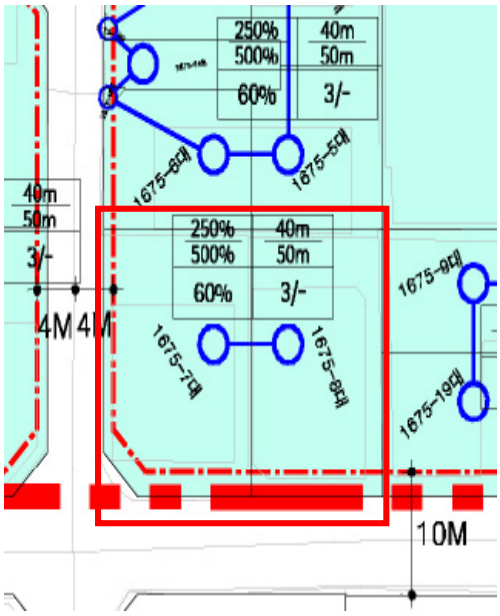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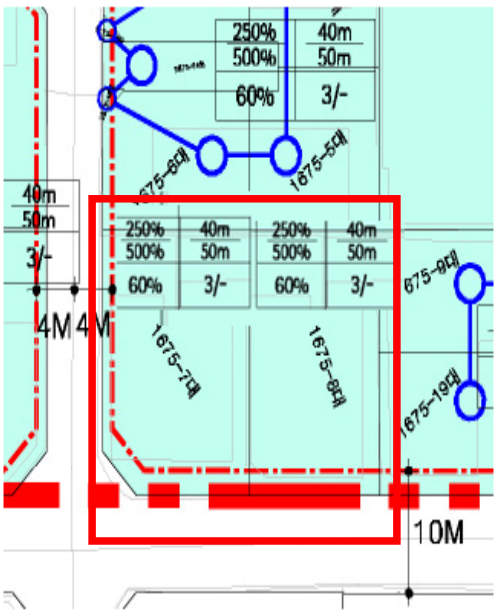

◈ 강동구고시 제2018-121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695호(1990.10.19.)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제1993-226호(1993.7.31.)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382호(1994.11.30.)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8-70호(2018.4.26.)로 변경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명일동 309-1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칭 :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명일역 지하철환기구 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종류	구 분	현 재	개선계획	비 고
철도	도시 철도 (5호선)	명일정거장 환기구 #5340	1.5×5.4 1.5×5.6 1.5×4.1	동일면적 약 4.0m 이설	현재 보도상의 환기구를 단지 내로 이설하여 보행환경 개선
		본선 환기구 #5342	1.5×1.8×4개 1.5×2.5×2개	동일면적 약 3.15m 이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김원재
   -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195, 304호(명일동, 에이플러스빌딩)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내
   -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토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명일동 303-1	도	10,083	83	서울 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한국 주택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1	근저당권	
							한국 주택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1	지상권	
2	명일동 309-1	대	46,830	93	대지권	-				입체적 결정
	계			176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02-3425-5985) 및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2-428-058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18-689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아래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

2. 공고대상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예정내용
2017-서울광진-0041(대부업)	원클릭대부 김양태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18층 12호 (구의동, 테크노-마트21)	소재불명	등록취소

3. 공고기간 : 2018. 7. 26. ~ 8. 31.(35일간)

4. 공고내용

가.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소재불명, 연락불가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오니, 공고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됩니다.(동법 제4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공고 제2018-884호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공람공고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8월 2일
도 봉 구 청 장

1. 구 역 명 :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

2. 공람기간 : 2018. 08. 02(목) ~ 2018. 09. 03(월) (32일간)

3. 공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및 도봉1동 주민센터
※ 의견서 제출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02-2091-3563)

4. 공람내용
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봉구 도봉동 350번지 일대	-	증) 25,852.8	25,852.8	-

2. 정비계획 수립(안)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5,852.8	-	25,852.8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3,025.7	-	3,023.7	11.7	-
	구거	836.5	-	836.5	3.2	-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정비기반시설 등	도로	현황도로	622.5	-	622.5	2.4	-
		도시계획시설	2,082.2	-	2,082.2	8.1	-
획지	소계		22,311.6	-	22,311.6	86.3	-
	주택용지		22,311.6	-	22,311.6	86.3	-
	공동이용시설		-	-	-	-	후보지 2개소

※ 공부상 면적기준, 일부 현황도로 면적 등은 캐드구적임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5,852.8	-	25,852.8	100.0	-
합계		25,852.8	-	25,852.8	100.0	-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주요경과지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97	8	국지도로	139 (60)	도봉동 353-1	도봉동 384-4	안골	일반도로	도고 제25호 (1996.05.07.)	-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40 (34)	도봉동 378	도봉동 352-8	안골	일반도로	서고 제103호 (1974.07.26.)	소로 3-525에 포함
기정	소로	3	525	6	국지도로	201 (201)	도봉동 384-4	도봉동 352-35	안골	일반도로	서고 제543호 (2009.12.31.)	-
변경	소로	3	525	6	국지도로	241 (235)	도봉동 384-4	도봉동 353-27	안골	일반도로	서고 제543호 (2009.12.31.)	
신설	소로	3	526	6	국지도로	19 (4)	도봉동 344	도봉동 353-23	안골	일반도로	-	붙임3,4 참고

※ ( )는 구역내의 연장임

- 도시계획도로 신설(소로 3류) 토지편입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도봉동 344	임야	630	93	김윤*	서울시 도봉구 창동 ***	-	-	-	-
2	도봉동 345-2	전	466	2	이창*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	-	-	-	3/10
					이경*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	-	-	-	7/10
3	도봉동 345-3	답	43	8	김평*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	-	-	-	1/2
					김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	-	-	1/2

※ 편입면적은 캐드구적임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대지면적 (분할매입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미확정	공동이용시설	-	-	-		-

※ 공동이용시설 위치 미확정 (후보지 2개소)

※ 설치계획 (규모, 시행방법 등)은 부지확보 이후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최대개발규모

구분	적용범위	최대개발규모(㎡)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최대개발규모	구역전체	-	330㎡이하 단, 구 심의를 통해 500㎡까지 완화가능	-기존대지, 계획지침이 적용된 대지 (공동개발 지정 등)는 최대개발규모 적용예외	-

② 가구, 획지 및 공동개발계획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계획내용	비고
가구계획		5개 가구	-	- 일단의 도로 또는 구역계로 구분되는 블록을 가구로 지정	변경 없음
획지계획		9개 획지	-	- 획지계획 삭제	붙임5, 6 참고
공동 개발	지정	3개 지정	11개 지정	- 맹지형필지, 과소필지면적의 2/3미만 필지(60㎡)	
	권장	2개 권장	-	- 공동개발 권장 삭제	

※ 과소필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 9항에 따라 토지면적이 90㎡ 미만인 토지

※ 과소필지 면적의 2/3미만필지는 계획지침(건축한계선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6)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건축물 용도

기정

구 분	도면표시		전 층	비고
허용 용도 / 권장 용도	허용용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00㎡이하 4세대이하, 200㎡~300㎡ 6세대이하, 단 필지규모가 300㎡이상일 경우 75㎡를 초과할 때마다 1세대를 추가로 허용토록 하며 획지**④,⑤,⑥,⑦,⑧,⑨는 세대수 제한을 배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5m이상의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운동시설(12m이상의 도로에 12m이상 접할 것)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관광숙박시설(사업승인 규모 : 5,000㎡ 이상, 15m이상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제외). 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함.	-
		권장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약국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변경

구 분	도면표시	전 층	비고
허용 용도 / 권장 용도	허용용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00㎡이하 4세대이하, 200㎡~300㎡ 6세대이하, 단 필지규모가 300㎡이상일 경우 75㎡를 초과할 때마다 1세대를 추가로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함)**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5m이상의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운동시설(12m이상의 도로에 12m이상 접할 것)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관광숙박시설(사업승인 규모 : 5,000㎡ 이상, 15m이상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제외). 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함 **-노유자시설**	-
	권장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약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②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건폐율 계획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전구역	60% 이하	-

- 용적률 계획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상한용적률	
전구역	116%	150%이하	-

- 높이계획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전구역	3층, 16m이하. 단, 건축심의를 통하여 4층 이하로 완화 가능	-

③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1m, 도로중심에서 3m, 1m~4m , 3m~6m	맹지해소를 위해 3개소 추가지정

④ 대지내공지 및 통로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쌈지형공지	- 최소 25㎡이상, 전면도로에 면하는 전면폭은 5m이상	- 획지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쌈지형공지 삭제 및 신규지정 - 붙임7,8 참고
통로	보차혼용통로	- 폭원 : 6m, 4m	- 맹지해소를 위해 3개소 신규지정 - 붙임7,8 참고
	공공보행통로	- 폭원 : 4m	- 기존 공공보행통로 삭제 및 신규지정 - 붙임7,8 참고

7) 종합계획(안)

부문	정비계획		개요	사업시행
A.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	① 도시가스 설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 도시가스 설치 : 800m	도봉구청장
	② 노후 상하수도 정비	상수도 정비	- 상수관 교체 : 500m	
		하수도 정비	- 하수관 교체 : 500m	
	③ 화재 및 방재시설 설치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 신규 1개소	
		보이는 소화기 설치	- 신규 5개소	
		제설장비 설치	- 신규 1개소	
	④ CCTV 및 비상벨 설치	회전식CCTV 및 비상벨 설치	- 신규 2개소	
		고정식CCTV 설치	- 신규 4개소(1개소당 2대설치)	
	⑤ 골목길 안전확보	안전거울(미러시트) 설치	- 신규 5개소	
		LED볼라드 설치	- L=240m	
		솔라표지병 설치	- L=230m	
	⑥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	LED보안등 신설	- 신규 5개소	
		LED보안등 교체	- 기존 36개소 교체	

부문	정비계획		개요	사업시행
B. 도봉산과 어울리는 마을	⑦ 마을입구 강조	마을간판 및 마을지도 설치	- 신규 2개소	도봉구청장
	⑧ 도로포장	보·차도 포장 정비	- 면적 약 400㎡	
	⑨ 담장 철거·정비	도로포장, 각종 관 매설시 붕괴위험 담장 철거·정비	- 12개소	
C.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	⑩ 공동이용시설 조성	건축물 조성	- 1개소 (위치 미정) - 규모 : 약 300㎡	도봉구청장 / 주민공동체운영회(운영)
	⑪ 마을정자 정비	마을정자 정비	- 기존 1개소	도봉구청장

8) 기타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생략 (관계도서 및 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

5. 기타사항 : 결정조서 내용은 절차 이행중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정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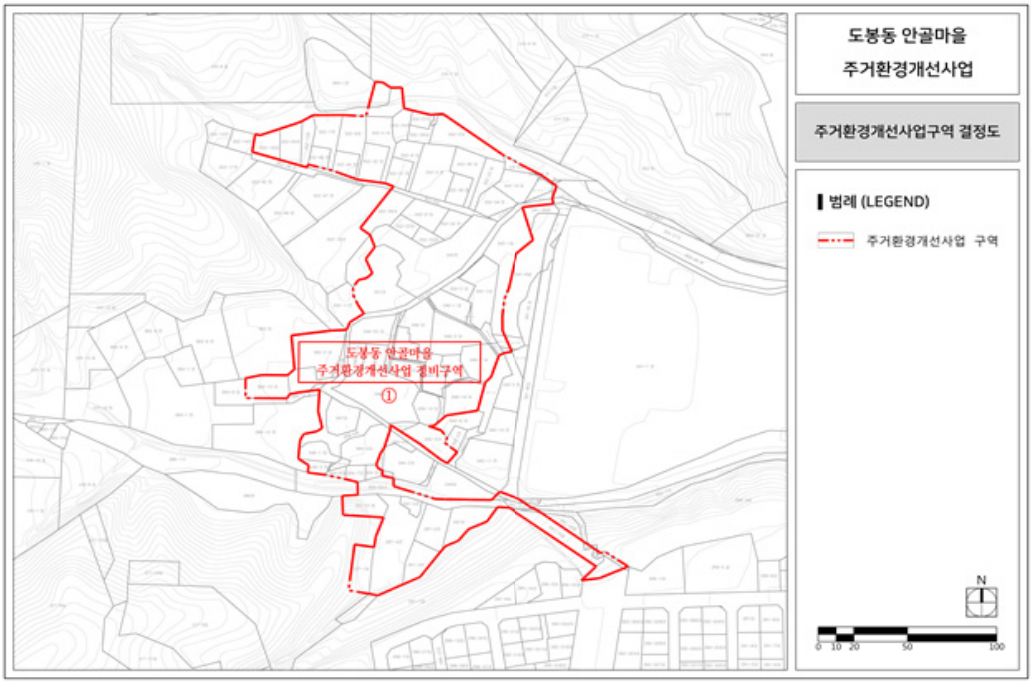

[붙임 2]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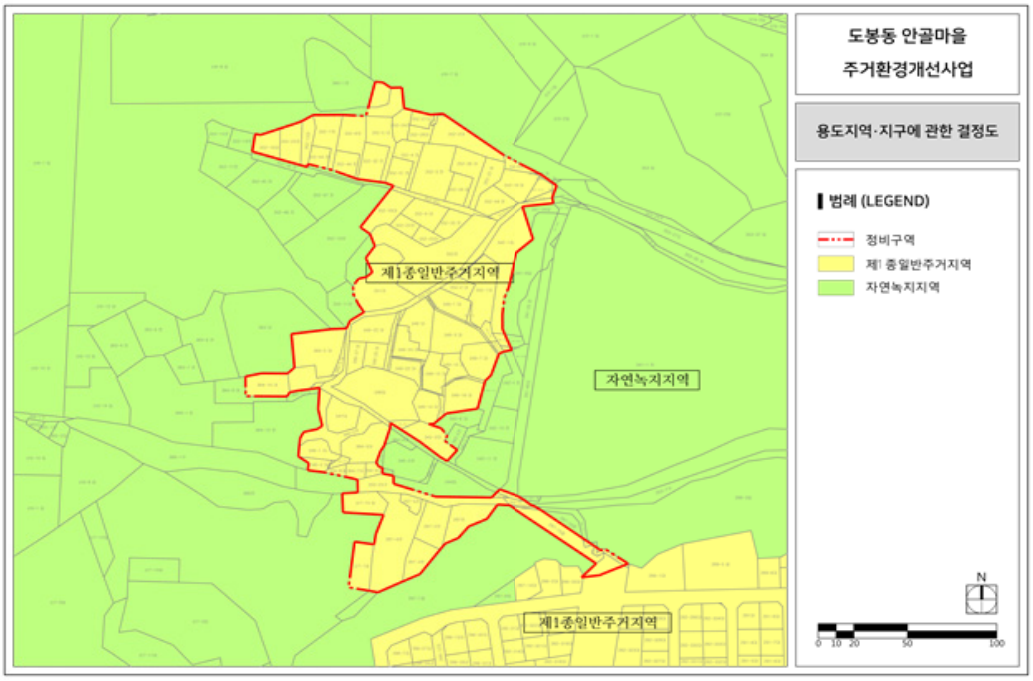

[붙임 3]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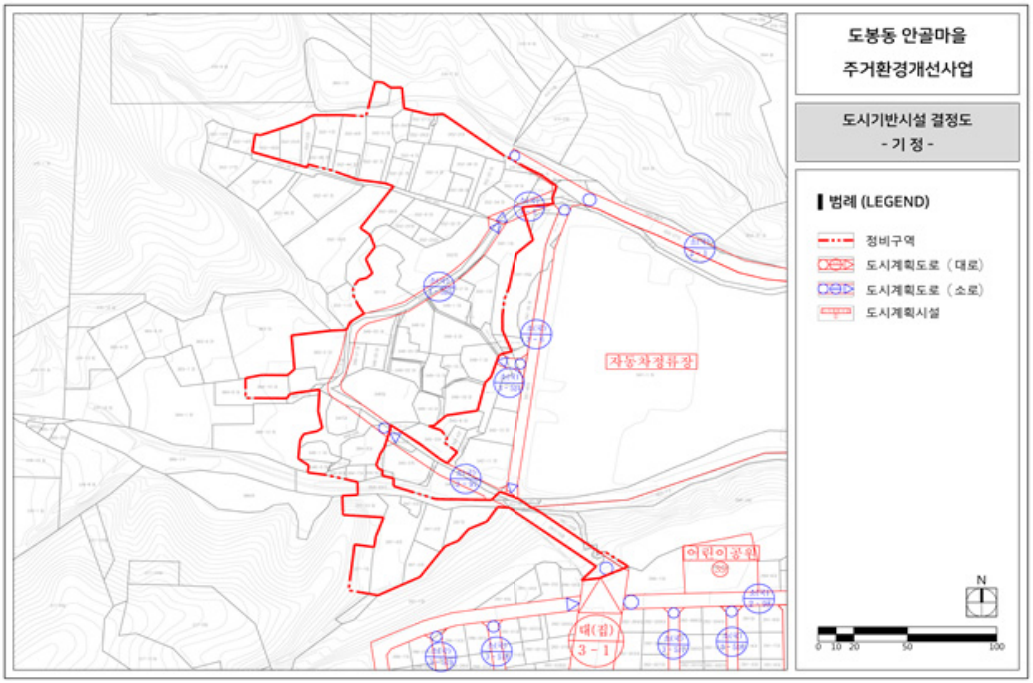

[붙임 4]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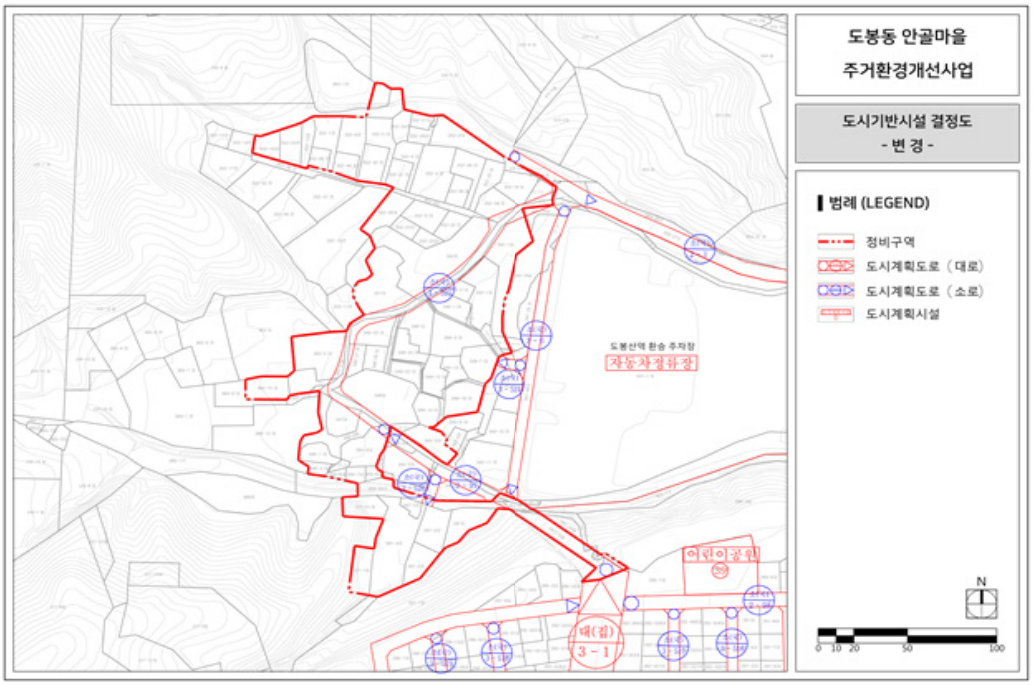

[붙임 5] 가구, 획지 및 공동개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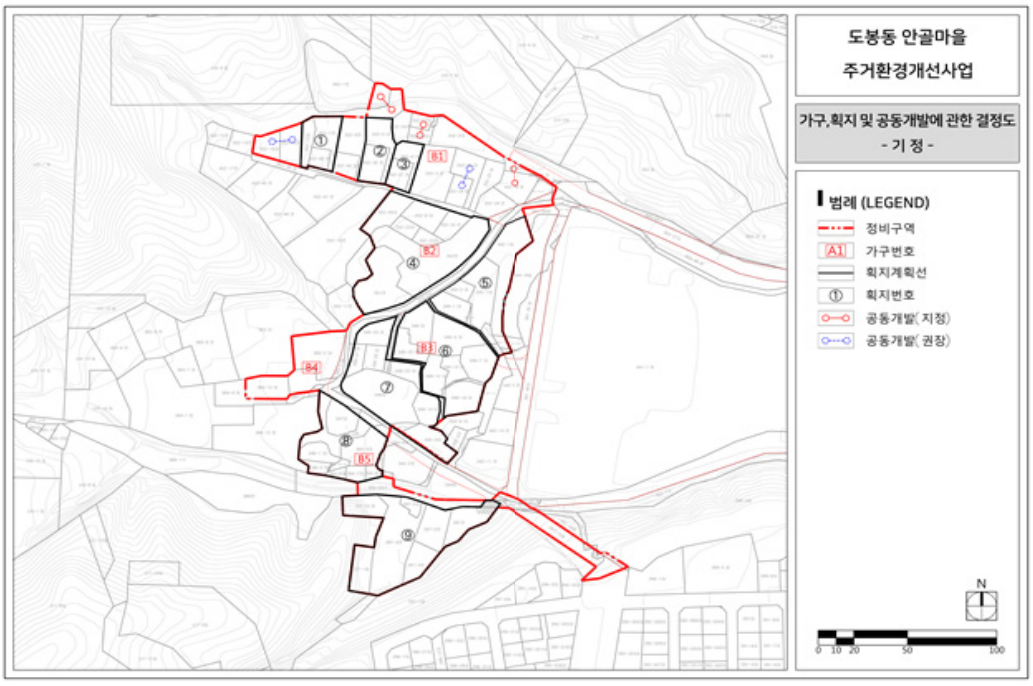

[붙임 6] 가구, 획지 및 공동개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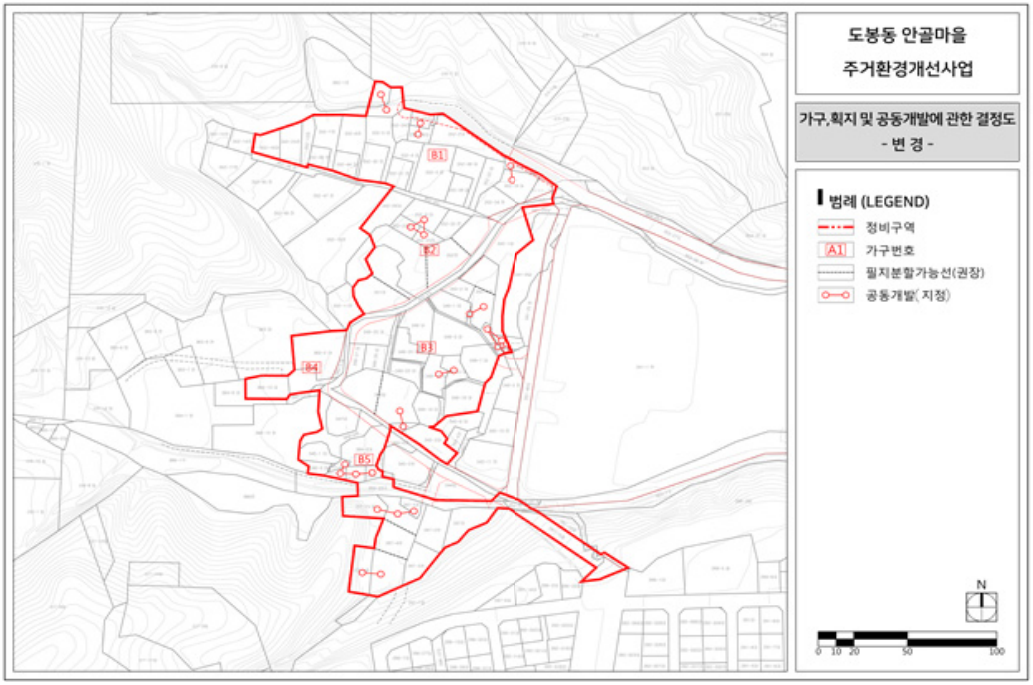

[붙임 7] 대지내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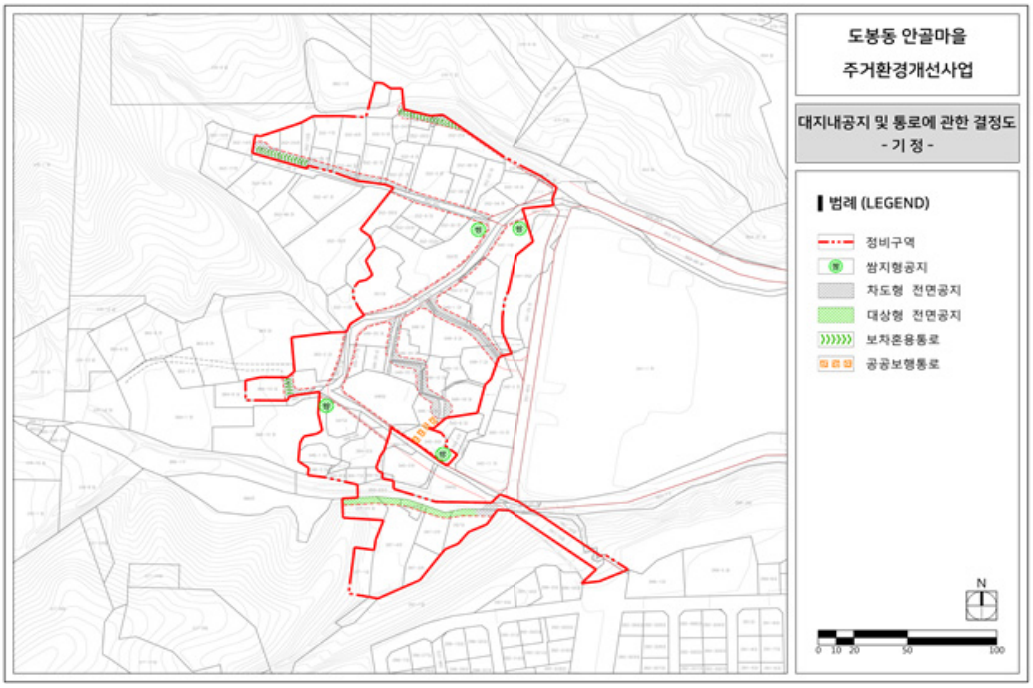

[붙임 8] 대지내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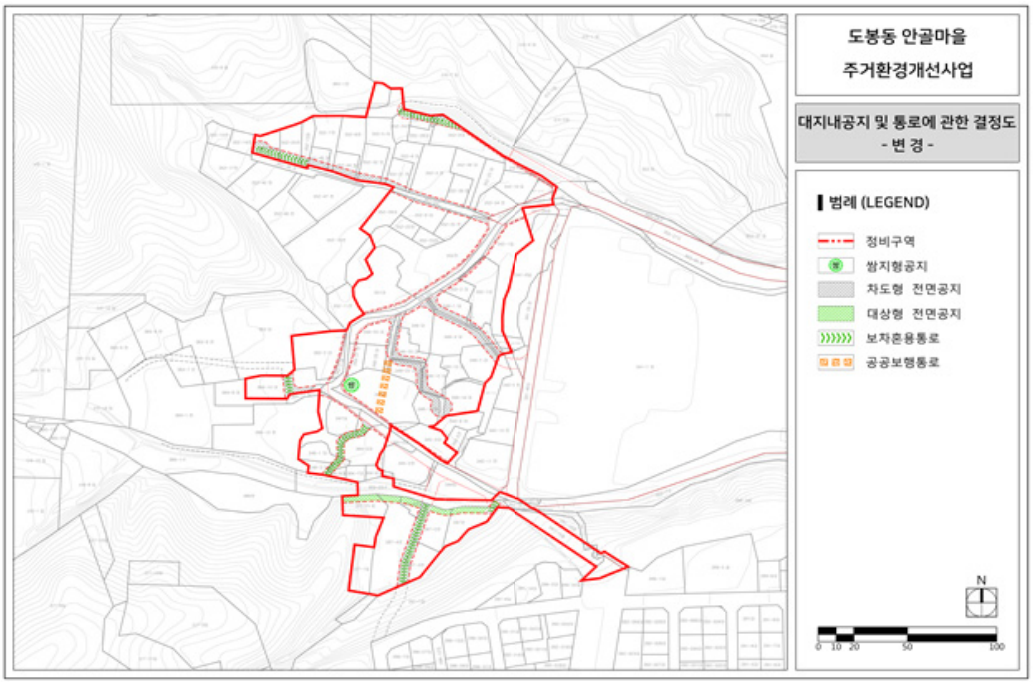

[붙임 9] 종합계획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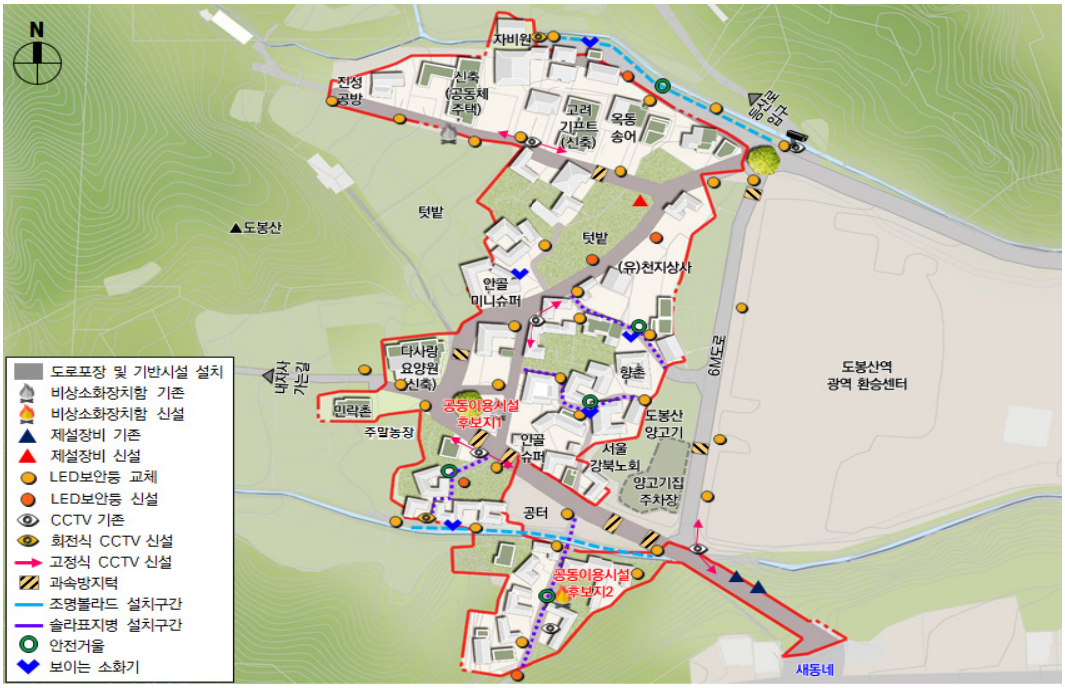

◈ 도봉구공고 제2018-899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녹천역 남측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 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일
도 봉 구 청 장

가. 제한지역 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덕릉로66길 84-1(녹천역 남측 일대)
◯ 면 적 : 11,310㎡
◯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나. 제한근거 및 사유
◯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 제한사유 : 녹천역 남측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진행중인 지역으로 계획이 결정될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 질 것으로 예상됨

다.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중
1) 1호 : 건축물의 건축 중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증축은 면적 33㎡ 초과만 적용)
2) 3호 : 토지의 형질변경
3) 5호 : 토지분할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예외 대상
◯ 기 건축허가(신고)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신고)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에 대하여 구조 안전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 기타 개발계획(안)이 마련되어 도시개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마. 열람장소 : 관련도서는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2091-3556)에서 열람

◈ 구로구공고 제2018-1152호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남구로역세권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구로구 공고 제2018-154호(2018.2.1.)로 공람한바 있으나 구역계 및 기반시설 등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일
구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2일간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02-860-2957)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정비구역지정절차 이행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 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정비구역	구로동 715-24번지일대	-	증) 10,832.4	10,832.4	-

2.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832.4	-	10,832.4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0,832.4	감) 9,793.8	1,038.6	9.6	도로 및 획지2(공공청사) 용도지역 유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9,793.8	9,793.8	90.4	획지1(공동주택 등)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0,832.4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23.1	3.0	-
	도 로	323.1	3.0	-
획 지	소 계	10,509.3	97.0	-
	획 지1	9,793.8	90.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2	715.5	6.4	공공청사(어린이집 포함)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48	구로동 808-21	구로동 808-24	일반 도로	-	-

2)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주민센터	구로동 808-29번지 일대	-	증)715.5	715.5	-	-어린이집 복합설치 -구로2동 주민센터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이용 시설	경로당	구로구 오류동 715-24번지 일대	-	증) 140.0	140.0	
	어린이놀이터		-	증) 817.0	817.0	
	소 계		-	-	957.0	
커뮤니티 지원시설	문화센터		-	증) 810.0	810.0	

6. 건축시설계획

<table>
<tr><td rowspan="2">결정
구분</td><td colspan="2">구역구분</td><td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d><td rowspan="2">위치</td><td rowspan="2">주된용도</td><td rowspan="2">건폐율
(%)</td><td rowspan="2">용적률
(%)</td><td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d></tr>
<tr><td>명칭</td><td>면적(㎡)</td><td>명칭</td><td>면적(㎡)</td></tr>
<tr><td rowspan="2">신설</td><td rowspan="2">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td><td rowspan="2">10,832.4</td><td>획지1</td><td>9,793.8</td><td>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50이하</td><td>기준 200
허용 270
상한 300이하</td><td>58m이하
/최고19층
이하</td></tr>
<tr><td>획지2</td><td>715.5</td><td>구로구 구로동
808-29번지일대</td><td>공공청사
(어린이집
포함)</td><td>60이하</td><td>200이하</td><td>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 col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6">· 총 건립 세대수 : 공동주택 306세대
(공공임대주택 47세대, 임대주택 39세대, 일반분양 220세대)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table>
<tr><td colspan="2">구분(전용면적)</td><td>합 계</td><td>분양주택</td><td>공공임대</td><td>임대주택</td></tr>
<tr><td colspan="2">합 계</td><td>306(100.0%)</td><td>220(100.0%)</td><td>47(100.0%)</td><td>39(100.0%)</td></tr>
<tr><td rowspan="3">공동
주택</td><td>60㎡이하</td><td>223(72.9%)</td><td>137(62.3%)</td><td>47(100.0%)</td><td>39(100.0%)</td></tr>
<tr><td>60㎡~85㎡이하</td><td>83(27.1%)</td><td>83(37.7%)</td><td>-</td><td>-</td></tr>
<tr><td>85㎡초과</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6">· 획지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 획지2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남측변은 1.5m 이격)</td></tr>
<tr><td rowspan="2">기타
계획</td><td colspan="2">전면공지</td><td colspan="6">· 획지1 : 구로동로13길(북측), 구로동로7길(서측), 소로3-1호선(남측)
- 차도형 1m, 보도형 2m
· 획지2 : 구로동로7길(서측), 소로3-1호선(북측), 구로동로(동측) - 보도형 2m
※ 획지1 전면공지(차도형1m, 보도형2m)는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분지상권 설정</td></tr>
<tr><td colspan="2">공공보행통로</td><td colspan="6">· 기존 도로체계를 감안하여 공공보행통로(6m) 2개소 설치</td></tr>
</table>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253세대	-

바. 관련도서 : 생략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 금천구공고 제2018-1032호

도시관리계획(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5호(2017.11.1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금 천 구 청 장

Ⅰ. 결정취지

시흥동 973-4번지 일대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우수관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부채납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시흥동 973-4번지 일대	-	증) 71.6	71.6	-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등 기타 변경사항 및 세부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조 : 생략

Ⅳ. 관계도서는 금천구 도시계획과(02-2627-206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금천구공고 제2018-1065호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서울금천경찰서'에 품격 높고 예술성을 갖춘 우수한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금 천 구 청 장

[공 모 내 용]

○ 공 모 명 :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공모
○ 공고기간 : 2018. 7. 16.(월)~8. 17.(금)(32일간) 별도 현장설명 없음
○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전국규모 이상 미술 공모전에 조형예술물(조각) 또는 환경조형물로 출품하여 특선 이상의 입상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포함한다)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조형예술물(조각) 또는 환경조형물 공모에 당선되어 제작·설치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 또는 '나' 해당자로서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자 및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를 보유한 법인(학회)
라. 공동응모 시 참가 작가 모두 응모 신청 자격(가, 나, 다)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
○ 건 물 명 : 서울금천경찰서(공공청사)
○ 종 별 : 신축[○], 증축[ ]
○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 190번지 외 14필지
○ 미술작품 개요 : 1작품 선정

설치위치	종류	크기(m)	작품컨셉
민원동 앞 공개공지	조형물	좌대크기 최대 2.5×2.5 ※ 그 외 제한없음	-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신뢰받는 서울경찰의 이미지를 형상화 - 든든함, 따뜻함, 소통 경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 상세 내용은 공모지침서 참조

○ 설치예정일 : 2018년 10월 31일(수)
○ 총가액(법정금액) : 221,000,000원
○ 응모 및 작품접수 기간 : 2018년 8월 17일(금), 09:30~18:00까지
※ 근무시간 내에 접수 가능(주말, 공휴일, 12:00~13:00 접수 불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2층 건축과 방문접수(우편, 퀵 불가)
○ 제출서류
가. 응모신청서 등 전체 제출서류 1식(출력본)
나. CD 또는 USB 메모리(반환불가) *제출 파일은 심사 자료임
※ CD 또는 USB 메모리 : ① 서식 3~5번(PDF 1건, 용량 20MB 이내)
② 작품이미지(JPG, 대표1컷, 500kb이하)

다. 제출도서의 종류

구 분	수 량	규 격	내 용
응모 신청서	1부	A4	[서식1]
작품 설명서	1부	A4	[서식3] 상세도면 및 조감도 첨부
작가 경력서	1부	A4	[서식4]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	A4	[서식5]
작품이미지	각 1부	A4	작품 이미지, 원거리(배경포함), 근거리(배경포함)
개인정보 수집 · 이동 동의서	1부	A4	[서식6]
서약서	1부	A4	[서식7]
공동응모 시	각 1부	A4	공동응모협정서 [서식8], 대표자선임계 [서식9]
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A4	위임장 [서식2], 위임자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기타	각 1부	A4	응모자격 증빙서류 (수상실적, 공모경력 확인서 등)

※ 응모자격 증빙서류(수상실적, 공모경력확인서 등) 사본 제출 시 필히 원본 지참
※ 반드시 별첨 서식을 사용할 것 (서식변경, 기존서식 사용 시 위원회에 미상정 할 수 있음)
※ 작품 도판은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제출된 도서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발표 : 2018년 9월 예정, 자치구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통보
○ 계약방법 :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자와 작가간의 계약
○ 계약시기 : 최종당선작 공고 후

[유 의 사 항]

○ 1인 1작품만 제출 가능(중복응모 불가)
○ 국내외 미발표 순수 창작물일 것(기 설치되었거나 다른 심사에 통과된 작품, 모작, 동일작품, 유사작품은 결격사유에 해당됨)
○ 사업비는 제세공과금, 제작설치비, 부대비, 부가가치세 등 설치완료시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
○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좌대, 조명 등이 필요한 경우 설치비에 포함되며, 주어진 설치공간 내에서 미술작품 범위(시공한계)를 명기하여 제출
○ 공모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 등에 의함
※ 공모지침서를 위반하여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는 미상정할 수 있음
○ 공모지침서, 양식, 공모변경 등 관련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금천구청 홈페이지 → 부서선택 → 건축과 → 자료실)
○ 본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응모 작품의 도서 제작 등 제비용 미지급
◯ 문의전화 : 금천구 건축과 담 당 박병호, ☎ 02-2627-2162

붙임 : 공모지침서(각종서식 포함)

서 울 금 천 경 찰 서

미술작품 설치공모 지침서(안)

201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1. 목 적

본 지침의 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같은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시행하는 서울금천경찰서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의 구상 제작 및 설치 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 경찰서에 적합한 미술작품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있다.

2. 건축개요

사업명	서울금천경찰서 공공청사 신축공사				
위 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190번지 외 14개필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특별계획구역				
대지면적	9,172.6㎡	건축면적	2,757.85㎡	연면적	12,685.85㎡
층 수	지하1/지상6	최고높이	27.60m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용 도	공공청사	외장재료	화강석 버너구이	건축종별	신축

3.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공모

나. 공고기간 : 2018. 7. 16.(목)~ 8. 17.(금) (32일간, 별도 현장설명 없음)

다. 건 물 명 : 서울금천경찰서(공공청사)

라.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 190번지 외 14필지

마. 미술작품 개요 : 1작품 선정

설치위치	종류	크기(m)	작품컨셉
민원동 앞 공개공지	조형물	좌대크기 최대 2.5×2.5 ※ 그 외 제한없음	-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신뢰받는 서울경찰의 이미지를 형상화 - 든든함, 따뜻함, 소통 경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 상세 내용은 공모지침서 4쪽 공모 상세조건 참조

바. 업무범위 :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사. 총가액(법정금액) : 221,000,000원

※ 설치금액은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제세공과금, 좌대비용, 설치비용 등 미술작품을 설치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포함

아. 설치예정일 : 2018년 10월 31일(수)

자. 응모 및 작품 접수기간 : 2018년 8월 17일(금), 09:30~18:00까지

※ 근무시간 내에 접수 가능(주말, 공휴일, 12:00~13:00 접수 불가)

차. 접수장소 및 방법 : 금천구청 2층 건축과, 방문접수(우편, 퀵 불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2층, 건축과

카. 심사방법 :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안건상정 및 심의
타. 심사발표 : 2018. 9월 예정, 자치구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통보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전국규모 이상 미술 공모전에 조형예술물(조각) 또는 환경조형물로 출품하여 특선 이상의 입상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포함한다)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조형 예술물(조각) 또는 환경조형물 공모에 당선되어 제작·설치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 또는 '나' 해당자로서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자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를 보유한 법인(학회)
라. 공동응모 시 참가 작가 모두 응모 신청 자격(가, 나, 다)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를 반드시 명기하고 참여 분담률을 명시하여야 함

5. 작품제출
가. 본인제출 시 신분증 지참하고,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나.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등 전체 제출서류 1식(출력본)
- CD 또는 USB 메모리(반환불가) *제출 파일은 심사 자료임
※ CD 또는 USB 메모리 : ① 서식 3~5번(PDF 1건, 용량 20MB 이내)
② 작품이미지(JPG, 대표1컷, 500kb이하)
- 제출도서의 종류

제출서류	수량	규격	내 용
응모 신청서	1부	A4	[서식1]
작품 설명서	1부	A4	[서식3] 상세도면 및 조감도 첨부
작가 경력서	1부	A4	[서식4]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	A4	[서식5]
작품이미지	각 1부	A4	작품 이미지, 원거리(배경포함), 근거리(배경포함)
개인정보 수집·이동 동의서	1부	A4	[서식6]
서약서	1부	A4	[서식7]
공동응모 시	각 1부	A4	공동응모협정서 [서식8], 대표자선임계 [서식9]
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A4	위임장 [서식2], 위임자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기타	각 1부	A4	응모자격 증빙서류 (수상실적, 공모경력 확인서 등)

다. 응모자격 증빙서류(수상실적, 공모경력확인서 등) 사본 제출 시 필히 원본 지참
라. 반드시 별첨 서식을 사용할 것 (일부서식 변경됨, 기존 서식 사용 시 위원회에 미상정 할 수 있음)
마. 작품 도판은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제출된 도서는 반환하지 않음

6. 공모 상세조건
가. 설치위치 : 민원동 앞 공개공지(자연지반)에 설치되며 주변포장은 인조화강석 블록 포장임

나. 주제
-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신뢰받는 서울경찰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고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든든한 경찰,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따뜻한 경찰, 참여・협력으로 함께하는 경찰, 유연・소통으로 활력있는 경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 경찰서 입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조형적 의미가 강한 미술작품으로 주제를 부각시키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정서에 부합하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

다. 규격
- 평면 최대규격은 설치면적 내에서 작가에게 일임. 단 좌대크기는 최대 2.5m× 2.5m 이하로 계획

라. 재질
- 주제의 요소가 강조될 수 있는 석재(화강석, 마천석, 상주석 등), 스틸, 청동 등 변형이 적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 청결의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한 소재 사용
- 주요자재의 스테인리스 스틸 자재 사용 지양(일부 보조만 사용 가능)

마. 기타 특이사항
- 미술작품의 시공범위는 일반적으로 작품의 본체와 좌대 및 기초까지로 함
- 미술작품의 설치로 인한 기존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미술작품을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는 조명설치 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컨트롤 박스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 일반인의 작품이해를 돕기 위한 명패(작품명, 작가명, 작품해설)를 설치하여야 함
- 미술작품은 훼손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어야 함

7. 제출도서 작성방법

가. 응모신청서

-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협정서 및 대표자선임계 서류 제출
- 본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

나. 응모 작품설명서

- 작품설명서에는 작품명, 작품크기, 작품재질, 작품설명(주제 포함), 작품의 총중량(기초 포함), 시공방법, 안전성 여부 검토 등 응모자의 제작의도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작가의 성명, 경력 표기 금지)
-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은 “한글”로 통일하며, 작품설명서 내 색상의 사용은 제한 없음

다. 작품도면

- 작품도면은 붙임 작품도면 가이드라인 및 예시안 참조 작성
- 평면도·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투시도(조감도)·배치도를 표현하고 조감도의 경우 배경(도판상의 건물, 녹지, 지반, 바닥 등 해당작품을 제외한 것)을 흑백으로 표현하되, 작가가 시공하는 경계석, 좌대(경계석, 좌대내의 잔디 포함)는 컬러로 표현할 수 있음
- 작품의도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작품명, 재질, 외피의 색상, 작품 및 좌대의 규모(가로×세로×높이 단위mm)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며 그 내용은 모형 사진도 가능함
-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도록 표현해야 함
- 배경에 스케일을 위한 인물 등을 삽입할 경우 얼굴, 옷 등의 표시 없이 투명화 하여 표현해야 함
- 모든 도면크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를 사용해야 함. 다만, 한문이나 영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하여야 함
-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함
-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하여야 함
-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함
-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음

8. 미술작품 선정
가.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일정을 정하며,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등에 따라 작품을 선정함
나. 선정인원은 1명으로 정함
다. 선정작품 및 응모자금에 대한 별도의 시상금 및 제작비는 없음
라. 선정작가 1등에게는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며, 선정 작품은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마. 선정작가의 의무
- 제출 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기 설치되었거나 다른 심사에 통과된 작품과 모작, 동일 작품, 유사작품은 결격사유에 해당됨), 이로 인한 분쟁 및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작가에게 있음
- 미술작품은 설치기한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선정 작가가 져야 함(단, 계약지연에 따른 설치 지연의 경우 계약지연 사유가 건축 관계자에 있을 시는 제외함)

9. 작품계약
가. 계약방법 :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자와 작가간의 계약
나. 계약시기 : 최종당선작 공고 후

10. 기타 유의사항
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응모자 또는 선정 작가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함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할 때
- 선정작품이 기 설치되었거나 다른 심사에 통과된 작품, 모작, 동일작품, 유사작품은 결격사유에 해당됨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미술저작권에 위배되었을 때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나. 1인 1작품만 제출 가능함(중복응모 불가)
다. 공모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 등에 의함
라. 공모지침서를 위반하여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 미상정할 수 있음
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작품관련 민원은 일체 허용 및 검토되지 아니함
바. 응모자는 작품 도면 및 제출도서에 작가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사. 사업비는 제세공과금, 제작설치비, 부대비, 부가가치세 등 설치완료시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
아.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좌대, 조명 등이 필요한 경우 설치비에 포함되며, 주어진 설치공간

내에서 미술작품 범위(시공한계)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 공모지침서, 양식, 공모변경 등 관련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금천구청 홈페이지 → 부서선택 → 건축과 → 자료실)

차. 응모 작품의 도서 제작 등 제비용 미 지급함

카. 본 공모지침서, 설치지침서 등은 공모대행 신청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음

타. 문의전화 : 금천구 건축과 담 당 박병호, ☎ 02-2627-2162

붙임 1. 【서식 1】 응모신청서 1부.
2. 【서식 2】 미술작품 응모신청(작품접수)위임장 1부.
3. 【서식 3】 응모 작품설명서 1부.
5. 【서식 4】 작가 경력서 1부.
6. 【서식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
7.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서식 7】 서약서(안) 1부.
9. 【서식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10. 【서식 9】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1】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응모신청서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세요)		응모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TEL :	FAX :	
	H/P :	E-mail :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

붙 임 : 1. 서약서 1부
2. 위임장(해당자) 1부
3. 공동응모협정서(해당자) 1부
4. 대표자 선임계(해당자) 1부

2018.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금천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

접수확인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세요)		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	
응모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H/P :	E-mail :	

【서식 2】

미술작품 응모신청(작품접수) 위임장

신청번호	신청일자

■ 위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 소			
연락처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 소			
연락처			

상기 위임인은(는) 은(는)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신청(작품접수)에 있어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 . .

위임인 : (인)

※ 첨부서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

【서식 3】

응모 작품 설명서

작 품 설 명 서	
작 품 명	
작품 크기 (세로*가로*높이)	전체크기(좌대크기 기재)
작품 재질	
작품설명	1. 작품 제작의도 2. 작품설명(주제 포함) 3. 작품시공방법(현실성 있고, 자세하게, 조명내용 포함) 4. 작품하중(총중량, ㎡당 하중) 5. 안전성 여부 검토 6. 미술작품 유지 보존계획 : 유지 점검항목, 상시 관리방법, 보존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7. 작품도면 ※ 작품도면 작성시 가이드라인 및 작품도서 예시안 참고하여 A4 용지 비율에 맞춰 가로방향으로 작성
조감도	

<table>
<tr><td rowspan="3">작품도면</td><td>정면도</td><td>배면도</td></tr>
<tr><td>좌측면도</td><td>우측면도</td></tr>
<tr><td>평면도</td><td>배치도</td></tr>
<tr><td>작품시공방법</td><td colspan="2">1. 현실성 있고, 자세하게 기재
2. 조명내용 포함</td></tr>
<tr><td>작품하중</td><td colspan="2">1. 총중량, ㎡당 하중</td></tr>
<tr><td>안전성 검토</td><td colspan="2"></td></tr>
<tr><td>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td><td colspan="2">1. 유지 점검 항목
2. 상시 관리방법
3. 보존 계획
4.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td></tr>
</table>

※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할 것(단, 순번 표시)

【서식 4】

작가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인적사항	성 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

(예시)

· 홍길동개인전 등은 개인 이름 삭제 후 '○○○개인전' 명시

· 작품 명패 등에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 학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서식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 가 명	

미술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사용금액 내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원형제작비	천원
	제작비	재료비	천원	%		
		인건비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천원	%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모형제작비	천원
					기타	천원
	기타		천원	%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분수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공모 추진 및 기록 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 및 서면 문서 보관, 20. . ~ 20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번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공모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는 귀하의 판단에 따라 수집 및 이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수집을 원하지 않는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양식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및 제22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정보주체가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서식 7】

서 약 서(안)

본인은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공고문(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심사를 위해 구성한 심사위원과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당선작 선정 및 작품의 제작설치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추가 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공동응모의 경우 모든 주체가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서식 8】

공동응모 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다.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2.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업체인 경우는 성명을 업체명으로 기재

제4조 (대표자의 권한) 대표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작품 제작·설치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책임) 공동응모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상호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구성원 출자비율) ① 공동응모자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성명　　:　　%
2. 성명　　:　　%
3. 성명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응모의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2조 (기타)① 구성원 중 대표자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며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3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

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18. . .

○ 대표자 성명 : (인)(전화번호)
생년월일 :
주소 :

○ 공동응모자 성명 : (인)(전화번호)
생년월일 :
주소 :

성명 : (인)(전화번호)
생년월일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상기 서식은 예시이니 당사자간 협의하여 자유롭게 협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9】

대표자 선임계

사업명 :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주관하는 '서울금천경찰서' 미술작품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18. . .

○ 공동응모 대표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 공동응모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 공동응모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서초구공고 제2018-1200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설부고시 제108호(1975.06.23.)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17-66호(2017. 6. 22.) 및 서초구고시 제2017-163호(2017. 12. 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서초구 반포동 1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면세점 설치 등에 따른 용도변경 대하여 공사완료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8-3외 7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명칭 :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수선 및 설계변경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시설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 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여객자동차정류장	-
대지면적	59,149.40 ㎡	-
건축규모	지하 5층, 지상 32층	-
주 용 도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	-
건축면적	25,499.28㎡	-
연 면 적	286,222.62㎡	-
용 적 률 산정연면적	160,559.32㎡	-
건 폐 율	43.11%	-
용 적 율	271.45%	-
주차대수	법정(최고): 2,474대	-
	계획 : 2,444대	
호텔 객실수	379실	-
조 경	법정:8,872.41㎡ (15.00%)	-
	계획:9,434.84㎡ (15.95%)	-
공개공지	법정 : 5,914.94 ㎡	변경없음
	계획 : 5,953.12 ㎡	
	비율 : 10.06 % (법정 : 10 %)	

- 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 및 편익시설 증감

	구분	용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주시설	대합실		9,330.05	9,853.91	+526.86	
		승하차장	건축물면적	1,605.22	1,560.52	-44.70	
			건축물면적 외	1,717.78	1,717.78	0.00	
		사무실		2,468.07	1,428.32	-1,039.75	
		세차장		265.74	265.74	0.00	
		박차장		15,291.50	15,291.50	0.00	
		전체공유		3,699.96	3,621.56	+21.61	
		소계		34,278.31	33,739.33	-538.98	
		비율(%)		81.51	80.19	-1.32	
	부대시설	정비고		927.07	927.07	0.00	
		주유소		210.69	210.69	0.00	
		부속시설		3,462.97	3,438.07	-24.90	
		가스정압실		42.00	42.00	0.00	
		소계		4,642.73	4,617.83	-24.90	
		비율(%)		11.04	10.97	-0.07	
	편익시설	소화물취급소		113.12	157.82	+44.70	
		식당, 소매		3,021.96	3,561.30	+539.34	
		소계		3,135.08	3,719.12	+584.04	
		비율(%)		7.45	8.84	+1.39	
	총계			42,056.12	42,076.28	+20.16	

-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변경 세부사항

구 분	구 분 / 층 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용도변경	지하 4층	주차장	101.12	운수시설	102.12	
		운수시설	102.12	업무시설	102.12	
	지하 2층	창고	115.27	운수시설	115.27	
		판매시설	56.49	운수시설	56.49	
		운수시설	171.76	판매시설	171.76	
		판매시설	171.76	운수시설	171.76	
		운수시설	115.27	창고	115.27	
		운수시설	56.49	판매시설	56.49	
	지상 1층	운수시설	729.32	판매시설	729.32	
		운수시설	7.56	숙박시설	7.56	
		운수시설	9.60	판매시설	9.60	
		판매시설	26.73	운수시설	26.73	
	지상1층 중층	운수시설	459.78	판매시설	459.78	
		판매시설	1,216.82	운수시설	1,216.82	
		판매시설	284.02	운수시설	284.02	
		비 고	운수시설 1,392.58 증가			
	지상 2층	운수시설	301.15	판매시설	301.15	
		비 고	운수시설 301.15 감소			
	소 계	운수시설 감소면적	1,953.05			
		운수시설 증가면적	1,973.21			
		비 고	증) 20.16㎡			

- 비도시계획시설의 주요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사 항	비 고
시설규모	지하5 ~ 지상 32층	1개층 감소
면세점 신설	숙박시설, 판매(백화점), 운수시설 → 판매시설 (11,759.25㎡)	지하3, 지하1~지상2층 (총 5개층)
업무시설 신설	숙박시설 → 업무시설 (2,471.35㎡)	기존호텔 지상 9 ~11층
주요대수선	지상9층, 13층 철거	호텔영역
	옥탑1층 층수산입 : 1개층 증가 (789.87㎡)	
비 고	기존 시설의 전체연면적 내에서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사항 (연면적 286,222.6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센트럴시티 대표 박주형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현대건설(주)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서울시계 내 한강 (강동구 고덕동~ 구리시 토평동)	선박 2척 (부선 2척)	한강 내 교량시공을 위한 선박운항	'18.07.26. ~ '18.11.25.	'18.07.2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운항구간)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서울마리나 (대표:김종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60	잠실대교~신곡수중보 상류 1㎞	선박 2척 - 요트 2척	수상레저사업	2018.7.23 ~ 2018.12.31	2018. 7.2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한강대교 외 4개소)	선박 1척	한강대교 외 4개소 우물통 보수공사	’18.08.01.~ ’18.12.31.	’18. 07.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25척 (기선 9척, 부선 16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18.08.01. ~ ’18.08.31.	’18. 07.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도로시설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내 한강 (서호교)	선박 2척	서호교 정밀안전진단	'18.08.01.~ '18.09.30.	'18. 07.31.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87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6-7번지 일원
   - 면 적 : 4,125㎡(일시 1,2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여의도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사업
   - 내 역 : 전망데크 설치, 호안식생매트, 산책로 철거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8.07.12.~2023.07.11.(2018.07.12.~2019.12.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20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예스코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2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47-1~중랑구 상봉동 479-2번지 일원
- 면 적 : 7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도시가스관 매설
- 내 역 : L=150m(파이프 D=300㎜, 케이싱=500㎜)

5. 점용기간 : <당초> 2013.07.18.~2018.07.17.
<변경> 2018.07.18.~2023.07.1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20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예스코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2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83-1~중랑구 면목동 173-23번지 일원
- 면 적 : 9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도시가스관 매설
- 내 역 : L=260m(파이프 D=200㎜, 케이싱=350㎜)

5. 점용기간 : <당초> 2013.07.18.~2018.07.17.
<변경> 2018.07.18.~2023.07.1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206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반포대교 북단~중랑천 합류부(L=4.5km)
- 면 적 : 85,00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자전거산책로 분리 및 특화공원 조성
- 내 역

당 초	변 경
- 자전거산책로 분리(L=4.5km, 자전거도로 폭 4m, 산책로 폭 2~4m) - 거점특화공원 조성 1식(반포대교북단하부, 한남대교북단하부, 금호나들목둔치) - 옥수역하부 포장 정비 1식 * 토공 1식, 조경공 1식, 배수공 1식,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 기존 체육시설지(보광지하차도 전면) 1식(농구장)**	- 자전거산책로 분리(L=4.5km, 자전거도로 폭 4m, 산책로 폭 2~4m) - 거점특화공원 조성 1식(반포대교북단하부, 한남대교북단하부, 금호나들목둔치) - 옥수역하부 포장 정비 1식 * 토공 1식, 조경공 1식, 배수공 1식,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 기존 체육시설지(보광지하차도 전면) 1식(농구장, 풋살장)**

5. 공사기간 : 2018.07.31.~2018.08.17.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1 **문의 : ☎120**